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025-10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Child Abuse & Neglect Korea 2017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Child Abuse & Neglect Korea 2017



보건복지부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목차

용어 설명	19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29
요 약	33
제1장 서론	49
1. 발간 배경 및 목적	49
2. 법적 근거	50
3. 분석자료	50
4. 자료분석 방법	50
5. 주요내용	50
제2장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55
1. 신고접수	55
1) 신고접수	55
2) 기관별 신고접수	58
3) 시군구별 신고접수	61
2. 신고자 유형	68
1) 신고자 유형	68
2) 시군구별 신고자 유형	76
3) 경찰통보건수	94
3. 신고접수 경로 유형	95
제3장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101
1. 현장조사	101
1) 현장조사 횟수	101
2) 기관별 현장조사 횟수	102
2. 사례판단	104
1) 사례판단 결과	104
2) 기관별 사례판단 결과	105
3) 피해아동 보호수	106
3. 피해아동 발견율	107
제4장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113
1. 인구사회학적 요인	113
1) 피해아동	113
가. 피해아동 성별	113

나. 피해아동 연령	114
다. 피해아동 가족유형	115
라.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16
마. 피해아동 특성	117
2) 학대행위자	119
가. 학대행위자 성별	119
나. 학대행위자 연령	120
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21
라.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122
마.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23
바.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24
사. 학대행위자 특성	125
2.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126
1) 아동학대 발생장소	126
2) 아동학대 발생빈도	127
3. 아동학대사례 유형	128
1) 아동학대사례 유형	128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128
나. 아동학대사례 유형 II (중복학대 미분류)	129
2) 아동학대사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130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130
나.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131
다.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132
라.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34
마.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134
4.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136
1) 피해아동 조치결과	136
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36
나.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142
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피해아동 보호 현황	147
2)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149
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49
나.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151
3)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조치 현황	155
가.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	155
나. 긴급임시조치 현황	156
다. 임시조치 현황	157
라. 피해아동보호명령 현황	159
5. 서비스 제공 현황	161

목차

1)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161
가.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7년 이전/2017년)	161
나.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163
2)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164
가.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7년 이전/2017년)	164
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165
3)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166
가. 피해아동의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7년 이전/2017년)	166
나. 피해아동의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167
 제5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173
1. 재학대 사례	173
1) 재학대 사례의 현황	173
2)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174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174
나.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175
다.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176
라.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177
3)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178
가.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178
나.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179
다.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80
라.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181
마.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82
바.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183
4)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84
5) 재학대 사례의 발생현황	185
가.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185
나. 재학대 사례 발생빈도	186
다.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187
라.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188
마.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189
6)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191
가.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191
나.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I (중복학대 미분류)	192
7) 재학대 사례의 조치결과	193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조치결과	193
나.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194
2. 사망아동 사례	195

1) 사망아동 사례의 현황	195
2) 사망아동 사례의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195
가.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195
나.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196
다.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97
3) 사망아동 사례의 발생현황	199
가.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199
나.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200
4)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01
5)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02
3.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사례	203
1)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기관별 현황	203
2)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피해아동	206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206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207
다.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208
3)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학대행위자	210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210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211
다.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212
4)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13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213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I (중복학대 미분류)	214
5)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조치결과	215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15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16
제6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221
제7장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227
1.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227
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227
2)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229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230
3.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233
4. 연도별 피해아동 보호 현황	234
1)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234
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236
6.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38

목차

7.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240
8. 연도별 재학대 사례 현황	242
1) 연도별 재학대 사례 건수	242
2) 연도별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243
3) 연도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244
4) 연도별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45
5) 연도별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46
9.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현황	247
1)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247
2)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 유형	248
3)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49
10. 연도별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250
1) 시도/시군구 신고의무자교육 의무대상 교육 결과	250
2) 교육청/교육지원청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실적	252
부록	257
부록 1.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257
부록 2.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현황	260
부록 3. 2016 현황보고서 오류 수치 정정	260

〈표 목차〉

〈표 1-1〉 보고서 내용구성	51
〈표 2-1〉 신고접수 건수	56
〈표 2-2〉 재신고 및 신규신고접수 건수	57
〈표 2-3〉 월별 신고접수 현황	58
〈표 2-4〉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	59
〈표 2-5〉 시군구별 신고접수 건수	61
〈표 2-6〉 신고자 유형	68
〈표 2-7〉 기관별 신고자 유형	70
〈표 2-8〉 시군구별 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76
〈표 2-9〉 시군구별 비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88
〈표 2-10〉 경찰통보건수	94
〈표 2-11〉 신고접수 경로 유형	95
〈표 2-12〉 기관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96
〈표 3-1〉 현장조사 횟수	101
〈표 3-2〉 현장조사 동행 현황	102
〈표 3-3〉 기관별 현장조사 횟수	102
〈표 3-4〉 사례판단 결과	104
〈표 3-5〉 기관별 사례판단 결과	105
〈표 3-6〉 피해아동 보호수	107
〈표 3-7〉 피해아동 발견율	108
〈표 4-1〉 피해아동 성별	113
〈표 4-2〉 피해아동 연령	114
〈표 4-3〉 피해아동 가족유형	115
〈표 4-4〉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16
〈표 4-5〉 피해아동 특성	117
〈표 4-6〉 학대행위자 성별	119
〈표 4-7〉 학대행위자 연령	120
〈표 4-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21
〈표 4-9〉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123
〈표 4-10〉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23
〈표 4-11〉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24
〈표 4-12〉 학대행위자 특성	125
〈표 4-13〉 아동학대 발생장소	126
〈표 4-14〉 아동학대 발생빈도	127
〈표 4-15〉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128
〈표 4-16〉 아동학대사례 유형 II (중복학대 미분류)	130
〈표 4-17〉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131
〈표 4-18〉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132

목차

〈표 4-1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133
〈표 4-2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34
〈표 4-21〉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134
〈표 4-22〉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37
〈표 4-23〉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비율	138
〈표 4-24〉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시기	138
〈표 4-25〉 피해아동 발견율과 피해아동 초기 분리보호율 비교	139
〈표 4-26〉 기관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40
〈표 4-27〉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41
〈표 4-28〉 기관별 피해아동 사례종결 현황	142
〈표 4-29〉 사례종결 여부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145
〈표 4-3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146
〈표 4-31〉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현황	147
〈표 4-32〉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현황	147
〈표 4-33〉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147
〈표 4-34〉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 거주지	148
〈표 4-35〉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49
〈표 4-36〉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50
〈표 4-37〉 학대행위자 고소·고발·사건처리 조치 건수	151
〈표 4-38〉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152
〈표 4-3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154
〈표 4-40〉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비율	155
〈표 4-41〉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	156
〈표 4-42〉 긴급임시조치 현황	157
〈표 4-43〉 임시조치 결정 현황	158
〈표 4-44〉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현황	160
〈표 4-45〉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161
〈표 4-46〉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7년 이전/2017년)	162
〈표 4-47〉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163
〈표 4-48〉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7년 이전/2017년)	164
〈표 4-49〉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165
〈표 4-50〉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7년 이전/2017년)	166
〈표 4-51〉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167
〈표 5-1〉 재학대 사례 발생 건수	173
〈표 5-2〉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174
〈표 5-3〉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175
〈표 5-4〉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176
〈표 5-5〉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177
〈표 5-6〉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178

〈표 5-7〉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179
〈표 5-8〉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80
〈표 5-9〉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181
〈표 5-10〉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82
〈표 5-11〉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183
〈표 5-12〉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84
〈표 5-13〉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185
〈표 5-14〉 재학대 사례 발생빈도	186
〈표 5-15〉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187
〈표 5-16〉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188
〈표 5-17〉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190
〈표 5-18〉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191
〈표 5-19〉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I (중복학대 미분류)	192
〈표 5-20〉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조치결과	193
〈표 5-21〉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194
〈표 5-22〉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195
〈표 5-23〉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195
〈표 5-24〉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196
〈표 5-25〉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97
〈표 5-26〉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연령	198
〈표 5-27〉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199
〈표 5-28〉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200
〈표 5-29〉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201
〈표 5-30〉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02
〈표 5-31〉 시설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사례 발생 건수	203
〈표 5-32〉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 기관별 발생 건수	204
〈표 5-33〉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206
〈표 5-34〉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207
〈표 5-35〉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208
〈표 5-36〉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210
〈표 5-37〉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211
〈표 5-38〉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212
〈표 5-39〉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213
〈표 5-40〉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I (중복학대 미분류)	214
〈표 5-41〉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15
〈표 5-42〉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16
〈표 6-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업무량	222
〈표 7-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228
〈표 7-2〉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229

목차

〈표 7-3〉 연도별 신고자 유형	231
〈표 7-4〉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233
〈표 7-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234
〈표 7-6〉 연도별 피해아동 발견율	235
〈표 7-7〉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236
〈표 7-8〉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I (중복학대 미분류)	237
〈표 7-9〉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38
〈표 7-10〉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240
〈표 7-11〉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건수 및 아동 수	242
〈표 7-12〉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43
〈표 7-13〉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발생시기	244
〈표 7-14〉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45
〈표 7-15〉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46
〈표 7-16〉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247
〈표 7-17〉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48
〈표 7-18〉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49
〈표 7-19〉 연도별 시도/시군구 신고의무자교육 의무대상 교육 결과	250
〈표 7-20〉 연도별 교육청/교육지원청 신고의무자교육 의무대상 교육 결과	252

[그림 목차]

[그림 2-1] 신고접수 건수	56
[그림 2-2] 재신고 및 신규신고접수 건수	57
[그림 2-3] 월별 신고접수 현황	58
[그림 2-4] 신고자 유형	69
[그림 2-5] 신고접수 경로 유형	95
[그림 3-1] 사례판단 결과	104
[그림 4-1] 피해아동 성별	113
[그림 4-2] 피해아동 연령	115
[그림 4-3] 피해아동 가족유형	116
[그림 4-4]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16
[그림 4-5] 피해아동 특성	118
[그림 4-6] 학대행위자 성별	119
[그림 4-7] 학대행위자 연령	120
[그림 4-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22
[그림 4-9]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123
[그림 4-10]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24
[그림 4-11] 아동학대 발생빈도	127
[그림 4-12]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129
[그림 4-13] 아동학대사례 유형 II (중복학대 미분류)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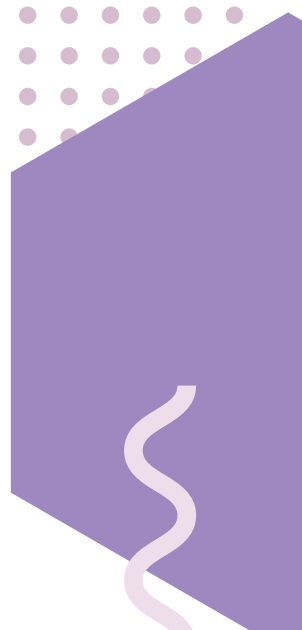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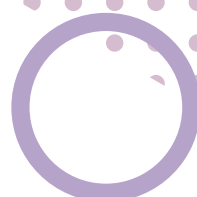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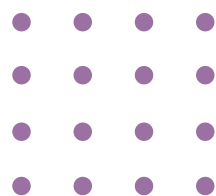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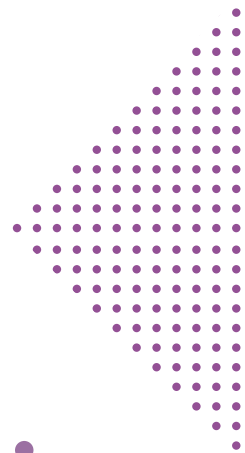
[그림 4-14]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131
[그림 4-15]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132
[그림 4-16]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37
[그림 4-17] 피해아동 초기조치 결과 중 분리보호조치의 세부현황	137
[그림 4-18]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시기	139
[그림 4-1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42
[그림 4-20] 사례종결 여부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145
[그림 4-21]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146
[그림 4-22]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148
[그림 4-23]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49
[그림 4-24]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50
[그림 4-25] 피해아동 응급조치 세부 내용	156
[그림 4-26] 긴급입시조치 결정 세부 내용	157
[그림 4-27] 임시조치 결정 세부 내용	159
[그림 4-28]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세부 내용	160
[그림 5-1]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174
[그림 5-2]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175
[그림 5-3]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176
[그림 5-4]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178
[그림 5-5]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178
[그림 5-6]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179
[그림 5-7]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80
[그림 5-8]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181
[그림 5-9]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82
[그림 5-10]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85
[그림 5-11]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186
[그림 5-12] 재학대 사례 발생빈도	187
[그림 5-13]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188
[그림 5-14]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189
[그림 5-15]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190
[그림 5-16]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191
[그림 5-17]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I (중복학대 미분류)	192
[그림 5-18]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조치결과	193
[그림 5-19]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194
[그림 5-20]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196
[그림 5-21]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196
[그림 5-22]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199
[그림 5-23]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200
[그림 5-24]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201

목차

[그림 5-25]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02
[그림 5-26]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206
[그림 5-27]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207
[그림 5-28]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209
[그림 5-29]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210
[그림 5-30]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211
[그림 5-31]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213
[그림 5-32]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I (중복학대 미분류)	214
[그림 5-33]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15
[그림 5-34]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16
[그림 7-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228
[그림 7-2] 연도별 재신고 사례 발생 건수	229
[그림 7-3]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230
[그림 7-4]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233
[그림 7-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234
[그림 7-6] 연도별 추계아동인구 및 피해아동 발견율	235
[그림 7-7]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236
[그림 7-8]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I (중복학대 미분류)	237
[그림 7-9]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39
[그림 7-10]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241
[그림 7-11]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건수 및 아동 수	242
[그림 7-12]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43
[그림 7-13]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발생시기	244
[그림 7-14]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45
[그림 7-15]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46
[그림 7-16]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247
[그림 7-17]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48
[그림 7-18]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49
[그림 7-19] 연도별 시도/시군구 신고의무자교육 의무대상 교육 결과	251
[그림 7-20] 연도별 교육청/교육지원청 신고의무자교육 의무대상 교육 결과	252

용어 설명

Child Abuse & Neglect Korea 2017





용어 설명

[신고 접수]

+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아동보호전문기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조사 및 개입 등의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함(아동복지법 제46조).

+ 신고접수(사례) : 상담 및 신고 목적으로 접수된 모든 사례.

+ 112 :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범죄신고번호이며, 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신고번호가 112로 통합 운영됨. 신고 접수 받은 뒤 현장 경찰관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사실 통보 및 동행요청을 함.

+ 1577-1391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를 신고받기 위해 설치한 전화로 24시간 동안 운영되었으나 2014년 9월 29일 이후부터 112로 아동학대신고전화로 통합되면서 폐지되었음. 현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설치된 일반전화를 통해 아동학대사례가 신고될 경우 신고접수함.

+ 내방신고 : 신고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 인터넷신고 : 신고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

+ 119 : 119 안전신고센터에서 운영하는 전화로, 아동학대 사건 제보가 들어올 경우 해당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속하게 유선 통보.

+ 129 : 보건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보건복지콜센터 전화번호임. 보건복지콜센터는 112로부터 아동학대 사례 관련 상담 전화가 이관되면 이에 대해 응대하고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유선 통보함. 보건복지콜센터에 아동학대 사건 제보가 들어올 경우, 보건복지콜센터상담원은 긴급 현장 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아동학대 제보자에게 112로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제보자가 이를 꺼릴 경우 가급적 상세한 정보를 입수하여 해당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속하게 유선 통보함.

+ 1366 : 여성긴급전화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상담과 구조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여성이나 동반가족들이 365일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여성긴급전화.

+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자(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제1조).

- + 피해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제8호)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6항).
- + 학대행위자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5호).
- +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 신고접수 당시 응급한 아동학대 상황으로 의심되며,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12시간 이내에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례.
- + 아동학대의심사례 : 신고접수 당시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가운데,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이며, 신고접수를 받은 후 7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례.
- + 일반상담(사례)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성인이 아닌 자에 의해 발생한 사례, 아동학대가 의심되지만 정보 부족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사례.
- + 동일신고(사례) : 최초 신고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동일한 학대피해의심내용이 다른 신고자들에 의해 신고되는 사례.
- + 재신고(사례) : 최초 신고접수 이후에 동일한 학대행위자에 의해 동일한 피해아동에게 추가적인 학대가 발생한 사례를 말함.
- + 사례종결 후 재신고(사례)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 후 종결했던 사례 중 다시 신고접수된 사례로 어느 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인지에 관계없이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되어 개입 후 종결한 사례 중 다시 신고접수된 모든 사례를 말함.
- + 사례진행 중 재신고(사례)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신고접수하여 현장 조사 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하여 개입 중인 사례에 대해 다시 신고접수된 사례 또는 응급아동학대사례 및 아동학대의심 사례 중 신고접수하였으나 사례판단 이전에 동일 또는 다수의 신고자에 의해 또 다른 학대행위의심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 된다는 내용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 + 일반상담 후 재신고(사례) : 신고접수 당시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지 않아 일반상담으로 종결하였으나 다시 신고접수된 사례.
- +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가진 자로 신고의무자에는 초·중·고교 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강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소방구급대원, 성매매 피해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이돌보미 등 24개 직군이 포함됨(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 + 비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자.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 + 현장조사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하여 학대 발생 여부와 위험 정도를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
- + 사례판단 :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아동학대사례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로 분류 및 결정하는 과정.
- + 아동학대위험도평가척도 : 현장조사 시 또는 현장조사 이후 상담원 및 경찰이 직접 현장에서 적용하는 척도이며, 이를 통해 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

- + (자체)사례회의 : 사례판단과 사례개입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장, 팀장, 상담원으로 구성된 회의.
- + 사례전문위원회의 : 아동학대 사례판단에 어려움이 있거나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가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에 대해 사례판단 및 개입방향을 논의하고자 아동학대 담당공무원, 의사, 경찰관, 법조인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
- + 아동학대사례 : 사례판단 유형 중 하나로 학대의 정황이 뚜렷하고 아동학대로 판단할 만한 증거 또는 진술이 뒷받침 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 + 조기자원사례 : 사례판단 유형 중 하나로 아동학대혐의가 없으나 고위험군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외부지원이 필요한 사례.
- + 일반사례 : 사례판단 유형 중 하나로 신고접수 시 아동학대의심사례로 판단하였으나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
- + 피해아동 발견율 : 당해 연도 추계아동인구(만 0~17세) 천 명 당 피해아동 수(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수).
- + 친부모가족 : 적법한 혼인절차에 의한 부모와 부모 사이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 + 모·부자가정 : 부모의 이혼 및 사별 등의 사유로 부와 자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 + 미혼부·모가정 : 적법한 혼인절차 없이 자녀를 출산하여 부와 자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 + 재혼가정 : 이혼 혹은 사별 이후 혼인관계를 통해 재구성된 가족 형태.
- + 친인척보호가정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별거 및 이혼한 일방의 부 또는 모에게 보호되는 가족 형태.
- + 동거(사실혼포함)가정 : 적법한 혼인절차 없이 동일한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가족 형태.
- + 소년소녀가정 : 보호자 없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가족 형태.
- + 가정위탁 : 가정위탁절차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하는 형태.
- + 입양가정 : 입양절차를 통해 양부모-양자의 관계를 맺은 가족 형태.
- + 시설보호 : 보호조치를 통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하는 형태.
- +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 + 계부·계모 : 재혼을 통하여 맺어진 부 또는 모.
- + 양부·양모 : 입양절차를 통해 맺어진 부 또는 모.
- + 위탁부·위탁모 : 가정위탁절차를 통해 맺어진 부 또는 모.
- +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 + 신체·정신적 장애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등의 신체적 장애와 지적 장애, 정신장애, 자폐성 장애를 포함한 정신적 장애.

- + 정서·정신건강 : 주의산만, 과잉행동, 인터넷(게임)중독, 불안 등의 특성
- + 적응·행동 : 거짓말, 도벽, 가출, 성문제, 학교 부적응 등의 특성
- + 발달·신체건강 : 신체발달지연, 언어문제, 영양결핍, 대소변문제 등의 특성
- + 특성 없음 : 신체·정신적 장애, 정서·정신건강, 적응·행동, 발달·신체건강 등의 두드러지는 특성이 없는 경우
- +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손, 발 또는 도구로 때림, 물건을 던짐, 꼬집거나 물어뜯음, 신체 일부를 강압적으로 압박하거나 아동을 던지는 행위 등이 포함됨.
- +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소리 지름, 무시 또는 모욕, 가정폭력에 노출,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 +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함. 성기노출, 신체 및 성기 추행, 성기 삽입,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 + 방임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처리를 하지 않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등이 포함됨.
- + 유기*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2012년부터는 유기를 방임에 포함하여 집계함.
- + 중복학대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형의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한 학대 유형.

[조치결과관리]

- + 조치결과 : 사례판단을 근거로 피해아동의 안전 및 회복과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결정을 취하는 것.
- + 초기조치결과 : 아동학대로 사례판단된 이후 처음으로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조치결정 유형.
- + 최종조치결과 :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통해 마지막 종결단계에서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조치결정 유형.
- + 응급조치 : 아동학대범죄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현장을 발견한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피해아동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취하는 조치.
- + 임시조치 :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로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하는 조치.
- + 제14조 임시조치 :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와 무관하게 임의적으로 검사의 직권 또는 경찰이나 보호관찰관의 청구신청 또는 피해아동 본인·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피해아동의 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청구요청 및 청구신청요청에 따라 검사가 청구할 수 있음.
- + 제15조 임시조치 :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후속절차로써 필요적으로 청구함.

- + 긴급임시조치 : 응급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할 때 경찰의 직권이나 피해아동 본인·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피해아동의 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긴급하게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취하는 조치.
- + 피해아동보호명령 :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판사의 직권이나 피해아동·법정대리인·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직접 가정법원에 아동의 보호를 청구하는 제도.
- + 임시보호명령 :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의 결정으로 임시로 피해아동보호명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 + 원가정보호 : 생물학적·법적 친권자 및 양육권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양육하는 주양육자가 아동을 보호하는 형태.
- + 격리보호 : 피해아동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 + 일시보호 :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친족, 연고자 또는 위탁양육자가 없어 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일시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
- + 장기보호 :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 보호가 필요하여 아동양육시설로 입소하는 것.
- + 기타보호 : 피해아동을 분리한 이후 친인척보호, 일시보호, 장기보호, 가정위탁을 제외한 병원 입원 등의 보호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것.
- + 가정복귀 : 아동학대로 분리보호된 아동을 다시 원가정으로 배치하는 것.
- + 사망사례 :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
- + 타기관의뢰 : 사례를 담당하기에 더욱 적절한 관련 기관으로 사례를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을 의미함.
- + 지속관찰 : 아동 안전 확보 및 재학대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
- + 고소 : 범죄 피해자 및 그의 법정 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 고발 :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 사건처리 :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 보호처분 : 사회보호 및 특별 예방적 목적으로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가하는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치료감호 등을 부과하는 것.
- + 형사처분 : 범죄를 이유로 하여 형벌 즉 구류, 금고, 징역 등을 부과하는 것.

[서비스제공]

- + 상담서비스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과의 개별적인 상담서비스,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집단을 이루어 상담을 하는 집단상담서비스,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기관, 병원 등 다른 기관과 실시한 기관상담서비스,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을 위해 주변인과 실시한 상담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 + 입원치료 : 피해아동이 신체적 치료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와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이 정신질환, 알콜 및 약물남용 등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를 말함.
- + 통원치료 : 피해아동의 신체적 치료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외래진료를 한 경우와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의 신체적 치료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외래진료를 한 경우를 말함.
- + 심리검사 : 심리학적 평가 및 진단을 위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실시.
- + 놀이치료 : 놀이를 통해 피해아동 또는 가족에게 실시하는 심리치료를 의미함.
- + 미술치료 : 미술활동을 통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실시하는 심리치료를 의미함.
- + 가족치료 : 개인을 둘러싼 환경 요소 중 특히 가족을 치료적 매개로 사용하여 피해아동 가정에 실시하는 심리치료를 의미함.
- + 기타치료 : 놀이치료, 미술치료, 가족치료를 제외한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실시한 구조화된 심리치료를 의미함.
- + 가정지원서비스 : 피해아동 가정 또는 학대행위자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 +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지역사회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상담소 등)을 연계하여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을 의미함.
- + 공적지원연결 :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학대가 발생한 가정의 기능 회복 및 강화를 위해 공적지원(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자활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연결.
- + 학습 및 보호지원서비스 : 학대피해아동쉼터 입퇴소 및 절차지원, 학대피해아동 분리보호 및 절차지원, 출결 및 비밀전학 처리 지원을 포함하는 서비스.
- + 사건처리지원서비스 : 학대행위자가 고소·고발 또는 응급조치에 따른 수사개시 등으로 사건처리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 또는 재판진행과정에서 피해아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
- + 행위자수탁프로그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임시조치 또는 조건부기소유예, 보호처분,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결정을 받아 검찰·법원으로부터 상담·교육 위탁 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 + 사례종결 : 사례개입을 마무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피해아동 및 가족의 관계를 정리하여 최종적인 서비스 종결에 이르게 하는 것.
- + 사후관리 : 사례종결 이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재학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재학대 예방과 가족의 안정 유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및 가족에게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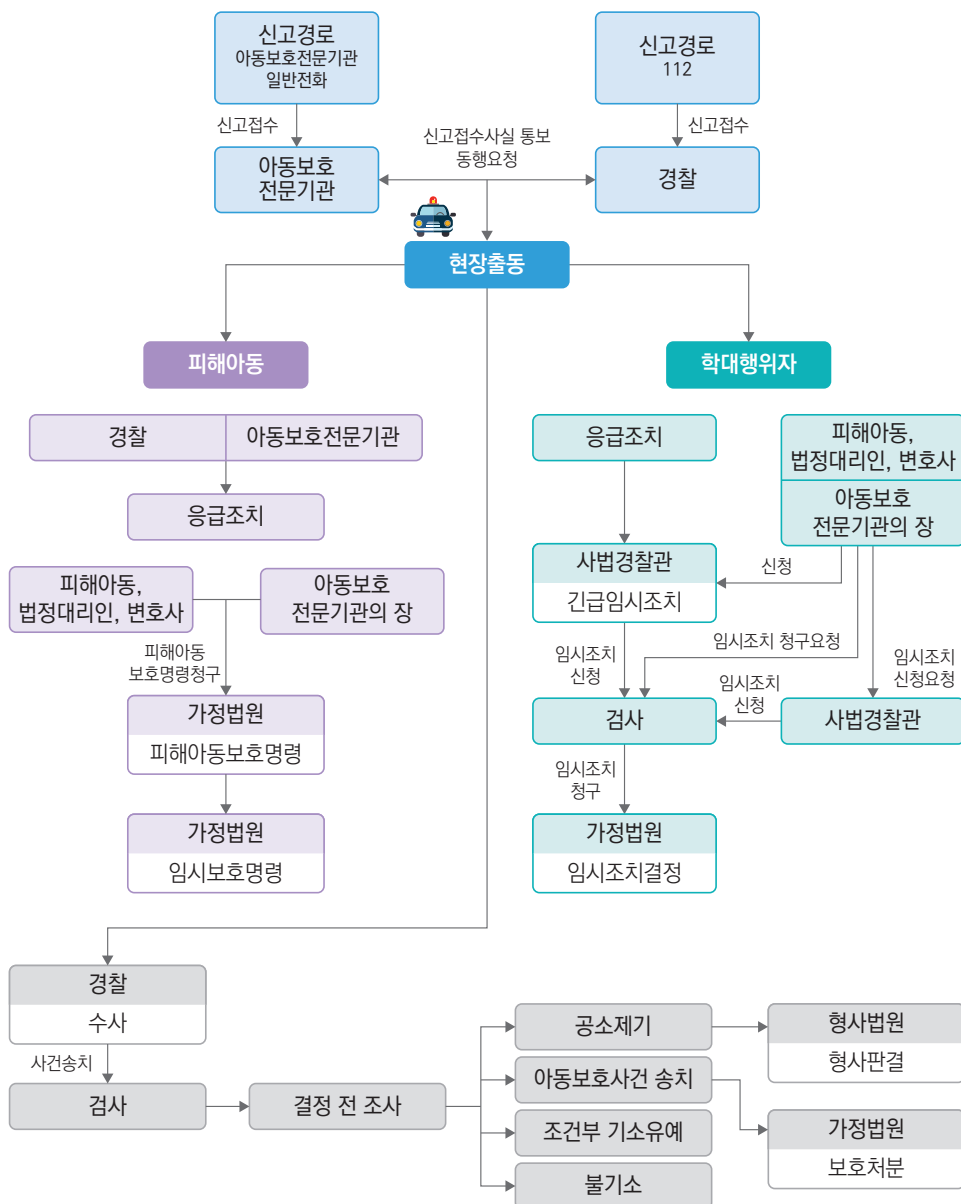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Child Abuse & Neglect Korea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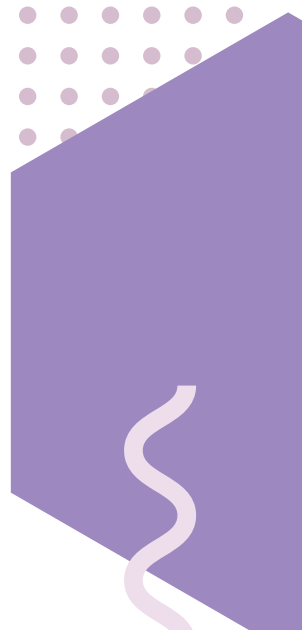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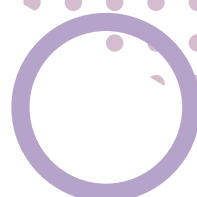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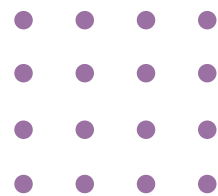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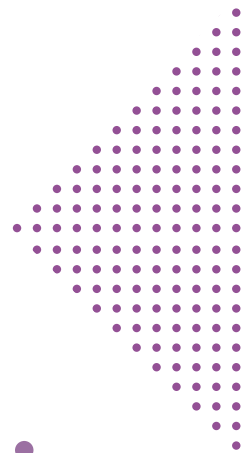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요약

Child Abuse & Neglect Korea 2017





요약

- 본 보고서는 전국 60개 아동보호전문기관(2017년 12월 기준) 직원들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을 집계한 결과임(아동복지법 제46조 제1항 제2조 의거).
- 본 보고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접수된 건을 사례 개입 절차의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집계되므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실제 아동학대 통계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본 보고서에서 분석된 2017년 아동학대 현황 및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추이를 토대로 아동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모색하고자 함.
 - ▶ 수집된 자료는 2017년의 신고접수,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아동학대사례 발생 및 유형,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조치 및 서비스 제공,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재학대 사례, 사망아동 사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등에 관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며, 더불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변화 추이를 파악함.

신고 접수 현황

신고 접수

- 2017년, 전국 60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된 사례는 총 34,169건에 해당됨.
 - ▶ 아동학대 신고접수 34,169건 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는 30,923건(90.5%), 동일신고는 292건(0.9%), 일반상담은 2,951건(8.6%), 해외발생사례는 3건(0.0%)임.
 - ▶ 아동학대 신고접수 34,169건 중 재신고 사례는 3,520건(10.3%)이며, 2017년 신규신고는 30,649건(89.7%)임.
 - ▶ 2017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7월 3,549건(10.4%), 9월 3,346건(9.8%), 6월 3,345건(9.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는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1,3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1,073건,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1,059건,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1,048건,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977건순으로 나타남.
- 시군구별 신고접수 건수는 인천 서구 58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라남도 목포시 494건 순으로 나타남.

신고자 유형

- 아동학대 신고자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분류되는데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28.6%(8,830건), 비신고의무자의 경우는 71.4%(22,093건)로 나타남.
 - ▶ 신고의무자 중 가장 높은 신고율을 기록한 직군은 초·중·고교 직원으로 16.7%임.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6%, 아동복지시설종사자 1.3% 순으로 나타남.
 - ▶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22.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부모에 의한 신고율이 17.2%, 아동본인 12.6% 순으로 나타남.

신고접수 경로 유형

- 아동학대로 신고된 접수 경로를 살펴보면 112를 통한 신고가 16,676건(48.8%)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신고가 11,038건(32.3%), 상담원 인지신고 6,258건(18.4%), 1366 130건(0.4%), 129 47건(0.1%) 순으로 나타남.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현장조사

- 2017년 한 해 동안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30,923건을 대상으로 총 97,692회의 현장조사가 실시됨.
- 아동학대의심사례 대비 현장조사 실시 횟수를 분석한 결과 1건 당 약 3.2회의 현장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 현장조사 동행 현황을 살펴보면 상담원 단독 현장조사 57,333건(58.7%), 상담원·경찰 22,418건(22.9%), 경찰 단독 13,166건(13.5%), 상담원·경찰·공무원 3,327건(3.4%) 순으로 나타남.

사례판단

- 아동학대의심사례인 30,923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학대사례는 22,367건으로 72.3%를 차지하였고, 조기지원사례 2,336건(7.6%), 일반사례 6,176건(20.0%)임.
- 아동학대사례 22,367건 내에는 동일한 아동이 한 번 이상 신고 되어 학대로 판단된 경우 또는 동일한 아동이 한 명 이상의 학대행위자에게 학대를 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17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인해 실제 보호된 아동 수는 18,254명으로 나타남.

피해아동 발견율

- 통계청에서 집계한 2017년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시도」자료를 기준으로 아동인구 1,000명 당 피해아동 발견율을 산출한 결과, 전국 피해아동 발견율은 2.64%로 나타났으며, 각 지역별로는 전라 북도가 5.23%로 가장 높았고, 서울특별시가 1.66%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아동보호전문기관 당 아동 수와 피해아동 발견율 간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관계수는 -0.66로 유의미하게 도출됨. 다시 말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에 아동 인구가 적을수록 피해 아동 발견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함.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대비 추계아동인구를 살펴본 결과,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는 아동 수는 평균 141,123명으로 나타남.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266,618명으로 가장 많은 아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상남도 194,266명, 경기도 191,706 순으로 나타남. 반면 담당 아동 수가 가장 적게 나타난 지역은 강원도였으며, 1개 기관 당 약 58,935명이었음.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피해아동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 아동학대로 판단된 22,367건을 대상으로 피해아동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아 11,110건(49.7%), 여아 11,257건(50.3%)으로 여아가 약 0.6%p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아동의 연령은 만 13~15세의 아동이 전체의 22.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만 10~12세가 20.9%, 초등학교 저학년인 만 7~9세의 아동이 17.6%로 나타남.
-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은 친부모가족 12,489건(55.8%), 친부모가족 외 형태 8,078건(36.1%), 대리양육 형태와 기타는 각각 311건(1.4%), 137건(0.6%)의 양상을 나타냄.
 - ▶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모가족이 각각 12.2%, 11.8%, 1.6%로 전체 피해아동 가족유형의 25.6%에 해당함.
 - ▶ 한편 가족유형 중 가정위탁, 입양가정, 시설보호가 각각 38건(0.2%), 56건(0.3%), 217건(1.0%)으로 비교적 낮은 수치로 집계되었으나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대리양육형태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피해아동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여부를 살펴보면, 수급권 대상 2,252건(10.1%), 비수급권 대상 8,248건(36.9%), 그리고 파악안됨이 11,867건(53.1%)으로 나타남.
- 피해아동의 특성을 신체·정신적 장애, 정서·정신건강, 적응행동, 발달·신체건강, 특성 없음 및 기타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적응·행동이 전체 21.4%인 7,152건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서·정신건강 6,466건(19.3%), 특성없음 6,115건(18.3%), 발달·신체건강 1,863건(5.6%), 장애 711건(2.1%), 기타 306건(0.9%) 순으로 나타남.

학대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 학대행위자 성별은 남성 12,653건(56.6%), 여성 9,713건(43.4%)이었고, 파악안됨은 1건(0.0%)임.
- 학대행위자 중 40대가 9,970건(44.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0대가 6,076건(27.2%)이었는데 피해아동 연령 중 중학생, 초등학교 고학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을 볼 때, 대다수의 학대행위자가 30~40대의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인 것으로 유추 가능함.
- 학대행위자는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17,177건(7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리양육자의 경우 3,343건(14.9%)으로 나타남. 대리양육자 중에서 보육교직원은 840건(3.8%),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285건(1.3%)이었음.
-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이 함께 동거하는 사례는 16,669건으로 전체의 74.5%에 해당하였고, 비동거와 파악안됨은 각각 5,628건(25.2%), 70건(0.3%)임.
-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 중에서는 무직이 3,169건(14.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서비스 및 판매직 1,839건(8.2%) 순으로 나타남. 반면 관리직, 전문직, 기술공 및 준전문직, 사무직인 경우는 전체의 약 15% 정도를 차지함.
-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여부를 살펴보면, 수급권 1,870건(8.4%)인 반면 비수급권 8,369건(37.4%)에 달하였으며, 파악안됨은 12,128건(54.2%)에 해당함.
- 학대행위자의 학대 조사 당시 특성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으로 전체의 22.2%에 해당하는 8,388건이며,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요인 4,933건(13.1%), 부부 및 가족 갈등 2,721건(7.2%) 순으로 나타남.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 아동학대 발생장소를 살펴본 결과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80.4%에 해당하는 17,989건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고, 그 외에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 사례는 각각 843건(3.8%), 1,344건(6.0%), 269건(1.2%)으로 전체 사례 중 11%에 해당하고, 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 254건(1.1%), 기타 복지시설 45건(0.2%)로 1.3%에 해당함.
- 거의 매일 학대가 발생한 경우는 전체의 18.8%인 4,195건이었으며, 2~3일에 한 번 발생한 경우는 2,610건(11.7%), 일주일에 한 번 인 경우가 2,359건(10.5%)으로 나타남. 즉,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빈번하게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41.0%로 전체 사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함.

아동학대사례 유형

-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건수를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10,875건(48.6%)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 4,728건(21.1%), 방임 2,787건(12.5%), 신체학대 3,285건(14.7%), 성학대 692건(3.1%)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중복학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아동학대사례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정서학대가 15,346건(44.9%)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와 방임이 각각 13,200건(38.6%), 4,545건(13.3%), 성학대 1,087건(3.2%)으로 이 중 가장 적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 아동학대사례 유형에 따른 피해아동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신체학대와 방임사례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높았고, 정서학대와 성학대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높았음. 특히 성학대 사례에서는 여아가 86.9%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음.
-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의 연령분포가 전체 피해아동 연령과 유사하게 도출되었으며, 만 7~9세, 13~15세와 만 10~12세 구간에 많은 피해아동이 집중됨.
- 아동학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을 살펴보면 신체학대 및 정서학대 유형에서 반항·충동·공격성, 거짓말, 약물·흡연·음주, 가출 등과 같은 적응·행동 특성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서·정신건강 특성, 특성 없음, 발달·신체건강 특성, 장애의 순으로 나타남. 방임의 경우 불안, 주의산만 등과 같은 정서·정신건강 특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아동학대사례 유형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의 경우, 성학대를 제외한 모든 학대 유형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7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나, 성학대는 34.2%로 나타남.
-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학대 유형에서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음. 다음으로 성학대를 제외한 모든 학대 유형에서 사회·경제적 스트레스와 특성 없음, 부부 및 가족갈등의 순서로 높은 비중이 나타남.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 피해아동의 초기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이 주양육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호받는 유형인 원가정보호에 해당하는 사례가 18,104건(80.9%)으로 가장 많았고, 분리보호 4,179건(18.7%), 사망 46건(0.2%), 기타 38건(0.2%)으로 나타남.
 - ▶ 피해아동이 초기에 분리보호 조치된 경우 중 일시보호 1,822건(8.1%), 친족(친인척)보호 1,149건(5.1%), 장기보호 953건(4.3%), 연고자에 의한 보호 163건(0.7%), 병원입원 90건(0.4%), 가정위탁 2건(0.0%) 순으로 나타남.
 - ▶ 초기 분리보호된 아동이 원가정에 복귀된 사례는 1,047건(25.1%)이었으며, 가정 복귀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초기 분리보호 이후 1개월 이내가 375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1~3개월 사이 82건(7.8%), 3~6개월 사이 108건(10.3%), 6개월~1년 사이 172건(16.4%), 1년 이상 310건(29.6%)으로 나타남.
 - ▶ 피해아동의 초기 분리보호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28.1%로 가장 높았고, 제주특별자치도 25.0%, 경상남도 23.5% 순으로 조사됨.
 - ▶ 피해아동의 초기조치결과를 학대 유형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모든 학대 유형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 조치는 원가정보호로 약 76% 정도의 비중을 차지함.

- 피해아동의 최종조치결과는 2017년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22,367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종결여부에 관계 없이 2017년에 취한 마지막 차수의 조치결과를 뜻함.
 - ▶ 2017년 아동학대사례 22,367건 중 당해에 종결된 사례 수는 10,874건으로 전체의 48.6%에 해당함.
 - ▶ 진행 중 사례와 종결사례를 합한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원가정보호 17,589건(78.6%), 분리보호 3,527건(15.8%), 사망 58건(0.3%), 가정복귀 1,139건(5.1%), 기타 54건(0.2%)으로 나타났으며, 분리보호의 세부유형 중에서는 장기보호 1,274건(5.7), 친족(친인척)보호 1,230건(5.5%), 일시보호 824건(3.7%), 연고자에 의한 보호 110건(0.5%), 병원입원 60건(0.3%), 가정위탁 29건(0.1%) 순으로 나타남.
 - ▶ 2017년에 진행 중인 사례와 종결된 사례를 나누어 살펴보면 진행 중인 사례는 원가정보호가 8,877건(77.2%), 분리보호는 1,971건(17.1%)으로 파악되며, 종결된 사례의 경우 원가정보호 8,712건(80.1%), 분리보호 1,556건(14.3%)으로 파악됨.
 - ▶ 2017년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한 973명의 아동 중 2017년 이전에 입소하여 2017년에도 보호를 받은 아동은 233명(23.9%)이며, 2017년도에 입소한 아동은 740명(76.1%)으로 나타남.
 - ▶ 2017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한 아동 973명 중 2017년에 퇴소한 아동은 717명(73.7%), 2017년에도 재원하고 있는 아동은 256명(26.3%)임.
 - ▶ 2017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은 1개월 미만인 324명(45.2%)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144명(20.1%),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99명(13.8%), 6개월 이상~1년 미만 97명(13.5%), 1년 이상 53명(7.4%)으로 나타남.
 - ▶ 2017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퇴소한 아동의 거주지로 원가정 복귀 비율이 48.3%로 가장 높았고, 타 시설 입소 비율은 37.2%임.
-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최종조치결과는 다음과 같음. 지속관찰이 14,075건(62.9%)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소·고발·사건처리 7,297건(32.6%)이고, 아동과의 분리 484건(2.2%), 학대행위자 만나지 못함 511건(2.3%)임.
 - ▶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최종조치결과를 학대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성학대의 경우 학대행위자에게 고소·고발 조치한 경우가 80.5%로 가장 많은 반면 다른 사례 유형에서는 60%이상 지속관찰 조치함.
 - ▶ 고소·고발 조치가 이루어진 5,510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수사가 1,064건(19.3%), 검찰 수사 1,595건(28.9%), 재판진행 중인 사례는 466건(8.5%), 판결 사례는 2,013건(36.5%)으로 나타남.
 - ▶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고소·고발의 결과를 학대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중북학대가 총 2,745건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서학대 899건, 신체학대 841건, 성학대 524건, 방임 501건 순으로 나타남.
- 아동학대처벌법(2014.9.29. 시행)으로 조치된 사례는 2017년도 아동학대사례 22,367건 중 2,051건(9.2%)이며, 자세한 아동학대처벌법 조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 응급조치는 상담원 898건, 경찰 242건으로 총 1,140건이 이루어졌으며, 3호(피해아동을 보호시설 인도) 1,056건(75.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긴급임시조치는 경찰 직권으로 27건이 결정되었고, 피해아동이 2건을 경찰에 신청하여 2건이 결정되었음. 세부 내용은 2호(100m 이내 접근금지)가 26건(41.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호(퇴거 등 격리)가 24건(38.1%), 3호(전기통신 접근금지)가 13건(20.6%) 순으로 나타남.
 - ▶ 임시조치가 결정된 사례는 1,554건(93.9%)이고, 청구가 기각된 사례는 101건(6.1%)임. 임시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가 1,056건(31.8%), 5호(상담 및 교육 위탁)가 1,058건(31.9%), 3호(전기통신 접근금지)가 752건(22.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청구하여 결정된 건수는 총 257건 중 239건, 변호사는 총 71건 중 70건,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은 18건을 청구하여 12건이 결정되었으며, 판사 직권으로 1건이 결정됨.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내용으로 2호(학대행위자의 접근제한 조치)가 총 221건(27.6%)으로 가장 높았고, 4호(피해아동 보호위탁)가 217건(27.1%), 3호(전기통신 접근제한) 197건(24.6%), 7호(친권 제한 또는 정지) 66건(8.2%) 순으로 나타남.

서비스 제공 현황

- 아동학대 사례의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2017년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501,465회임.
 - ▶ 피해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 중 상담서비스는 2017년 이전 사례 183,299회(63.5%), 2017년 신고사례 125,413회(58.9%)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심리치료서비스는 2017년 이전 사례 35,069회(12.2%), 2017년 신고 사례 25,552회(12.0%)로 나타남.
 - ▶ 피해아동 대상 서비스를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음. 사례진행 중과 사후관리 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 모두 상담서비스의 경우 진행중 사례 61.0%, 사후관리 사례 6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음.
- 아동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2017년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193,458회임.
 - ▶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2017년 이전과 2017년에 신고된 사례로 나누어 보면 모두 상담서비스가 가장 많이 제공되었는데, 2017년 이전 신고 사례 73,832회(66.9%), 2017년 신고 사례 56,510회(65.6%)의 서비스가 제공됨.
 - ▶ 학대행위자 대상 서비스를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로 나누어 볼 때, 진행 중인 사례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181,602회, 사후관리 사례에 제공된 서비스는 14,856회 제공됨.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에 따른 행위자수탁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빈도가 작년 대비 약 2.8배 증가함.
- 아동학대 사례의 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2017년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186,923회임.
 - ▶ 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된 서비스를 2017년 이전과 2017년에 신고된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면 모두 상담서비스 위주로 실시됨. 2017년 이전 사례는 95,949회(77.3%), 2017년 신고사례는 45,651회(72.7%)인 것으로 파악됨.
 - ▶ 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된 서비스를 사례 종결 여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두 경우 모두 상담서비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진행 중 사례의 경우 126,448회(74.9%), 사후관리 사례는 15,152회(83.9%)에 해당함.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재학대 사례

- 2017년에 접수된 재학대 사례는 총 2,160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22,367건의 아동학대사례 중 9.7%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임. 실제 재학대 아동수는 1,859명임.
-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아 1,083건(50.1%), 남아 1,077건(49.9%)로 나타남.

- 피해아동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만 10~12세 532건(24.6%), 만 7~9세 469건(21.7%), 만 13~15세 467건(21.6%)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생 아동이 전체 재학대 아동의 68%으로 높은 분포를 보임.
- 피해아동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친부모가족 1,006건(46.6%), 친부모가족 외 형태 1,096건(50.7%), 대리양육형태 19건(0.9%), 기타와 파악안됨은 각각 12건(0.6%), 27건(1.3%)임.
- 피해아동의 특성 중 적응·행동특성이 1,260건(29.1%)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정신건강이 1,204건(27.8%)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분석됨.
-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1,188건(55.0%), 여성 972건(45.0%)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았음.
- 학대행위자 연령의 경우, 40대가 963건(44.6%)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30대 709건(32.8%), 50대 302건(14.0%), 20대 146건(6.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학대행위자의 직업 유형 중에서는 무직이 633건으로 전체 29.3%의 높은 분포를 차지함. 다음으로 단순노무직 330건(15.3%), 서비스 및 판매직 215건(10.0%) 순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의 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이 277건(10.5%), 300만원 이상이 206건(9.5%),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199건(9.2%), 50만원 미만이 148건(6.9%)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를 살펴본 결과 수급권 대상자 492건(22.8%), 비수급권 대상자 1,021건(47.3%)이었고, 파악이 되지 않은 사례는 647건(30.0%)임.
- 학대행위자의 특성 중에서는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1,582건(28.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이 1,069건(19.0%), 부부 및 가족갈등이 521건(9.2%), 성격 및 기질문제가 327건(5.8%)순임.
- 재학대 사례를 바탕으로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에 의한 학대가 2,053건(95.0%)으로 가장 많았고, 친인척과 대리양육자에 의한 재학대 사례가 각각 61건(2.8%), 28건(1.3%)로 나타남.
- 재학대 사례의 학대 발생장소를 살펴보면 재학대 사례가 가정 내(아동 및 학대행위자 가정)에서 발생한 경우는 2,055건(95.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집근처 또는 길가에서 발생하는 재학대 사례가 27건(1.3%)이었음.
- 재학대 사례 중 거의 매일 발생한 경우가 564건(26.1%)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3일에 한 번 270건(12.1%), 1개월에 한 번 258건(11.9%) 순으로 나타남.
- 재학대 발생은 아동학대 사례판단 후 1년~2년 사이가 549건(25.4%)으로 가장 많았고, 6개월~1년 사이가 448건(20.7%), 3개월~6개월 사이가 315건(14.6%), 2년~3년 사이가 264건(12.2%)순으로 높게 나타남.
-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발생시기별 피해아동 특성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 1개월 미만, 3개월~6개월, 2년~3년에서 적응·행동 특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발생시기를 살펴본 결과, 발생시기 별 학대행위자의 특성이 크게 차이가 없었음. 파악안됨을 제외하고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모든 재학대 발생 시기에서 20% 이상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부부 및 가족갈등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중복학대 유형을 별도로 분류하면 중복학대가 1,082건(50.1%), 정서학대 519건(24.0%), 방임 350건(16.2%), 신체학대 190건(8.8%), 성학대 19건(0.9%) 순으로 나타남.
-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에 대한 초기조치결과는 원가정 보호가 1,434건(66.4%), 분리보호 719건(33.3%)으로 나타났고, 재학대 사례 중 사망한 아동은 1건(0.0%)로 나타남. 최종조치 결과는 원가정보호가 1,364건(63.1%), 분리보호 590건(27.3%), 초기개입 시 분리되었던 피해아동이 최종적으로 가정에 복귀된 사례는 194건(9.0%)이었음.
-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는 지속관찰이 1,287건(59.6%)으로 가장 많았고, 고소·고발·사건처리 788건(36.5%),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33건(1.5%), 아동과의 분리 52건(2.4%) 순으로 나타남. 최종조치 결과는 지속관찰이 1,246건(57.7%)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소·고발·사건처리 823건(38.1%), 아동과의 분리 60건(2.8%), 학대행위자와 만나지 못한 경우 31건(1.4%) 순으로 나타남.

사망아동 사례

- 2017년 전체 아동학대사례 22,367건 중 사망아동 사례는 46건이며, 전체 사례의 0.2%를 차지함. 실제 사망아동 수는 38명임.
- 총 46건의 사망아동 사례 중 피해아동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아 25건(54.3%), 여아 21건(45.7%)으로 나타남.
-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총 46건의 사례 중 남성과 여성이 각각 13건(28.3%), 33건(71.7%)으로 여성 학대행위자가 남성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사망아동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의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부와 친모가 각각 11건과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모, 양부, 양모, 친인척, 기타 각각 2건으로 나타남.
 - ▶ 피해아동의 연령 중 만 1세미만이 14건, 만 1세가 2건, 만 2세가 7건으로 만 2세 이하의 영아가 23건으로 나타나, 전체의 46.0%를 차지하고 있음.
 - ▶ 학대행위자 연령의 경우, 20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6건, 40대 14건이었음.
- 사망아동 사례는 76.1%가 아동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학대행위자 가정 내는 3건(6.5%), 종교시설 3건(6.5%), 집근처 또는 길가와 병원은 각각 2건(4.3%)으로 나타났고, 기타 발생 사례(차 안)는 1건(2.2%)이었음.
- 사망아동 사례를 바탕으로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일회성으로 발생한 학대가 31건으로 67.4%의 가장 높은 분포를 보임.
- 사망아동 사례의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학대가 22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방임과 중복학대가 각각 12건(26.1%)으로 나타남.
- 사망아동 사례에서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본 결과, 고소·고발·사건처리가 28건(60.9%),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사례 18건(39.1%), 지속관찰 및 아동과의 분리가 각각 0건(0.0%)이었음.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

- 2017년 아동학대 사례 중 시설종사자에 의한 사례는 2,843건으로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12.7%에 해당함. 종사자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초·중·고교 직원에 의한 학대가 1,345건(47.3%)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가 840건(29.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85건(10.0%), 유치원교직원 281건(9.9%), 기타시설 종사자 60건(2.1%),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32건(1.1%) 순으로 나타남.
 - ▶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586건(20.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산 483건(17.0%), 전라남도 292건(10.3%) 순으로 나타남.
- 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사례 중 피해아동 남아와 여아의 비율은 남아 1,653건(58.1%), 여아 1,190건(41.9%)이었음.
- 시설 종사자 유형별로 피해아동 연령을 살펴보면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초·중·고교 직원의 경우 각각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 해당하는 아동들의 연령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시설 종사자 발생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아동의 특성 분포를 살펴보면 파악안됨을 제외하고 특성 없음이 799건(25.2%)으로 모든 유형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임.
- 시설 종사자 학대행위자 중 여성 1,674건(58.9%), 남성 1,169건(41.1%)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17.8%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시설종사자 학대행위자 연령은 50대가 874건(30.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751건(26.4%), 30대 496건(17.4%), 20대 419건(14.7%) 순으로 나타남.
- 시설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의 특성 중 파악이 안된 사례를 제외하고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기타 시설종사자의 경우 특성없음이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했고, 초·중·고교직원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파악안됨 다음으로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이 높게 나타남.
- 다음은 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사례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임.
 - ▶ 먼저 중복학대 유형을 별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기타시설종사자와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를 제외하고 모든 시설 종사자에서 중복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남. 보육교직원의 경우 방임이 273건(32.5%)이었으며 유치원교직원과 기타 시설종사자의 경우 정서학대가 각각 127건(45.2%), 19건(31.7%) 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음.
 - ▶ 중복학대 유형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을 경우, 정서학대가 1,778건(45.4%), 신체학대 1,435건(36.6%), 방임 391건(10.0%), 성학대 312건(8.0%) 순으로 나타남. 보육교직원과 유치원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기타시설종사자는 정서학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는 신체학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피해아동에 대한 초기조치결과를 살펴본 결과 모든 시설 종사자 유형에서 원가정보호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에서는 기타시설종사자를 제외하고 모든 시설 종사자 유형에서 고소·고발·사건 처리가 가장 높게 나타남.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 2017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수행한 업무 총량을 산출한 결과, 2,886,071시간(상담원 1인당 약 3,853시간)으로 추정되었음. 또한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들이 수행한 치료업무 총량을 산출한 결과, 총 업무량(T)은 437,490시간(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1인당 약 6,730시간)으로 추정되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간 업무처리 소요시간 및 1인당 실질 연간 가용 근무시간을 적용하여 현실 타당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적정 인력규모를 추정한 결과, 2017년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담원 적정인원은 1,472명*으로 나타남.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의 경우 2017년 기준 총 236명**이 치료업무 수행에 필요했던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현황(2001-2017년)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2017년에도 전년 대비 신고접수 건수가 15.1%로 상승함.
-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을 살펴보면 2001년 0.5%에서 2013년까지 14.1%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2016년에 10.4%로 전년대비 2% 가량 감소한 이후 2017년도 약 10%대로 나타남.

연도별 신고자 유형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사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686건에서 2017년 8,830건으로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는 약 12배 이상 증가함. 2017년에는 전년 대비 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이 약 7% 상승함.

* 2017년 12월 1일 기준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배치상담원 수는 749명임.

** 2017년 12월 1일 기준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배치 상급임상심리치료인력 수는 65명임.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신고접수의 80% 이상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로 신고접수 되었으나 2017년에는 처음으로 112로 신고접수된 비율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로 신고접수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로 신고접수된 비율은 31.2%로 전년 대비 28.5%가 감소함. 반면 112를 통한 신고접수 비율은 48.8%로 전년 대비 19.2%가 증가함.

연도별 피해아동보호 현황

- 2001년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한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7년의 아동학대사례 증가율은 전년대비 19.6%가 증가함.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방임과 중박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2017년에는 중박학대와 정서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중박학대 유형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연도별 학대의 유형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2001년부터 2017년까지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매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2001년 3.0%에 불과하였지만, 2017년에는 14.9%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친부모가족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5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친부모 가족 외 형태의 경우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연도별 재학대 사례 현황

- 연도별 재학대 사례는 2012년 914건에서 2017년 2,16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음. 재학대 사례 비율은 2012년과 2013년에는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14% 내외, 2014년 이후로 10% 내외를 유지하다가 2017년에는 14.3%로 증가함.
- 연도별 재학대 사례 유형의 경우, 2012년에 정서학대와 방임이 가장 높았으며 2013년에는 정서학대, 신체학대와 방임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2014년부터 2017년은 정서학대와 신체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재학대 사례 중 성학대 비율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발생시기를 살펴보면 2012과 2013년까지 최초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신고접수 되는 비율이 3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14년 이후부터 최초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이후 1개월에서 1년 사이에 발생한 재학대 사례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2017년에는 전체 재학대의 약 50%를 상회하였음.
-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중 원가정보호는 2013년 72.6%로 가장 높았다가 2016년 및 2017년에 60%로 감소하였음. 분리보호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6년 및 2017년에 30%대로 떨어졌음.
-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와 추이를 살펴보면 지속관찰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고소·고발의 경우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2017년에는 전년 대비 고소·고발 비율이 약 4.4%p 이상 낮아짐.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현황

-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는 총 251건으로 집계됨.
- 2011년 이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011년과 2013년도에는 방임이 50% 이상의 많은 분포를 보였으나 2012년, 2014년, 2016년도에는 중박학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2017년에는 신체학대가 47.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면 2011년을 제외하고 최종조치 중 고소·고발이 가장 높았음.

연도별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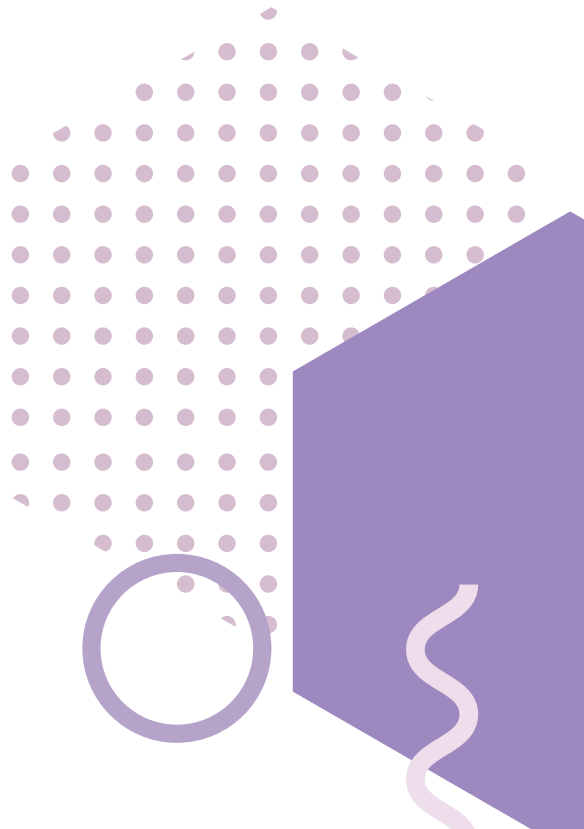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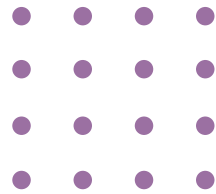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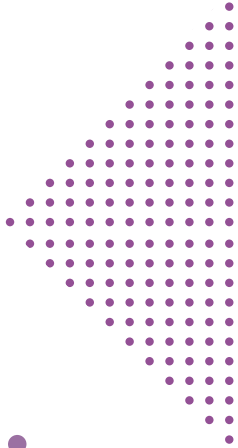
- 2017년의 시도 및 시군구에 보고된 신고의무자교육 의무기관은 전국에 총 44,192곳이며, 실제로 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한 기관은 44,190곳으로 2곳을 제외하고 모두 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함. 신고의무자교육 의무기관의 교육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12,059개(27.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6,848개(15.5%), 경남 3,156개(7.1%), 인천 2,413개(5.5%), 경북 2,367개(5.4%) 순으로 나타남.
- 2017년의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보고된 신고의무자교육 의무기관은 총 20,708개이며 실제로 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20,708개으로 총 기관수 대비 교육이수기관 이수 비율이 100%에 해당함. 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한 기관이 가장 많이 분포된 지역은 경기도 4,619개(22.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2,217개(10.7%), 경남 1,657개(8.0%), 경북 1,627개(7.9%) 순으로 나타남.

1

서론

Child Abuse & Neglect Korea 2017

- 발간배경 및 목적
- 법적근거
- 분석자료
- 자료분석 방법
- 주요내용





제1장 서론

1. 발간배경 및 목적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00년「아동복지법」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국가 공적 개입체계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2014년 2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발표 및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아동학대처벌법」) 시행에 따라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국민적 인식이 증가했다.

특히 2017년은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이 포함되면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두드러진 해였다. 이에 따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 아동학대 신고의식 고무를 위하여 정책 개선 및 인프라 확충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해 피해아동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상담소에서 상담 및 치료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신설되었다. 2017년 말 발생한 고준희 양 실종·사망사건은 기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을 다시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2017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는 2017년도의 아동학대 현황과 함께 2001년부터 2017년까지의 아동학대예방사업 관련 현황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주요 특성, 문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7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총 신고접수건수는 34,169건으로 2016년 대비 약 15% 증가했으며, 아동학대 사례건수 역시 22,369건으로 약 20% 증가했다.

2.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 역할에 따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구분되며, 2017년 12월 31일 기준, 1개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60개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은 신고 접수되는 아동학대 사례 및 교육·홍보활동 등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이러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전국 아동학대 현황을 분석하여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한다(아동복지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의거). 이러한 전국아동학대현황 분석은 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정책 수립 시 필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분석자료

본 자료는 전국 60개 아동보호전문기관(2017년 12월 말 기준 기관장 제외 749명 상담원)에서 아동학대사례가 신고 접수된 이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National Child Abuse Database System, NCADS)에 입력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된 것이며, 해당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다. 정보시스템 통계 자료는 2018년 8월 16일을 기준으로 마감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특히 인구학적 특성을 포함한 자료의 내용은 학대 조사 당시 관찰되고 파악된 정보에 한하여 입력되었다. 또한 본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은 아동학대사례로 신고접수되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실제 아동학대 통계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4. 자료분석 방법

아동학대 모든 분석항목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을 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현황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2017년까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통계 중 백분율의 경우 반올림되었기 때문에 각 항목의 합계가 100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주요내용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와 같은 실질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신고접수에서 사후관리까지의 모든 단계의 내용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기록하고 있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통계 자료는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아동학대예방사업 관련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본 보고서에 제시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1〉 보고서 내용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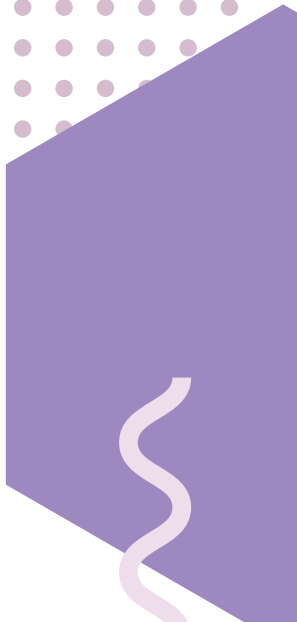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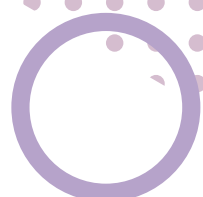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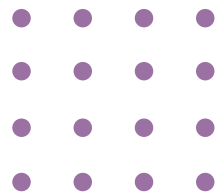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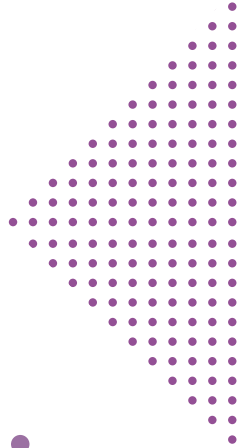
분류	내용
신고 접수 현황	· 신고 접수 · 신고자 유형 · 신고 접수 경로 유형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 현장조사 · 사례판단 · 피해아동 발견율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 인구사회학적 요인 ·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 아동학대사례 유형 ·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조치현황 · 서비스 제공 현황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 재학대 사례 · 사망아동 사례 ·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사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 연도별 신고 접수 현황 · 연도별 신고자 유형 · 연도별 신고 접수 경로 유형 · 연도별 피해아동 보호 현황 ·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 연도별 재학대 사례 현황 ·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현황 · 연도별 신고의무자교육 의무대상 교육 결과

2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Child Abuse & Neglect Korea 2017

- 신고접수
- 신고자 유형
- 신고접수 경로 유형





제2장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1. 신고접수

1) 신고접수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가 발생할 시 신속한 위기개입과 조치를 위해 24시간 아동학대의심사례를 접수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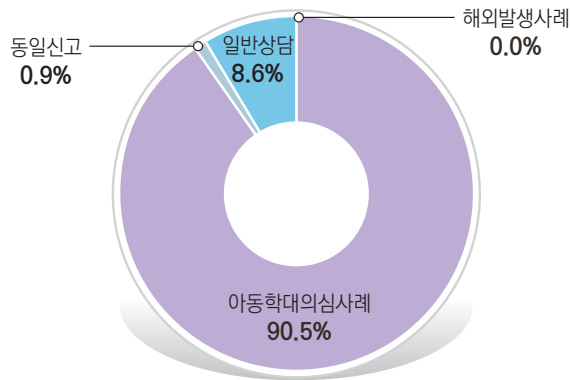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고접수 사례는 내용 및 심각성 등에 따라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동일신고, 일반상담, 해외발생사례로 분류된다.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란 신고 당시, 아동이 학대로 인해 매우 응급한 상태로 아동의 안전을 위해 더 긴급하게 현장출동 및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말한다. 아동학대의심사례란 신고접수 내용이 학대로 의심되는 사례 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이다. 동일신고는 최초 신고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동일한 학대피해의심내용으로 다른 신고자들에 의해 신고되는 경우이다. 일반상담이란 자녀양육 상담 문의, 시설보호 문의 등 아동학대사례와 아동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이거나 정보부족 등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해외발생사례는 해외에서 발생한 국내 국적의 아동이 학대를 받았다고 의심되거나 학대로 인해 해외의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서 개입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접수된 사례이다.

〈표 2-1〉과 같이 2017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집계된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총 34,169건으로 작년 대비 약 15.1% 증가했다. 이 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는 2,094건, 아동학대의심사례는 28,829건으로 전체 신고접수의 90.5%를 차지하였다. 총 신고접수건수와 신고접수건수 중 아동학대의심사례의 비율은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동일신고는 292건(0.9%)이었으며, 일반상담은 2,951건(8.6%)에 해당하였다.

〈표 2-1〉 신고접수 건수

(단위 : 건, %)

아동학대의심사례			동일신고	일반상담	해외발생 사례	계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소계				
2,094 (6.1)	28,829 (84.4)	30,923 (90.5)	292 (0.9)	2,951 (8.6)	3 (0.0)	34,169 (100.0)



[그림 2-1] 신고접수 건수

또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는 이전 신고 여부에 따라 신규 사례와 재신고 사례*로 구분된다. 재신고 사례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사례종결 후 재신고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 후 종결했던 사례 중 다시 신고접수된 사례이며, 사례진행중 재신고는 사례 개입 중 추가적으로 신고접수되었거나 혹은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판단 이전에 또 동일한 학대행위의심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어 접수된 사례이다. 일반상담 후 재신고는 일반상담으로 종결된 후 다시 신고접수된 사례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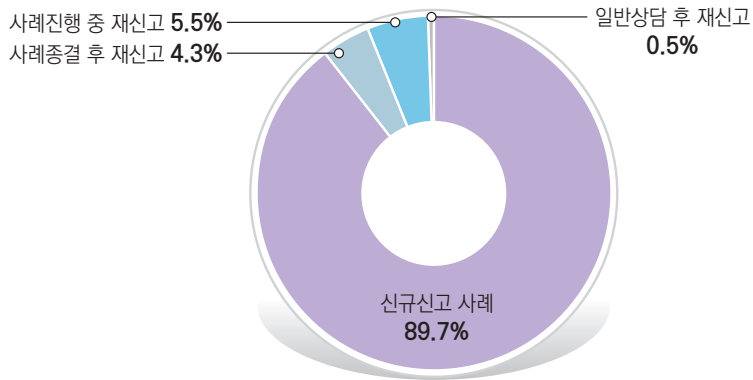
2017년에 신고 접수된 34,169건 중 재신고 사례에 해당하는 건수는 3,520건으로 전체 신고사례의 10.3%이며, 재신고 사례를 제외한 2017년에 최초로 신고 접수된 신규 신고사례는 30,649건(89.7%)이었다. 재신고 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사례종결 후 재신고 사례는 1,463건(4.3%)이었으며, 사례진행중 재신고 사례 1,889건(5.5%), 일반상담 후 재신고 사례 168건(0.5%)이었다.

* 재신고사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개입 중인 사례에 대해 다시 신고접수 된 사례를 말하며, 재학대사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다시 신고접수되어 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말함.

〈표 2-2〉 재신고 및 신규신고접수 건수

(단위 : 건, %)

재신고 사례				신규신고 사례	계
사례종결 후 재신고	사례진행 중 재신고	일반상담 후 재신고	소계		
1,463 (4.3)	1,889 (5.5)	168 (0.5)	3,520 (10.3)	30,649 (89.7)	34,169 (100.0)



[그림 2-2] 재신고 및 신규신고접수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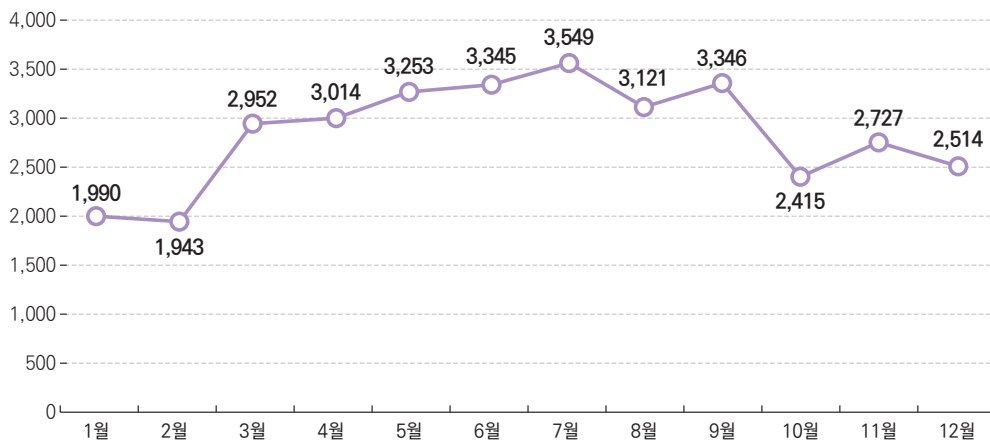
〈표 2-3〉은 2017년에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하여 총 신고접수된 사례 건수를 신고가 접수된 월별로 나눈 것이다. 7월 3,549건(10.4%)으로 신고접수 건수가 가장 높았으며, 9월 3,346건(9.8%), 6월 3,345건(9.8%), 5월 3,253건(9.5%) 순으로 가장 많은 사례가 신고접수 되었다. 2016년과 비교했을 때 7월이 신고 건수가 37.8%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8월도 2016년에 비해 신고건수가 33.8% 증가하였다. 1월, 2월은 각각 1,990건(5.8%), 1,943건(5.7%) 순으로 나타나 신고접수 건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2-3〉 월별 신고접수 현황

(단위 : 건,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990 (5.8)	1,943 (5.7)	2,952 (8.6)	3,014 (8.8)	3,253 (9.5)	3,345 (9.8)	3,549 (10.4)	3,121 (9.1)	3,346 (9.8)	2,415 (7.1)	2,727 (8.0)	2,514 (7.4)	34,169 (100.0)

(단위 : 건)



[그림 2-3] 월별 신고접수 현황

2) 기관별 신고접수

〈표 2-4〉와 같이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를 살펴본 결과,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1,335건(3.9%)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1,073건(3.1%),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1,059건(3.1%),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1,048건(3.1%),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977건(2.9%) 순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표 2-4〉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

(단위 : 건, %)

구분 지역 및 기관		아동학대의심사례					일반상담		동일신고		해외발생 사례		계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소계									
중앙*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1	(100.0)
서울	서울특별시	12	(2.3)	490	(95.0)	502	(97.3)	10	(1.9)	4	(0.8)	0	(0.0)	516	(100.0)
	서울특별시동부	118	(11.3)	738	(70.4)	856	(81.7)	184	(17.6)	8	(0.8)	0	(0.0)	1,048	(100.0)
	서울강서	59	(11.6)	405	(79.6)	464	(91.2)	40	(7.9)	5	(1.0)	0	(0.0)	509	(100.0)
	서울은평	12	(2.1)	534	(92.4)	546	(94.5)	23	(4.0)	9	(1.6)	0	(0.0)	578	(100.0)
	서울영등포	38	(10.0)	270	(71.2)	308	(81.3)	62	(16.4)	9	(2.4)	0	(0.0)	379	(100.0)
	서울성북	24	(6.1)	336	(85.3)	360	(91.4)	33	(8.4)	1	(0.3)	0	(0.0)	394	(100.0)
	서울마포	12	(2.9)	348	(82.7)	360	(85.5)	60	(14.3)	1	(0.2)	0	(0.0)	421	(100.0)
	서울동남권**	-		-		-		-							
소계		275	(7.2)	3,121	(81.2)	3,396	(88.3)	412	(10.7)	37	(1.0)	0	(0.0)	3,845	(100.0)
부산	부산광역시	15	(1.4)	1,025	(95.5)	1,040	(96.9)	29	(2.7)	4	(0.4)	0	(0.0)	1,073	(100.0)
	부산동부	7	(1.3)	483	(91.0)	490	(92.3)	39	(7.3)	2	(0.4)	0	(0.0)	531	(100.0)
	부산서부	12	(1.7)	562	(80.9)	574	(82.6)	117	(16.8)	4	(0.6)	0	(0.0)	695	(100.0)
	부산남부**	-		-		-		-							
	소계	34	(1.5)	2,070	(90.0)	2,104	(91.5)	185	(8.0)	10	(0.4)	0	(0.0)	2,299	(100.0)
대구	대구광역시	28	(5.5)	431	(84.8)	459	(90.4)	46	(9.1)	3	(0.6)	0	(0.0)	508	(100.0)
	대구남부	94	(12.8)	588	(80.1)	682	(92.9)	39	(5.3)	13	(1.8)	0	(0.0)	734	(100.0)
	대구북부	22	(4.4)	440	(88.9)	462	(93.3)	28	(5.7)	5	(1.0)	0	(0.0)	495	(100.0)
	소계	144	(8.3)	1,459	(84.0)	1,603	(92.3)	113	(6.5)	21	(1.2)	0	(0.0)	1,737	(100.0)
인천	인천광역시	26	(2.7)	792	(81.1)	818	(83.7)	151	(15.5)	8	(0.8)	0	(0.0)	977	(100.0)
	인천북부	11	(1.0)	902	(85.2)	913	(86.2)	137	(12.9)	9	(0.8)	0	(0.0)	1,059	(100.0)
	인천남부	3	(0.4)	536	(77.8)	539	(78.2)	145	(21.0)	5	(0.7)	0	(0.0)	689	(100.0)
	소계	40	(1.5)	2,230	(81.8)	2,270	(83.3)	433	(15.9)	22	(0.8)	0	(0.0)	2,725	(100.0)
광주	광주광역시	12	(2.9)	388	(93.0)	400	(95.9)	15	(3.6)	2	(0.5)	0	(0.0)	417	(100.0)
	빛고을	8	(1.3)	537	(86.8)	545	(88.0)	65	(10.5)	9	(1.5)	0	(0.0)	619	(100.0)
	소계	20	(1.9)	925	(89.3)	945	(91.2)	80	(7.7)	11	(1.1)	0	(0.0)	1,036	(100.0)
대전	대전광역시	29	(3.1)	826	(87.0)	855	(90.1)	88	(9.3)	6	(0.6)	0	(0.0)	949	(100.0)
울산	울산광역시	51	(8.2)	507	(81.8)	558	(90.0)	57	(9.2)	5	(0.8)	0	(0.0)	620	(100.0)
	울산남부***	11	(3.3)	295	(88.6)	306	(91.9)	25	(7.5)	2	(0.6)	0	(0.0)	333	(100.0)
	소계	62	(6.5)	802	(84.2)	864	(90.7)	82	(8.6)	7	(0.7)	0	(0.0)	953	(100.0)
경기	경기도	28	(5.8)	399	(83.3)	427	(89.1)	41	(8.6)	11	(2.3)	0	(0.0)	479	(100.0)
	경기북부	36	(4.5)	709	(88.7)	745	(93.2)	42	(5.3)	12	(1.5)	0	(0.0)	799	(100.0)
	경기성남	31	(4.1)	632	(84.4)	663	(88.5)	72	(9.6)	14	(1.9)	0	(0.0)	749	(100.0)
	경기고양	25	(5.0)	414	(82.0)	439	(86.9)	61	(12.1)	5	(1.0)	0	(0.0)	505	(100.0)
	경기부천	25	(4.0)	523	(84.1)	548	(88.1)	71	(11.4)	3	(0.5)	0	(0.0)	622	(100.0)
	경기화성	52	(9.7)	406	(76.0)	458	(85.8)	76	(14.2)	0	(0.0)	0	(0.0)	534	(100.0)
	경기남양주	65	(12.1)	453	(84.2)	518	(96.3)	13	(2.4)	7	(1.3)	0	(0.0)	538	(100.0)
	안산시	155	(11.6)	1,112	(83.3)	1,267	(94.9)	62	(4.6)	6	(0.4)	0	(0.0)	1,335	(100.0)
	경기용인	18	(2.4)	696	(93.3)	714	(95.7)	31	(4.2)	1	(0.1)	0	(0.0)	746	(100.0)
	경기시흥	73	(16.3)	321	(71.7)	394	(87.9)	51	(11.4)	3	(0.7)	0	(0.0)	448	(100.0)
	경기평택	37	(10.2)	315	(86.5)	352	(96.7)	9	(2.5)	1	(0.3)	2	(0.5)	364	(100.0)
	수원	52	(8.8)	496	(84.2)	548	(93.0)	37	(6.3)	4	(0.7)	0	(0.0)	589	(100.0)
소계	597	(7.7)	6,476	(84.0)	7,073	(91.8)	566	(7.3)	67	(0.9)	2	(0.0)	7,708	(100.0)	

(계속)

(단위 : 건, %)

구분 지역 및 기관		아동학대의심사례						일반상담		동일신고		해외발생 사례		계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소계									
강원	강원도	26	(9.9)	217	(82.5)	243	(92.4)	20	(7.6)	0	(0.0)	0	(0.0)	263	(100.0)
	강원동부	2	(0.6)	298	(92.5)	300	(93.2)	21	(6.5)	1	(0.3)	0	(0.0)	322	(100.0)
	강원서부	33	(9.9)	276	(83.1)	309	(93.1)	19	(5.7)	4	(1.2)	0	(0.0)	332	(100.0)
	강원남부	26	(6.3)	382	(91.8)	408	(98.1)	8	(1.9)	0	(0.0)	0	(0.0)	416	(100.0)
	소계	87	(6.5)	1,173	(88.0)	1,260	(94.5)	68	(5.1)	5	(0.4)	0	(0.0)	1,333	(100.0)
충북	충청북도	79	(11.7)	566	(83.7)	645	(95.4)	24	(3.6)	7	(1.0)	0	(0.0)	676	(100.0)
	충북북부	41	(8.6)	393	(82.9)	434	(91.6)	35	(7.4)	5	(1.1)	0	(0.0)	474	(100.0)
	충북남부	17	(7.1)	187	(77.9)	204	(85.0)	34	(14.2)	2	(0.8)	0	(0.0)	240	(100.0)
	소계	137	(9.9)	1,146	(82.4)	1,283	(92.3)	93	(6.7)	14	(1.0)	0	(0.0)	1,390	(100.0)
충남	충청남도	24	(3.0)	671	(83.6)	695	(86.6)	100	(12.5)	8	(1.0)	0	(0.0)	803	(100.0)
	충청남도남부	12	(3.0)	347	(86.5)	359	(89.5)	36	(9.0)	6	(1.5)	0	(0.0)	401	(100.0)
	충청남도서부	35	(7.7)	389	(85.7)	424	(93.4)	29	(6.4)	1	(0.2)	0	(0.0)	454	(100.0)
	소계	71	(4.3)	1,407	(84.9)	1,478	(89.1)	165	(10.0)	15	(0.9)	0	(0.0)	1,658	(100.0)
전북	전라북도	46	(5.4)	704	(82.5)	750	(87.9)	92	(10.8)	11	(1.3)	0	(0.0)	853	(100.0)
	전라북도서부	43	(5.3)	708	(87.0)	751	(92.3)	54	(6.6)	9	(1.1)	0	(0.0)	814	(100.0)
	전라북도동부	62	(13.7)	368	(81.1)	430	(94.7)	10	(2.2)	14	(3.1)	0	(0.0)	454	(100.0)
	소계	151	(7.1)	1,780	(83.9)	1,931	(91.0)	156	(7.4)	34	(1.6)	0	(0.0)	2,121	(100.0)
전남	전라남도	32	(5.5)	529	(90.3)	561	(95.7)	20	(3.4)	5	(0.9)	0	(0.0)	586	(100.0)
	전남서부권	26	(3.1)	741	(88.6)	767	(91.7)	60	(7.2)	9	(1.1)	0	(0.0)	836	(100.0)
	전남중부권	71	(14.6)	391	(80.6)	462	(95.3)	21	(4.3)	2	(0.4)	0	(0.0)	485	(100.0)
	소계	129	(6.8)	1,661	(87.1)	1,790	(93.9)	101	(5.3)	16	(0.8)	0	(0.0)	1,907	(100.0)
경북	경북남부	27	(8.0)	238	(70.6)	265	(78.6)	70	(20.8)	2	(0.6)	0	(0.0)	337	(100.0)
	경북북부	42	(8.2)	415	(80.7)	457	(88.9)	56	(10.9)	1	(0.2)	0	(0.0)	514	(100.0)
	경북동부	64	(7.3)	767	(87.7)	831	(95.0)	32	(3.7)	12	(1.4)	0	(0.0)	875	(100.0)
	경북서부	49	(6.4)	585	(76.3)	634	(82.7)	126	(16.4)	7	(0.9)	0	(0.0)	767	(100.0)
	소계	182	(7.3)	2,005	(80.4)	2,187	(87.7)	284	(11.4)	22	(0.9)	0	(0.0)	2,493	(100.0)
경남	경상남도	60	(8.1)	681	(91.4)	741	(99.5)	4	(0.5)	0	(0.0)	0	(0.0)	745	(100.0)
	경남서부	13	(3.5)	347	(93.8)	360	(97.3)	9	(2.4)	1	(0.3)	0	(0.0)	370	(100.0)
	김해시	23	(8.4)	232	(85.0)	255	(93.4)	16	(5.9)	2	(0.7)	0	(0.0)	273	(100.0)
	소계	96	(6.9)	1,260	(90.8)	1,356	(97.7)	29	(2.1)	3	(0.2)	0	(0.0)	1,388	(100.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22	(6.0)	278	(75.5)	300	(81.5)	68	(18.5)	0	(0.0)	0	(0.0)	368	(100.0)
	서귀포시	18	(7.0)	210	(81.4)	228	(88.4)	28	(10.9)	2	(0.8)	0	(0.0)	258	(100.0)
	소계	40	(6.4)	488	(78.0)	528	(84.3)	96	(15.3)	2	(0.3)	0	(0.0)	626	(100.0)
계		2,094	(6.1)	28,829	(84.4)	30,923	(90.5)	2,951	(8.6)	292	(0.9)	3	(0.0)	34,169	(100.0)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접수 사례에 대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관함.

**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받아 현장조사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받아 현장조사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7년 3월 1일 개소됨.

3) 시군구별 신고접수

〈표 2-5〉와 같이 시군구별 신고접수 건수를 살펴본 결과, 인천 서구 584건(2.4%), 전라남도 목포시 494건(1.6), 대구 달서구 471건(1.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달리 강원도 고성군, 경상남도 합천군이 각각 3건(0.0%),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상남도 함양군 각각 4건(0.0%)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2-5〉 시군구별 신고접수 건수

(단위 : 건, %)

시도	시군구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계	
서울	중구	2	(0.1)	36	(0.1)	38	(0.1)
	종로구	2	(0.1)	56	(0.2)	58	(0.2)
	서대문구	7	(0.3)	143	(0.5)	150	(0.5)
	마포구	2	(0.1)	122	(0.4)	124	(0.4)
	은평구	6	(0.3)	306	(1.1)	312	(1.0)
	동대문구	23	(1.1)	133	(0.5)	156	(0.5)
	종랑구	19	(0.9)	159	(0.6)	178	(0.6)
	도봉구	12	(0.6)	172	(0.6)	184	(0.6)
	성동구	8	(0.4)	51	(0.2)	59	(0.2)
	강동구	3	(0.1)	81	(0.3)	84	(0.3)
	강남구	1	(0.0)	86	(0.3)	87	(0.3)
	성북구	12	(0.6)	159	(0.6)	171	(0.6)
	서초구	1	(0.0)	43	(0.1)	44	(0.1)
	송파구	1	(0.0)	85	(0.3)	86	(0.3)
	노원구	33	(1.6)	183	(0.6)	216	(0.7)
	용산구	3	(0.1)	91	(0.3)	94	(0.3)
	강북구	4	(0.2)	189	(0.7)	193	(0.6)
	광진구	34	(1.6)	173	(0.6)	207	(0.7)
	영등포구	8	(0.4)	86	(0.3)	94	(0.3)
	관악구	3	(0.1)	127	(0.4)	130	(0.4)
	구로구	19	(0.9)	86	(0.3)	105	(0.3)
	금천구	11	(0.5)	100	(0.3)	111	(0.4)
	동작구	1	(0.0)	47	(0.2)	48	(0.2)
	강서구	45	(2.1)	197	(0.7)	242	(0.8)
	양천구	14	(0.7)	213	(0.7)	227	(0.7)
	소계	274	(13.1)	3,124	(10.8)	3,398	(11.0)
부산	중구	3	(0.1)	27	(0.1)	30	(0.1)
	동구	1	(0.0)	57	(0.2)	58	(0.2)
	서구	0	(0.0)	65	(0.2)	65	(0.2)
	사하구	5	(0.2)	130	(0.5)	135	(0.4)
	영도구	0	(0.0)	60	(0.2)	60	(0.2)
	동래구	2	(0.1)	200	(0.7)	202	(0.7)
	남구	3	(0.1)	117	(0.4)	120	(0.4)
	금정구	0	(0.0)	67	(0.2)	67	(0.2)
	연제구	0	(0.0)	63	(0.2)	63	(0.2)

(계속)

(단위: 건, %)

시도	시군구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계	
부산	해운대구	3	(0.1)	242	(0.8)	245	(0.8)
	수영구	4	(0.2)	74	(0.3)	78	(0.3)
	부산진구	3	(0.1)	311	(1.1)	314	(1.0)
	북구	2	(0.1)	220	(0.8)	222	(0.7)
	사상구	4	(0.2)	273	(0.9)	277	(0.9)
	강서구	5	(0.2)	64	(0.2)	69	(0.2)
	기장군	0	(0.0)	103	(0.4)	103	(0.3)
	소계	35	(1.7)	2,073	(7.2)	2,108	(6.8)
대구	중구	10	(0.5)	112	(0.4)	122	(0.4)
	동구	13	(0.6)	149	(0.5)	162	(0.5)
	북구	3	(0.1)	165	(0.6)	168	(0.5)
	서구	4	(0.2)	120	(0.4)	124	(0.4)
	달서구	63	(3.0)	408	(1.4)	471	(1.5)
	남구	13	(0.6)	156	(0.5)	169	(0.5)
	수성구	5	(0.2)	176	(0.6)	181	(0.6)
	달성군	31	(1.5)	177	(0.6)	208	(0.7)
	소계	142	(6.8)	1,463	(5.1)	1,605	(5.2)
인천	중구	1	(0.0)	107	(0.4)	108	(0.3)
	동구	1	(0.0)	30	(0.1)	31	(0.1)
	남구	14	(0.7)	354	(1.2)	368	(1.2)
	부평구	10	(0.5)	302	(1.0)	312	(1.0)
	서구	6	(0.3)	578	(2.0)	584	(1.9)
	남동구	3	(0.1)	267	(0.9)	270	(0.9)
	연수구	0	(0.0)	257	(0.9)	257	(0.8)
	계양구	5	(0.2)	287	(1.0)	292	(0.9)
	강화군	0	(0.0)	4	(0.0)	4	(0.0)
	옹진군	0	(0.0)	29	(0.1)	29	(0.1)
	소계	40	(1.9)	2,215	(7.7)	2,255	(7.3)
광주	북구	6	(0.3)	315	(1.1)	321	(1.0)
	동구	2	(0.1)	73	(0.3)	75	(0.2)
	서구	5	(0.2)	191	(0.7)	196	(0.6)
	남구	0	(0.0)	142	(0.5)	142	(0.5)
	광산구	9	(0.4)	205	(0.7)	214	(0.7)
	소계	22	(1.1)	926	(3.2)	948	(3.1)
대전	동구	9	(0.4)	107	(0.4)	116	(0.4)
	중구	3	(0.1)	129	(0.4)	132	(0.4)
	서구	10	(0.5)	256	(0.9)	266	(0.9)
	유성구	4	(0.2)	195	(0.7)	199	(0.6)
	대덕구	3	(0.1)	139	(0.5)	142	(0.5)
	소계	29	(1.4)	826	(2.9)	855	(2.8)
울산	남구	7	(0.3)	220	(0.8)	227	(0.7)
	중구	13	(0.6)	191	(0.7)	204	(0.7)
	동구	15	(0.7)	155	(0.5)	170	(0.5)
	북구	19	(0.9)	115	(0.4)	134	(0.4)

(계속)

(단위 : 건, %)

시도	시군구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계	
울산	울주군	8	(0.4)	116	(0.4)	124	(0.4)
	소계	62	(3.0)	797	(2.8)	859	(2.8)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4	(0.2)	87	(0.3)	91	(0.3)
	고양시 일산서구	10	(0.5)	90	(0.3)	100	(0.3)
	고양시 덕양구	4	(0.2)	147	(0.5)	151	(0.5)
	파주시	4	(0.2)	89	(0.3)	93	(0.3)
	김포시	8	(0.4)	99	(0.3)	107	(0.3)
	부천시 원미구	11	(0.5)	176	(0.6)	187	(0.6)
	부천시 오정구	7	(0.3)	171	(0.6)	178	(0.6)
	부천시 소사구	0	(0.0)	85	(0.3)	85	(0.3)
	광명시	15	(0.7)	130	(0.5)	145	(0.5)
	안산시 단원구	91	(4.3)	639	(2.2)	730	(2.4)
	안산시 상록구	65	(3.1)	481	(1.7)	546	(1.8)
	과천시	0	(0.0)	37	(0.1)	37	(0.1)
	시흥시	57	(2.7)	183	(0.6)	240	(0.8)
	안양시 만안구	16	(0.8)	113	(0.4)	119	(0.4)
	안양시 동안구	5	(0.2)	141	(0.5)	146	(0.5)
	군포시	5	(0.2)	87	(0.3)	92	(0.3)
	의왕시	3	(0.1)	26	(0.1)	29	(0.1)
	수원시 장안구	11	(0.5)	124	(0.4)	135	(0.4)
	수원시 권선구	19	(0.9)	150	(0.5)	169	(0.5)
	수원시 팔달구	19	(0.9)	117	(0.4)	136	(0.4)
	수원시 영통구	3	(0.1)	106	(0.4)	109	(0.4)
	화성시	39	(1.9)	286	(1.0)	325	(1.1)
	용인시 기흥구	4	(0.2)	106	(0.4)	110	(0.4)
	오산시	13	(0.6)	129	(0.4)	142	(0.5)
	용인시 수지구	4	(0.2)	170	(0.6)	174	(0.6)
	용인시 처인구	7	(0.3)	142	(0.5)	149	(0.5)
	평택시	30	(1.4)	217	(0.8)	247	(0.8)
	안성시	8	(0.4)	102	(0.4)	110	(0.4)
	성남시 수정구	6	(0.3)	169	(0.6)	175	(0.6)
	성남시 중원구	7	(0.3)	98	(0.3)	105	(0.3)
	성남시 분당구	7	(0.3)	148	(0.5)	155	(0.5)
	광주시	7	(0.3)	122	(0.4)	129	(0.4)
	하남시	2	(0.1)	50	(0.2)	52	(0.2)
	이천시	3	(0.1)	145	(0.5)	148	(0.5)
	여주시	0	(0.0)	135	(0.5)	135	(0.4)
	구리시	18	(0.9)	85	(0.3)	103	(0.3)
	남양주시	41	(2.0)	333	(1.2)	374	(1.2)
	양평군	2	(0.1)	47	(0.2)	49	(0.2)
	가평군	6	(0.3)	30	(0.1)	36	(0.1)
	의정부시	27	(1.3)	312	(1.1)	339	(1.1)
	양주시	4	(0.2)	167	(0.6)	171	(0.6)
	동두천시	0	(0.0)	53	(0.2)	53	(0.2)

(계속)

(단위: 건, %)

시도	시군구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계	
경기	연천군	0	(0.0)	55	(0.2)	55	(0.2)
	포천시	5	(0.2)	122	(0.4)	127	(0.4)
	소계	597	(28.5)	6,501	(22.6)	7,098	(23.0)
강원	춘천시	22	(1.1)	146	(0.5)	168	(0.5)
	화천군	0	(0.0)	11	(0.0)	11	(0.0)
	강릉시	2	(0.1)	206	(0.7)	208	(0.7)
	양양군	0	(0.0)	11	(0.0)	11	(0.0)
	속초시	0	(0.0)	56	(0.2)	56	(0.2)
	고성군	0	(0.0)	3	(0.0)	3	(0.0)
	원주시	27	(1.3)	227	(0.8)	254	(0.8)
	횡성군	2	(0.1)	17	(0.1)	19	(0.1)
	영월군	2	(0.1)	7	(0.0)	9	(0.0)
	평창군	3	(0.1)	25	(0.1)	28	(0.1)
	정선군	0	(0.0)	52	(0.2)	52	(0.2)
	태백시	7	(0.3)	91	(0.3)	98	(0.3)
	동해시	15	(0.7)	134	(0.5)	149	(0.5)
	삼척시	4	(0.2)	109	(0.4)	113	(0.4)
	홍천군	5	(0.2)	19	(0.1)	24	(0.1)
	인제군	0	(0.0)	19	(0.1)	19	(0.1)
	양구군	0	(0.0)	19	(0.1)	19	(0.1)
	철원군	0	(0.0)	22	(0.1)	22	(0.1)
	소계	89	(4.3)	1,174	(4.1)	1,263	(4.1)
충북	청주시 상당구	13	(0.6)	64	(0.2)	77	(0.2)
	청주시 흥덕구	17	(0.8)	107	(0.4)	124	(0.4)
	청주시 서원구	11	(0.5)	133	(0.5)	144	(0.5)
	청주시 청원구	19	(0.9)	111	(0.4)	130	(0.4)
	청원군	0	(0.0)	0	(0.0)	0	(0.0)
	진천군	11	(0.5)	58	(0.2)	69	(0.2)
	괴산군	4	(0.2)	12	(0.0)	16	(0.1)
	증평군	1	(0.0)	6	(0.0)	7	(0.0)
	음성군	3	(0.1)	85	(0.3)	88	(0.3)
	영동군	8	(0.4)	66	(0.2)	74	(0.2)
	옥천군	5	(0.2)	63	(0.2)	68	(0.2)
	보은군	4	(0.2)	58	(0.2)	62	(0.2)
	충주시	25	(1.2)	176	(0.6)	201	(0.7)
	제천시	8	(0.4)	189	(0.7)	197	(0.6)
	단양군	8	(0.4)	28	(0.1)	36	(0.1)
	소계	137	(6.5)	1,156	(4.0)	1,293	(4.2)
충남	금산군	2	(0.1)	27	(0.1)	29	(0.1)
	공주시	3	(0.1)	47	(0.2)	50	(0.2)
	논산시	5	(0.2)	149	(0.5)	154	(0.5)
	계룡시	0	(0.0)	12	(0.0)	12	(0.0)
	부여군	2	(0.1)	94	(0.3)	96	(0.3)
	서천군	0	(0.0)	13	(0.0)	13	(0.0)

(계속)

(단위 : 건, %)

시도	시군구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계	
충남	천안시 동남구	3	(0.1)	106	(0.4)	109	(0.4)
	천안시 서북구	8	(0.4)	203	(0.7)	211	(0.7)
	아산시	3	(0.1)	193	(0.7)	196	(0.6)
	예산군	4	(0.2)	68	(0.2)	72	(0.2)
	당진시	5	(0.2)	68	(0.2)	73	(0.2)
	청양군	3	(0.1)	6	(0.0)	9	(0.0)
	홍성군	6	(0.3)	80	(0.3)	86	(0.3)
	보령시	2	(0.1)	46	(0.2)	48	(0.2)
	서산시	18	(0.9)	163	(0.6)	181	(0.6)
	태안군	2	(0.1)	20	(0.1)	22	(0.1)
	세종특별자치시	4	(0.2)	97	(0.3)	101	(0.3)
	소계	70	(3.3)	1,392	(4.8)	1,462	(4.7)
전북	전주시 완산구	15	(0.7)	300	(1.0)	315	(1.0)
	전주시 덕진구	21	(1.0)	234	(0.8)	255	(0.8)
	완주군	4	(0.2)	63	(0.2)	67	(0.2)
	임실군	6	(0.3)	35	(0.1)	41	(0.1)
	진안군	1	(0.0)	16	(0.1)	17	(0.1)
	무주군	6	(0.3)	45	(0.2)	51	(0.2)
	익산시	19	(0.9)	303	(1.1)	322	(1.0)
	군산시	15	(0.7)	235	(0.8)	250	(0.8)
	김제시	7	(0.3)	110	(0.4)	117	(0.4)
	부안군	2	(0.1)	49	(0.2)	51	(0.2)
	정읍시	5	(0.2)	83	(0.3)	88	(0.3)
	고창군	0	(0.0)	16	(0.1)	16	(0.1)
	남원시	39	(1.9)	221	(0.8)	260	(0.8)
	순창군	7	(0.3)	63	(0.2)	70	(0.2)
	장수군	4	(0.2)	11	(0.0)	15	(0.0)
	소계	151	(7.2)	1,784	(6.2)	1,935	(6.3)
전남	영광군	9	(0.4)	68	(0.2)	77	(0.2)
	장성군	0	(0.0)	13	(0.0)	13	(0.0)
	곡성군	1	(0.0)	18	(0.1)	19	(0.1)
	담양군	4	(0.2)	17	(0.1)	21	(0.1)
	화순군	14	(0.7)	36	(0.1)	50	(0.2)
	나주시	32	(1.5)	129	(0.4)	161	(0.5)
	함평군	0	(0.0)	21	(0.1)	21	(0.1)
	영암군	3	(0.1)	70	(0.2)	73	(0.2)
	강진군	5	(0.2)	48	(0.2)	53	(0.2)
	장흥군	5	(0.2)	59	(0.2)	64	(0.2)
	목포시	22	(1.1)	472	(1.6)	494	(1.6)
	무안군	0	(0.0)	49	(0.2)	49	(0.2)
	신안군	0	(0.0)	17	(0.1)	17	(0.1)
	해남군	1	(0.0)	75	(0.3)	76	(0.2)
	완도군	0	(0.0)	25	(0.1)	25	(0.1)
	진도군	0	(0.0)	28	(0.1)	28	(0.1)

(계속)

(단위: 건, %)

시도	시군구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계	
전남	순천시	7	(0.3)	183	(0.6)	190	(0.6)
	구례군	0	(0.0)	28	(0.1)	28	(0.1)
	광양시	5	(0.2)	70	(0.2)	75	(0.2)
	보성군	1	(0.0)	34	(0.1)	35	(0.1)
	고흥군	1	(0.0)	26	(0.1)	27	(0.1)
	여주시	16	(0.8)	167	(0.6)	183	(0.6)
	소계	126	(6.0)	1,653	(5.7)	1,779	(5.8)
경북	경산시	8	(0.4)	83	(0.3)	91	(0.3)
	청도군	2	(0.1)	10	(0.0)	12	(0.0)
	군위군	0	(0.0)	8	(0.0)	8	(0.0)
	고령군	0	(0.0)	9	(0.0)	9	(0.0)
	칠곡군	4	(0.2)	92	(0.3)	96	(0.3)
	성주군	3	(0.1)	28	(0.1)	31	(0.1)
	구미시	29	(1.4)	320	(1.1)	349	(1.1)
	김천시	3	(0.1)	87	(0.3)	90	(0.3)
	상주시	13	(0.6)	45	(0.2)	58	(0.2)
	문경시	2	(0.1)	53	(0.2)	55	(0.2)
	영주시	4	(0.2)	77	(0.3)	81	(0.3)
	봉화군	6	(0.3)	25	(0.1)	31	(0.1)
	예천군	10	(0.5)	52	(0.2)	62	(0.2)
	안동시	20	(1.0)	187	(0.6)	207	(0.7)
	청송군	0	(0.0)	8	(0.0)	8	(0.0)
	영양군	0	(0.0)	7	(0.0)	7	(0.0)
	영덕군	0	(0.0)	24	(0.1)	24	(0.1)
	울진군	0	(0.0)	12	(0.0)	12	(0.0)
	의성군	0	(0.0)	13	(0.0)	13	(0.0)
	영천시	7	(0.3)	19	(0.1)	26	(0.1)
	경주시	10	(0.5)	105	(0.4)	115	(0.4)
	포항시 남구	36	(1.7)	405	(1.4)	441	(1.4)
	포항시 북구	28	(1.3)	314	(1.1)	342	(1.1)
	울릉군	0	(0.0)	0	(0.0)	0	(0.0)
	소계	185	(8.8)	1,983	(6.9)	2,168	(7.0)
경남	김해시	23	(1.1)	241	(0.8)	264	(0.9)
	양산시	12	(0.6)	137	(0.5)	149	(0.5)
	밀양시	3	(0.1)	24	(0.1)	27	(0.1)
	창원시 마산회원구	4	(0.2)	78	(0.3)	82	(0.3)
	창원시 마산합포구	3	(0.1)	27	(0.1)	30	(0.1)
	창녕군	1	(0.0)	5	(0.0)	6	(0.0)
	의령군	0	(0.0)	5	(0.0)	5	(0.0)
	함안군	1	(0.0)	20	(0.1)	21	(0.1)
	고성군	0	(0.0)	26	(0.1)	26	(0.1)
	창원시 의창구	10	(0.5)	74	(0.3)	84	(0.3)
	창원시 성산구	1	(0.0)	29	(0.1)	30	(0.1)
	창원시 진해구	5	(0.2)	46	(0.2)	51	(0.2)

(계속)

(단위 : 건, %)

시도	시군구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계	
경남	통영시	8	(0.4)	74	(0.3)	82	(0.3)
	거제시	11	(0.5)	133	(0.5)	144	(0.5)
	진주시	7	(0.3)	217	(0.8)	224	(0.7)
	사천시	3	(0.1)	54	(0.2)	57	(0.2)
	산청군	0	(0.0)	15	(0.1)	15	(0.0)
	하동군	2	(0.1)	35	(0.1)	37	(0.1)
	남해군	0	(0.0)	13	(0.0)	13	(0.0)
	거창군	1	(0.0)	11	(0.0)	12	(0.0)
	함양군	0	(0.0)	4	(0.0)	4	(0.0)
	합천군	0	(0.0)	3	(0.0)	3	(0.0)
	소계	95	(4.5)	1,271	(4.4)	1,366	(4.4)
제주	제주시	22	(1.1)	277	(1.0)	299	(1.0)
	서귀포시	18	(0.9)	214	(0.7)	232	(0.8)
	소계	40	(1.9)	491	(1.7)	531	(1.7)
총 계		2,094	(100.0)	28,829	(100.0)	30,923	(100.0)

2. 신고자 유형

1) 신고자 유형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은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다. 2016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2016.3.22. 개정)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복지시설로 편입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장과 종사자가 신고의무자에 속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에서(2016.5.29. 개정)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었다.

〈표 2-6〉는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와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접수된 30,923건에 대한 신고자 유형을 살펴본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8,830건(28.6%)이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유형별 신고접수 건수 분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중·고교 직원이 5,168건(16.7%)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819건(2.6%), 아동복지시설종사자 407건(1.3%) 순으로 다른 직군에 비해 높은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율을 보였다.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접수 건수는 22,093건(71.4%)으로 비신고의무자 중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6,881건(22.3%)으로 가장 높은 아동학대 신고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부모가 5,328건(17.2%), 아동본인 3,883건(12.6%), 이웃·친구 1,963건(6.3%) 순으로 아동학대의심사례를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신고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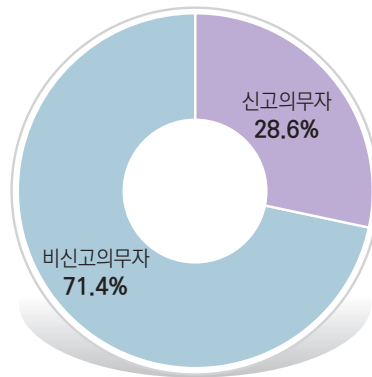
(단위 : 건, %)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초·중·고교 직원	5,168	(16.7)	아동본인	3,883	(12.6)
의료인·의료기사*	296	(1.0)	부모	5,328	(17.2)
아동복지시설종사자	407	(1.3)	형제, 자매	359	(1.2)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33	(0.1)	친인척	738	(2.4)
보육교직원	313	(1.0)	이웃·친구	1,963	(6.3)
유치원교직원·강사	115	(0.4)	경찰	645	(2.1)
학원강사	9	(0.0)	종교인	24	(0.1)
소방구급대원	33	(0.1)	사회복지관관련종사자	323	(1.0)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종사자	9	(0.0)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종사자**	6,881	(22.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	16	(0.1)	의료사회복지사	79	(0.3)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169	(0.5)	낯선사람	685	(2.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819	(2.6)	익명	271	(0.9)
사회복지시설종사자	271	(0.9)	기타	914	(3.0)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20	(0.1)			
아동복지전담공무원	27	(0.1)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48	(0.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33	(0.1)			
정신건강복지센터종사자	38	(0.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종사자*	274	(0.9)			

(계속)

(단위 : 건, %)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응급구조사	2	(0.0)			
청소년시설, 단체종사자	357	(1.2)			
청소년보호센터·청소년재활센터종사자	43	(0.1)			
아이돌보미	8	(0.0)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인력	317	(1.0)			
육아종합지원센터종사자	4	(0.0)			
입양기관종사자	1	(0.0)			
소계	8,830	(28.6)	소계	22,093	(71.4)
계			30,923(100.0)		



[그림 2-4] 신고자 유형

-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2016.11.30.시행)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종사자는 국가 아동학대정보시스템 내 신고자 유형이 통합되면서 항목을 통합하였음.
- ** 아동복지법 개정(2016.9.23.시행)시행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복지시설로 편입되면서 신고의무자 직군에 속하였으나, 이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2016.11.30.시행)으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신고의무자 직군에서 제외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비신고의무자에 해당함.

〈표 2-7〉 기관별 신고자 유형

(단위 : 건, %)

신고자유형 지역 및 기관		신고의무자												
		초·중· 고교 직원	의료인 ·의료 기사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강사	학원 강사	소방 구급 대원	성매매 피해 시설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 종사자	가정 폭력 상담소 보호 시설 종사자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서울	서울특별시	124	9	26	0	4	1	0	0	0	0	0	32	3
	서울특별시동부	136	22	2	2	4	0	0	0	0	0	0	12	10
	서울강서	58	4	2	0	36	1	0	0	0	0	0	10	3
	서울은평	77	8	1	0	3	1	0	0	0	0	4	5	0
	서울영등포	64	2	1	1	6	0	0	2	1	0	3	19	0
	서울성북	61	5	2	0	2	1	0	0	0	0	0	18	2
	서울마포	59	4	5	0	7	1	1	0	0	1	4	16	1
	서울동남권*	-	-	-	-	-	-	-	-	-	-	-	-	-
	소계	579	54	39	3	62	5	1	2	1	1	11	112	19
부산	부산광역시	347	3	4	3	8	2	0	0	0	6	5	33	0
	부산동부	105	2	29	0	3	4	0	3	0	0	1	5	5
	부산서부	79	1	2	0	4	2	1	0	0	0	1	26	3
	부산남부*	-	-	-	-	-	-	-	-	-	-	-	-	-
	소계	531	6	35	3	15	8	1	3	0	6	7	64	8
대구	대구광역시	67	11	8	1	8	0	0	0	0	0	0	5	4
	대구남부	135	11	7	0	3	2	1	0	2	0	0	16	3
	대구북부	92	10	5	0	5	1	1	0	0	0	4	2	3
	소계	294	32	20	1	16	3	2	0	2	0	4	23	10
인천	인천광역시	140	10	14	2	12	6	0	1	0	2	1	15	5
	인천북부	101	6	0	0	12	4	0	1	0	0	3	142	6
	인천남부	107	9	2	0	2	0	0	0	1	0	0	15	7
	소계	348	25	16	2	26	10	0	2	1	2	4	172	18
광주	광주광역시	65	6	0	0	1	1	0	0	0	0	4	13	5
	빛고을	59	1	7	1	3	0	0	0	0	0	5	13	4
	소계	124	7	7	1	4	1	0	0	0	0	9	26	9
대전	대전광역시	124	13	23	0	8	0	0	1	0	0	9	3	10
	울산광역시	80	4	6	1	8	0	0	2	0	0	3	2	4
	울산남부	61	5	7	2	4	1	0	0	0	0	0	1	0
	소계	141	9	13	3	12	1	0	2	0	0	3	3	4
경기	경기도	47	5	4	0	1	1	1	2	0	0	2	7	1
	경기북부	116	1	1	0	4	2	0	0	0	0	1	17	2
	경기성남	124	12	10	0	2	14	0	0	0	0	2	13	2
	경기고양	88	7	2	0	35	0	0	1	0	0	0	3	5
	경기부천	93	5	9	0	2	2	0	0	0	0	1	7	11
	경기화성	90	1	9	0	13	11	0	0	0	0	2	2	3
	경기남양주	74	5	0	0	11	4	0	0	0	0	1	5	0
	안산시	150	8	2	6	3	1	0	0	1	0	9	2	1
	경기용인	110	9	1	1	2	2	0	5	0	0	1	5	8
	경기시흥	64	9	5	0	4	4	0	3	1	0	2	13	4
	경기평택	78	9	4	1	5	4	0	0	0	0	0	15	2
	수원	104	8	4	0	4	4	1	0	0	2	0	3	10
	소계	1,138	79	51	8	86	49	2	11	2	2	21	92	49

(계속)

(단위: 건, %)

신고자유형 지역 및 기관		신고의무자												
		초·중·고교 직원	의료인·의료 기사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강사	학원 강사	소방 구급 대원	성매매 피해 시설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 종사자	가정 폭력 상담소 보호 시설 종사자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강원	강원도	33	3	10	0	4	0	0	0	0	0	1	7	1
	강원동부	55	2	4	0	3	1	0	0	0	1	1	7	3
	강원서부	48	1	14	0	3	1	0	4	0	0	1	10	9
	강원남부	38	1	4	0	2	2	0	0	0	0	0	8	0
	소계	174	7	32	0	12	4	0	4	0	1	3	32	13
충북	충청북도	133	5	7	0	8	4	0	0	0	1	1	23	4
	충북북부	77	2	8	2	2	1	0	0	1	0	0	11	1
	충북남부	54	3	1	1	3	0	0	0	0	0	0	4	0
	소계	264	10	16	3	13	5	0	0	1	1	1	38	5
충남	충청남도	125	6	10	1	7	7	0	2	0	0	6	14	29
	충청남도남부	63	0	8	0	0	1	0	0	0	0	8	11	14
	충청남도서부	77	3	4	0	1	2	0	0	0	0	7	15	3
	소계	265	9	22	1	8	10	0	2	0	0	21	40	46
전북	전라북도	112	4	6	2	5	1	3	0	0	0	3	7	20
	전라북도서부	119	3	7	0	2	1	0	0	0	2	2	26	10
	전라북도동부	39	2	18	0	8	0	0	0	0	0	0	13	2
	소계	270	9	31	2	15	2	3	0	0	2	5	46	32
전남	전라남도	76	2	1	0	10	3	0	0	0	0	3	31	0
	전남서부권	137	0	20	4	3	5	0	0	0	0	6	21	14
	전남중부권	65	3	21	0	0	1	0	1	2	1	0	6	1
	소계	278	5	42	4	13	9	0	1	2	1	9	58	15
경북	경북남부	70	4	5	0	3	0	0	0	0	0	4	12	2
	경북북부	52	0	16	0	2	0	0	2	0	0	2	4	7
	경북동부	86	5	4	0	5	4	0	1	0	0	4	9	7
	경북서부	122	7	9	0	5	1	0	1	0	0	0	34	4
	소계	330	16	34	0	15	5	0	4	0	0	10	59	20
경남	경상남도	144	5	13	1	6	0	0	1	0	0	8	29	0
	경남서부	66	4	0	0	0	0	0	0	0	0	40	7	0
	김해시	31	4	2	0	2	0	0	0	0	0	0	14	3
	소계	241	13	15	1	8	0	0	1	0	0	48	50	3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35	2	10	1	0	3	0	0	0	0	0	0	8
	서귀포시	32	0	1	0	0	0	0	0	0	0	4	1	2
	소계	67	2	11	1	0	3	0	0	0	0	4	1	10
계		5,168	296	407	33	313	115	9	33	9	16	169	819	271
		(16.7)	(1.0)	(1.3)	(0.1)	(1.0)	(0.4)	(0.0)	(0.1)	(0.0)	(0.1)	(0.5)	(2.6)	(0.9)

(계속)

(단위 : 건, %)

신고자유형 지역 및 기관		신고의무자													
		가정 위탁 지원 센터 종사자	아동 복지 전담 공무원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종사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종사자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종사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피해자 통합 지원 센터	응급 구조사	청소년 시설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 센터· 청소년 재활 센터 종사자	아이 돌보미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인력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종사자	입양 기관 종사자	소계
서울	서울특별시	0	0	0	0	1	1	1	3	3	0	3	0	0	211
	서울특별시동부	0	0	0	0	1	6	0	9	0	0	10	0	0	214
	서울강서	0	0	0	0	1	0	0	1	0	0	0	0	0	116
	서울은평	0	1	1	0	0	3	0	8	1	0	0	0	0	113
	서울영등포	0	2	1	0	0	2	0	6	1	0	3	0	0	114
	서울성북	0	0	0	3	3	0	0	2	3	0	0	0	0	102
	서울마포	0	0	0	0	2	2	0	1	0	0	3	0	0	107
	서울동남권*	-	-	-	-	-	-	-	-	-	-	-	-	-	-
부산	소계	0	3	2	3	8	14	1	30	8	0	19	0	0	977
	부산광역시	0	1	1	0	0	14	0	30	6	3	6	0	0	472
	부산동부	1	1	3	0	2	1	0	18	1	0	13	0	0	197
	부산서부	0	0	4	1	0	0	0	12	4	0	1	0	0	141
	부산남부*	-	-	-	-	-	-	-	-	-	-	-	-	-	-
대구	소계	1	2	8	1	2	15	0	60	11	3	20	0	0	810
	대구광역시	0	0	0	0	0	5	0	1	1	0	0	0	0	111
	대구남부	0	0	2	4	0	4	1	3	0	0	8	0	0	202
	대구북부	0	0	0	0	1	7	0	1	0	0	0	2	0	134
인천	소계	0	0	2	4	1	16	1	5	1	0	8	2	0	447
	인천광역시	0	0	0	1	0	2	0	5	3	0	2	0	0	221
	인천북부	0	0	0	0	1	0	0	2	1	0	1	0	0	280
	인천남부	0	0	0	0	0	0	0	6	1	0	3	0	0	153
광주	소계	0	0	0	1	1	2	0	13	5	0	6	0	0	654
	광주광역시	3	0	0	0	1	7	0	4	0	0	7	0	0	117
	빛고을	1	0	1	0	2	14	0	1	0	0	0	0	0	112
대전	소계	4	0	1	0	3	21	0	5	0	0	7	0	0	229
	대전광역시	1	0	1	0	1	1	0	6	1	1	4	0	0	207
	울산광역시	0	2	0	1	1	2	0	10	0	0	0	0	0	126
울산	울산남부	0	2	0	0	0	0	0	3	0	0	0	1	0	87
	소계	0	4	0	1	1	2	0	13	0	0	0	1	0	213
경기	경기도	0	0	0	1	0	1	0	3	0	0	13	1	0	90
	경기북부	0	0	0	0	0	3	0	15	0	0	24	0	0	186
	경기성남	0	0	0	0	0	0	0	20	2	0	13	0	0	214
	경기고양	0	0	0	0	1	0	0	3	1	0	1	0	0	147
	경기부천	0	0	0	2	0	1	0	12	1	0	1	0	0	147
	경기화성	0	0	0	0	0	3	0	5	0	0	4	0	0	143
	경기남양주	0	0	0	0	3	0	0	16	1	0	3	0	0	123
	안산시	0	0	0	1	0	11	0	2	0	0	9	0	0	206
	경기용인	0	0	1	1	0	3	0	10	0	0	6	0	0	165
	경기시흥	0	0	0	0	0	1	0	6	0	0	3	0	0	119
	경기평택	0	1	0	0	0	3	0	4	0	0	1	0	0	127
	수원	0	4	0	0	1	0	0	11	0	0	0	0	0	156
	소계	0	5	1	5	5	26	0	107	5	0	78	1	0	1,823

(계속)

(단위: 건, %)

신고자유형 지역 및 기관		신고의무자													
		가정 위탁 지원 센터 종사자	아동 복지 전담 공무원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종사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종사자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종사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피해자 통합 지원 센터	응급 구조사	청소년 시설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 센터 ·청소년 재활 센터 종사자	아이 돌보미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인력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종사자	입양 기관 종사자	소계
강원	강원도	0	0	1	2	0	6	0	1	0	0	9	0	0	78
	강원동부	0	0	0	0	0	4	0	0	0	0	3	0	0	84
	강원서부	0	0	2	0	0	1	0	9	0	0	1	0	0	104
	강원남부	0	0	0	0	0	1	0	3	0	0	10	0	0	69
	소계	0	0	3	2	0	12	0	13	0	0	23	0	0	335
충북	충청북도	5	0	0	0	0	1	0	4	0	0	3	0	0	199
	충북북부	0	0	0	3	0	9	0	3	0	0	9	0	0	129
	충북남부	0	0	0	0	5	1	0	0	1	0	3	0	0	76
	소계	5	0	0	3	5	11	0	7	1	0	15	0	0	404
충남	충청남도	1	1	2	0	0	0	0	0	0	0	11	0	0	222
	충청남도남부	0	4	0	0	0	2	0	3	0	0	2	0	0	116
	충청남도서부	0	0	0	0	0	0	0	5	0	0	17	0	0	134
	소계	1	5	2	0	0	2	0	8	0	0	30	0	0	472
전북	전라북도	3	7	0	0	5	0	0	2	1	2	9	0	0	192
	전라북도서부	0	1	0	1	3	2	0	9	1	0	19	0	0	208
	전라북도동부	0	0	10	0	0	0	0	0	0	0	17	0	1	110
	소계	3	8	10	1	8	2	0	11	2	2	45	0	1	510
전남	전라남도	0	0	3	1	0	8	0	23	4	0	15	0	0	180
	전남서부권	0	0	0	0	0	6	0	14	0	2	2	0	0	234
	전남중부권	3	0	1	6	0	6	0	14	0	0	6	0	0	137
	소계	3	0	4	7	0	20	0	51	4	2	23	0	0	551
경북	경북남부	0	0	4	0	1	2	0	4	0	0	1	0	0	112
	경북북부	0	0	0	1	0	5	0	11	4	0	11	0	0	117
	경북동부	0	0	5	3	0	111	0	2	0	0	9	0	0	255
	경북서부	0	0	0	0	0	2	0	0	0	0	3	0	0	188
	소계	0	0	9	4	1	120	0	17	4	0	24	0	0	672
경남	경상남도	2	0	0	0	0	4	0	8	0	0	13	0	0	234
	경남서부	0	0	1	1	0	4	0	1	0	0	0	0	0	124
	김해시	0	0	4	0	2	1	0	1	0	0	2	0	0	66
	소계	2	0	5	1	2	9	0	10	0	0	15	0	0	424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0	0	0	0	0	1	0	1	1	0	0	0	0	62
	서귀포시	0	0	0	0	0	0	0	0	0	0	0	0	0	40
	소계	0	0	0	0	0	1	0	1	1	0	0	0	0	102
계		20	27	48	33	38	274	2	357	43	8	317	4	1	8,830
		(0.1)	(0.1)	(0.2)	(0.1)	(0.1)	(0.9)	(0.0)	(1.2)	(0.1)	(0.0)	(1.0)	(0.0)	(0.0)	(28.6)

(계속)

(단위 : 건, %)

신고자유형 지역 및 기관		비신고의무자														계
		아동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친인 척	이웃 친구	경찰	종교 인	사회 복지 관련 종사자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종사자	의료 사회 복지 사	낮선 사람	익명	기타	소계	
서울	서울특별시	56	141	5	9	29	6	0	1	4	3	15	9	13	291	502 (1.6)
	서울특별시동부	163	200	3	20	65	15	0	5	105	3	31	9	23	642	856 (2.8)
	서울강서	54	104	5	10	42	18	0	8	84	3	11	0	9	348	464 (1.5)
	서울은평	67	94	6	13	40	11	0	4	163	0	8	1	26	433	546 (1.8)
	서울영등포	32	58	2	7	7	6	0	4	61	0	8	7	2	194	308 (1.0)
	서울성북	41	64	2	4	27	4	0	5	95	0	6	0	10	258	360 (1.2)
	서울마포	41	74	3	4	25	7	1	3	74	1	2	1	17	253	360 (1.2)
	서울동남권*	-	-	-	-	-	-	-	-	-	-	-	-	-	-	-
	소계	454	735	26	67	235	67	1	30	586	10	81	27	100	2,419	3,396 (11.0)
부산	부산광역시	134	160	10	24	61	18	2	5	92	0	24	13	25	568	1,040 (3.4)
	부산동부	65	103	4	11	28	4	0	5	54	0	9	1	9	293	490 (1.6)
	부산서부	33	65	5	18	24	3	0	8	258	1	10	2	6	433	574 (1.9)
	부산남부*	-	-	-	-	-	-	-	-	-	-	-	-	-	-	-
	소계	232	328	19	53	113	25	2	18	404	1	43	16	40	1,294	2,104 (6.8)
대구	대구광역시	86	63	6	4	29	3	0	2	117	2	8	3	25	348	459 (1.5)
	대구남부	94	103	5	12	34	19	0	5	184	0	12	1	11	480	682 (2.2)
	대구북부	49	97	10	15	27	5	0	4	96	0	9	1	15	328	462 (1.5)
	소계	229	263	21	31	90	27	0	11	397	2	29	5	51	1,156	1,603 (5.2)
인천	인천광역시	121	130	12	31	123	9	0	8	104	0	36	14	9	597	818 (2.6)
	인천북부	148	129	16	18	91	18	1	4	139	2	24	15	28	633	913 (3.0)
	인천남부	54	84	1	7	71	3	1	2	107	1	8	22	25	386	539 (1.7)
	소계	323	343	29	56	285	30	2	14	350	3	68	51	62	1,616	2,270 (7.3)
광주	광주광역시	66	62	5	5	33	24	0	4	52	0	8	7	17	283	400 (1.3)
	빛고을	59	73	10	9	12	10	0	3	226	1	2	9	19	433	545 (1.8)
	소계	125	135	15	14	45	34	0	7	278	1	10	16	36	716	945 (3.1)
대전	대전광역시	201	196	21	24	89	4	2	15	32	4	16	6	38	648	855 (2.8)
울산	울산광역시	95	97	4	4	27	3	1	6	167	3	11	1	13	432	558 (1.8)
	울산남부**	52	29	5	4	29	3	0	0	87	0	6	0	4	219	306 (1.0)
	소계	147	126	9	8	56	6	1	6	254	3	17	1	17	651	864 (2.8)
경기	경기도	102	98	3	9	49	7	0	2	14	0	27	2	24	337	427 (1.4)
	경기북부	73	103	3	14	39	25	0	13	218	1	16	5	49	559	745 (2.4)
	경기성남	91	106	6	16	50	39	2	1	77	5	23	5	28	449	663 (2.1)
	경기고양	74	122	2	8	17	3	0	6	37	1	8	2	12	292	439 (1.4)
	경기부천	73	108	11	12	21	3	0	5	130	7	21	2	8	401	548 (1.8)
	경기화성	67	105	5	23	25	13	1	2	46	0	19	2	7	315	458 (1.5)
	경기남양주	96	110	8	9	44	10	0	5	93	3	7	5	5	395	518 (1.7)
	안산시	193	259	18	24	146	15	1	12	303	8	37	16	29	1,061	1,267 (4.1)
	경기용인	132	122	8	10	48	33	0	24	149	1	6	10	6	549	714 (2.3)
	경기사흥	17	73	0	9	11	7	1	5	131	4	8	0	9	275	394 (1.3)
	경기평택	34	69	4	9	18	4	0	3	32	3	16	1	32	225	352 (1.1)
	수원	78	97	7	16	44	12	0	2	100	6	14	2	14	392	548 (1.8)
	소계	1,030	1,372	75	159	512	171	5	80	1,330	39	202	52	223	5,250	7,073 (22.9)

(계속)

(단위 : 건, %)

신고자유형 지역 및 기관		비신고의무자														계
		아동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친인 척	이웃 친구	경찰	종교 인	사회 복지 관련 종사자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종사자	의료 사회 복지 사	낮선 사람	익명	기타	소계	
강원	강원도	36	42	0	13	10	3	0	2	44	3	2	1	9	165	243 (0.8)
	강원동부	10	31	3	6	11	5	0	0	140	0	5	0	5	216	300 (1.0)
	강원서부	24	28	3	10	13	1	0	0	110	0	4	4	8	205	309 (1.0)
	강원남부	38	60	6	3	10	6	0	2	193	0	1	5	15	339	408 (1.3)
	소계	108	161	12	32	44	15	0	4	487	3	12	10	37	925	1,260 (4.1)
충북	충청북도	75	95	8	26	39	6	2	5	161	3	7	6	13	446	645 (2.1)
	충북북부	27	73	1	10	15	15	0	1	151	0	1	2	9	305	434 (1.4)
	충북남부	13	14	4	1	15	1	0	2	74	0	1	0	3	128	204 (0.7)
	소계	115	182	13	37	69	22	2	8	386	3	9	8	25	879	1,283 (4.1)
충남	충청남도	77	129	13	17	36	9	3	3	140	1	19	6	20	473	695 (2.2)
	충청남도남부	57	81	11	8	9	6	0	2	54	1	5	0	9	243	359 (1.2)
	충청남도서부	28	59	3	23	15	10	0	8	125	0	9	1	9	290	424 (1.4)
	소계	162	269	27	48	60	25	3	13	319	2	33	7	38	1,006	1,478 (4.8)
전북	전라북도	84	131	9	23	31	18	1	4	208	2	11	10	26	558	750 (2.4)
	전라북도서부	49	126	5	20	49	28	0	11	230	0	9	6	10	543	751 (2.4)
	전라북도동부	41	47	4	8	12	10	1	2	179	0	2	9	5	320	430 (1.4)
	소계	174	304	18	51	92	56	2	17	617	2	22	25	41	1,421	1,931 (6.2)
전남	전라남도	74	81	5	31	39	17	0	4	95	2	11	5	17	381	561 (1.8)
	전남서부권	83	137	24	23	27	11	0	26	93	0	39	17	53	533	767 (2.5)
	전남중부권	52	45	5	10	11	2	2	9	148	0	5	4	32	325	462 (1.5)
	소계	209	263	34	64	77	30	2	39	336	2	55	26	102	1,239	1,790 (5.8)
경북	경북남부	15	56	1	7	7	6	1	5	38	0	5	0	12	153	265 (0.9)
	경북북부	13	53	0	11	4	22	0	6	224	0	4	1	2	340	457 (1.5)
	경북동부	92	102	9	10	39	14	0	20	275	0	3	2	10	576	831 (2.7)
	경북서부	58	112	4	6	30	17	0	15	156	1	30	2	15	446	634 (2.1)
	소계	178	323	14	34	80	59	1	46	693	1	42	5	39	1,515	2,187 (7.1)
경남	경상남도	37	134	6	23	40	24	0	11	181	3	15	6	27	507	741 (2.4)
	경남서부	37	49	7	7	17	42	0	2	59	0	10	0	6	236	360 (1.2)
	김해시	36	37	2	8	16	4	0	2	70	0	4	7	3	189	255 (0.8)
	소계	110	220	15	38	73	70	0	15	310	3	29	13	36	932	1,356 (4.4)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45	73	7	15	23	4	1	0	46	0	10	2	12	238	300 (1.0)
	서귀포시	41	35	4	7	20	0	0	0	56	0	7	1	17	188	228 (0.7)
	소계	86	108	11	22	43	4	1	0	102	0	17	3	29	426	528 (1.7)
계		3,883 (12.6)	5,328 (17.2)	359 (1.2)	738 (2.4)	1,963 (6.3)	645 (2.1)	24 (0.1)	323 (1.0)	6,881 (22.3)	79 (0.3)	685 (2.2)	271 (0.9)	914 (3.0)	22,093 (71.4)	30,923 (100.0)

*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받아 현장조사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받아 현장조사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2017년 3월 1일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함.

2) 시군구별 신고자 유형

〈표 2-8〉 시군구별 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단위 : 건, %)

시도	시군구	신고의무자												
		초·중·고 교직원	의료인 ·의료 기사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강사	학원 강사	소방 구급 대원	성매매 피해 시설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 종사자	가정 폭력 상담소 보호 시설 종사자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서울	중구	8	1	1	0	0	0	0	0	0	0	0	0	2
	종로구	10	4	0	0	0	0	0	0	0	0	0	0	0
	서대문구	26	3	4	0	0	0	1	0	0	0	3	8	0
	마포구	19	1	1	0	1	1	0	0	0	0	2	7	1
	은평구	32	3	11	0	2	1	0	0	0	0	4	4	0
	동대문구	24	5	0	1	1	0	0	0	0	0	0	2	3
	종랑구	36	1	0	0	0	0	0	0	0	0	0	5	1
	도봉구	33	1	1	0	1	1	0	0	0	0	0	2	1
	성동구	14	1	0	0	0	0	0	0	0	0	0	0	1
	강동구	23	1	3	0	0	0	0	0	0	0	0	7	1
	강남구	17	1	6	0	1	0	0	0	0	0	0	13	2
	성북구	27	4	1	0	1	0	0	0	0	0	0	16	1
	서초구	9	0	0	0	0	0	0	0	0	0	0	1	0
	송파구	21	4	1	0	1	0	0	0	0	0	0	0	0
	노원구	22	12	0	1	0	0	0	0	0	0	0	5	1
	용산구	14	0	0	0	6	0	0	0	0	1	1	1	1
	강북구	37	1	0	0	1	0	0	0	0	0	0	1	0
	광진구	32	2	1	0	3	0	0	0	0	0	0	0	2
	영등포구	13	1	0	0	1	0	0	2	0	0	0	6	0
	관악구	37	1	2	0	1	0	0	0	0	0	0	10	0
	구로구	23	1	1	1	2	0	0	0	1	0	1	8	0
	금천구	28	0	0	0	3	0	0	0	0	0	0	5	0
	동작구	19	1	0	0	1	1	0	0	0	0	0	1	0
	강서구	33	1	0	0	32	1	0	0	0	0	0	4	1
	양천구	25	3	6	0	4	0	0	0	0	0	0	6	2
	소계	582	53	39	3	62	5	1	2	1	1	11	112	20
부산	중구	12	0	0	0	0	0	0	0	0	0	0	1	0
	동구	15	0	0	0	0	0	0	0	0	0	0	1	0
	서구	16	0	0	0	6	0	0	0	0	6	0	0	0
	사하구	46	0	3	0	0	1	0	0	0	0	1	1	0
	영도구	21	0	0	1	0	0	0	0	0	0	0	0	0
	동래구	60	0	0	0	0	0	0	0	0	0	0	24	0
	남구	30	2	0	2	0	1	0	0	0	0	0	2	0
	금정구	10	0	1	0	3	0	0	0	0	0	0	1	1
	연제구	15	0	0	0	0	0	0	0	0	0	0	4	0
	해운대구	56	0	28	0	0	0	0	3	0	0	0	0	1
	수영구	21	1	0	0	0	1	0	0	0	0	0	3	0
	부산진구	130	1	1	0	2	0	0	0	0	0	4	0	0
	북구	45	0	2	0	0	0	1	0	0	0	0	12	2
	사상구	22	1	0	0	4	2	0	0	0	0	1	13	1
	강서구	12	0	0	0	0	0	0	0	0	0	0	1	0
	기장군	18	1	0	0	0	3	0	0	0	0	1	1	2
	소계	529	6	35	3	15	8	1	3	0	6	7	64	7

(계속)

(단위 : 건, %)

시도	시군구	신고의무자													
		가정 위탁 지원 센터 종사자	아동 복지 전담 공무원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종사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종사자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종사자	성폭력 피해 보호 시설 종사자 ·통합 지원 센터 종사자	응급 구조사	청소년 시설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 센터· 청소년 재활 센터 종사자	아이 돌보미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인력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종사자	입양 기관종 사자	소계
서울	중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12
	종로구	0	0	0	0	0	1	0	2	0	0	0	0	0	17
	서대문구	0	0	0	0	2	0	0	0	0	0	3	0	0	50
	마포구	0	0	0	0	0	2	0	1	0	0	0	0	0	36
	은평구	0	1	0	0	0	0	0	2	0	0	0	0	0	60
	동대문구	0	0	0	0	0	0	0	0	0	0	2	0	0	38
	중랑구	0	0	0	0	0	0	0	1	0	0	3	0	0	47
	도봉구	0	0	0	3	2	0	0	0	1	0	0	0	0	46
	성동구	0	0	0	0	0	0	0	0	0	0	2	0	0	18
	강동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35
	강남구	0	0	0	0	1	0	0	1	1	0	0	0	0	43
	성북구	0	0	0	0	1	0	0	2	2	0	0	0	0	55
	서초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10
	송파구	0	0	0	0	0	1	0	0	0	0	0	0	0	28
	노원구	0	0	0	0	1	6	0	8	0	0	0	0	0	56
	용산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24
	강북구	0	0	1	0	0	2	0	4	1	0	0	0	0	48
	광진구	0	0	0	0	0	0	0	0	0	0	3	0	0	43
	영등포구	0	2	0	0	0	1	0	2	1	0	0	0	0	29
	관악구	0	0	0	0	0	0	1	0	2	0	3	0	0	57
	구로구	0	0	1	0	0	1	0	2	0	0	0	0	0	42
	금천구	0	0	0	0	0	0	0	2	0	0	3	0	0	41
	동작구	0	0	0	0	0	0	0	2	0	0	0	0	0	25
	강서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72
	양천구	0	0	0	0	1	0	0	1	0	0	0	0	0	48
	소계	0	3	2	3	8	14	1	30	8	0	19	0	0	980
부산	중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13
	동구	0	0	0	0	0	0	0	2	0	0	0	0	0	18
	서구	0	0	0	0	0	0	0	2	0	0	0	0	0	30
	사하구	0	0	0	0	0	0	0	4	3	0	0	0	0	59
	영도구	0	0	0	0	0	7	0	2	0	1	2	0	0	34
	동래구	0	0	0	0	0	0	0	1	2	0	1	0	0	88
	남구	0	0	0	0	0	0	0	7	0	0	0	0	0	44
	금정구	0	0	0	0	0	1	0	6	1	0	1	0	0	25
	연제구	0	1	0	0	0	0	0	2	0	0	2	0	0	24
	해운대구	1	0	1	0	0	0	0	10	0	0	6	0	0	106
	수영구	0	1	0	0	0	1	0	1	0	0	6	0	0	35
	부산진구	0	0	1	0	0	6	0	10	0	2	1	0	0	158
	북구	0	0	4	0	0	0	0	4	3	0	0	0	0	73
	사상구	0	0	0	1	0	0	0	6	2	0	0	0	0	53
	강서구	0	0	0	0	0	0	0	2	0	0	1	0	0	16
	기장군	0	0	2	0	2	0	0	1	0	0	0	0	0	31
	소계	1	2	8	1	2	15	0	60	11	3	20	0	0	807

(계속)

(단위 : 건, %)

시도	시군구	신고의무자												
		초·중·고교 직원	의료인 ·의료 기사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강사	학원 강사	소방 구급 대원	성매매 피해 시설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 종사자	가정 폭력 상담소 보호 시설 종사자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대구	중구	11	1	0	0	0	0	0	0	0	0	0	1	0
	동구	40	2	0	0	1	0	0	0	0	0	1	1	1
	북구	29	7	2	0	0	1	0	0	0	0	0	1	1
	서구	22	1	2	0	4	0	1	0	0	0	3	0	1
	달서구	96	4	6	0	4	0	1	0	2	0	0	8	3
	남구	27	4	3	0	6	0	0	0	0	0	0	0	1
	수성구	29	8	6	1	1	0	0	0	0	0	0	4	3
	달성군	39	6	1	0	0	2	0	0	0	0	0	7	0
	소계	293	33	20	1	16	3	2	0	2	0	4	22	10
인천	중구	35	1	0	0	5	1	0	0	0	1	0	3	0
	동구	7	0	0	0	1	0	0	0	0	0	1	1	0
	남구	44	4	8	1	5	5	0	1	1	0	0	6	1
	부평구	55	5	5	0	1	0	0	0	0	1	0	4	4
	서구	61	5	0	0	4	0	0	1	0	0	1	132	5
	남동구	70	4	3	0	0	0	0	0	0	0	0	8	8
	연수구	38	4	0	1	2	0	0	0	0	0	0	7	0
	계양구	36	1	0	0	8	2	0	0	0	0	2	9	0
	옹진군	0	0	0	0	0	0	0	0	0	0	0	1	0
광주	강화군	2	0	0	0	0	2	0	0	0	0	0	1	0
	소계	348	24	16	2	26	10	0	2	1	2	4	172	18
	북구	36	1	1	1	3	0	0	0	0	0	5	9	2
	동구	6	0	5	0	0	0	0	0	0	0	0	1	1
	서구	31	4	0	0	0	0	0	0	0	0	1	7	1
	남구	15	0	1	0	0	0	0	0	0	0	0	4	1
	광산구	36	2	0	0	1	1	0	0	0	0	3	5	4
	소계	124	7	7	1	4	1	0	0	0	0	9	26	9
	동구	23	2	4	0	0	0	0	0	0	0	4	0	2
대전	중구	21	3	0	0	0	0	0	0	0	0	1	0	2
	서구	26	7	18	0	5	0	0	1	0	0	3	2	4
	유성구	26	0	0	0	2	0	0	0	0	0	0	0	2
	대덕구	28	1	1	0	1	0	0	0	0	0	1	1	0
	소계	124	13	23	0	8	0	0	1	0	0	9	3	10
	남구	41	7	2	2	7	1	0	0	0	0	0	0	0
울산	중구	23	1	5	1	0	0	0	1	0	0	1	1	3
	동구	23	1	1	0	0	0	0	0	0	0	1	0	0
	북구	24	0	0	0	4	0	0	1	0	0	1	1	1
	울주군	30	0	5	0	1	0	0	0	0	0	0	1	0
	소계	141	9	13	3	12	1	0	2	0	0	3	3	4
	고양시 일산동구	11	1	2	0	29	0	0	0	0	0	0	0	0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13	2	0	0	4	0	0	0	0	0	0	0	0
	고양시 덕양구	33	2	0	0	0	0	0	1	0	0	0	0	2
	파주시	30	1	0	0	2	0	0	0	0	0	0	3	3
	김포시	27	2	1	0	0	0	0	0	0	0	0	0	2
	부천시 원미구	33	3	6	0	2	1	0	0	0	0	0	6	4
	부천시 오정구	22	1	2	0	0	1	0	0	0	0	1	0	4
	부천시 소사구	12	0	0	0	0	0	0	0	0	0	0	1	1
	광명시	18	3	3	0	4	3	0	1	1	0	2	3	2
	안산시 단원구	85	9	1	4	0	1	0	0	1	0	4	0	0
	안산시 상록구	65	1	1	2	3	0	0	0	0	0	5	2	1
	과천시	5	0	1	0	0	0	0	0	0	0	0	3	0
	시흥시	46	4	2	0	0	1	0	2	0	0	0	8	2
	안양시 만안구	12	0	1	0	0	0	1	0	0	0	1	0	0
	안양시 동안구	16	5	0	0	0	0	0	0	0	0	0	0	0

(계속)

(단위 : 건, %)

시도	시군구	신고의무자													소계
		가정 위탁 지원 센터 종사자	아동 복지 전담 공무원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종사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종사자	정신 건강 복지 지원 센터 종사자	성폭력 피해 보호 시설 종사자 · 통합 지원 센터 종사자	응급 구조자	청소년 시설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 센터· 청소년 재활 센터 종사자	아이 돌보미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인력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종사자	입양 기관 종사자	
대구	중구	0	0	0	0	0	1	0	2	1	0	0	0	0	17
	동구	0	0	0	0	1	3	0	1	0	0	0	2	0	53
	북구	0	0	0	0	0	3	0	0	0	0	0	0	0	44
	서구	0	0	0	0	0	1	0	0	0	0	0	0	0	35
	달서구	0	0	0	0	0	2	1	1	0	0	0	0	0	128
	남구	0	0	0	0	0	4	0	1	0	0	0	0	0	46
	수성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52
	달성군	0	0	2	4	0	2	0	2	0	0	8	0	0	73
인천	소계	0	0	2	4	1	16	1	7	1	0	8	2	0	448
	중구	0	0	0	0	0	0	0	1	0	0	0	0	0	47
	동구	0	0	0	0	0	0	0	0	0	0	2	0	0	12
	남구	0	0	0	0	0	2	0	2	3	0	0	0	0	83
	부평구	0	0	0	1	0	0	0	3	0	0	0	0	0	79
	서구	0	0	0	0	0	0	0	2	1	0	0	0	0	212
	남동구	0	0	0	0	0	0	0	4	1	0	0	0	0	98
	연수구	0	0	0	0	0	0	0	1	0	0	3	0	0	56
광주	계양군	0	0	0	0	1	0	0	0	0	0	1	0	0	60
	웅진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1
	강화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5
	소계	0	0	0	1	1	2	0	13	5	0	6	0	0	653
	북구	1	0	1	0	2	7	0	0	0	0	0	0	0	69
	동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13
	서구	3	0	0	0	1	5	0	0	0	0	4	0	0	57
	남구	0	0	0	0	0	8	0	1	0	0	0	0	0	30
대전	광산구	0	0	0	0	0	2	0	4	0	0	3	0	0	61
	소계	4	0	1	0	3	22	0	5	0	0	7	0	0	230
	동구	0	0	1	0	1	0	0	2	0	0	4	0	0	43
	중구	0	0	0	0	0	0	0	2	0	0	0	0	0	29
	서구	0	0	0	0	0	0	0	0	0	1	0	0	0	67
	유성구	1	0	0	0	0	1	0	2	0	0	0	0	0	34
	대덕구	0	0	0	0	0	0	0	0	1	0	0	0	0	34
	소계	1	0	1	0	1	1	0	6	1	1	4	0	0	207
울산	남구	0	1	0	0	0	0	0	2	0	0	0	1	0	64
	중구	0	2	0	0	0	1	0	4	0	0	0	0	0	43
	동구	0	0	0	1	0	0	0	3	0	0	0	0	0	30
	북구	0	0	0	0	1	1	0	1	0	0	0	0	0	35
	울주군	0	1	0	0	0	0	0	3	0	0	0	0	0	41
	소계	0	4	0	1	1	2	0	13	0	0	0	1	0	213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0	0	0	0	0	0	0	1	0	0	0	0	0	44
	고양시 일산서구	0	0	0	0	1	0	0	0	0	0	1	0	0	21
	고양시 덕양구	0	0	0	0	0	0	0	0	1	0	0	0	0	39
	파주시	0	0	0	0	0	0	0	2	0	0	0	0	0	41
	김포시	0	0	0	0	0	0	0	1	1	0	1	0	0	35
	부천시 원미구	0	0	0	0	0	1	0	4	0	0	0	0	0	60
	부천시 오정구	0	0	0	1	0	0	0	0	0	0	0	0	0	32
	부천시 소사구	0	0	0	1	0	0	0	7	0	0	0	0	0	22
	광명시	0	0	0	0	0	0	0	0	0	0	0	0	0	40
	안산시 단원구	0	0	0	1	0	3	0	1	0	0	6	0	0	116
	안산시 상록구	0	0	0	0	0	8	0	1	0	0	3	0	0	92
	과천시	0	0	0	0	0	0	0	0	0	0	0	0	0	9
	시흥시	0	0	0	0	0	1	0	6	0	0	3	0	0	75
	안양시 만안구	0	0	0	0	0	0	0	2	0	0	7	0	0	24
	안양시 동안구	0	0	0	0	0	0	0	1	0	0	0	0	0	22

(계속)

(단위 : 건, %)

시도	시군구	신고의무자												
		초·중·고교 직원	의료인 ·의료 기사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강사	학원 강사	소방 구급 대원	성매매 피해 시설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 종사자	가정 폭력 상담소 보호 시설 종사자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경기	군포시	5	0	2	0	1	0	0	2	0	0	0	3	1
	의왕시	9	0	0	0	0	1	0	0	0	0	1	1	0
	수원시 장안구	22	3	1	0	0	0	0	0	0	0	0	0	2
	수원시 권선구	43	0	1	0	2	2	0	0	0	0	0	0	3
	수원시 팔달구	20	4	2	0	1	0	0	0	0	2	0	1	3
	수원시 영통구	18	1	0	0	1	2	1	0	0	0	0	2	2
	화성시	70	1	6	0	10	3	0	0	0	0	2	2	1
	용인시 기흥구	20	3	0	0	2	0	0	0	0	0	0	0	2
	오산시	23	0	3	0	3	8	0	0	0	0	0	0	2
	용인시 수지구	14	3	0	0	0	1	0	2	0	0	0	0	0
	용인시 처인구	30	0	0	1	0	0	0	0	0	0	0	0	3
	평택시	50	7	4	0	5	3	0	0	0	0	0	12	2
	안성시	27	3	0	1	0	1	0	0	0	0	0	3	0
	성남시 수정구	23	3	1	0	0	2	0	0	0	0	1	7	2
	성남시 중원구	27	1	4	0	1	0	0	0	0	0	1	2	0
	성남시 분당구	30	5	2	0	1	12	0	0	0	0	0	1	0
	광주시	36	1	2	0	0	0	0	0	0	0	0	2	0
	하남시	7	2	0	0	0	0	0	0	0	0	0	1	0
	이천시	22	3	0	0	0	1	0	3	0	0	1	5	3
	여주시	24	0	1	0	0	0	0	0	0	0	0	0	0
	구리시	11	1	0	0	0	0	0	0	0	0	0	1	0
	남양주시	52	5	0	0	11	4	0	0	0	0	1	4	0
	양평군	2	1	1	0	0	0	0	0	0	0	0	0	0
	가평군	10	0	0	0	0	0	0	0	0	0	0	0	0
	의정부시	47	0	1	0	0	2	0	0	0	0	1	13	2
	양주시	23	0	0	0	1	0	0	0	0	0	0	1	0
	동두천시	12	0	0	0	0	0	0	0	0	0	0	1	0
	연천군	10	0	0	0	0	0	0	0	0	0	0	0	0
	포천시	24	1	0	0	3	0	0	0	0	0	0	2	0
	소계	1,139	82	51	8	86	49	2	11	2	2	21	90	49
강원	춘천시	18	2	10	0	4	0	0	0	0	0	1	7	1
	화천군	4	0	0	0	0	0	0	0	0	0	0	0	0
	강릉시	33	2	3	0	1	1	0	0	0	1	1	0	0
	양양군	2	0	0	0	0	0	0	0	0	0	0	4	0
	속초시	12	0	0	0	0	0	0	0	0	0	0	3	1
	고성군	1	0	0	0	0	0	0	0	0	0	0	0	0
	원주시	23	1	14	0	2	1	0	4	0	0	1	10	8
	횡성군	7	0	0	0	1	0	0	0	0	0	0	0	1
	영월군	5	0	0	0	0	0	0	0	0	0	0	0	0
	평창군	13	0	0	0	0	0	0	0	0	0	0	0	0
	정선군	5	0	0	0	0	0	0	0	0	0	0	0	0
	태백시	8	0	0	0	0	1	0	0	0	0	0	0	0
	동해시	15	0	4	0	2	0	0	0	0	0	0	1	0
	삼척시	10	1	1	0	0	1	0	0	0	0	0	7	0
	홍천군	3	0	0	0	0	0	0	0	0	0	0	0	0
	인제군	6	0	0	0	2	0	0	0	0	0	0	0	2
	양구군	0	1	0	0	0	0	0	0	0	0	0	0	0
	철원군	8	0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173	7	32	0	12	4	0	4	0	1	3	32	13

(계속)

(단위: 건, %)

시도	시군구	신고의무자													
		가정 위탁 지원 센터 종사자	아동 복지 전담 공무원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종사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종사자	정신 건강 복지 지원 센터 종사자	성폭력 피해 보호 시설 종사자 · 통합 지원 센터 종사자	응급 구조사	청소년 시설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 센터· 청소년 재활 센터 종사자	아이 돌보미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인력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종사자	입양 기관 종사자	소계
경기	군포시	0	0	0	1	0	1	0	0	0	0	4	1	0	21
	의왕시	0	0	0	0	0	0	0	0	0	0	2	0	0	14
	수원시 장안구	0	0	0	0	0	0	0	8	0	0	0	0	0	36
	수원시 권선구	0	0	0	0	1	0	0	0	0	0	0	0	0	52
	수원시 팔달구	0	2	0	0	0	0	0	1	0	0	0	0	0	36
	수원시 영통구	0	2	0	0	0	0	0	2	0	0	0	0	0	31
	화성시	0	0	0	0	0	2	0	5	0	0	2	0	0	104
	용인시 기흥구	0	0	0	0	0	0	0	1	0	0	0	0	0	28
	오산시	0	0	0	0	0	1	0	0	0	0	2	0	0	42
	용인시 수지구	0	0	0	0	0	2	0	7	0	0	0	0	0	29
	용인시 처인구	0	0	0	0	0	1	0	2	0	0	3	0	0	40
	평택시	0	1	0	0	0	3	0	1	0	0	0	0	0	88
	안성시	0	0	0	0	0	0	0	3	0	0	1	0	0	39
	성남시 수정구	0	0	0	0	0	0	0	2	1	0	4	0	0	46
	성남시 중원구	0	0	0	0	0	0	0	13	0	0	1	0	0	50
	성남시 분당구	0	0	0	0	0	0	0	1	0	0	0	0	0	52
	광주시	0	0	0	0	0	0	0	4	0	0	2	0	0	47
	하남시	0	0	0	0	0	0	0	0	1	0	0	0	0	11
	이천시	0	0	0	1	0	0	0	0	0	0	0	0	0	39
	여주시	0	0	1	0	0	0	0	0	0	0	3	0	0	29
	구리시	0	0	0	0	0	0	0	3	0	0	1	0	0	17
	남양주시	0	0	0	0	3	0	0	11	1	0	2	0	0	94
	양평군	0	0	0	0	0	0	0	0	0	0	6	0	0	10
	가평군	0	0	0	0	0	0	0	2	0	0	0	0	0	12
	의정부시	0	0	0	0	0	1	0	2	0	0	22	0	0	91
	양주시	0	0	0	0	0	1	0	8	0	0	0	0	0	34
	동두천시	0	0	0	0	0	0	0	1	0	0	0	0	0	14
	연천군	0	0	0	0	0	0	0	3	0	0	0	0	0	13
	포천시	0	0	0	0	0	1	0	1	0	0	2	0	0	34
	소계	0	5	1	5	5	26	0	107	5	0	78	1	0	1,825
강원	춘천시	0	0	0	0	0	4	0	1	0	0	1	0	0	49
	화천군	0	0	0	0	0	1	0	0	0	0	0	0	0	5
	강릉시	0	0	0	0	0	4	0	0	0	0	3	0	0	49
	양양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6
	속초시	0	0	0	0	0	0	0	0	0	0	0	0	0	16
	고성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원주시	0	0	2	0	0	2	0	7	0	0	1	0	0	76
	횡성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9
	영월군	0	0	0	0	0	0	0	2	0	0	0	0	0	7
	평창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13
	정선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5
	태백시	0	0	0	0	0	1	0	1	0	0	1	0	0	12
	동해시	0	0	0	0	0	0	0	2	0	0	9	0	0	33
	삼척시	0	0	0	0	0	0	0	0	0	0	0	0	0	20
	홍천군	0	0	0	2	0	0	0	0	0	0	0	0	0	5
	인제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10
	양구군	0	0	0	0	0	0	0	0	0	0	8	0	0	9
	철원군	0	0	1	0	0	0	0	0	0	0	0	0	0	9
	소계	0	0	3	2	0	12	0	13	0	0	23	0	0	334

(계속)

(단위: 건, %)

시도	시군구	신고의무자												
		초·중·고교 직원	의료인 ·의료 기사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강사	학원 강사	소방 구급 대원	성매매 피해 시설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 종사자	가정 폭력 상담소 보호 시설 종사자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충북	청주시 상당구	16	0	1	0	0	0	0	0	0	1	0	6	0
	청주시 흥덕구	25	1	5	0	1	1	0	0	0	0	0	6	2
	청주시 서원구	40	1	0	0	5	0	0	0	0	0	1	3	0
	청주시 청원구	25	1	1	0	1	0	0	0	0	0	0	3	1
	청원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진천군	8	2	0	0	0	3	0	0	0	0	0	3	0
	괴산군	7	0	0	0	0	0	0	0	0	0	0	0	1
	증평군	4	0	0	0	1	0	0	0	0	0	0	0	0
	음성군	8	0	0	0	0	0	0	0	0	0	0	2	0
	영동군	21	0	1	0	3	0	0	0	0	0	0	0	0
	옥천군	12	2	0	1	0	0	0	0	0	0	0	2	0
	보은군	21	1	0	0	0	0	0	0	0	0	0	2	0
	충주시	26	2	1	2	0	0	0	0	1	0	0	7	0
	제천시	50	0	7	0	0	1	0	0	0	0	0	3	1
	단양군	1	0	0	0	2	0	0	0	0	0	0	1	0
충남	소계	264	10	16	3	13	5	0	0	1	1	1	38	5
	금산군	10	0	0	0	0	0	0	0	0	0	0	0	0
	공주시	4	0	0	0	0	0	0	0	0	0	6	3	2
	논산시	36	0	8	0	0	0	0	0	0	0	2	2	4
	계룡시	3	0	0	0	0	0	0	0	0	0	0	0	1
	부여군	9	0	0	0	0	0	0	0	0	0	0	6	6
	서천군	1	0	0	0	0	1	0	0	0	0	0	0	1
	천안시 동남구	14	3	2	0	2	0	0	1	0	0	1	4	9
	천안시 서북구	30	0	1	0	1	2	0	0	0	0	2	1	10
	아산시	35	1	1	1	1	4	0	1	0	0	3	3	7
	예산군	18	0	3	0	0	0	0	0	0	0	1	1	0
	당진시	22	1	3	0	0	0	0	0	0	0	0	6	1
	청양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홍성군	10	0	0	0	1	1	0	0	0	0	6	0	0
	보령시	9	0	0	0	0	1	0	0	0	0	0	2	0
	서산시	33	3	1	0	0	0	0	0	0	0	0	10	3
	태안군	5	0	0	0	0	0	0	0	0	0	0	2	0
	세종특별자치시	24	0	3	0	3	1	0	0	0	0	0	0	2
	소계	263	8	22	1	8	10	0	2	0	0	21	40	46
전북	전주시 완산구	39	2	5	1	5	0	0	0	0	0	3	5	14
	전주시 덕진구	37	0	1	0	0	0	2	0	0	0	0	0	4
	완주군	10	2	0	1	0	0	0	0	0	0	0	2	0
	임실군	2	0	16	0	0	0	0	0	0	0	0	3	1
	진안군	3	0	0	0	0	1	1	0	0	0	0	0	2
	무주군	2	0	0	0	0	0	0	0	0	0	0	3	1
	익산시	55	1	4	0	0	0	0	0	0	0	0	15	2
	군산시	39	0	3	0	1	0	0	0	0	2	1	7	2
	김제시	18	0	0	0	1	0	0	0	0	0	1	6	3
	부안군	4	0	0	0	0	1	0	0	0	0	0	0	2
	정읍시	23	0	0	0	0	0	0	0	0	0	0	0	0
	고창군	3	2	0	0	0	0	0	0	0	0	0	0	1
	남원시	24	2	2	0	8	0	0	0	0	0	0	7	0
	순창군	6	0	0	0	0	0	0	0	0	0	0	0	0
	장수군	5	0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270	9	31	2	15	2	3	0	0	2	5	48	32

(계속)

(단위 : 건, %)

시도	시군구	신고의무자													
		가정 위탁 지원 센터 종사자	아동 복지 전담 공무원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종사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종사자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종사자	성폭력 피해 보호 시설 종사자 · 통합 지원 센터 종사자	응급 구조사	청소년 시설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 센터· 청소년 재활 센터 종사자	아이 돌보미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인력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종사자	입양 기관 종사자	소계
충북	청주시 상당구	1	0	0	0	0	0	0	0	0	0	1	0	0	26
	청주시 흥덕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41
	청주시 서원구	0	0	0	0	0	1	0	2	0	0	0	0	0	53
	청주시 청원구	4	0	0	0	0	0	0	1	0	0	1	0	0	38
	청원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진천군	0	0	0	0	0	0	0	0	0	0	1	0	0	17
	괴산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8
	증평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5
	음성군	0	0	0	0	0	0	0	1	0	0	0	0	0	11
	영동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25
	옥천군	0	0	0	0	0	0	0	0	1	0	3	0	0	21
	보은군	0	0	0	0	5	1	0	0	0	0	0	0	0	30
	충주시	0	0	0	0	0	6	0	2	0	0	2	0	0	49
	제천시	0	0	0	0	0	2	0	0	0	0	1	0	0	65
	단양군	0	0	0	3	0	1	0	1	0	0	6	0	0	15
충남	소계	5	0	0	3	5	11	0	7	1	0	15	0	0	404
	금산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10
	공주시	0	2	0	0	0	0	0	1	0	0	2	0	0	20
	논산시	0	0	0	0	0	0	0	2	0	0	0	0	0	54
	계룡시	0	0	0	0	0	0	0	0	0	0	0	0	0	4
	부여군	0	2	0	0	0	0	0	0	0	0	0	0	0	23
	서천군	0	0	0	0	0	2	0	0	0	0	0	0	0	5
	천안시 동남구	0	0	2	0	0	0	0	0	0	0	0	0	0	38
	천안시 서북구	0	0	0	0	0	0	0	0	0	0	9	0	0	56
	아산시	1	1	0	0	0	0	0	0	0	0	2	0	0	61
	예산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23
	당진시	0	0	0	0	0	0	0	0	0	0	0	0	0	33
	청양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홍성군	0	0	0	0	0	0	0	2	0	0	7	0	0	27
	보령시	0	0	0	0	0	0	0	0	0	0	8	0	0	20
	서산시	0	0	0	0	0	0	0	3	0	0	2	0	0	55
	태안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7
	세종특별자치시	0	0	0	0	0	0	0	0	0	0	0	0	0	33
	소계	1	5	2	0	0	2	0	8	0	0	30	0	0	469
전북	전주시 완산구	2	1	0	0	0	0	0	1	0	0	1	0	0	79
	전주시 덕진구	0	0	0	0	0	0	0	1	0	2	8	0	0	55
	완주군	0	4	0	0	0	0	0	0	1	0	0	0	0	20
	임실군	0	0	0	0	0	0	0	0	0	0	3	0	0	25
	진안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7
	무주군	0	0	0	0	0	0	0	0	0	0	4	0	0	10
	익산시	0	1	0	0	0	2	0	3	0	0	6	0	0	89
	군산시	0	0	0	0	3	0	0	5	1	0	12	0	0	76
	김제시	0	0	0	1	0	0	0	0	0	0	1	0	0	31
	부안군	0	0	0	0	0	0	0	1	0	0	0	0	0	8
	정읍시	1	2	0	0	5	0	0	0	0	0	0	0	0	31
	고창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6
	남원시	0	0	4	0	0	0	0	0	0	0	8	0	0	55
	순창군	0	0	6	0	0	0	0	0	0	0	0	0	1	13
	장수군	0	0	0	0	0	0	0	0	0	0	2	0	0	7
	소계	3	8	10	1	8	2	0	11	2	2	45	0	1	512

(계속)

(단위 : 건, %)

시도	시군구	신고의무자												
		초·중·고교 직원	의료인·의료 기사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강사	학원 강사	소방 구급 대원	성매매 피해 시설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 종사자	가정 폭력 상담소 보호 시설 종사자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전남	영광군	3	1	7	0	0	0	0	0	0	0	0	2	0
	장성군	6	0	0	0	0	0	0	0	0	0	0	0	0
	곡성군	0	0	0	0	2	0	0	0	0	0	0	0	0
	담양군	6	0	5	0	0	0	0	0	0	0	0	0	0
	화순군	14	0	4	0	0	0	0	1	0	0	0	0	0
	나주시	14	0	4	0	0	1	0	0	2	1	0	2	1
	함평군	6	0	1	0	0	0	0	0	0	0	0	0	0
	영암군	22	0	0	0	0	0	0	0	0	0	0	0	0
	강진군	8	2	0	0	0	0	0	0	0	0	0	1	0
	장흥군	8	0	0	0	0	0	0	0	0	0	0	1	0
	목포시	74	0	16	2	3	2	0	0	0	0	0	9	8
	무안군	7	0	4	0	0	0	0	0	0	0	4	0	5
	신안군	4	0	0	0	0	0	0	0	0	0	0	0	0
	해남군	15	0	0	0	0	3	0	0	0	0	0	11	1
	완도군	9	0	0	0	0	0	0	0	0	0	2	1	0
	진도군	6	0	0	2	0	0	0	0	0	0	0	0	0
	순천시	12	2	0	0	3	1	0	0	0	0	0	0	0
	구례군	15	0	0	0	0	0	0	0	0	0	0	3	0
	광양시	13	0	1	0	3	2	0	0	0	0	1	6	0
	보성군	11	0	0	0	1	0	0	0	0	0	0	0	0
	고흥군	0	0	0	0	0	0	0	0	0	0	0	8	0
	여수시	25	0	0	0	1	0	0	0	0	0	2	14	0
	소계	278	5	42	4	13	9	0	1	2	1	9	58	15
경북	경산시	26	3	1	0	1	0	0	0	0	0	1	0	2
	청도군	5	0	0	0	0	0	0	0	0	0	0	0	0
	군위군	1	0	0	0	0	0	0	0	0	0	0	0	0
	고령군	2	1	0	0	0	0	0	0	0	0	0	0	0
	칠곡군	6	0	0	0	1	0	0	0	0	0	0	6	0
	성주군	2	0	0	0	0	0	0	0	0	0	0	6	0
	구미시	80	5	8	0	4	0	0	1	0	0	0	5	4
	김천시	14	0	0	0	0	1	0	0	0	0	0	18	0
	상주시	19	0	1	0	0	0	0	0	0	0	0	0	0
	문경시	3	0	1	0	2	0	0	1	0	0	0	1	0
	영주시	9	0	12	0	0	0	0	0	0	0	0	0	0
	봉화군	1	0	0	0	0	0	0	0	0	0	0	0	0
	예천군	13	0	0	0	0	0	0	1	0	0	0	1	0
	안동시	26	0	3	0	0	0	0	0	0	0	2	2	7
	청송군	5	0	0	0	0	0	0	0	0	0	0	0	0
	영양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영덕군	3	0	0	0	0	0	0	0	0	0	0	0	0
	울진군	1	0	0	0	0	0	0	0	0	0	0	1	0
	의성군	2	0	3	0	0	0	0	0	0	0	0	7	0
	영천시	6	0	0	0	0	0	0	0	0	0	0	0	0
	경주시	30	1	1	0	2	0	0	0	0	0	3	5	0
	포항시 남구	53	3	3	0	2	4	0	1	0	0	3	5	1
	포항시 북구	23	2	1	0	3	0	0	0	0	0	1	3	6
	울릉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330	15	34	0	15	5	0	4	0	0	10	60	20

(계속)

(단위 : 건, %)

시도	시군구	신고의무자													
		가정 위탁 지원 센터 종사자	아동 복지 전담 공무원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종사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종사자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종사자	성폭력 피해 보호 시설 종사자 · 통합 지원 센터 종사자	응급 구조자	청소년 시설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 센터· 청소년 재활 센터 종사자	아이 돌보미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인력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종사자	입양 기관 종사자	소계
전남	영광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13
	장성군	0	0	0	0	0	2	0	0	0	0	0	0	0	8
	곡성군	0	0	0	0	0	0	0	0	0	0	13	0	0	15
	담양군	0	0	0	0	0	0	0	2	0	0	1	0	0	14
	화순군	0	0	0	4	0	2	0	0	0	0	4	0	0	29
	나주시	0	0	1	1	0	2	0	12	0	0	0	0	0	41
	함평군	3	0	0	1	0	0	0	0	0	0	0	0	0	11
	영암군	0	0	0	0	0	0	0	0	0	2	0	0	0	24
	강진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11
	장흥군	0	0	0	0	0	0	0	0	0	0	1	0	0	10
	목포시	0	0	0	0	0	0	0	7	0	0	0	0	0	121
	무안군	0	0	0	0	0	0	0	1	0	0	0	0	0	21
	신안군	0	0	0	0	0	0	0	3	0	0	0	0	0	7
	해남군	0	0	0	0	0	6	0	5	0	0	0	0	0	41
	완도군	0	0	0	0	0	0	0	0	0	0	2	0	0	14
	진도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8
	순천시	0	0	2	1	0	0	0	18	4	0	0	0	0	43
	구례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18
	광양시	0	0	1	0	0	1	0	0	0	0	0	0	0	28
	보성군	0	0	0	0	0	0	0	0	0	0	1	0	0	13
	고흥군	0	0	0	0	0	0	0	1	0	0	0	0	0	9
	여수시	0	0	0	0	0	7	0	2	0	0	1	0	0	52
	소계	3	0	4	7	0	20	0	51	4	2	23	0	0	551
경북	경산시	0	0	0	0	1	2	0	0	0	0	0	0	0	37
	청도군	0	0	4	0	0	0	0	0	0	0	0	0	0	9
	군위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1
	고령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3
	칠곡군	0	0	0	0	0	0	0	0	0	0	1	0	0	14
	성주군	0	0	0	0	0	0	0	0	0	0	2	0	0	10
	구미시	0	0	0	0	0	2	0	0	0	0	0	0	0	109
	김천시	0	0	0	0	0	0	0	0	0	0	0	0	0	33
	상주시	0	0	0	0	0	0	0	0	0	0	0	0	0	20
	문경시	0	0	0	0	0	1	0	6	0	0	0	0	0	15
	영주시	0	0	0	1	0	2	0	2	1	0	3	0	0	30
	봉화군	0	0	0	0	0	0	0	2	1	0	1	0	0	5
	예천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15
	안동시	0	0	0	0	0	2	0	1	2	0	0	0	0	45
	청송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5
	영양군	0	0	0	0	0	0	0	0	0	0	7	0	0	7
	영덕군	0	0	0	0	0	2	0	0	0	0	0	0	0	5
	울진군	0	0	0	1	0	0	0	0	0	0	0	0	0	3
	의성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12
	영천시	0	0	0	0	0	0	0	0	0	0	0	0	0	6
	경주시	0	0	0	0	0	0	0	2	0	0	1	0	0	45
	포항시 남구	0	0	4	2	0	52	0	1	0	0	3	0	0	137
	포항시 북구	0	0	1	0	0	57	0	1	0	0	6	0	0	104
울릉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0	0	9	4	1	120	0	15	4	0	24	0	0	670	

(계속)

(단위: 건, %)

시도	시군구	신고의무자												
		초·중·고교 직원	의료인·의료 기사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강사	학원 강사	소방 구급 대원	성매매 피해 시설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 종사자	가정 폭력 상담소 보호 시설 종사자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경남	김해시	32	4	2	0	2	0	0	0	0	0	0	15	3
	양산시	33	1	4	0	0	0	0	0	0	0	0	0	0
	밀양시	2	0	0	0	0	0	0	0	0	0	0	1	0
	창원시 마산 회원구	18	2	6	0	1	0	0	0	0	0	0	1	0
	창원시 마산 합포구	8	1	0	0	1	0	0	0	0	0	0	0	0
	창녕군	1	0	0	0	1	0	0	0	0	0	0	0	0
	의령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함안군	8	0	0	0	0	0	0	0	0	0	0	0	0
	고성군	3	0	3	0	1	0	0	0	0	0	0	8	0
	창원시 의창구	8	0	0	0	0	0	0	0	0	0	3	0	0
	창원시 성산구	9	1	0	0	2	0	0	1	0	0	0	0	0
	창원시 진해구	8	0	0	1	0	0	0	0	0	0	0	0	0
	통영시	10	0	0	0	0	0	0	0	0	0	1	16	0
	거제시	37	0	0	0	0	0	0	0	0	0	4	1	0
	진주시	42	3	0	0	0	0	0	0	0	0	34	3	0
	사천시	10	0	0	0	0	0	0	0	0	0	4	0	0
	산청군	3	0	0	0	0	0	0	0	0	0	0	3	0
	하동군	0	0	0	0	0	0	0	0	0	0	2	0	0
	남해군	7	0	0	0	0	0	0	0	0	0	0	0	0
	거창군	3	1	0	0	0	0	0	0	0	0	0	1	0
	함양군	1	0	0	0	0	0	0	0	0	0	0	0	0
	합천군	0	0	0	0	0	0	0	0	0	0	0	1	0
	소계	243	13	15	1	8	0	0	1	0	0	48	50	3
제주	제주시	32	2	10	1	0	3	0	0	0	0	0	0	8
	서귀포시	35	0	1	0	0	0	0	0	0	0	4	1	2
	소계	67	2	11	1	0	3	0	0	0	0	4	1	10
계		5,168	296	407	33	313	115	9	33	9	16	169	819	271

(계속)

(단위 : 건, %)

시도	시군구	신고의무자													
		가정 위탁 지원 센터 종사자	아동 복지 전담 공무원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종사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종사자	정신 건강 복지 지원 센터 종사자	성폭력 피해 보호 시설 종사자 · 통합 지원 센터 종사자	응급 구조사	청소년 시설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 센터· 청소년 재활 센터 종사자	아이 돌보미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인력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종사자	입양 기관 종사자	소계
경남	김해시	0	0	4	0	2	1	0	1	0	0	2	0	0	68
	양산시	0	0	0	0	0	0	0	3	0	0	11	0	0	52
	밀양시	0	0	0	0	0	3	0	0	0	0	0	0	0	6
	창원시 마산 회원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28
	창원시 마산 합포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10
	창녕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2
	의령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함안군	0	0	0	0	0	0	0	1	0	0	0	0	0	9
	고성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15
	창원시 의창구	2	0	0	0	0	0	0	0	0	0	0	0	0	13
	창원시 성산구	0	0	0	0	0	0	0	0	0	0	1	0	0	14
	창원시 진해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9
	통영시	0	0	0	0	0	0	0	0	0	0	1	0	0	28
	거제시	0	0	0	0	0	1	0	4	0	0	0	0	0	47
	진주시	0	0	0	1	0	0	0	1	0	0	0	0	0	84
	사천시	0	0	0	0	0	0	0	0	0	0	0	0	0	14
	산청군	0	0	1	0	0	0	0	0	0	0	0	0	0	7
	하동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2
	남해군	0	0	0	0	0	4	0	0	0	0	0	0	0	11
	거창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5
함양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1	
합천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소계	2	0	5	1	2	9	0	10	0	0	15	0	0	426	
제주	제주시	0	0	0	0	0	0	0	1	1	0	0	0	0	58
	서귀포시	0	0	0	0	0	0	0	0	0	0	0	0	0	43
	소계	0	0	0	0	0	0	0	1	1	0	0	0	0	101
계		20	27	48	33	38	274	2	357	43	8	317	4	1	8,830

〈표 2-9〉 시군구별 비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단위 : 건, %)

시도	시군구	비신고의무자													
		아동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이웃 친구	경찰	종교인	사회 복지 관련 종사자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장과 종사자	의료 사회 복지사	낮선 사람	익명	기타	계
서울	중구	3	10	0	0	1	1	0	0	7	0	4	0	0	26
	종로구	4	10	1	0	1	0	0	0	19	0	3	0	3	41
	서대문구	11	33	3	3	8	3	0	2	25	0	2	1	9	100
	마포구	21	26	0	1	12	1	1	1	21	0	1	0	3	88
	은평구	36	68	2	11	26	8	0	1	81	0	1	0	18	252
	동대문구	34	28	0	6	12	4	0	1	24	0	4	2	3	118
	종랑구	32	34	0	5	13	4	0	2	17	3	6	4	11	131
	도봉구	29	33	1	4	19	1	0	4	43	0	3	0	1	138
	성동구	6	15	0	1	3	0	0	1	9	0	2	0	4	41
	강동구	6	25	2	0	11	0	0	1	0	1	1	0	2	49
	강남구	13	13	1	3	3	3	0	0	0	0	1	3	4	44
	성북구	12	30	1	0	8	2	0	1	51	0	3	0	8	116
	서초구	3	18	1	3	7	1	0	0	0	1	0	0	0	34
	송파구	14	29	0	1	5	0	0	0	2	1	0	1	5	58
	노원구	50	46	2	5	23	1	0	1	21	0	6	2	3	160
	용산구	11	15	0	0	6	3	0	0	28	1	0	0	6	70
	강북구	27	18	3	2	13	3	0	3	64	0	4	1	7	145
	광진구	39	64	1	3	12	5	0	0	27	0	9	1	3	164
	영등포구	7	21	0	1	3	2	0	0	23	0	5	0	3	65
	관악구	13	41	1	0	3	0	0	0	0	0	10	4	1	73
	구로구	7	30	0	3	1	1	0	4	14	0	2	0	1	63
	금천구	18	10	2	3	3	3	0	0	24	0	0	7	0	70
	동작구	6	12	0	0	0	0	0	0	2	0	1	1	1	23
	강서구	21	69	4	9	23	14	0	5	11	0	7	0	7	170
	양천구	32	35	1	1	20	6	0	3	73	3	3	0	2	179
	소계	455	733	26	65	236	66	1	30	586	10	78	27	105	2,418
부산	중구	3	7	1	0	2	0	0	0	2	0	0	0	2	17
	동구	9	5	0	4	4	0	0	0	0	0	6	2	10	40
	서구	7	13	0	3	2	5	0	0	3	0	2	0	0	35
	사하구	4	26	2	6	12	4	2	2	9	0	3	2	4	76
	영도구	12	4	0	4	1	1	0	0	2	0	2	0	0	26
	동래구	22	14	2	1	4	1	0	1	56	0	3	9	1	114
	남구	12	23	0	4	11	2	0	1	17	0	3	0	3	76
	금정구	9	15	0	4	0	0	0	2	7	0	0	0	5	42
	연제구	18	10	3	2	2	0	0	0	2	0	1	0	1	39
	해운대구	19	46	3	6	15	3	0	2	39	0	4	0	2	139
	수영구	9	16	0	0	7	0	0	0	6	0	2	0	3	43
	부산진구	46	61	2	0	23	5	0	2	8	0	6	0	3	156
	북구	23	36	1	15	17	1	0	4	45	0	5	0	2	149
	사상구	10	18	4	2	0	2	0	2	177	0	3	3	3	224
	강서구	1	8	0	1	7	0	0	2	29	1	2	0	2	53
	기장군	28	24	1	3	7	1	0	1	4	0	2	1	0	72
	소계	232	326	19	55	114	25	2	19	406	1	44	17	41	1,301

(계속)

(단위 : 건, %)

시도	시군구	비신고의무자													
		아동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이웃 친구	경찰	종교인	사회 복지 관련 종사자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장과 종사자	의료 사회 복지사	넋선 사람	익명	기타	계
대구	중구	39	7	3	0	2	0	0	0	43	0	5	0	6	105
	동구	13	34	2	3	12	1	0	0	35	0	4	1	4	109
	북구	18	35	3	8	6	4	0	3	37	0	3	0	7	124
	서구	19	26	3	4	7	0	0	1	23	0	2	0	4	89
	달서구	74	74	5	8	20	13	0	5	125	0	8	1	10	343
	남구	28	24	4	3	17	0	0	0	33	2	2	1	9	123
	수성구	18	37	1	1	10	3	0	2	43	0	2	2	10	129
	달성군	21	31	0	4	14	6	0	0	57	0	1	0	1	135
소계		230	268	21	31	88	27	0	11	396	2	27	5	51	1,157
인천	중구	9	17	1	13	8	4	0	0	5	0	3	0	1	61
	동구	5	4	1	1	2	0	0	0	6	0	0	0	0	19
	남구	55	72	5	13	62	4	0	5	44	0	16	1	8	285
	부평구	48	41	5	4	55	4	0	3	42	0	17	10	4	233
	서구	84	88	10	16	39	16	1	3	77	2	10	3	23	372
	남동구	24	44	1	4	23	3	1	2	56	1	4	2	7	172
	연수구	32	35	0	3	44	0	0	0	47	0	2	20	18	201
	계양구	59	37	5	2	52	0	0	0	47	0	14	11	5	232
	옹진군	0	0	0	0	0	0	0	0	3	0	0	0	0	3
강화군		4	2	1	0	1	0	0	1	15	0	0	0	0	24
소계		320	340	29	56	286	31	2	14	342	3	66	47	66	1,602
광주	북구	36	51	7	6	9	4	0	1	121	1	0	4	12	252
	동구	8	6	1	1	3	4	0	2	34	0	0	2	1	62
	서구	33	37	4	3	18	13	0	0	19	0	4	3	5	139
	남구	15	14	2	2	1	1	0	0	68	0	2	3	4	112
	광산구	33	28	1	2	13	12	0	4	36	0	4	6	14	153
소계		125	136	15	14	44	34	0	7	278	1	10	18	36	718
대전	동구	24	16	5	1	11	0	0	2	4	0	1	2	7	73
	중구	29	29	1	10	7	1	0	3	10	3	0	1	9	103
	서구	60	63	5	6	32	2	0	0	2	1	11	1	16	199
	유성구	63	63	7	2	18	1	0	2	4	0	3	0	2	165
	대덕구	24	25	3	5	22	0	0	8	12	0	3	2	4	108
소계		200	196	21	24	90	4	0	15	32	4	18	6	38	648
울산	남구	32	18	5	2	21	2	0	0	75	1	5	0	2	163
	중구	36	47	1	2	12	0	1	5	49	0	4	1	3	161
	동구	35	20	0	0	8	0	0	0	66	2	4	0	5	140
	북구	22	20	3	2	3	2	0	1	40	0	1	0	5	99
	울주군	21	20	0	2	11	1	0	0	22	0	4	0	2	83
소계		146	125	9	8	55	5	1	6	252	3	18	1	17	646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10	27	1	3	2	0	0	0	1	1	2	0	0	47
	고양시 일산서구	22	43	0	4	4	0	0	0	2	0	2	0	2	79
	고양시 덕양구	22	38	0	0	9	0	0	6	29	0	1	2	5	112
	파주시	20	15	1	1	2	3	0	0	6	0	3	0	1	52
	김포시	14	24	2	0	6	0	0	0	21	0	5	0	0	72
	부천시 원미구	23	34	1	5	5	0	0	2	44	0	3	5	5	127
	부천시 오정구	29	34	4	4	3	3	0	1	48	6	11	1	2	146
	부천시 소사구	9	16	4	3	7	0	0	2	17	1	3	0	1	63
	광명시	9	34	0	3	4	2	0	1	44	0	5	0	3	105
	안산시 단원구	102	172	7	17	61	6	0	8	187	4	24	15	11	614
	안산시 상록구	90	88	11	6	84	10	0	4	123	5	14	1	18	454

(계속)

(단위: 건, %)

시도	시군구	비신고의무자													
		아동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이웃 친구	경찰	종교인	사회 복지 관련 종사자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장 종사자	의료 사회 복지사	낮선 사람	익명	기타	계
경기	과천시	11	11	0	1	0	1	0	0	1	0	2	0	1	28
	시흥시	8	39	0	2	7	5	1	4	86	3	4	0	6	165
	안양시 만안구	31	18	0	6	17	1	0	0	7	0	6	1	18	105
	안양시 동안구	47	34	3	2	19	1	0	0	2	0	14	0	2	124
	군포시	11	27	0	5	13	4	0	0	3	0	5	1	2	71
	의왕시	3	8	0	0	1	0	0	2	1	0	0	0	0	15
	수원시 장안구	12	22	1	7	15	1	0	0	28	0	6	2	5	99
	수원시 권선구	25	28	3	3	10	4	0	2	32	1	4	0	5	117
	수원시 팔달구	22	20	1	4	13	4	0	0	27	4	2	0	3	100
	수원시 영통구	19	28	2	4	6	3	0	0	12	1	2	0	1	78
	화성시	53	68	5	16	11	8	1	1	40	0	10	2	6	221
	용인시 기흥구	19	26	0	3	5	5	1	3	17	0	0	1	2	82
	오산시	15	38	0	8	14	5	0	1	9	0	9	0	1	100
	용인시 수지구	69	30	1	0	12	8	0	0	13	1	4	7	0	145
	용인시 처인구	9	30	4	4	11	9	0	15	24	0	1	0	2	109
	평택시	24	58	3	5	16	2	0	0	24	2	17	1	7	159
	안성시	10	13	1	3	2	2	0	3	9	1	0	0	27	71
	성남시 수정구	41	24	3	3	20	1	0	1	19	2	9	0	6	129
	성남시 중원구	2	18	0	4	7	4	0	0	8	0	6	1	5	55
	성남시 분당구	23	34	0	2	13	4	0	0	13	3	3	0	8	103
	광주시	11	21	1	6	5	0	2	0	25	0	2	3	6	82
	하남시	12	7	1	2	3	1	0	0	9	0	2	1	3	41
	이천시	27	31	4	3	19	9	0	0	15	0	0	0	1	109
	여주군	8	6	0	0	1	1	0	6	80	0	1	2	1	106
	구리시	33	17	2	1	9	2	0	3	12	0	3	3	1	86
	남양주시	63	83	6	7	30	6	0	2	70	3	4	2	4	280
	양평군	2	2	0	0	2	29	0	0	3	0	1	0	0	39
	가평군	1	4	0	1	5	2	0	0	11	0	0	0	0	24
	의정부시	17	41	1	8	15	14	0	12	101	1	1	3	34	248
	양주시	18	42	0	0	11	3	0	0	40	0	11	2	10	137
	동두천시	12	5	0	4	2	1	0	0	11	0	2	0	2	39
	연천군	9	1	0	0	5	0	0	0	26	0	1	0	0	42
	포천시	16	17	2	2	6	7	0	1	40	0	0	0	2	93
	소계	1,033	1,376	75	162	512	171	5	80	1,340	39	205	56	219	5,273
강원	춘천시	31	29	0	7	9	3	0	0	27	0	4	1	8	119
	화천군	2	3	0	0	0	0	0	0	1	0	0	0	0	6
	강릉시	5	23	0	2	8	3	0	0	111	0	4	0	3	159
	양양군	0	2	0	0	0	1	0	0	2	0	0	0	0	5
	속초시	4	5	1	4	2	1	0	0	20	0	1	0	2	40
	고성군	1	0	1	0	0	0	0	0	0	0	0	0	0	2
	원주시	20	25	3	9	12	0	0	0	93	0	4	4	8	178
	횡성군	2	2	0	0	0	1	0	0	5	0	0	0	0	10
	영월군	0	0	0	0	0	0	0	0	2	0	0	0	0	2
	평창군	2	1	0	1	1	0	0	0	10	0	0	0	0	15
	정선군	2	3	0	3	1	0	0	0	37	0	0	0	1	47
	태백시	16	5	4	0	2	4	2	0	48	0	1	0	4	86
	동해시	9	33	1	0	3	0	0	2	58	0	0	5	5	116
	삼척시	11	20	1	0	4	2	0	0	50	0	0	0	5	93

(계속)

(단위 : 건, %)

시도	시군구	비신고의무자													
		아동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이웃 친구	경찰	종교인	사회 복지 관련 종사자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장과 종사자	의료 사회 복지사	낮선 사람	익명	기타	계
강원	홍천군	3	4	0	2	0	0	0	2	4	3	0	0	1	19
	인제군	0	0	1	0	1	0	0	0	7	0	0	0	0	9
	양구군	1	2	0	0	0	0	0	0	7	0	0	0	0	10
	철원군	0	4	0	4	0	0	0	0	5	0	0	0	0	13
	소계	109	161	12	32	43	15	2	4	487	3	14	10	37	929
충북	청주시 상당구	10	16	1	0	5	1	0	0	10	1	1	2	4	51
	청주시 흥덕구	17	17	3	3	10	1	2	3	22	0	1	0	4	83
	청주시 서원구	14	13	1	0	4	2	0	1	51	2	1	1	1	91
	청주시 청원구	16	23	0	5	10	2	0	0	28	0	2	2	4	92
	청원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진천군	8	14	2	0	5	0	0	0	23	0	0	0	0	52
	괴산군	2	0	0	1	0	0	0	0	3	0	2	0	0	8
	증평군	0	0	0	0	1	0	0	0	1	0	0	0	0	2
	음성군	8	15	0	17	3	1	0	1	31	0	0	1	0	77
	영동군	5	5	1	0	9	1	0	0	27	0	0	0	1	49
	옥천군	7	7	3	0	3	0	0	0	25	0	0	0	2	47
	보은군	1	2	0	1	3	0	0	2	22	0	1	0	0	32
	충주시	19	37	1	9	12	8	0	1	60	0	1	0	4	152
	제천시	8	35	1	1	2	6	0	0	73	0	0	1	5	132
	단양군	0	1	0	0	0	1	0	0	18	0	0	1	0	21
	소계	115	185	13	37	67	23	2	8	394	3	9	8	25	889
충남	금산군	4	11	0	0	0	0	0	0	4	0	0	0	0	19
	공주시	10	9	0	0	2	0	0	1	5	0	2	0	1	30
	논산시	22	24	4	2	7	3	0	1	28	1	1	0	7	100
	계룡시	3	3	0	0	0	0	0	0	2	0	0	0	0	8
	부여군	15	28	7	7	0	2	0	0	14	0	0	0	0	73
	서천군	3	3	0	0	0	0	0	0	1	0	0	0	1	8
	천안시 동남구	24	16	1	1	11	2	0	0	5	0	2	4	5	71
	천안시 서북구	20	19	6	3	16	3	3	0	76	0	4	0	5	155
	아산시	15	45	4	2	10	2	0	2	43	1	5	1	5	135
	예산군	7	6	0	0	0	2	0	0	28	0	6	0	0	49
	당진시	4	19	0	5	0	2	0	1	5	0	2	0	2	40
	청양군	1	1	0	5	0	0	0	0	0	0	0	0	2	9
	홍성군	1	12	1	3	4	8	0	0	25	0	2	0	3	59
	보령시	2	8	0	0	3	0	0	4	11	0	0	0	0	28
	서산시	13	29	1	12	8	0	0	2	55	0	1	1	4	126
	태안군	4	2	0	2	0	0	0	2	5	0	0	0	0	15
	세종특별자치시	14	28	2	6	0	0	0	0	10	0	6	1	1	68
	소계	162	263	26	48	61	24	3	13	317	2	31	7	36	993
전북	전주시 완산구	28	55	4	12	14	8	1	3	87	0	7	7	10	236
	전주시 덕진구	32	46	2	9	14	5	0	1	78	1	4	3	5	200
	완주군	5	15	0	1	1	1	0	0	21	0	0	0	3	47
	임실군	0	5	0	1	0	2	0	0	7	0	0	0	1	16
	진안군	5	4	0	1	0	0	0	0	0	0	0	0	0	10
	무주군	2	4	4	2	0	2	0	2	17	0	0	8	0	41
	익산시	23	51	2	7	26	10	0	3	102	0	3	3	3	233
	군산시	12	48	1	5	7	7	0	7	78	0	4	2	3	174

(계속)

(단위 : 건, %)

시도	시군구	비신고의무자													
		아동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이웃 친구	경찰	종교인	사회 복지 관련 종사자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장 과 종사자	의료 사회 복지사	노년 사람	익명	기타	계
전북	김제시	11	20	2	1	14	7	0	1	28	0	0	1	1	86
	부안군	3	5	0	5	0	4	0	0	21	0	2	0	3	43
	정읍시	12	7	4	0	2	4	0	0	22	1	0	0	5	57
	고창군	0	3	0	2	2	0	0	0	3	0	0	0	0	10
	남원시	26	30	0	5	6	6	0	0	125	0	2	1	4	205
	순창군	13	16	0	0	0	0	1	0	27	0	0	0	0	57
	장수군	0	0	0	0	6	0	0	0	2	0	0	0	0	8
	소계	172	309	19	51	92	56	2	17	618	2	22	25	38	1,423
전남	영광군	23	7	0	1	5	0	0	0	25	0	0	1	2	64
	장성군	1	4	0	0	0	0	0	0	0	0	0	0	0	5
	곡성군	2	0	0	2	0	0	0	0	0	0	0	0	0	4
	담양군	0	2	0	0	1	0	0	0	2	0	2	0	0	7
	화순군	1	4	0	0	4	1	0	2	7	0	1	0	1	21
	나주시	5	13	0	6	0	1	2	6	62	0	2	1	22	120
	함평군	0	2	2	1	0	0	0	0	5	0	0	0	0	10
	영암군	4	4	0	0	0	0	0	0	4	0	0	0	37	49
	강진군	5	6	1	1	1	0	0	1	21	0	0	0	6	42
	장흥군	17	7	2	1	0	0	0	0	26	0	0	0	1	54
	목포시	68	95	14	21	21	7	0	9	74	0	37	16	11	373
	무안군	1	14	4	1	2	0	0	2	2	0	2	0	0	28
	신안군	2	4	4	0	0	0	0	0	0	0	0	0	0	10
	해남군	3	6	0	1	0	3	0	15	7	0	0	0	0	35
	완도군	1	5	2	0	2	0	0	0	0	0	0	1	0	11
	진도군	3	9	0	0	2	1	0	0	0	0	0	0	5	20
	순천시	31	31	3	5	9	2	0	0	53	0	3	0	10	147
	구례군	5	2	0	1	0	2	0	0	0	0	0	0	0	10
	광양시	3	15	1	0	2	12	0	2	5	0	4	1	2	47
	보성군	11	5	0	0	0	0	0	1	3	0	0	0	2	22
	고흥군	0	3	0	5	0	0	0	0	9	0	0	0	1	18
	여주시	22	25	1	17	28	1	0	1	24	2	4	4	2	131
	소계	208	263	34	63	77	30	2	39	329	2	55	24	102	1,228
경북	경산시	6	21	1	2	3	1	1	2	14	0	1	0	2	54
	청도군	1	2	0	0	0	0	0	0	0	0	0	0	0	3
	군위군	2	1	0	2	1	0	0	0	0	0	0	0	1	7
	고령군	1	3	0	0	0	0	0	0	1	0	1	0	0	6
	칠곡군	14	26	0	0	13	1	0	1	9	0	7	1	10	82
	성주군	2	1	0	2	0	2	0	0	14	0	0	0	0	21
	구미시	32	60	4	1	12	12	0	10	94	1	10	0	4	240
	김천시	5	16	0	2	3	2	0	3	24	0	2	0	0	57
	상주시	4	3	0	1	1	0	0	1	16	0	10	1	1	38
	문경시	2	12	0	0	1	0	0	1	22	0	1	1	0	40
	영주시	0	6	0	2	0	3	0	3	37	0	0	0	0	51
	봉화군	0	1	0	0	0	13	0	0	11	0	0	0	1	26
	예천군	4	6	0	1	1	2	0	2	30	0	1	0	0	47
	안동시	7	27	0	6	2	4	0	0	114	0	2	0	0	162

(계속)

(단위: 건, %)

시도	시군구	비신고의무자													
		아동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이웃 친구	경찰	종교인	사회 복지 관련 종사자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장과 종사자	의료 사회 복지사	낯선 사람	익명	기타	계
경북	청송군	0	0	0	0	0	0	0	0	3	0	0	0	0	3
	영양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영덕군	2	7	0	0	1	0	0	0	8	0	0	0	1	19
	울진군	1	0	0	0	2	6	0	0	0	0	0	0	0	9
	의성군	0	0	0	0	1	0	0	0	0	0	0	0	0	1
	영천시	1	12	0	2	0	1	0	0	3	0	1	0	0	20
	경주시	5	20	0	2	3	4	0	2	22	0	3	0	9	70
	포항시 남구	51	53	3	6	22	3	0	16	144	0	2	0	4	304
	포항시 북구	38	41	6	3	14	5	0	4	119	0	1	2	5	238
	울릉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경남	소계	178	318	14	32	80	59	1	45	685	1	42	5	38	1,498
	김해시	37	37	2	8	16	4	0	2	76	0	4	7	3	196
	양산시	2	27	0	6	11	2	0	4	29	2	0	1	13	97
	밀양시	7	5	2	0	1	1	0	0	5	0	0	0	0	21
	창원시 마산회원구	5	11	2	1	6	0	0	0	27	1	0	0	1	54
	창원시 마산합포구	1	3	0	1	3	1	0	0	10	0	1	0	0	20
	창녕군	0	0	0	0	0	0	0	0	4	0	0	0	0	4
	의령군	1	2	0	0	0	2	0	0	0	0	0	0	0	5
	함안군	1	1	0	3	0	1	0	0	6	0	0	0	0	12
	고성군	2	2	0	1	2	0	0	0	2	0	1	0	1	11
	창원시 의창구	5	17	0	4	5	2	0	0	26	0	5	2	5	71
	창원시 성산구	0	6	1	0	0	1	0	0	7	0	0	0	1	16
	창원시 진해구	5	13	0	2	0	3	0	0	12	0	4	0	3	42
	통영시	1	13	0	1	5	3	0	0	25	0	3	2	1	54
	거제시	7	34	1	3	7	8	0	7	27	0	1	0	2	97
	진주시	34	20	6	6	13	9	0	1	44	0	4	0	3	140
	사천시	2	21	1	1	1	2	0	0	12	0	2	0	1	43
	산청군	0	2	0	0	3	0	0	1	0	0	1	0	1	8
	하동군	0	0	0	0	2	31	0	0	2	0	0	0	0	35
	남해군	1	0	0	0	0	0	0	0	0	0	0	0	1	2
	거창군	0	3	0	0	0	0	0	0	1	0	3	0	0	7
	함양군	0	3	0	0	0	0	0	0	0	0	0	0	0	3
	합천군	0	0	0	1	0	0	0	0	1	0	0	0	0	2
	소계	111	220	15	38	75	70	0	15	316	3	29	12	36	940
제주	제주시	46	73	7	17	23	4	1	0	46	0	10	2	12	241
	서귀포시	41	36	4	5	20	1	0	0	57	0	7	1	17	189
	소계	87	109	11	22	43	5	1	0	103	0	17	3	29	430
계		3,883	5,328	359	738	1,963	645	24	323	6,881	79	685	271	914	22,093

3) 경찰통보건수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이후 112로 아동학대 신고전화와 통합되면서 112상황실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신고내용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고 신고접수 당시 아동의 안전에 위험이 의심되는 응급아동학대 신고인 경우 동행 출동을 요청한다.

이에 따라 2017년에 경찰이 112 상황실에서 신고접수를 받거나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관할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한 건수는 전체 16,873건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경찰 통보 건수 중 신고자가 112 또는 경찰서 내방 등의 방법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한 경우 16,676건(98.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경찰이 수사과정 등에서 아동학대사실을 알게 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통보한 경우는 184건(1.1%)으로 나타났다.

〈표 2-10〉 경찰통보건수

(단위 : 건, %)

아동보호전문기관				112	119	129	1366	상담원 인지신고**	기타	계
일반전화	인터넷	내방	소계							
176 (1.0)	0 (0.0)	8 (0.0)	184 (1.1)	16,676 (98.8)	3 (0.0)	0 (0.0)	10 (0.1)	0 (0.0)	0 (0.0)	16,873 (100.0)

* 아동복지법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업무수행 중 아동학대의심사항을 확인하여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접수 경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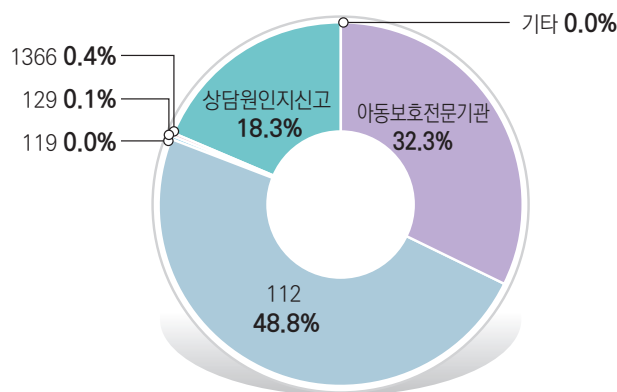
아동학대 신고는 주로 전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전화를 통한 신고는 범죄신고전화 112, 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전화, 119 안전신고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업무수행 중 아동학대의심사항을 확인하여 신고하는 경우인 상담원 인지신고, 기타 항목이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 9.29.)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로 통합이 되었다.

2017년 112를 통한 신고는 총 16,676건(48.8%)으로 나타났으며, 최초로 112를 통한 신고접수가 아동 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신고접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하여 신고접수 된 비율은 전체 신고의 32.3%으로 총 11,038건이었다. 이 중 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전화로 신고접수 된 건수는 10,666건(31.2%), 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9건(0.0%),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내방하여 신고한 건수는 363건(1.1%)이었다. 이외에 상담원 인지신고 6,258건(18.4%), 1366을 통한 신고는 130건(0.4%), 보건복지콜센터에서 운영하는 129를 통한 신고는 47건(0.1%), 119를 통한 신고는 11건(0.0%)순으로 나타났다.

〈표 2-11〉 신고접수 경로 유형

(단위 : 건, %)

아동보호전문기관				112	119	129	1366	상담원 인지신고*	기타**	계
일반전화	인터넷	내방	소계							
10,666 (31.2)	9 (0.0)	363 (1.1)	11,038 (32.3)	16,676 (48.8)	11 (0.0)	47 (0.1)	130 (0.4)	6,258 (18.3)	9 (0.0)	34,169 (100.0)



[그림 2-5] 신고접수 경로 유형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업무수행 중 아동학대의심사항을 확인하여 신고하는 경우.

** 생활민원신고 110,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을 통해 아동학대의심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등을 포함.

〈표 2-12〉 기관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단위 : 건, %)

신고 경로 지역 및 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112		119		129		1366		상담원 인지신고			기타		계	
		일반전화		인터넷		내방		소계															
중 앙*		1	(10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서울	서울특별시	62	(12.0)	0	(0.0)	17	(3.3)	79	(15.3)	408	(79.1)	1	(0.2)	2	(0.4)	0	(0.0)	26	(5.0)	0	(0.0)	516	(100.0)
	서울특별시 동부	237	(22.6)	0	(0.0)	4	(0.4)	241	(23.0)	716	(68.3)	2	(0.2)	0	(0.0)	0	(0.0)	86	(8.2)	3	(0.3)	1,048	(100.0)
	서울강서	173	(34.0)	0	(0.0)	59	(11.6)	232	(45.6)	193	(37.9)	0	(0.0)	1	(0.2)	0	(0.0)	83	(16.3)	0	(0.0)	509	(100.0)
	서울은평	135	(23.4)	0	(0.0)	11	(1.9)	146	(25.3)	273	(47.2)	0	(0.0)	2	(0.3)	0	(0.0)	156	(27.0)	1	(0.2)	578	(100.0)
	서울영등포	159	(42.0)	0	(0.0)	1	(0.3)	160	(42.2)	163	(43.0)	0	(0.0)	0	(0.0)	0	(0.0)	56	(14.8)	0	(0.0)	379	(100.0)
	서울성북	117	(29.7)	0	(0.0)	0	(0.0)	117	(29.7)	183	(46.4)	0	(0.0)	1	(0.3)	0	(0.0)	93	(23.6)	0	(0.0)	394	(100.0)
	서울마포	144	(34.2)	0	(0.0)	3	(0.7)	147	(34.9)	197	(46.8)	0	(0.0)	1	(0.2)	0	(0.0)	76	(18.1)	0	(0.0)	421	(100.0)
	서울동남권**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1,027	(26.7)	0	(0.0)	95	(2.5)	1,123	(29.2)	2,133	(55.5)	3	(0.1)	7	(0.2)	0	(0.0)	576	(15.0)	4	(0.1)	3,846	(100.0)
부산	부산광역시	254	(23.7)	0	(0.0)	16	(1.5)	270	(25.2)	720	(67.1)	0	(0.0)	0	(0.0)	1	(0.1)	82	(7.6)	0	(0.0)	1,073	(100.0)
	부산동부	232	(43.7)	1	(0.2)	0	(0.0)	233	(43.9)	245	(46.1)	0	(0.0)	0	(0.0)	2	(0.4)	51	(9.6)	0	(0.0)	531	(100.0)
	부산서부	321	(46.2)	0	(0.0)	3	(0.4)	324	(46.6)	190	(27.3)	0	(0.0)	4	(0.6)	1	(0.1)	176	(25.3)	0	(0.0)	695	(100.0)
	부산남부**	-	-	-	-	-	-	-	-	-	-	-	-	-	-	-	-	-	-	-	-	-	
	소계	807	(35.1)	1	(0.0)	19	(0.8)	827	(36.0)	1,155	(50.2)	0	(0.0)	4	(0.2)	4	(0.2)	309	(13.4)	0	(0.0)	2,299	(100.0)
대구	대구광역시	162	(31.9)	0	(0.0)	1	(0.2)	163	(32.1)	239	(47.0)	0	(0.0)	0	(0.0)	2	(0.4)	104	(20.5)	0	(0.0)	508	(100.0)
	대구남부	321	(43.7)	0	(0.0)	0	(0.0)	321	(43.7)	289	(39.4)	0	(0.0)	3	(0.4)	0	(0.0)	121	(16.5)	0	(0.0)	734	(100.0)
	대구북부	129	(26.1)	0	(0.0)	2	(0.4)	131	(26.5)	262	(52.9)	0	(0.0)	1	(0.2)	4	(0.8)	97	(19.6)	0	(0.0)	495	(100.0)
	소계	612	(35.2)	0	(0.0)	3	(0.2)	615	(35.4)	790	(45.5)	0	(0.0)	4	(0.2)	6	(0.3)	322	(18.5)	0	(0.0)	1,737	(100.0)
인천	인천광역시	244	(25.0)	0	(0.0)	7	(0.7)	251	(25.7)	632	(64.7)	0	(0.0)	1	(0.1)	0	(0.0)	93	(9.5)	0	(0.0)	977	(100.0)
	인천북부	296	(28.0)	0	(0.0)	3	(0.3)	299	(28.2)	632	(59.7)	0	(0.0)	2	(0.2)	1	(0.1)	125	(11.8)	0	(0.0)	1,059	(100.0)
	인천남부	286	(41.5)	0	(0.0)	3	(0.4)	289	(41.9)	285	(41.4)	0	(0.0)	2	(0.3)	2	(0.3)	111	(16.1)	0	(0.0)	689	(100.0)
	소계	826	(30.3)	0	(0.0)	13	(0.5)	839	(30.8)	1,549	(56.8)	0	(0.0)	5	(0.2)	3	(0.1)	329	(12.1)	0	(0.0)	2,725	(100.0)
광주	광주광역시	134	(32.1)	0	(0.0)	3	(0.7)	137	(32.9)	233	(55.9)	0	(0.0)	0	(0.0)	3	(0.7)	44	(10.6)	0	(0.0)	417	(100.0)
	빛고을	129	(20.8)	0	(0.0)	2	(0.3)	131	(21.2)	265	(42.8)	1	(0.2)	1	(0.2)	3	(0.5)	218	(35.2)	0	(0.0)	619	(100.0)
	소계	263	(25.4)	0	(0.0)	5	(0.5)	268	(25.9)	498	(48.1)	1	(0.1)	1	(0.1)	6	(0.6)	262	(25.3)	0	(0.0)	1,036	(100.0)
대전	대전광역시	208	(21.9)	0	(0.0)	0	(0.0)	208	(21.9)	714	(75.2)	1	(0.1)	3	(0.3)	0	(0.0)	23	(2.4)	0	(0.0)	949	(100.0)
울산	울산광역시	66	(10.6)	0	(0.0)	1	(0.2)	67	(10.8)	392	(63.2)	0	(0.0)	0	(0.0)	4	(0.6)	157	(25.3)	0	(0.0)	620	(100.0)
	울산남부***	67	(20.1)	0	(0.0)	3	(0.9)	70	(21.0)	187	(56.2)	0	(0.0)	0	(0.0)	0	(0.0)	76	(22.8)	0	(0.0)	333	(100.0)
	소계	133	(14.0)	0	(0.0)	4	(0.4)	137	(14.4)	579	(60.8)	0	(0.0)	0	(0.0)	4	(0.4)	233	(24.4)	0	(0.0)	953	(100.0)
경기	경기도	114	(23.8)	0	(0.0)	0	(0.0)	114	(23.8)	351	(73.3)	0	(0.0)	0	(0.0)	1	(0.2)	13	(2.7)	0	(0.0)	479	(100.0)
	경기북부	244	(30.5)	2	(0.3)	3	(0.4)	249	(31.2)	334	(41.8)	0	(0.0)	0	(0.0)	1	(0.1)	215	(26.9)	0	(0.0)	799	(100.0)
	경기성남	217	(29.0)	0	(0.0)	5	(0.7)	222	(29.6)	451	(60.2)	0	(0.0)	0	(0.0)	1	(0.1)	75	(10.0)	0	(0.0)	749	(100.0)
	경기고양	148	(29.3)	0	(0.0)	2	(0.4)	150	(29.7)	313	(62.0)	0	(0.0)	2	(0.4)	1	(0.2)	34	(6.7)	5	(1.0)	505	(100.0)
	경기부천	211	(33.9)	0	(0.0)	4	(0.6)	215	(34.6)	288	(46.3)	0	(0.0)	0	(0.0)	3	(0.5)	116	(18.6)	0	(0.0)	622	(100.0)
	경기화성	199	(37.3)	0	(0.0)	8	(1.5)	207	(38.8)	282	(52.8)	0	(0.0)	1	(0.2)	1	(0.2)	43	(8.1)	0	(0.0)	534	(100.0)
	경기남양주	132	(24.5)	0	(0.0)	10	(1.9)	142	(26.4)	309	(57.4)	0	(0.0)	0	(0.0)	0	(0.0)	87	(16.2)	0	(0.0)	538	(100.0)
	안산시	438	(32.8)	0	(0.0)	2	(0.1)	440	(33.0)	726	(54.4)	1	(0.1)	1	(0.1)	3	(0.2)	164	(12.3)	0	(0.0)	1,335	(100.0)
	경기용인	153	(20.5)	0	(0.0)	3	(0.4)	156	(20.9)	441	(59.1)	0	(0.0)	0	(0.0)	2	(0.3)	147	(19.7)	0	(0.0)	746	(100.0)
	경기시흥	170	(37.9)	1	(0.2)	5	(1.1)	176	(39.3)	152	(33.9)	0	(0.0)	1	(0.2)	0	(0.0)	119	(26.6)	0	(0.0)	448	(100.0)
	경기평택	96	(26.4)	0	(0.0)	0	(0.0)	96	(26.4)	234	(64.3)	0	(0.0)	1	(0.3)	0	(0.0)	33	(9.1)	0	(0.0)	364	(100.0)
	수원	216	(36.7)	0	(0.0)	3	(0.5)	219	(37.2)	283	(48.0)	0	(0.0)	0	(0.0)	5	(0.8)	82	(13.9)	0	(0.0)	589	(100.0)
	소계	2,338	(30.3)	3	(0.0)	45	(0.6)	2,386	(31.0)	4,164	(54.0)	1	(0.0)	6	(0.1)	18	(0.2)	1,128	(14.6)	5	(0.1)	7,708	(100.0)
강원	강원도	100	(38.0)	0	(0.0)	5	(1.9)	105	(39.9)	116	(44.1)	0	(0.0)	0	(0.0)	1	(0.4)	41	(15.6)	0	(0.0)	263	(100.0)
	강원동부	113	(35.1)	0	(0.0)	3	(0.9)	116	(36.0)	69	(21.4)	0	(0.0)	2	(0.6)	0	(0.0)	135	(41.9)	0	(0.0)	322	(100.0)
	강원서부	124	(37.3)	0	(0.0)	3	(0.9)	127	(38.3)	102	(30.7)	1	(0.3)	1	(0.3)	7	(2.1)	94	(28.3)	0	(0.0)	332	(100.0)
	강원남부	92	(22.1)	0	(0.0)	4	(1.0)	96	(23.1)	141	(33.9)	0	(0.0)	0	(0.0)	0	(0.0)	179	(43.0)	0	(0.0)	416	(100.0)
	소계	429	(32.2)	0	(0.0)	15	(1.1)	444	(33.3)	428	(32.1)	1	(0.1)	3	(0.2)	8	(0.6)	449	(33.7)	0	(0.0)	1,333	(100.0)

(계속)

(단위 : 건, %)

신고 경로 지역 및 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112		119		129		1366		상담원 인지신고		기타		계		
		일반전화	인터넷	내방	소계																		
충북	충청북도	208	(30.8)	0	(0.0)	3	(0.4)	211	(31.2)	302	(44.7)	0	(0.0)	2	(0.3)	0	(0.0)	161	(23.8)	0	(0.0)	676	(100.0)
	충북북부	209	(44.1)	0	(0.0)	4	(0.8)	213	(44.9)	116	(24.5)	0	(0.0)	0	(0.0)	1	(0.2)	144	(30.4)	0	(0.0)	474	(100.0)
	충북남부	122	(50.8)	0	(0.0)	3	(1.3)	125	(52.1)	42	(17.5)	0	(0.0)	0	(0.0)	0	(0.0)	73	(30.4)	0	(0.0)	240	(100.0)
	소계	539	(38.8)	0	(0.0)	10	(0.7)	549	(39.5)	460	(33.1)	0	(0.0)	2	(0.1)	1	(0.1)	378	(27.2)	0	(0.0)	1,390	(100.0)
충남	충청남도	215	(26.8)	0	(0.0)	9	(1.1)	224	(27.9)	425	(52.9)	1	(0.1)	0	(0.0)	11	(1.4)	142	(17.7)	0	(0.0)	803	(100.0)
	충청남도남부	115	(28.7)	0	(0.0)	2	(0.5)	117	(29.2)	207	(51.6)	0	(0.0)	0	(0.0)	14	(3.5)	63	(15.7)	0	(0.0)	401	(100.0)
	충청남도서부	147	(32.4)	0	(0.0)	5	(1.1)	152	(33.5)	169	(37.2)	2	(0.4)	1	(0.2)	3	(0.7)	127	(28.0)	0	(0.0)	454	(100.0)
	소계	477	(28.8)	0	(0.0)	16	(1.0)	493	(29.7)	801	(48.3)	3	(0.2)	1	(0.1)	28	(1.7)	332	(20.0)	0	(0.0)	1,658	(100.0)
전북	전라북도	306	(35.9)	0	(0.0)	15	(1.8)	321	(37.6)	336	(39.4)	0	(0.0)	3	(0.4)	3	(0.4)	190	(22.3)	0	(0.0)	853	(100.0)
	전라북도서부	294	(36.1)	0	(0.0)	12	(1.5)	306	(37.6)	274	(33.7)	1	(0.1)	1	(0.1)	6	(0.7)	226	(27.8)	0	(0.0)	814	(100.0)
	전라북도동부	175	(38.5)	0	(0.0)	11	(2.4)	186	(41.0)	114	(25.1)	0	(0.0)	0	(0.0)	0	(0.0)	154	(33.9)	0	(0.0)	454	(100.0)
	소계	775	(36.5)	0	(0.0)	38	(1.8)	813	(38.3)	724	(34.1)	1	(0.0)	4	(0.2)	9	(0.4)	570	(26.9)	0	(0.0)	2,121	(100.0)
전남	전라남도	240	(41.0)	0	(0.0)	15	(2.6)	255	(43.5)	238	(40.6)	0	(0.0)	0	(0.0)	1	(0.2)	92	(15.7)	0	(0.0)	586	(100.0)
	전남서부권	234	(28.0)	0	(0.0)	15	(1.8)	249	(29.8)	478	(57.2)	0	(0.0)	0	(0.0)	18	(2.2)	91	(10.9)	0	(0.0)	836	(100.0)
	전남중부권	197	(40.6)	0	(0.0)	6	(1.2)	203	(41.9)	156	(32.2)	0	(0.0)	2	(0.4)	0	(0.0)	124	(25.6)	0	(0.0)	485	(100.0)
	소계	671	(35.2)	0	(0.0)	36	(1.9)	707	(37.1)	872	(45.7)	0	(0.0)	2	(0.1)	19	(1.0)	307	(16.1)	0	(0.0)	1,907	(100.0)
경북	경북남부	150	(44.5)	1	(0.3)	3	(0.9)	154	(45.7)	146	(43.3)	0	(0.0)	0	(0.0)	0	(0.0)	37	(11.0)	0	(0.0)	337	(100.0)
	경북북부	186	(36.2)	0	(0.0)	10	(1.9)	196	(38.1)	96	(18.7)	0	(0.0)	1	(0.2)	0	(0.0)	221	(43.0)	0	(0.0)	514	(100.0)
	경북동부	379	(43.3)	0	(0.0)	7	(0.8)	386	(44.1)	242	(27.7)	0	(0.0)	0	(0.0)	0	(0.0)	247	(28.2)	0	(0.0)	875	(100.0)
	경북서부	295	(38.5)	2	(0.3)	11	(1.4)	308	(40.2)	307	(40.0)	0	(0.0)	0	(0.0)	13	(1.7)	139	(18.1)	0	(0.0)	767	(100.0)
	소계	1,010	(40.5)	3	(0.1)	31	(1.2)	1,044	(41.9)	791	(31.7)	0	(0.0)	1	(0.0)	13	(0.5)	644	(25.8)	0	(0.0)	2,493	(100.0)
경남	경상남도	213	(28.6)	1	(0.1)	5	(0.7)	219	(29.4)	346	(46.4)	0	(0.0)	0	(0.0)	3	(0.4)	177	(23.8)	0	(0.0)	745	(100.0)
	경남서부	116	(31.4)	0	(0.0)	13	(3.5)	129	(34.9)	184	(49.7)	0	(0.0)	0	(0.0)	0	(0.0)	57	(15.4)	0	(0.0)	370	(100.0)
	김해시	81	(29.7)	0	(0.0)	9	(3.3)	90	(33.0)	108	(39.6)	0	(0.0)	1	(0.4)	4	(1.5)	70	(25.6)	0	(0.0)	273	(100.0)
	소계	410	(29.5)	1	(0.1)	27	(1.9)	438	(31.6)	638	(46.0)	0	(0.0)	1	(0.1)	7	(0.5)	304	(21.9)	0	(0.0)	1,388	(100.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62	(16.8)	1	(0.3)	4	(1.1)	67	(18.2)	253	(68.8)	0	(0.0)	3	(0.8)	3	(0.8)	42	(11.4)	0	(0.0)	368	(100.0)
	서귀포시	78	(30.2)	0	(0.0)	2	(0.8)	80	(31.0)	127	(49.2)	0	(0.0)	0	(0.0)	1	(0.4)	50	(19.4)	0	(0.0)	258	(100.0)
	소계	140	(22.4)	1	(0.2)	6	(1.0)	147	(23.5)	380	(60.7)	0	(0.0)	3	(0.5)	4	(0.6)	92	(14.7)	0	(0.0)	626	(100.0)
계		10,666	(31.2)	9	(0.0)	363	(1.1)	11,038	(32.3)	16,676	(48.8)	11	(0.0)	47	(0.1)	130	(0.4)	6,258	(18.3)	9	(0.0)	34,169	(100.0)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사례에 대해서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함.

**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받아 현장조사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받아 현장조사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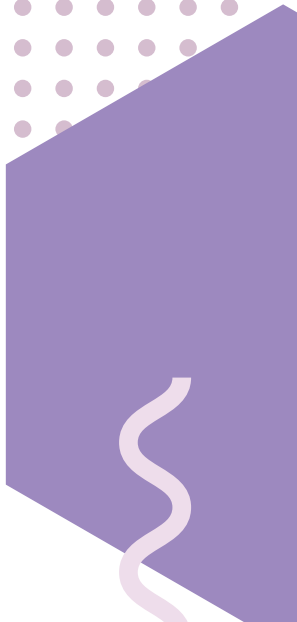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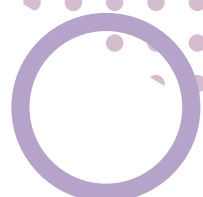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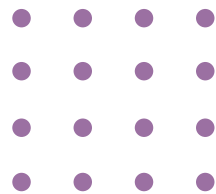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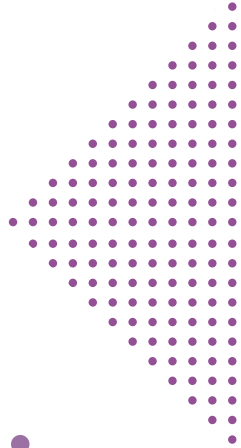
*** 2017년 3월 1일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소함.

3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Child Abuse & Neglect Korea 2017

- 현장조사
- 사례판단
- 피해아동 발견율





제3장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1. 현장조사

1) 현장조사 횟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한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통해 아동학대의심사례의 학대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 등을 수집하고, 신고접수된 의심사례 외에 추가적인 학대발생 여부를 파악한다. 또한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현장조사의 경우 학대여부를 판단할 시 신뢰할 수 있을만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므로 경우에 따라 1회 이상 이루어지기도 한다.

2017년의 경우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이하 아동학대의심사례)에 해당하는 30,923건에 따른 아동학대의심사례와 관련해 총 97,692회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의심사례 1건 당 약 3회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산출되었다(〈표 3-1〉 참조).

〈표 3-1〉 현장조사 횟수

(단위 : 건, 회)

아동학대의심사례	현장조사*	아동학대의심사례 1건 당 현장조사 실시
30,923	97,692	3.2

2017년 현장조사 동행 현황은 〈표 3-2〉와 같다. 상담원이 현장조사를 진행한 사례가 57,333건(58.7%)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다음으로 상담원과 경찰이 동행 출동한 사례가 22,418건(22.9%), 경찰이 단독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한 사례가 13,166건(13.5%)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의 경우 경찰 단독의 아동학대의심사례 1차 현장조사 및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현장조사 상호동행 건수는 2016년 대비 각각 약 130%, 54% 증가하였다.

* 2017년 7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개편에 따라 현장조사 횟수는 대상자별로 산출되었음.

집단시설(보육·교육시설 및 복지시설 등)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및 개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은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시 동행하고 있다. 상담원과 공무원이 동행한 사례는 1,213건(1.2%), 경찰과 공무원이 동행한 사례는 235건(0.2%), 상담원·경찰·공무원이 모두 동행한 사례는 3,327건(3.4%)으로 집계되었다.

〈표 3-2〉 현장조사 동행 현황

(단위 : 건, %)

상담원	경찰	상담원·경찰	상담원·공무원	경찰·공무원	상담원·경찰·공무원	계
57,333 (58.7)	13,166 (13.5)	22,418 (22.9)	1,213 (1.2)	235 (0.2)	3,327 (3.4)	97,692 (100.0)

2) 기관별 현장조사 횟수

〈표 3-3〉은 2017년의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한 기관별 현장조사 실시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각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의심사례 1건당 평균적으로 3.2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4.8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4.2회, 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남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각각 4.1회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 기관별 현장조사 횟수

(단위 : 건, 회)

지역 및 기관	구분	아동학대의심 사례	현장조사	아동학대의심사례 1건당 현장조사 실시
서울	서울특별시	502	1,536	3.1
	서울특별시동부	856	3,553	4.2
	서울강서	464	1,267	2.7
	서울은평	546	1,882	3.4
	서울영등포	308	1,272	4.1
	서울성북	360	1,244	3.5
	서울마포	360	928	2.6
	서울동남권*	-	-	-
부산	소계	3,396	11,682	3.4
	부산광역시	1,040	2,159	2.1
	부산동부	490	1,332	2.7
	부산서부	574	1,262	2.2
	부산남부*	-	-	-
대구	소계	2,104	4,753	2.3
	대구광역시	459	1,314	2.9
	대구남부	682	2,207	3.2
	대구북부	462	1,561	3.4
	소계	1,603	5,082	3.2
인천	인천광역시	818	2,130	2.6
	인천북부	913	3,232	3.5
	인천남부	539	1,646	3.1
	소계	2,270	7,008	3.1
광주	광주광역시	400	1,181	3.0
	빛고을	545	1,377	2.5
	소계	945	2,558	2.7

(계속)

(단위: 건, %)

지역 및 기관	구분	아동학대의심 사례	현장조사	아동학대의심사례 1건당 현장조사 실시
대 전	대전광역시	855	2,791	3.3
울 산	울산광역시	558	1,769	3.2
	울산남부**	306	793	2.6
	소계	864	2,562	3.0
경 기	경기도	427	1,770	4.1
	경기북부	745	2,980	4.0
	경기성남	663	2,190	3.3
	경기고양	439	1,563	3.6
	경기부천	548	2,247	4.1
	경기화성	458	1,822	4.0
	경기남양주	518	1,889	3.6
	안산시	1,267	3,358	2.7
	경기용인	714	2,036	2.9
	경기시흥	394	1,039	2.6
	경기평택	352	875	2.5
	수원	548	1,753	3.2
	소계	7,073	23,522	3.3
강 원	강원도	243	824	3.4
	강원동부	300	917	3.1
	강원서부	309	1,122	3.6
	강원남부	408	851	2.1
	소계	1,260	3,714	2.9
충 북	충청북도	645	1,916	3.0
	충북북부	434	1,089	2.5
	충북남부	204	577	2.8
	소계	1,283	3,582	2.8
충 남	충청남도	695	3,344	4.8
	충청남도남부	359	1,348	3.8
	충청남도서부	424	1,724	4.1
	소계	1,478	6,416	4.3
전 북	전라북도	750	2,223	3.0
	전라북도서부	751	2,685	3.6
	전라북도동부	430	1,247	2.9
	소계	1,931	6,155	3.2
전 남	전라남도	561	1,500	2.7
	전남서부권	767	2,599	3.4
	전남중부권	462	1,883	4.1
	소계	1,790	5,982	3.3
경 북	경북남부	265	971	3.7
	경북북부	457	958	2.1
	경북동부	831	1,928	2.3
	경북서부	634	1,781	2.8
	소계	2,187	5,638	2.6
경 남	경상남도	741	3,046	4.1
	경남서부	360	932	2.6
	김해시	255	895	3.5
	소계	1,356	4,873	3.6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300	776	2.6
	서귀포시	228	598	2.6
	소계	528	1,374	2.6
계		30,923	97,692	3.2

*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받아 현장조사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받아 현장조사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7년 3월 1일 개소됨.

2. 사례판단

1) 사례판단 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이때 사례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된 내용과 척도 등을 토대로 현장 판단의 과정을 거치고 기관 내 자체사례회의 및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활용하여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및 일반사례로 판단한다.

아동학대사례는 학대의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근거 또는 증거가 분명한 경우를 말하며, 아동학대사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및 방임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현황은 본 보고서 제 4장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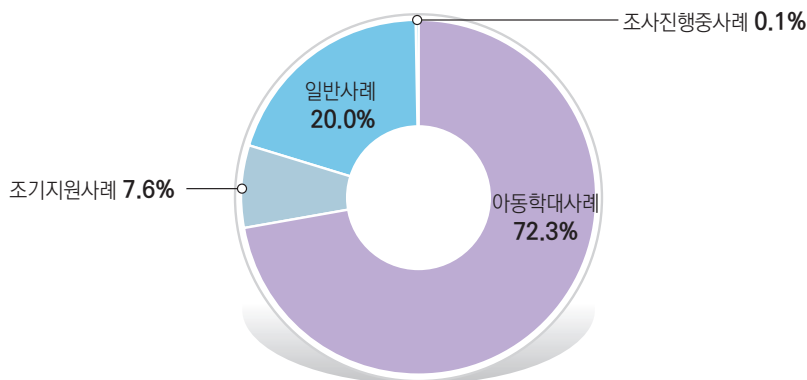
조기지원사례는 아동학대혐의가 없으나 고위험군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외부지원이 필요한 사례이다. 일반사례는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접수되었으나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경우이며, 조사진행중사례는 2017년에 신고접수 되었으나 아동학대조사가 진행 중으로 미판단된 사례이다.

〈표 3-4〉와 같이 2017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사례판단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학대의심사례인 30,923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학대 사례는 총 22,367건으로 전체 아동학대의심사례의 72.3%를 차지하였고, 조기지원사례와 일반사례는 각각 2,336건(7.6%), 6,176건(20.0%)으로 나타났다.

〈표 3-4〉 사례판단 결과

(단위 : 건, %)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	조사진행중사례**	계
22,367 (72.3)	2,336 (7.6)	6,176 (20.0)	44 (0.1)	30,923 (100.0)



[그림 3-1] 사례판단 결과

* '아동학대사례'는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의미하므로 실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더불어 본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발생률'이라는 용어는 역학조사 및 사법기관에서 사용하는 '발생률'과는 다른 의미임.

** '조사진행중사례'란 2017년 신고된 사례 중 아동학대의심내용의 학대여부 판단에 필요한 근거 및 증거확보를 위해 현장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를 뜻함(2018년 8월 16일 기준).

2) 기관별 사례판단 결과

〈표 3-5〉의 기관별 사례판단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아동학대 판단 비율이 45.9%에서 88.3%로 기관별 차이를 보이고 있어 기관별로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비율에 있어 편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5〉 기관별 사례판단 결과

(단위 : 건, %)

지역 및 기관		구분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		조사진행중사례		계	
서울	서울특별시		276	(55.0)	62	(12.4)	163	(32.5)	1	(0.2)	502	(100.0)
	서울특별시동부		475	(55.5)	7	(0.8)	374	(43.7)	0	(0.0)	856	(100.0)
	서울강서		312	(67.2)	74	(15.9)	78	(16.8)	0	(0.0)	464	(100.0)
	서울은평		454	(83.2)	2	(0.4)	89	(16.3)	1	(0.2)	546	(100.0)
	서울영등포		238	(77.3)	24	(7.8)	46	(14.9)	0	(0.0)	308	(100.0)
	서울성북		299	(83.1)	19	(5.3)	42	(11.7)	0	(0.0)	360	(100.0)
	서울마포		252	(70.0)	34	(9.4)	73	(20.3)	1	(0.3)	360	(100.0)
	서울동남권*		-	-	-	-	-	-	-	-	-	-
부산	소계		2,306	(67.9)	222	(6.5)	865	(25.5)	3	(0.1)	3,396	(100.0)
	부산광역시		643	(61.8)	95	(9.1)	302	(29.0)	0	(0.0)	1,040	(100.0)
	부산동부		354	(72.2)	65	(13.3)	37	(7.6)	34	(6.9)	490	(100.0)
	부산서부		462	(80.5)	44	(7.7)	65	(11.3)	3	(0.5)	574	(100.0)
	부산남부*		-	-	-	-	-	-	-	-	-	-
대구	소계		1,459	(69.3)	204	(9.7)	404	(19.2)	37	(1.8)	2,104	(100.0)
	대구광역시		301	(65.6)	65	(14.2)	93	(20.3)	0	(0.0)	459	(100.0)
	대구남부		512	(75.1)	16	(2.3)	154	(22.6)	0	(0.0)	682	(100.0)
	대구북부		314	(68.0)	30	(6.5)	118	(25.5)	0	(0.0)	462	(100.0)
인천	소계		1,127	(70.3)	111	(6.9)	365	(22.8)	0	(0.0)	1,603	(100.0)
	인천광역시		449	(54.9)	30	(3.7)	339	(41.4)	0	(0.0)	818	(100.0)
	인천북부		514	(56.3)	19	(2.1)	380	(41.6)	0	(0.0)	913	(100.0)
	인천남부		265	(49.2)	60	(11.1)	214	(39.7)	0	(0.0)	539	(100.0)
광주	소계		1,228	(54.1)	109	(4.8)	933	(41.1)	0	(0.0)	2,270	(100.0)
	광주광역시		353	(88.3)	13	(3.3)	34	(8.5)	0	(0.0)	400	(100.0)
	빛고을		443	(81.3)	22	(4.0)	80	(14.7)	0	(0.0)	545	(100.0)
	소계		796	(84.2)	35	(3.7)	114	(12.1)	0	(0.0)	945	(100.0)
울산	대전광역시		524	(61.3)	35	(4.1)	296	(34.6)	0	(0.0)	855	(100.0)
	울산광역시		486	(87.1)	46	(8.2)	26	(4.7)	0	(0.0)	558	(100.0)
	울산남부**		253	(82.7)	36	(11.8)	17	(5.6)	0	(0.0)	306	(100.0)
	소계		739	(85.5)	82	(9.5)	43	(5.0)	0	(0.0)	864	(100.0)
경기	경기도		215	(50.4)	29	(6.8)	183	(42.9)	0	(0.0)	427	(100.0)
	경기북부		581	(78.0)	5	(0.7)	159	(21.3)	0	(0.0)	745	(100.0)
	경기성남		479	(72.2)	36	(5.4)	148	(22.3)	0	(0.0)	663	(100.0)
	경기고양		271	(61.7)	43	(9.8)	125	(28.5)	0	(0.0)	439	(100.0)
	경기부천		457	(83.4)	42	(7.7)	49	(8.9)	0	(0.0)	548	(100.0)
	경기화성		326	(71.2)	54	(11.8)	78	(17.0)	0	(0.0)	458	(100.0)
	경기남양주		426	(82.2)	45	(8.7)	47	(9.1)	0	(0.0)	518	(100.0)
	안산시		942	(74.3)	137	(10.8)	188	(14.8)	0	(0.0)	1,267	(100.0)
	경기용인		469	(65.7)	112	(15.7)	133	(18.6)	0	(0.0)	714	(100.0)
	경기시흥		346	(87.8)	6	(1.5)	42	(10.7)	0	(0.0)	394	(100.0)
	경기평택		210	(59.7)	91	(25.9)	51	(14.5)	0	(0.0)	352	(100.0)
	수원		355	(64.8)	37	(6.8)	156	(28.5)	0	(0.0)	548	(100.0)
	소계		5,077	(71.8)	637	(9.0)	1,359	(19.2)	0	(0.0)	7,073	(100.0)

(계속)

(단위: 건, %)

지역 및 기관		구분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		조사진행중사례		계	
강 원	강원도			184	(75.7)	6	(2.5)	53	(21.8)	0	(0.0)	243	(100.0)
	강원동부			260	(86.7)	9	(3.0)	31	(10.3)	0	(0.0)	300	(100.0)
	강원서부			266	(86.1)	11	(3.6)	32	(10.4)	0	(0.0)	309	(100.0)
	강원남부			359	(88.0)	27	(6.6)	22	(5.4)	0	(0.0)	408	(100.0)
	소계			1,069	(84.8)	53	(4.2)	138	(11.0)	0	(0.0)	1,260	(100.0)
충 북	충청북도			514	(79.7)	52	(8.1)	79	(12.2)	0	(0.0)	645	(100.0)
	충북북부			199	(45.9)	55	(12.7)	180	(41.5)	0	(0.0)	434	(100.0)
	충북남부			175	(85.8)	9	(4.4)	20	(9.8)	0	(0.0)	204	(100.0)
	소계			888	(69.2)	116	(9.0)	279	(21.7)	0	(0.0)	1,283	(100.0)
충 남	충청남도			445	(64.0)	49	(7.1)	201	(28.9)	0	(0.0)	695	(100.0)
	충청남도남부			272	(75.8)	33	(9.2)	54	(15.0)	0	(0.0)	359	(100.0)
	충청남도서부			344	(81.1)	4	(0.9)	76	(17.9)	0	(0.0)	424	(100.0)
	소계			1,061	(71.8)	86	(5.8)	331	(22.4)	0	(0.0)	1,478	(100.0)
전 북	전라북도			609	(81.2)	108	(14.4)	33	(4.4)	0	(0.0)	750	(100.0)
	전라북도서부			612	(81.5)	56	(7.5)	83	(11.1)	0	(0.0)	751	(100.0)
	전라북도동부			353	(82.1)	52	(12.1)	25	(5.8)	0	(0.0)	430	(100.0)
	소계			1,574	(81.5)	216	(11.2)	141	(7.3)	0	(0.0)	1,931	(100.0)
전 남	전라남도			419	(74.7)	30	(5.3)	112	(20.0)	0	(0.0)	561	(100.0)
	전남서부권			642	(83.7)	19	(2.5)	105	(13.7)	1	(0.1)	767	(100.0)
	전남중부권			356	(77.1)	87	(18.8)	19	(4.1)	0	(0.0)	462	(100.0)
	소계			1,417	(79.2)	136	(7.6)	236	(13.2)	1	(0.1)	1,790	(100.0)
경 북	경북남부			142	(53.6)	73	(27.5)	50	(18.9)	0	(0.0)	265	(100.0)
	경북북부			386	(84.5)	40	(8.8)	31	(6.8)	0	(0.0)	457	(100.0)
	경북동부			683	(82.2)	43	(5.2)	102	(12.3)	3	(0.4)	831	(100.0)
	경북서부			415	(65.5)	103	(16.2)	116	(18.3)	0	(0.0)	634	(100.0)
	소계			1,626	(74.3)	259	(11.8)	299	(13.7)	3	(0.1)	2,187	(100.0)
경 남	경상남도			622	(83.9)	2	(0.3)	117	(15.8)	0	(0.0)	741	(100.0)
	경남서부			297	(82.5)	15	(4.2)	48	(13.3)	0	(0.0)	360	(100.0)
	김해시			213	(83.5)	2	(0.8)	40	(15.7)	0	(0.0)	255	(100.0)
	소계			1,132	(83.5)	19	(1.4)	205	(15.1)	0	(0.0)	1,356	(100.0)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205	(68.3)	10	(3.3)	85	(28.3)	0	(0.0)	300	(100.0)
	서귀포시			139	(61.0)	6	(2.6)	83	(36.4)	0	(0.0)	228	(100.0)
	소계			344	(65.2)	16	(3.0)	168	(31.8)	0	(0.0)	528	(100.0)
계				22,367	(72.3)	2,336	(7.6)	6,176	(20.0)	44	(0.1)	30,923	(100.0)

3) 피해아동 보호수

〈표 3-6〉과 같이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한 건수는 22,367건이었으나 실제 피해아동 수는 18,254명으로 파악되었다. 아동학대사례 건수와 명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사례 22,367건에 동일한 아동이 한 번 이상 신고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이거나 혹은 동일한 아동이 한 명 이상의 학대행위자에게 학대를 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받아 현장조사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받아 현장조사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7년 3월 1일 개소됨.

〈표 3-6〉 피해아동 보호수

(단위 : 건, 명)

피해아동보호 건수	피해아동보호 명수
22,367	18,254

3. 피해아동 발견율

〈표 3-7〉은 피해아동 발견율을 제시한 것이다. 피해아동 발견율이란 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를 의미하며, 통계청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시도」 자료를 기반으로 2017년 아동인구 1,000명 당 피해아동 발견율을 산출하였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피해아동 발견율의 경우, 지역아동 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 혐의 있음으로 판단된 사례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실제 발생률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아동 발견율의 개념은 아동학대를 발견하여 보호한 수치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전국 평균 피해아동 발견율은 2.64%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대비 0.49%포인트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라북도 5.23%, 전라남도 4.89%, 강원도 4.5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서울특별시 1.66%, 경상남도 1.94% 순으로 낮게 나타나 지역별 피해아동 발견율 격차를 보였다. 외국의 피해아동 발견율을 살펴보면 미국이 9.1%*, 호주가 9.0%**로 국내보다 약 4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각 지역별 아동 인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소 수, 피해아동 보호 건의 관계 양상 및 정도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기관 당 아동 수와 피해아동 발견율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이란 변인 간의 밀접한 정도를 분석하는 통계적 기법으로 -1에서 1의 값을 가지며, -1이나 1에 가까울수록 변수 간 상관 정도가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1에 가까울수록 한 변인이 증가할 때 다른 변인의 값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1에 가까울수록 한 변인이 증가할 때 다른 변인의 값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장에서 기관 당 아동 수와 피해아동 발견율 간의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 $r = -0.66(p < .01)$ 로 도출되었다.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에 아동 인구가 적을수록 피해아동 발견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 아동 인구가 많고 관할 지역의 범위가 넓어 현장과의 접근성이 낮으며, 기관당 사례수가 많아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피해아동 및 가족들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아동인구와 관할면적, 사례 당 평균 이동 소요시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과 상담원 충원이 필요하다.

* U. 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 (2018). Child Maltreatment 2016.

**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8). Child protection Australia: 2016-17.

〈표 3-7〉 피해아동 발견율

(단위 : 명, 개소, 명, 건, %)

지 역	추계아동인구* (만 0~17세)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수	기관당 아동수	아동학대사례	피해아동 발견율 (인구 천 명 당)
서울특별시	1,391,088	8	173,886	2,306	1.66
부산광역시	491,491	4	122,873	1,459	2.97
대구광역시	401,721	3	133,907	1,127	2.81
인천광역시	492,636	3	164,212	1,228	2.49
광주광역시	276,283	2	138,142	796	2.88
대전광역시	266,618	1	266,618	524	1.97
울산광역시	211,289	2	105,645	739	3.50
경 기 도	2,300,477	12	191,706	5,077	2.21
강 원 도	235,739	4	58,935	1,069	4.53
충청북도	265,421	3	88,474	888	3.35
충청남도	428,233	3	142,744	1,061	2.48
전라북도	300,809	3	100,270	1,574	5.23
전라남도	289,730	3	96,577	1,417	4.89
경상북도	411,796	4	102,949	1,626	3.95
경상남도	582,797	3	194,266	1,132	1.94
제주특별자치도	121,258	2	60,629	344	2.84
계	8,467,386	60	141,123	22,367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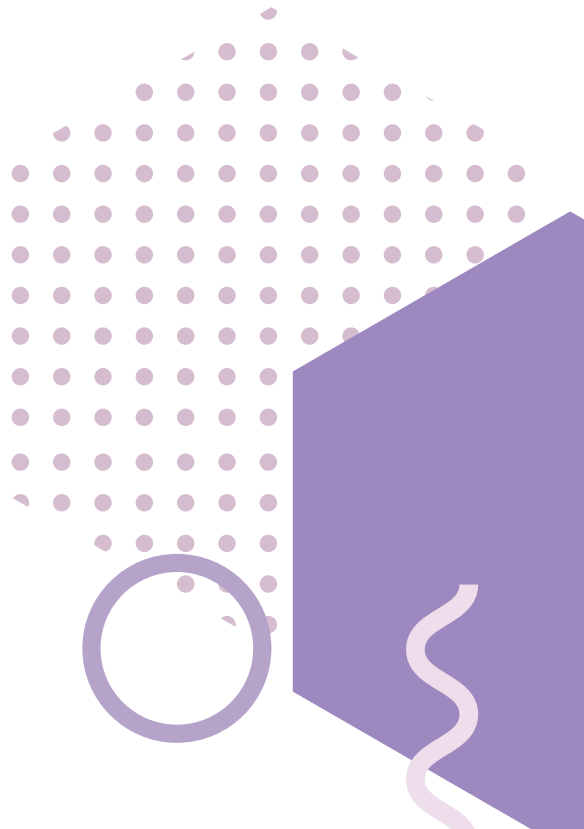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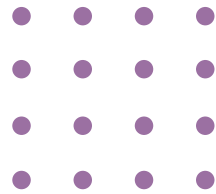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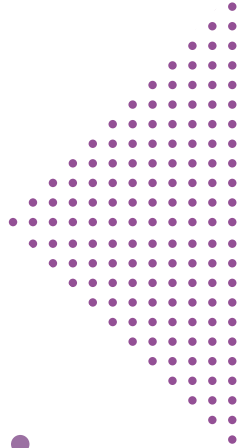
* 통계청(2017).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시도, <http://www.kosis.kr>.

4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Child Abuse & Neglect Korea 2017

- 인구사회학적 요인
-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 아동학대사례 유형
-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 서비스 제공 현황





제4장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1. 인구사회학적 요인

1) 피해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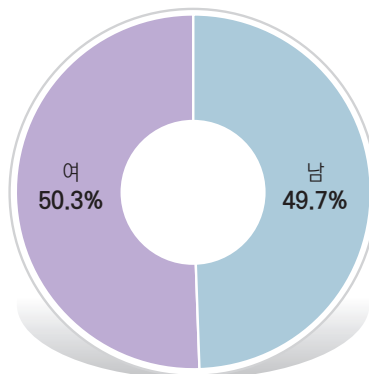
가. 피해아동 성별

2017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에서 피해아동의 성별 비율은 <표4-1>과 같다. 총 22,367건의 아동학대사례에서 여아가 11,257건(50.3%), 남아가 11,110건(49.7%)으로 여아가 약 0.6%p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피해아동 성별

(단위 : 건, %)

남아		여아		계	
11,110	(49.7)	11,257	(50.3)	22,367	(100.0)



[그림 4-1] 피해아동 성별

나. 피해아동 연령

〈표 4-2〉에서 피해아동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15세의 아동이 전체의 22.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만 10~12세가 20.9%, 초등학교 저학년인 만 7~9세가 17.6%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대 비율이 높아졌고 특히 만 13세~15세에 정점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과 반대되는 결과로, 미국의 경우 피해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대 발견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1세 미만의 아동이 학대비율이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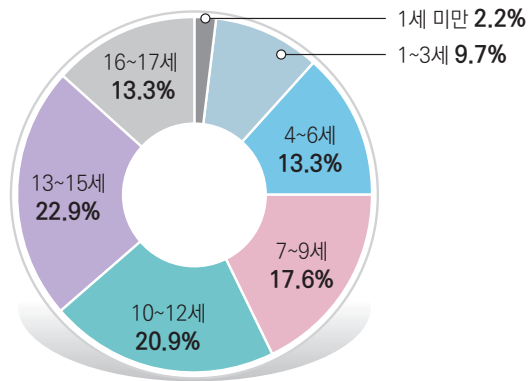
국내의 경우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만 6세 미만 아동의 피해아동 비율은 25.2%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령기 이전 아동의 경우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피해 아동 연령을 고려하여 2018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만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을 양형기준의 ‘아동학대중상해치사 유형 가중 인자 및 집행유예 부정적 일반참작사유’로 추가하여 미취학 아동 대상 아동학대 범행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대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누락, 어린이집 장기결석 등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대 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2018년 3월부터 가동 중이다.

〈표 4-2〉 피해아동 연령

(단위 : 건, %)

연령(만)	건수(비율)	
1세 미만	495	(2.2)
1세	551	(2.5)
2세	794	(3.5)
3세	830	(3.7)
소계	2,175	(9.7)
4세	935	(4.2)
5세	960	(4.3)
6세	1,080	(4.8)
소계	2,975	(13.3)
7세	1,186	(5.3)
8세	1,318	(5.9)
9세	1,438	(6.4)
소계	3,942	(17.6)
10세	1,612	(7.2)
11세	1,452	(6.5)
12세	1,606	(7.2)
소계	4,670	(20.9)
13세	1,719	(7.7)
14세	1,746	(7.8)
15세	1,666	(7.4)
소계	5,131	(22.9)
16세	1,578	(7.1)
17세	1,401	(6.3)
소계	2,979	(13.3)
계	22,367	(100.0)

*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 (2018). Child Maltreatment 2016.



[그림 4-2] 피해아동 연령

다. 피해아동 가족유형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은 <표 4-3>와 같다. 친부모가족이 12,489건으로 전체의 55.8%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친부모가족 외 형태는 8,078건(36.1%), 대리양육형태와 기타는 각각 311건(1.4%), 137건(0.6%)으로 나타났다.

친부모 가정 내의 학대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고, 친부모가족 외 형태는 작년 대비 5%p 감소하였다. 친부모가족 외 형태 중 한부모가족 형태에 해당하는 부자가정과 모자가정, 그리고 미혼부·모가정을 합하면 총 5,173건으로 전체 피해아동 가족의 36.1%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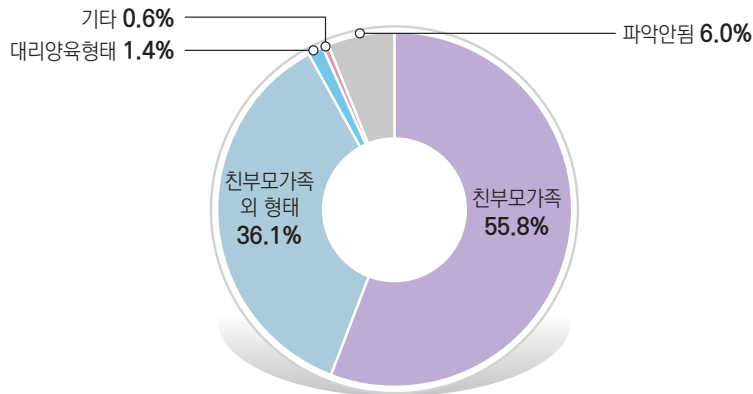
대리양육형태의 경우, 시설보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217건(1.0%)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입양가정 56건(0.3%), 가정위탁 38건(0.2%)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 피해아동 가족유형

(단위 : 건, %)

친부모 가족	친부모가족 외 형태							대리양육형태					기타*	파악 안됨	계
	부자 가정	모자 가정	미혼 부·모 가정	재혼 가정	친인척 보호	동거 (사실혼 포함)	소년 소녀 가정	소계	가정 위탁	입양 가정	시설 보호	소계			
12,489	2,732	2,632	361	1,318	487	532	16	8,078	38	56	217	311	137	1,352	22,367
(55.8)	(12.2)	(11.8)	(1.6)	(5.9)	(2.2)	(2.4)	(0.1)	(36.1)	(0.2)	(0.3)	(1.0)	(1.4)	(0.6)	(6.0)	(100.0)

* 지인에 의한 일시적 보호, 성인이 된 형제에 의한 보호, 아동만 구성된 가정 등이 포함.



[그림 4-3] 피해아동 가족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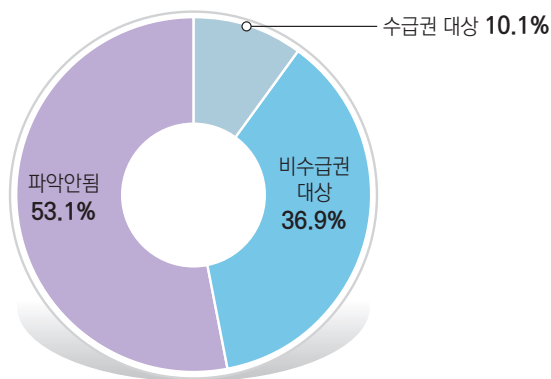
라.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표 4-4〉는 피해아동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수급권 대상 아동은 전체의 10.1%에 해당하는 2,252건, 비수급권 대상 아동은 8,248건(36.9%)이며, 수급권 여부가 파악 되지 않는 경우는 11,867건(53.1%)으로 나타났다.

〈표 4-4〉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단위 : 건, %)

수급권 여부	건수(비율)	
수급권 대상	2,252	(10.1)
비수급권 대상	8,248	(36.9)
파악안됨	11,867	(53.1)
계	22,367	(100.0)



[그림 4-4]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마. 피해아동 특성

피해아동 특성을 살펴보면 <표 4-5>와 같다. 피해아동 특성의 경우 학대 조사 수행 당시 관찰된 특성에 한하며, 장애, 정서·정신건강, 적응·행동, 발달·신체건강, 특성없음 및 기타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아동의 특성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었으며, 해당되는 경우에 중복적으로 응답하였다.

피해아동의 관찰된 주요 특성은 반항·충동·공격성, 거짓말, 도벽 등과 같은 적응·행동으로 전체의 21.4%에 해당하는 7,152건이었다. 다음으로는 정서·정신건강이 6,466건(19.3%), 특성없음이 6,115건(18.3%), 발달·신체건강이 1,863건(5.6%), 장애가 711건(2.1%), 기타가 306건(0.9%)이었다. 피해아동에게 뚜렷한 특성이 없는 경우가 전체의 18.3%로 나타나, 아동의 특성이 없는 경우에도 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항목별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적응·행동 중에서는 반항·충동·공격성이 1,121건(3.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거짓말 833건(2.5%), 학교부적응이 722건(2.2%), 약물·흡연·음주가 669건(2.0%)으로 나타났다. 정서·정신건강 중에서는 불안이 1,557건(4.7%)으로 가장 높았고, 주의산만이 1,034건(3.1%), 과잉행동이 645건(1.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발달·신체건강 중에서는 위생문제가 542건(1.6%), 언어문제 522건(1.6%)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특성은 학대행위자가 행한 방임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장애의 경우 15가지의 장애 유형을 신체 및 정신적 장애로 나누었으며, 그 외에 공식적인 장애 진단을 받지 않는 아동이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장애의심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정신적 장애 318건(1.0%),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300건(0.9%)이었고 신체적 장애가 93건(0.3%)이었다.

피해아동의 특성이 학대 위험 요인인 동시에 학대로 인한 후유증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피해아동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입하기 위해 중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피해아동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상담 및 심리치료, 의료적 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표 4-5〉 피해아동 특성

(단위 : 건, %)

특성		건수(비율)	
장 애	신체적 장애	93	(0.3)
	정신적 장애	318	(1.0)
	장애의심	300	(0.9)
	소계	711	(2.1)
정서·정신건강	주의산만	1,034	(3.1)
	과잉행동	645	(1.9)
	인터넷(게임)중독	310	(0.9)
	불안	1,557	(4.7)
	애착문제	656	(2.0)
	무력감	320	(1.0)
	우울	607	(1.8)
	낮은 자아존중감	613	(1.8)
	성격 및 기질 문제	608	(1.8)
	탐식 및 결식	116	(0.3)
	소계	6,466	(19.3)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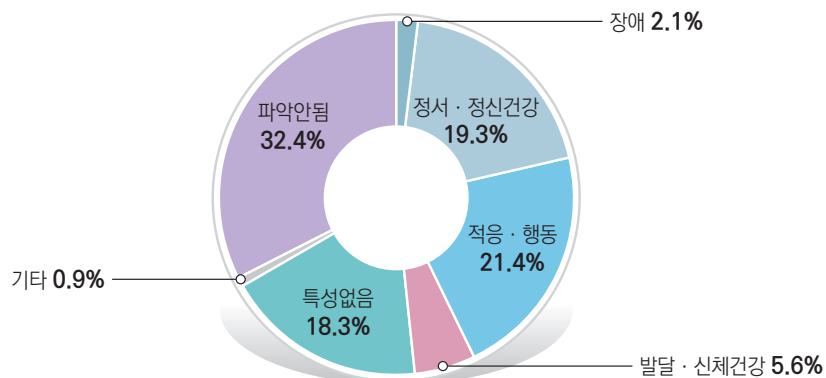
* 광영호·김기현·염동훈·장화정·장혜인·정진희·황준원(2015). 아동학대가 피해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및 후유증 연구. 법무부·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경은·염동문·장화정·김경희·전선율(2016).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아동학대 위험수준별 개입사정 척도.

(단위 : 건, %)

특성		건수(비율)	
적응·행동	반항·충동·공격성	1,121	(3.4)
	거짓말	833	(2.5)
	도벽	448	(1.3)
	가출	448	(1.3)
	약물·흡연·음주	669	(2.0)
	성문제	212	(0.6)
	학교 부적응	722	(2.2)
	찾은 결석, 무단결과	426	(1.3)
	늦은 귀가	479	(1.4)
	학습문제	555	(1.7)
	폭력행동	413	(1.2)
	비행집단활동	270	(0.8)
	불건전한 또래 관계	283	(0.8)
	대인관계 기피	273	(0.8)
	소계	7,152	(21.4)
발달·신체건강	신체발달지연	201	(0.6)
	언어문제	522	(1.6)
	영양결핍	78	(0.2)
	대소변문제	97	(0.3)
	위생문제	542	(1.6)
	틱(음성·신체·뚜렛)	68	(0.2)
	찾은 병치레, 허약	107	(0.3)
	주요병력	248	(0.7)
	소계	1,863	(5.6)
특성없음		6,115	(18.3)
기타		306	(0.9)
파악안됨		10,823	(32.4)
계		33,436	(100.0)

※중복포함



[그림 4-5] 피해아동 특성

2) 학대행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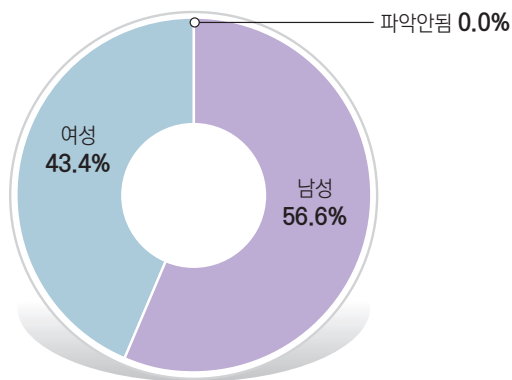
가. 학대행위자 성별

〈표 4-6〉은 2017년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22,367건을 대상으로 학대행위자의 성별을 분석한 결과로, 남성은 전체의 56.6%에 해당하는 12,653건이었으며, 여성은 9,713건(43.4%),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는 1건(0.0%)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과 비슷한 양상이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13.2%p 높게 나타났다.

〈표 4-6〉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 건, %)

남성		여성		파악안됨		계	
12,653	(56.6)	9,713	(43.4)	1	(0.0)	22,367	(100.0)



[그림 4-6] 학대행위자 성별

나. 학대행위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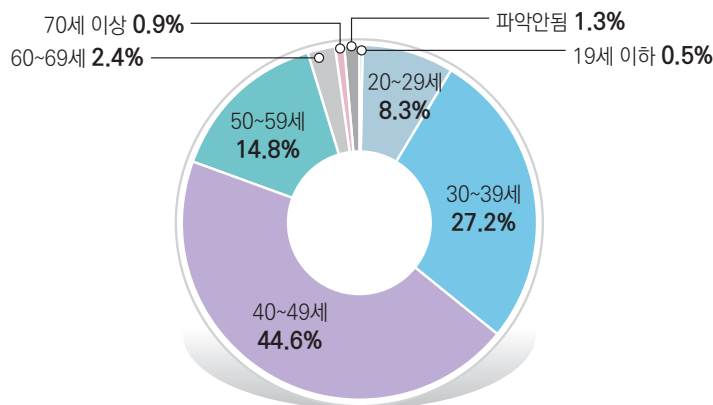
학대행위자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9,970건(44.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0대가 6,076건(27.2%), 50대 3,320건(14.8%), 20대 1,864건(8.3%), 60대 531건(2.4%), 70세 이상 206건(0.9%), 19세 이하 108건(0.5%)의 순서로 나타났다. 피해아동 연령 중 초등학교 고학년이 가장 많고, 학대행위자의 대다수가 부모인 경향에 비추어 볼 때, 학령기 자녀를 둔 30~40대 학부모가 가장 많았다.

만 19세 이하의 학대행위자는 108건으로 0.5%의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중 특히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학대행위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구된다. 19세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아동복지법 상 보호자에 속하는 경우 학대행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9세 미만 학대행위자는 행위자이면서 동시에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일찍 부모가 된 미성년자는 양육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이 부족하고 가족 및 사회적 지지망이 열악한 탓에 자녀 양육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며*, 이러한 어려움은 부적절한 양육태도로 이어져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밖에도 다양한 연령대에 걸쳐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표 4-7〉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 건, %)

연령(만)	건수(비율)	
19세 이하	108	(0.5)
20대(20~29세)	1,864	(8.3)
30대(30~39세)	6,076	(27.2)
40대(40~49세)	9,970	(44.6)
50대(50~59세)	3,320	(14.8)
60대(60~69세)	531	(2.4)
70세 이상	206	(0.9)
파악안됨	292	(1.3)
계	22,367	(100.0)



[그림 4-7] 학대행위자 연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조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3).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제도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표 4-8〉을 통해 2017년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22,367건을 대상으로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타인, 기타 및 파악 안 됨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전체의 76.8%(17,177건)으로 가장 높았다. 아동학대 사례 10건 중 약 7건 정도가 부모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 중 친부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9,562건(42.8%), 친모는 6,824건(30.5%), 계부와 계모는 각각 401건(1.8%), 341건(1.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리양육자는 3,343건(14.9%)으로 부모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대리양육자 중에서도 초·중·고교 직원은 1,345건(6.0%), 보육교직원은 840건(3.8%), 유치원 교직원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각각 1.3%로 나타났다.

가정 다음으로 아동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과 같은 보육 및 교육 기관에서의 아동학대의 경우 학대경험이 아동에게 미치는 후유증이 클 수 있다. 아동학대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강화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종사자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외에 친인척은 1,067건(4.8%), 타인은 294건(1.3%), 기타 441건(2.0%), 파악안됨 45건(0.2%)으로 나타났다.

〈표 4-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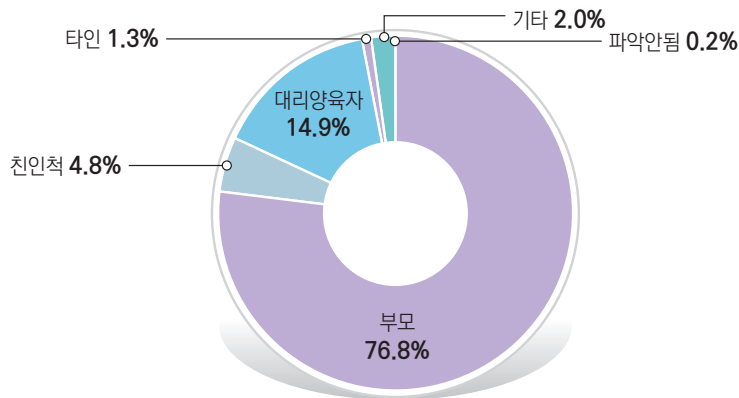
(단위 : 건, %)

관계		건수(비율)	
부모	친부	9,562	(42.8)
	친모	6,824	(30.5)
	계부	401	(1.8)
	계모	341	(1.5)
	양부	28	(0.1)
	양모	21	(0.1)
	소계	17,177	(76.8)
친인척	친조부	128	(0.6)
	친조모	237	(1.1)
	외조부	61	(0.3)
	외조모	127	(0.6)
	친인척	328	(1.5)
	형제, 자매	186	(0.8)
	소계	1,067	(4.8)
대리양육자*	부,모의 동거인	247	(1.1)
	유치원교직원	281	(1.3)
	초·중·고교 직원	1,345	(6.0)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217	(1.0)
	보육 교직원	840	(3.8)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85	(1.3)
	기타시설 종사자	60	(0.3)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32	(0.1)
	위탁부	4	(0.0)
	위탁모	17	(0.1)
	베이비시터	15	(0.1)
	소계	3,343	(14.9)

(계속)

(단위: 건, %)

관계		건수(비율)	
타인	이웃	86	(0.4)
	낯선 사람	208	(0.9)
	소계	294	(1.3)
	기타**	441	(2.0)
파악안됨		45	(0.2)
계		22,367	(100.0)



[그림 4-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라.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표 4-9〉를 통해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를 살펴본 결과,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이 동거하는 경우는 16,669건(74.5%)이었으며, 동거하지 않지 않는 경우는 5,628건(25.2%),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는 70건(0.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학대행위자 중 76.8%가 부모라는 결과와 동일한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표 4-8〉 참조).

특히 자기 방어 능력이 없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한계를 가진 영유아가 학대행위자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 학대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고 학대에 노출되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학대 재발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학대의 강도가 커질 위험성도 있다. 그러므로 가정 내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정기적인 양육 환경 점검, 신고의무자의 활용 및 가정 내 위기요인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위기가정에 대한 통합 지원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가정 내 학대 발생 위험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보호처분,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등 사법 절차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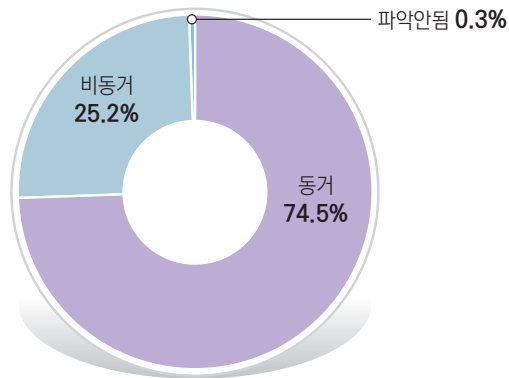
* '대리양육자'란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의 자녀를 하루의 일정시간 동안 대신 양육해주는 사람으로, 이진화·안선화·한유미·강희경(1999)의 연구에서 차용하였음. 이진화·안선화·한유미·강희경(1999). 부모-대리양육자 관계 척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7, 381-404.

** 부모의 지인,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 강사 등이 포함.

〈표 4-9〉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단위 : 건, %)

동거		비동거		파악안됨		계	
16,669	(74.5)	5,628	(25.2)	70	(0.3)	22,367	(100.0)



[그림 4-9]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마.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표 4-10〉는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을 살펴본 것이다. 무직인 학대행위자가 3,169건(14.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서비스 및 판매직이 1,839건(8.2%)이었다.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거나 무직인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보고가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용상태가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관리직, 전문직, 기술공 및 준전문직, 사무직의 학대행위자인 경우는 전체의 약 15%를 차지하였다.

〈표 4-10〉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단위 : 건, %)

직업유형	건수(비율)	
관리직	363	(1.6)
전문직	1,549	(6.9)
기술공 및 준전문직	884	(4.0)
사무직	557	(2.5)
서비스 및 판매직	1,839	(8.2)
농·어·축산업	215	(1.0)
기능직	169	(0.8)

(계속)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2004).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Child Abuse and Neglect.

(단위 : 건, %)

직업유형	건수(비율)	
기계장치조작원	308	(1.4)
단순노무직	1,750	(7.8)
군인	67	(0.3)
무직	3,169	(14.2)
기타	584	(2.6)
파악안됨	10,913	(48.8)
계	22,36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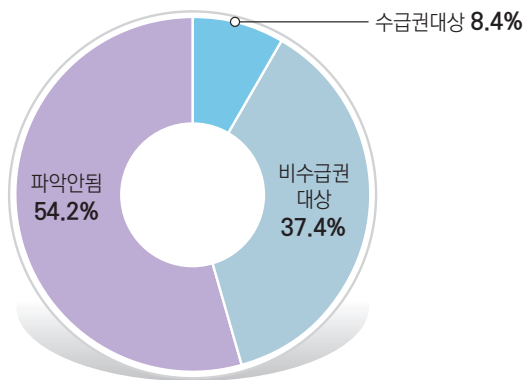
바.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 여부를 <표 4-11>과 같이 살펴본 결과, 학대행위자가 비수급권 대상인 경우가 전체의 37.4%로 8,36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에 비해 수급권 대상은 8.4%로 1,870건에 해당하였다.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 여부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12,128건(54.2%)으로 조사되었다.

〈표 4-11〉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단위 : 건, %)

수급권 여부	건수(비율)	
수급권 대상	1,870	(8.4)
비수급권 대상	8,369	(37.4)
파악안됨	12,128	(54.2)
계	22,367	(100.0)



[그림 4-10]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사. 학대행위자 특성

학대행위자 특성은 <표 4-12>와 같이 학대 조사 수행 당시 관찰된 특성에 한해, 신체·정신적 장애, 장애의심,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중독 및 질환문제 등 총 20개 유형의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해당되는 경우에 중복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보고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었다.

학대행위자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으로 8,388건(22.2%)을 차지하였다.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특성 다음으로 사회·경제적으로 과다한 스트레스가 있거나 고립을 경험한 학대행위자는 4,933건(13.1%), 부부 및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가지는 경우는 2,721건(7.2%)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가 성격 및 기질 문제를 가지는 경우는 1,676건(4.4%), 중독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1,103건(2.9%)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대행위자의 스트레스 및 고립, 부부갈등, 성격 및 기질, 알코올 및 약물남용 등의 학대행위자 특성은 아동학대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있다*.

〈표 4-12〉 학대행위자 특성

(단위 : 건, %)

특 성	건수(비율)	
신체적 장애	156	(0.4)
정신적 장애	154	(0.4)
장애의심	280	(0.7)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8,388	(22.2)
중독문제	1,103	(2.9)
질환문제	325	(0.9)
성격 및 기질문제	1,676	(4.4)
위생문제	251	(0.7)
나태 및 무기력	291	(0.8)
난독해, 난작문	14	(0.0)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4,933	(13.1)
어릴 적 학대경험	372	(1.0)
폭력성	927	(2.5)
전과력	92	(0.2)
성문제	144	(0.4)
원치 않는 아동	136	(0.4)
부부 및 가족 갈등	2,721	(7.2)
종교문제	44	(0.1)
특성없음	4,133	(10.9)
기타	5	(0.0)
파악안됨	11,646	(30.8)
계	37,791	(100.0)

※중복포함

*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 Children's Bureau. (2013). A Coordinated Response to Child Abuse and Neglect: The Foundation for Practice.

2.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1) 아동학대 발생장소

〈표 4-13〉과 같이 아동학대 발생장소를 살펴본 결과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80.4%인 총 17,98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중 아동의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17,563건(78.5%)으로 10명 중 8명이 아동의 가정 내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같이 아동을 돌보고 교육하는 기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각각 843건(3.8%), 269건(1.2%), 1,344건(6.0%)으로 나타나, 전체 사례 중 11.0%에 해당하여 작년에 비해 약 68%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복지시설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이 254건(1.1%), 기타복지시설이 45건(0.2%)으로 전체 사례 중 1.3%에 해당한다.

〈표 4-13〉 아동학대 발생장소

(단위 : 건, %)

발생장소		건수(비율)	
가정 내	아동 가정 내	17,563	(78.5)
	학대행위자 가정 내	426	(1.9)
소계		17,989	(80.4)
집근처 또는 길가		405	(1.8)
친척집		129	(0.6)
이웃집		11	(0.0)
어린이집		843	(3.8)
유치원		269	(1.2)
학교		1,344	(6.0)
학원		197	(0.9)
병원		65	(0.3)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254	(1.1)
	기타복지시설	45	(0.2)
소계		299	(1.3)
숙박업소		71	(0.3)
종교시설		23	(0.1)
기타*		688	(3.1)
파악안됨		34	(0.2)
계		22,367	(100.0)

* 수영장, 차량 안, 상점, 노상 등이 포함.

2) 아동학대 발생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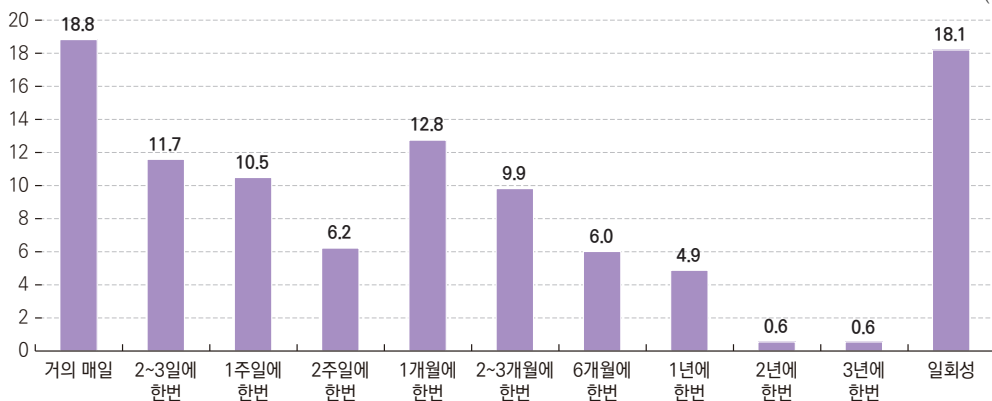
아동학대 발생빈도의 경우, 거의 매일 발생한 사례가 4,195건(18.8%), 2~3일에 한 번인 경우가 2,610건(11.7%), 일주일에 한 번인 경우가 2,359건(10.5%) 이었다. 즉,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빈번하게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약 41.0%로 전체 사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의 경우 학대 발생 상황 이후에도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습적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피해아동에게 미치는 후유증과 악영향이 심각할 수 있다. 실제로 빈번한 학대발생은 아동의 사회성, 행동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일회성의 학대가 만성적인 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미한 수준의 아동학대라도 사례 종결 이후 재학대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표 4-14〉 아동학대 발생빈도

(단위 : 건, %)

발생빈도	건수(비율)	
거의 매일	4,195	(18.8)
2~3일에 한 번	2,610	(11.7)
일주일에 한 번	2,359	(10.5)
2주일에 한 번	1,379	(6.2)
1개월에 한 번	2,873	(12.8)
2~3개월에 한 번	2,209	(9.9)
6개월에 한 번	1,345	(6.0)
1년에 한 번	1,094	(4.9)
2년에 한 번	129	(0.6)
3년에 한 번	126	(0.6)
일회성	4,048	(18.1)
계	22,367	(100.0)

(단위 : %)



[그림 4-11] 아동학대 발생빈도

* Jody Todd Manly, Dante Cicchetti. & Douglas Barnett. (1994). The impact of subtype, frequency, chronicity, and severity of child maltreatment on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problems. *Development & Psychopathology*, 6, 121-143.

3. 아동학대사례 유형

본 절에서는 아동학대 사례유형과 각 유형에 따른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교차로 분석하였다.

아동학대사례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및 성학대, 그리고 방임으로 구분하였다. 학대는 단일한 유형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나 복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를 사정하여 아동학대 유형을 판단할 시 4가지 유형의 학대를 중복하여 판단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도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한 경우와 미분류한 경우로 나누어 통계 결과를 집계하였다.

신체학대란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며, 직접적 신체 가해 행위 및 도구 등을 활용한 간접적 신체 가해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정서학대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 등을 말한다. 성학대는 아동 대상의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하는데, 성인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나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방임이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뜻하며, 방임은 세부적으로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그리고 유기로 분류할 수 있다.

1) 아동학대사례 유형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여 아동학대의 유형을 <표 4-15>와 같이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10,875건(48.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정서학대 4,728건(21.1%), 신체학대 3,285건(14.7%), 방임 2,787건(12.5%), 성학대 692건(3.1%)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 단일한 학대유형이 발생하는 것 만큼 두 가지 유형 이상의 학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또한 많았다. 중복학대 중 신체학대·정서학대가 8,757(39.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정서학대·방임이 778건(3.5%),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이 734건(3.3%)으로 나타났고, 이외에 모든 학대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사례는 18건(0.1%)이었다. 중복학대가 발생한 경우 재학대가 월등히 높은 결과를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는 등 중복학대의 경우 학대후유증이 더 심각할 수 있어**, 중복학대에 따른 피해아동의 후유증 및 예방을 위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표 4-15〉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단위 : 건, %)

유형	건수(비율)	
신체학대	3,285	(14.7)
정서학대	4,728	(21.1)
성학대	692	(3.1)
방임	2,787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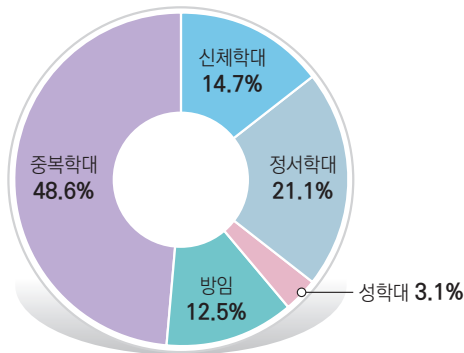
(계속)

* 법무부(2015). 아동학대가정 회복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개발.

** 김재엽·최권호(2012). 중복학대 피해 청소년의 우울, 공격성, 비행행동: 신체학대와 방임의 중복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3), 193-213.

(단위 : 건, %)

유형		건수(비율)	
중복학대	신체학대 · 정서학대	8,757	(39.2)
	신체학대 · 성학대	35	(0.2)
	신체학대 · 방임	211	(0.9)
	정서학대 · 성학대	165	(0.7)
	정서학대 · 방임	778	(3.5)
	성학대 · 방임	11	(0.0)
	신체학대 · 정서학대 · 성학대	160	(0.7)
	신체학대 · 정서학대 · 방임	734	(3.3)
	신체학대 · 성학대 · 방임	0	(0.0)
	정서학대 · 성학대 · 방임	6	(0.0)
	신체학대 · 정서학대 · 성학대 · 방임	18	(0.1)
	소계	10,875	(48.6)
계		22,367	(100.0)



[그림 4-12]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나. 아동학대사례 유형 II (중복학대 미분류)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아동이 중복해서 경험한 학대를 각각의 학대 유형에 포함하여 살펴본 결과, 총 빈도는 34,178건이다. 아동학대 사례유형 중 정서학대가 전체 44.9%에 해당하는 15,3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체학대가 13,200건(38.6%), 방임이 4,545건(13.3%), 성학대는 1,087건(3.2%)으로 나타났다.

〈표 4-15〉를 토대로 살펴볼 때,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였을 때의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4.7%, 21.1%로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았을 때보다 약 2배 이상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다른 학대 유형과 함께 복합적으로 발생함을 의미한다. 방임은 수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발견이 어렵고 방임의 후유증으로 발달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방임행위 역시 아동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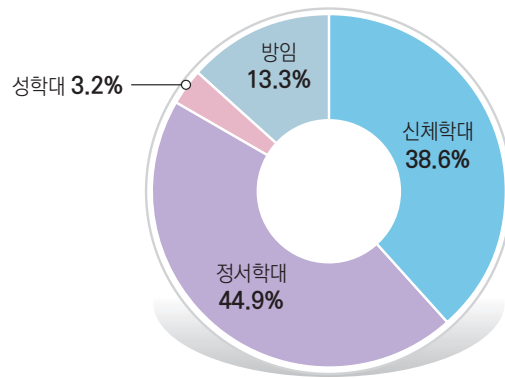
* 강지영·장화정(2018). 아동학대 세부특성에 따른 피해아동의 하위집단 분류와 문제행동 비교. 한국아동복지학 62, 61-91.

〈표 4-16〉 아동학대사례 유형II(중복학대 미분류)

(단위 : 건, %)

유형	건수(비율)	
신체학대	13,200	(38.6)
정서학대	15,346	(44.9)
성학대	1,087	(3.2)
방임	4,545	(13.3)
계	34,178	(100.0)

※중복포함



※중복포함

[그림 4-13] 아동학대사례 유형II(중복학대 미분류)

2) 아동학대사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아동학대사례 유형II(중복학대 미분류)에 따른 피해아동 성별, 연령, 특성,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행위자 특성을 살펴보았다.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아동학대 유형별로 피해아동 성별을 〈표 4-17〉와 같이 살펴보면, 신체학대와 방임 사례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각각 약 5%p, 1.2%p 높았다. 정서학대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약 2.2%p 더 높게 나타났다. 성학대의 경우 여아가 86.9%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남아에 비해 약 6.6배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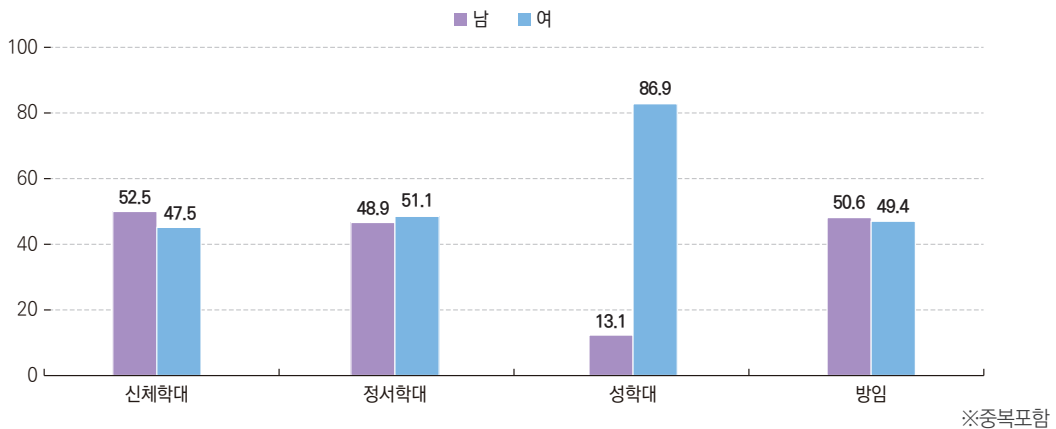
〈표 4-17〉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단위 : 건, %)

성별 \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남	6,934	(52.5)	7,508	(48.9)	142	(13.1)	2,298	(50.6)	16,882	(49.4)
여	6,266	(47.5)	7,838	(51.1)	945	(86.9)	2,247	(49.4)	17,296	(50.6)
계	13,200	(100.0)	15,346	(100.0)	1,087	(100.0)	4,545	(100.0)	34,178	(100.0)

※중복포함

(단위 : %)



※중복포함

[그림 4-14]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나.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각 아동학대 유형별로 나누어 피해아동의 연령 현황을 〈표 4-18〉과 같이 살펴본 결과,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의 연령 분포를 보면 전체 피해아동의 연령 현황과 다소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학령기인 만 7세~9세, 만 10세~12세, 만 13~15세 연령대에 피해아동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대발견비율이 높아지며 만 13~15세에 정점을 이뤘다. 1세 미만을 제외한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높게 나타나, 중복학대를 분류하지 않고 아동학대 사례유형을 살펴본 현황(〈표 4-16〉 참조)과 유사했다. 1세 미만의 아동에게 발생한 총 599건의 아동학대사례 중 방임 사례가 290건으로 약 48.4%로 거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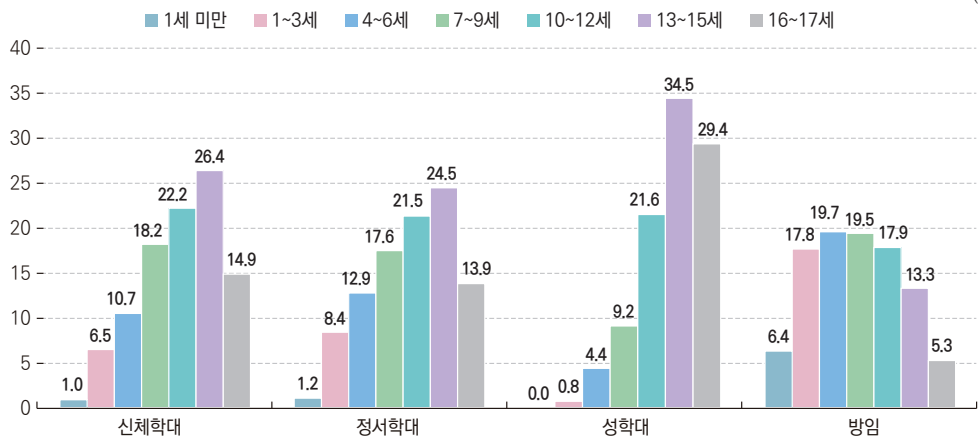
〈표 4-18〉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단위 : 건, %)

연령(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1세 미만	130	(1.0)	179	(1.2)	0	(0.0)	290	(6.4)	599	(1.8)
1~3세	864	(6.5)	1,293	(8.4)	9	(0.8)	808	(17.8)	2,974	(8.7)
4~6세	1,406	(10.7)	1,976	(12.9)	48	(4.4)	896	(19.7)	4,326	(12.7)
7~9세	2,405	(18.2)	2,695	(17.6)	100	(9.2)	888	(19.5)	6,088	(17.8)
10~12세	2,935	(22.2)	3,299	(21.5)	235	(21.6)	815	(17.9)	7,284	(21.3)
13~15세	3,490	(26.4)	3,767	(24.5)	375	(34.5)	605	(13.3)	8,237	(24.1)
16~17세	1,970	(14.9)	2,137	(13.9)	320	(29.4)	243	(5.3)	4,670	(13.7)
계	13,200	(100.0)	15,346	(100.0)	1,087	(100.0)	4,545	(100.0)	34,178	(100.0)

※중복포함

(단위 : %)



※중복포함

[그림 4-15]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다.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아동학대 유형별로 피해아동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신체학대 및 정서학대의 경우 적응·행동 특성이 가장 높고 정서·정신건강, 특성없음, 발달·신체건강, 장애의 순서로 나타났다. 성학대 역시 적응행동 특성이 가장 높았지만, 특성없음, 정서·정신건강, 발달신체건강, 장애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임의 경우 정서·정신건강이 가장 높았고 적응행동, 특성없음, 발달신체건강, 장애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 특성의 경우 방임에서 3.1%로 나타났고, 정서·정신건강 특성 중 불안은 정서학대에서 5.3%로 나타났다. 적응·행동 특성은 신체학대에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반항·충동·공격성이 신체학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발달·신체건강 특성의 경우 방임에서 13.0%의 높은 분포가 나타났고, 특히 위생이 5.1%로 가장 높았다.

〈표 4-1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단위 : 건, %)

특성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장애	신체적 장애	55	(0.3)	51	(0.2)	4	(0.2)	26	(0.4)	136	(0.3)		
	정신적 장애	187	(0.9)	172	(0.7)	19	(1.2)	93	(1.3)	471	(0.9)		
	장애 의심	160	(0.8)	150	(0.7)	25	(1.5)	105	(1.5)	440	(0.8)		
	소계	402	(1.9)	373	(1.6)	48	(2.9)	224	(3.1)	1,047	(2.0)		
정서·정신건강	주의산만	682	(3.3)	672	(2.9)	30	(1.8)	278	(3.9)	1,662	(3.2)		
	과잉행동	466	(2.2)	439	(1.9)	17	(1.0)	129	(1.8)	1,051	(2.0)		
	인터넷(게임) 중독	208	(1.0)	221	(1.0)	7	(0.4)	70	(1.0)	506	(1.0)		
	불안	967	(4.7)	1,212	(5.3)	84	(5.2)	299	(4.2)	2,562	(4.9)		
	애착문제	410	(2.0)	498	(2.2)	26	(1.6)	162	(2.3)	1,096	(2.1)		
	무력감	163	(0.8)	218	(0.9)	21	(1.3)	104	(1.5)	506	(1.0)		
	우울	391	(1.9)	470	(2.0)	42	(2.6)	114	(1.6)	1,017	(1.9)		
	낮은 자아존중감	399	(1.9)	463	(2.0)	44	(2.7)	112	(1.6)	1,018	(1.9)		
	성격 및 기질문제	447	(2.1)	444	(1.9)	13	(0.8)	108	(1.5)	1,012	(1.9)		
	탐식 및 결식	60	(0.3)	73	(0.3)	4	(0.2)	55	(0.8)	192	(0.4)		
	소계	4,193	(20.2)	4,710	(20.5)	288	(17.7)	1,431	(20.1)	10,622	(20.3)		
적응·행동	반항·충동·공격성	824	(4.0)	855	(3.7)	35	(2.1)	169	(2.4)	1,883	(3.6)		
	거짓말	660	(3.2)	595	(2.6)	26	(1.6)	136	(1.9)	1,417	(2.7)		
	도벽	363	(1.7)	304	(1.3)	13	(0.8)	84	(1.2)	764	(1.4)		
	가출	348	(1.7)	326	(1.4)	32	(2.0)	59	(0.8)	765	(1.5)		
	약물·흡연·음주	564	(2.7)	494	(2.1)	36	(2.2)	58	(0.8)	1,152	(2.2)		
	성문제	131	(0.6)	130	(0.6)	42	(2.6)	44	(0.6)	347	(0.7)		
	학교 부적응	506	(2.4)	477	(2.1)	53	(3.2)	151	(2.1)	1,187	(2.3)		
	찾은 결석, 무단결과	277	(1.3)	280	(1.2)	30	(1.8)	112	(1.6)	699	(1.3)		
	늦은 귀가	386	(1.9)	349	(1.5)	23	(1.4)	48	(0.7)	806	(1.5)		
	학습문제	341	(1.6)	347	(1.5)	36	(2.2)	179	(2.5)	903	(1.7)		
	폭력행동	303	(1.5)	307	(1.3)	11	(0.7)	73	(1.0)	694	(1.3)		
	비행집단활동	211	(1.0)	191	(0.8)	16	(1.0)	22	(0.3)	440	(0.8)		
	불건전한 또래관계	219	(1.1)	203	(0.9)	19	(1.2)	30	(0.4)	471	(0.9)		
	대인관계기피	174	(0.8)	199	(0.9)	12	(0.7)	60	(0.8)	445	(0.8)		
	소계	5,307	(25.6)	5,057	(22.0)	384	(23.6)	1,225	(17.2)	11,973	(22.8)		
발달·신체건강	신체발달지연	77	(0.4)	99	(0.4)	8	(0.5)	113	(1.6)	297	(0.6)		
	언어문제	248	(1.2)	264	(1.1)	10	(0.6)	230	(3.2)	752	(1.4)		
	영양결핍	16	(0.1)	29	(0.1)	3	(0.2)	54	(0.8)	102	(0.2)		
	대소변문제	49	(0.2)	55	(0.2)	3	(0.2)	41	(0.6)	148	(0.3)		
	위생문제	211	(1.0)	246	(1.1)	13	(0.8)	365	(5.1)	835	(1.6)		
	틱(음성, 신체, 두렛)	55	(0.3)	46	(0.2)	0	(0.0)	7	(0.1)	108	(0.2)		
	찾은 병치레, 허약	43	(0.2)	62	(0.3)	6	(0.4)	44	(0.6)	155	(0.3)		
	주요병력	174	(0.8)	157	(0.7)	4	(0.2)	70	(1.0)	405	(0.8)		
	소계	873	(4.2)	958	(4.2)	47	(2.9)	924	(13.0)	2,802	(5.3)		
특성없음		3,398	(16.3)	4,330	(18.8)	297	(18.1)	1,281	(17.9)	9,306	(17.7)		
기타		198	(1.0)	228	(1.0)	9	(0.5)	70	(1.0)	505	(1.0)		
파악안됨		6,341	(30.6)	7,294	(31.8)	556	(34.1)	1,962	(27.6)	16,153	(30.8)		
계		20,712	(100.0)	22,950	(100.0)	1,629	(100.0)	7,117	(100.0)	52,408	(100.0)		

※중복포함

라.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든 학대 유형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특히 방임 사례에서 부모가 행위자인 경우는 86.5%로 나타났다.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방임 사례에서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분포는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전체 현황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성학대의 경우에는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34.2%, 대리양육자 33.1%로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표 4-2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학대유형 관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부모	10,391	(78.7)	12,174	(79.3)	372	(34.2)	3,930	(86.5)	26,867	(78.6)
친인척	671	(5.1)	682	(4.4)	77	(7.1)	141	(3.1)	1,571	(4.6)
대리양육자	1,792	(13.6)	2,098	(13.7)	360	(33.1)	426	(9.4)	4,676	(13.7)
타인	58	(0.4)	105	(0.7)	190	(17.5)	3	(0.1)	356	(1.0)
기타	258	(2.0)	260	(1.7)	84	(7.7)	36	(0.8)	638	(1.9)
파악안됨	30	(0.2)	27	(0.2)	4	(0.4)	9	(0.2)	70	(0.2)
계	13,200	(100.0)	15,346	(100.0)	1,087	(100.0)	4,545	(100.0)	34,178	(100.0)

※중복포함

마.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을 〈표 4-21〉과 같이 분석하였다. 파악안됨 수치를 제외하고 모든 학대 유형에서 학대행위자의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학대를 제외한 모든 학대유형에서 사회·경제적 스트레스와 특성 없음, 부부 및 가족갈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표 4-21〉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단위 : 건, %)

학대유형 특성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신체적 장애	77	(0.4)	109	(0.4)	9	(0.6)	51	(0.6)	246	(0.4)
정신적 장애	52	(0.2)	66	(0.2)	10	(0.7)	88	(1.0)	216	(0.4)
장애의심	70	(0.3)	154	(0.6)	15	(1.0)	148	(1.7)	387	(0.7)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5,153	(23.7)	6,164	(22.8)	187	(12.7)	2,089	(23.4)	13,593	(23.0)
중독문제	626	(2.9)	961	(3.6)	42	(2.9)	240	(2.7)	1,869	(3.2)
질환문제	171	(0.8)	231	(0.9)	5	(0.3)	104	(1.2)	511	(0.9)
성격 및 기질문제	996	(4.6)	1,365	(5.0)	49	(3.3)	375	(4.2)	2,785	(4.7)
위생문제	58	(0.3)	95	(0.4)	7	(0.5)	215	(2.4)	375	(0.6)
나태 및 무기력	89	(0.4)	159	(0.6)	4	(0.3)	172	(1.9)	424	(0.7)
난독해, 난작문	5	(0.0)	6	(0.0)	0	(0.0)	11	(0.1)	22	(0.0)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2,740	(12.6)	3,599	(13.3)	69	(4.7)	1,535	(17.2)	7,943	(13.4)

(계속)

(단위: 건, %)

특성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학대유형										
어릴 적 학대경험	252	(1.2)	281	(1.0)	19	(1.3)	92	(1.0)	644	(1.1)
폭력성	498	(2.3)	817	(3.0)	38	(2.6)	170	(1.9)	1,523	(2.6)
전과력	50	(0.2)	72	(0.3)	5	(0.3)	22	(0.2)	149	(0.3)
성문제	45	(0.2)	75	(0.3)	74	(5.0)	31	(0.3)	225	(0.4)
원치 않는 아동	71	(0.3)	84	(0.3)	2	(0.1)	53	(0.6)	210	(0.4)
부부 및 가족 갈등	1,389	(6.4)	2,221	(8.2)	49	(3.3)	650	(7.3)	4,309	(7.3)
종교문제	24	(0.1)	37	(0.1)	1	(0.1)	11	(0.1)	73	(0.1)
특성 없음	2,550	(11.7)	2,825	(10.4)	174	(11.8)	785	(8.8)	6,334	(10.7)
기타	2	(0.0)	3	(0.0)	0	(0.0)	2	(0.0)	7	(0.0)
파악안됨	6,868	(31.5)	7,731	(28.6)	714	(48.5)	2,069	(23.2)	17,382	(29.3)
계	21,786	(100.0)	27,055	(100.0)	1,473	(100.0)	8,913	(100.0)	59,227	(100.0)

※중복포함

4.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아동학대사례는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정보를 파악하여 사례를 판단하며, 피해아동의 보호 및 회복과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2017년 아동학대사례로 접수된 22,367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아동의 초기 및 최종조치결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피해아동 보호 현황, 학대행위자의 고소·고발·사건처리 결과를 포함한 최종조치 결과,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아동학대처벌법 조치 결과를 살펴보았다.

1) 피해아동 조치결과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결과에는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가정복귀, 사망, 기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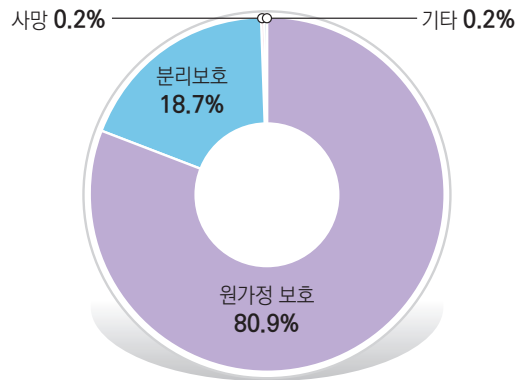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초기조치결과 중에서 아동이 주 양육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호를 받는 유형인 원가정보호에 해당하는 사례가 전체의 80.9%인 18,104건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아동에 대한 원가정보호 비율이 높은 이유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이 가족 보존의 가치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이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인 경우에도 학대의 위험수준이 경미하며, 문제행동에 대한 보호자의 개선 의지가 있어 학대재발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이 가정에서 주 양육자에 의해 보호되도록 하되 재학대 예방을 위한 지원 및 가족기능 회복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분리보호의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어 재학대 발생위험이 있거나, 응급조치, 임시조치 등을 통해 재학대 위험이 높은 학대행위자를 가정에서 분리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취해지고 있다. 피해아동이 분리보호된 경우는 전체의 18.7%인 4,179건이며, 이 중 일시보호 1,822건(8.1%), 친족(친인척)보호 1,149건(5.1%), 장기보호 953건(4.3%), 연고자에 의한 보호 163건(0.7%), 병원입원 90건(0.4%), 가정위탁 2건(0.0%) 순으로 나타났다. 초기조치에서 분리보호된 아동 중에는 친족(친인척)에 의해 보호된 경우가 1,149건(5.1%)이고, 위탁가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경우는 2건(0.0%)으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받는 경우는 적었다.

〈표 4-22〉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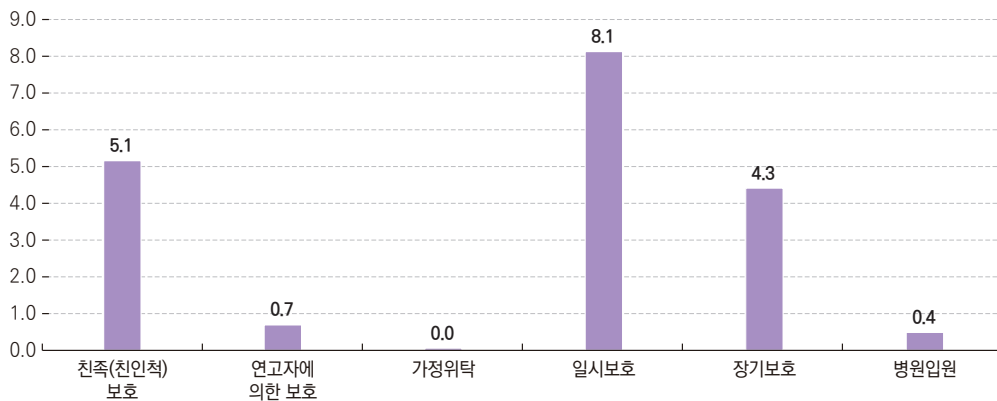
(단위 : 건, %)

원가정 보호	분리보호							사망	기타*	계
	친족(친인척) 보호	연고자에 의한 보호	가정위탁	일시보호	장기보호	병원입원	소계			
18,104	1,149	163	2	1,822	953	90	4,179	46	38	22,367
(80.9)	(5.1)	(0.7)	(0.0)	(8.1)	(4.3)	(0.4)	(18.7)	(0.2)	(0.2)	(100.0)



[그림 4-16]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단위 : %)



[그림 4-17] 피해아동 초기조치 결과 중 분리보호조치의 세부현황

* 아동의 가출, 소년원 구금된 경우 등을 포함.

2017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초기에 조치된 결과가 분리보호인 4,179건의 사례 중 초기 분리 보호 후에 가정으로 복귀된 사례는 1,047건으로 전체 분리보호 사례수에 약 25.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는 분리보호된 아동 4명 중 거의 1명은 원가정에 복귀된다고 볼 수 있다. 초기에 분리보호 후 가정복귀는 학대재발의 가능성이 낮고, 지역사회의 자원의 활용 및 지원이 가능할 때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 분리보호 후에 분리보호가 지속되지 않거나 혹은 가정복귀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는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와 기타의 경우이며 각각 5건, 19건이 이에 해당한다.

아동학대로 초기 분리보호되었다가 가정에 다시 복귀하는 아동의 수가 분리보호를 지속하는 수에 비해 적은 이유는 초기 분리조치 이후에도 가정 내에 학대유발요인 및 재학대 위험성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표 4-23〉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비율

(단위 : 건, %)

초기 분리보호 전체건수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복귀 건수		초기 분리보호가 지속된 건수	
4,179	(100.0)	1,047	(25.1)	3,108	(7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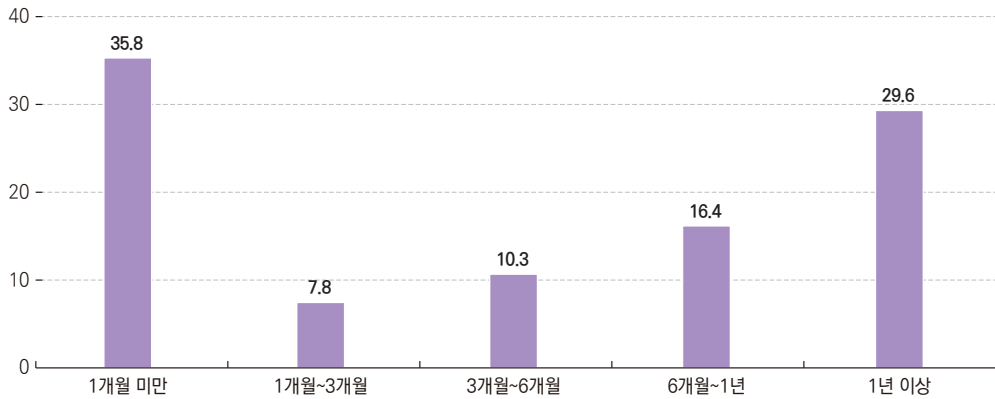
2017년 아동학대 사례 중 초기에 분리보호된 4,179건 가운데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으로 복귀된 1,047건을 바탕으로 복귀시기를 〈표 4-24〉와 같이 살펴보면, 1개월 이내에 가정복귀한 사례가 375건(35.8%)으로 가장 많았다. 초기 분리보호 후 1년 이후에 가정으로 복귀된 사례는 310건(29.6%), 6개월~1년 사이는 172건(16.4%), 3개월~6개월 사이는 108건(10.3%), 1개월~3개월 사이는 82건(7.8%)순이었다. 2017년 6개월 이상 분리보호된 건수는 482건(46%)으로 장기간 분리보호 후 가정복귀한 경우가 많았다.

〈표 4-24〉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시기

(단위 : 건, %)

복귀시기	건수(비율)	
초기 분리보호 후 1개월 미만	375	(35.8)
초기 분리보호 후 1개월~3개월	82	(7.8)
초기 분리보호 후 3개월~6개월	108	(10.3)
초기 분리보호 후 6개월~1년	172	(16.4)
초기 분리보호 후 1년 이상	310	(29.6)
계	1,047	(100.0)

(단위 : %)



[그림 4-18]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시기

다음으로 <표 4-25>는 각 지역의 피해아동 발견을 대비 피해아동 초기 분리보호율을 분석한 것이다. 먼저 지역별 피해아동 초기 분리보호율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28.1%, 제주특별자치도 25.0%, 경상남도 23.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초기 분리보호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광역시 12.6%였으며 경상북도 14.0%, 강원도 16.3%로 낮게 나타났다.

피해아동 발견율과 피해아동 초기 분리보호율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피해아동 발견율이 5.23%로 가장 높은 지역인 전라북도의 초기 분리보호율은 18.6%로 전국 평균보다 약 1.1%포인트 낮았다.

<표 4-25> 피해아동 발견율과 피해아동 초기 분리보호율 비교

(단위 : %, %)

지역	피해아동 발견율(인구 천 명 당)	피해아동 초기 분리보호율
서울특별시	1.66	17.4
부산광역시	2.97	12.6
대구광역시	2.81	20.5
인천광역시	2.49	21.3
광주광역시	2.88	18.3
대전광역시	1.97	28.1
울산광역시	3.50	23.3
경 기 도	2.21	18.5
강 원 도	4.53	16.3
충청북도	3.35	17.3
충청남도	2.48	19.2
전라북도	5.23	18.6
전라남도	4.89	20.6
경상북도	3.95	14.0
경상남도	1.94	23.5
제주특별자치도	2.84	25.0
전국평균	2.64	19.7

〈표 4-26〉 기관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단위 : 건, %)

지역 및 기관		조치결과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사망		기타		계	
서울	서울특별시	226	(81.9)	48	(17.4)	1	(0.4)	1	(0.4)	276	(100.0)		
	서울특별시동부	399	(84.0)	74	(15.6)	0	(0.0)	2	(0.4)	475	(100.0)		
	서울강서	265	(84.9)	43	(13.8)	3	(1.0)	1	(0.3)	312	(100.0)		
	서울은평	387	(85.2)	66	(14.5)	0	(0.0)	1	(0.2)	454	(100.0)		
	서울영등포	179	(75.2)	58	(24.4)	0	(0.0)	1	(0.4)	238	(100.0)		
	서울성북	250	(83.6)	48	(16.1)	1	(0.3)	0	(0.0)	299	(100.0)		
	서울마포	186	(73.8)	64	(25.4)	0	(0.0)	2	(0.8)	252	(100.0)		
부산	서울동남권*	-	-	-	-	-	-	-	-	-	-		
	소계	1,892	(82.0)	401	(17.4)	5	(0.2)	8	(0.3)	2,306	(100.0)		
	부산광역시	545	(84.8)	93	(14.5)	4	(0.6)	1	(0.2)	643	(100.0)		
	부산동부	301	(85.0)	49	(13.8)	4	(1.1)	0	(0.0)	354	(100.0)		
	부산서부	420	(90.9)	42	(9.1)	0	(0.0)	0	(0.0)	462	(100.0)		
대구	부산남부*	-	-	-	-	-	-	-	-	-	-		
	소계	1,266	(86.8)	184	(12.6)	8	(0.5)	1	(0.1)	1,459	(100.0)		
	대구광역시	238	(79.1)	62	(20.6)	0	(0.0)	1	(0.3)	301	(100.0)		
	대구남부	428	(83.6)	82	(16.0)	2	(0.4)	0	(0.0)	512	(100.0)		
	대구북부	227	(72.3)	87	(27.7)	0	(0.0)	0	(0.0)	314	(100.0)		
인천	소계	893	(79.2)	231	(20.5)	2	(0.2)	1	(0.1)	1,127	(100.0)		
	인천광역시	329	(73.3)	116	(25.8)	0	(0.0)	4	(0.9)	449	(100.0)		
	인천북부	409	(79.6)	104	(20.2)	1	(0.2)	0	(0.0)	514	(100.0)		
	인천남부	224	(84.5)	41	(15.5)	0	(0.0)	0	(0.0)	265	(100.0)		
	소계	962	(78.3)	261	(21.3)	1	(0.1)	4	(0.3)	1,228	(100.0)		
광주	광주광역시	265	(75.1)	88	(24.9)	0	(0.0)	0	(0.0)	353	(100.0)		
	빛고을	383	(86.5)	58	(13.1)	2	(0.5)	0	(0.0)	443	(100.0)		
	소계	648	(81.4)	146	(18.3)	2	(0.3)	0	(0.0)	796	(100.0)		
대전	대전광역시	374	(71.4)	147	(28.1)	0	(0.0)	3	(0.6)	524	(100.0)		
	울산광역시	357	(73.5)	128	(26.3)	0	(0.0)	1	(0.2)	486	(100.0)		
	울산남부**	209	(82.6)	44	(17.4)	0	(0.0)	0	(0.0)	253	(100.0)		
경기	소계	566	(76.6)	172	(23.3)	0	(0.0)	1	(0.1)	739	(100.0)		
	경기도	180	(83.7)	35	(16.3)	0	(0.0)	0	(0.0)	215	(100.0)		
	경기북부	486	(83.6)	95	(16.4)	0	(0.0)	0	(0.0)	581	(100.0)		
	경기성남	394	(82.3)	83	(17.3)	1	(0.2)	1	(0.2)	479	(100.0)		
	경기고양	194	(71.6)	77	(28.4)	0	(0.0)	0	(0.0)	271	(100.0)		
	경기부천	366	(80.1)	90	(19.7)	1	(0.2)	0	(0.0)	457	(100.0)		
	경기화성	280	(85.9)	46	(14.1)	0	(0.0)	0	(0.0)	326	(100.0)		
	경기남양주	329	(77.2)	94	(22.1)	2	(0.5)	1	(0.2)	426	(100.0)		
	안산시	780	(82.8)	159	(16.9)	1	(0.1)	2	(0.2)	942	(100.0)		
	경기용인	402	(85.7)	61	(13.0)	3	(0.6)	3	(0.6)	469	(100.0)		
	경기시흥	245	(70.8)	99	(28.6)	2	(0.6)	0	(0.0)	346	(100.0)		
	경기평택	181	(86.2)	29	(13.8)	0	(0.0)	0	(0.0)	210	(100.0)		
	수원	282	(79.4)	72	(20.3)	0	(0.0)	1	(0.3)	355	(100.0)		
	소계	4,119	(81.1)	940	(18.5)	10	(0.2)	8	(0.2)	5,077	(100.0)		
강원	강원도	143	(77.7)	41	(22.3)	0	(0.0)	0	(0.0)	184	(100.0)		
	강원동부	238	(91.5)	20	(7.7)	0	(0.0)	2	(0.8)	260	(100.0)		
	강원서부	186	(69.9)	80	(30.1)	0	(0.0)	0	(0.0)	266	(100.0)		
	강원남부	325	(90.5)	33	(9.2)	1	(0.3)	0	(0.0)	359	(100.0)		
	소계	892	(83.4)	174	(16.3)	1	(0.1)	2	(0.2)	1,069	(100.0)		
충북	충청북도	425	(82.7)	87	(16.9)	2	(0.4)	0	(0.0)	514	(100.0)		
	충북북부	151	(75.9)	47	(23.6)	1	(0.5)	0	(0.0)	199	(100.0)		
	충북남부	153	(87.4)	20	(11.4)	1	(0.6)	1	(0.6)	175	(100.0)		
	소계	729	(82.1)	154	(17.3)	4	(0.5)	1	(0.1)	888	(100.0)		
충남	충청남도	364	(81.8)	77	(17.3)	3	(0.7)	1	(0.2)	445	(100.0)		
	충청남도남부	213	(78.3)	59	(21.7)	0	(0.0)	0	(0.0)	272	(100.0)		
	충청남도서부	273	(79.4)	68	(19.8)	3	(0.9)	0	(0.0)	344	(100.0)		
	소계	850	(80.1)	204	(19.2)	6	(0.6)	1	(0.1)	1,061	(100.0)		

(계속)

(단위 : 건, %)

조치결과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사망		기타		계	
지역 및 기관											
전 북	전라북도	499	(81.9)	109	(17.9)	1	(0.2)	0	(0.0)	609	(100.0)
	전라북도서부	500	(81.7)	112	(18.3)	0	(0.0)	0	(0.0)	612	(100.0)
	전라북도동부	281	(79.6)	72	(20.4)	0	(0.0)	0	(0.0)	353	(100.0)
	소계	1,280	(81.3)	293	(18.6)	1	(0.1)	0	(0.0)	1,574	(100.0)
전 남	전라남도	342	(81.6)	75	(17.9)	2	(0.5)	0	(0.0)	419	(100.0)
	전남서부권	483	(75.2)	157	(24.5)	0	(0.0)	2	(0.3)	642	(100.0)
	전남중부권	296	(83.1)	60	(16.9)	0	(0.0)	0	(0.0)	356	(100.0)
	소계	1,121	(79.1)	292	(20.6)	2	(0.1)	2	(0.1)	1,417	(100.0)
경 북	경북남부	105	(73.9)	37	(26.1)	0	(0.0)	0	(0.0)	142	(100.0)
	경북북부	335	(86.8)	51	(13.2)	0	(0.0)	0	(0.0)	386	(100.0)
	경북동부	586	(85.8)	97	(14.2)	0	(0.0)	0	(0.0)	683	(100.0)
	경북서부	371	(89.4)	43	(10.4)	1	(0.2)	0	(0.0)	415	(100.0)
	소계	1,397	(85.9)	228	(14.0)	1	(0.1)	0	(0.0)	1,626	(100.0)
경 남	경상남도	452	(72.7)	165	(26.5)	2	(0.3)	3	(0.5)	622	(100.0)
	경남서부	230	(77.4)	65	(21.9)	0	(0.0)	2	(0.7)	297	(100.0)
	김해시	177	(83.1)	36	(16.9)	0	(0.0)	0	(0.0)	213	(100.0)
	소계	859	(75.9)	266	(23.5)	2	(0.2)	5	(0.4)	1,132	(100.0)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139	(67.8)	64	(31.2)	1	(0.5)	1	(0.5)	205	(100.0)
	서귀포시	117	(84.2)	22	(15.8)	0	(0.0)	0	(0.0)	139	(100.0)
	소계	256	(74.4)	86	(25.0)	1	(0.3)	1	(0.3)	344	(100.0)
계		18,104	(80.9)	4,179	(18.7)	46	(0.2)	38	(0.2)	22,367	(100.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로 피해아동의 초기조치결과를 <표 4-27>과 같이 살펴보았다. 모든 학대 유형에서 약 70% 이상으로 원가정 보호 조치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원가정보호 조치 이후 학대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아동이 원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별 가족에게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표 4-27〉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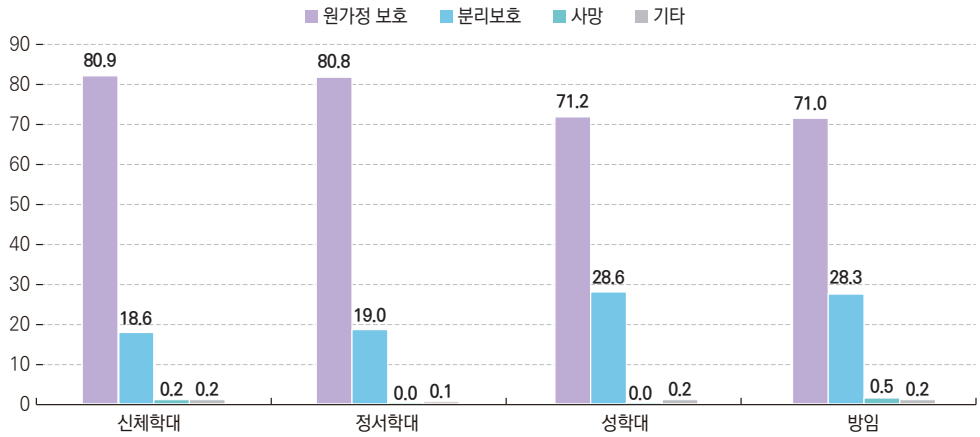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초기조치											
원가정보호		10,680	(80.9)	12,405	(80.8)	774	(71.2)	3,225	(71.0)	27,084	(79.2)
분리 보호	친족보호	735	(5.6)	919	(6.0)	55	(5.1)	225	(5.0)	1,934	(5.7)
	연고자에 의한 보호	111	(0.8)	119	(0.8)	7	(0.6)	32	(0.7)	269	(0.8)
	가정위탁	1	(0.0)	2	(0.0)	0	(0.0)	0	(0.0)	3	(0.0)
	일시보호	1,076	(8.2)	1,222	(8.0)	159	(14.6)	672	(14.8)	3,129	(9.2)
	장기보호	488	(3.7)	620	(4.0)	90	(8.3)	314	(6.9)	1,512	(4.4)
	병원입원	47	(0.4)	31	(0.2)	0	(0.0)	45	(1.0)	123	(0.4)
	소계	2,458	(18.6)	2,913	(19.0)	311	(28.6)	1,288	(28.3)	6,970	(20.4)
사망		32	(0.2)	6	(0.0)	0	(0.0)	22	(0.5)	60	(0.2)
기타		30	(0.2)	22	(0.1)	2	(0.2)	10	(0.2)	64	(0.2)
계		13,200	(100.0)	15,346	(100.0)	1,087	(100.0)	4,545	(100.0)	34,178	(100.0)

※중복포함

*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받아 현장조사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7년 3월 1일 개소됨.

(단위 : %)



※중복포함

[그림 4-1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나.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아동학대사례의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는 2017년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종결 여부에 관계없이 2017년에 실시한 마지막 차수의 조치결과를 뜻한다.

〈표 4-28〉을 통해 2017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의 종결 여부를 각 기관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사례 종결 여부를 각 기관별로 살펴보면 사례 종결 비율은 9.4%~92.7%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진행 중인 사례의 경우 7.3%~90.6%의 분포를 보였다. 2017년 아동학대사례 22,367건 중 당해에 종결된 사례 수는 10,874건으로 전체의 48.6%를 차지하였으며, 계속해서 서비스 지원 등의 개입을 진행하는 사례는 11,493건(51.4%)이었다. 즉,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하는 사례 10건 중 5건이 당해 연도에 종결되지 않고 장기적인 사례관리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8〉 기관별 피해아동 사례종결 현황

(단위 : 건, %)

지역 및 기관		종결여부	사례종결		진행 중		계
서울	서울특별시		29	(10.5)	247	(89.5)	276 (100.0)
	서울특별시동부		383	(80.6)	92	(19.4)	475 (100.0)
	서울강서		196	(62.8)	116	(37.2)	312 (100.0)
	서울은평		182	(40.1)	272	(59.9)	454 (100.0)
	서울영등포		115	(48.3)	123	(51.7)	238 (100.0)
	서울성북		49	(16.4)	250	(83.6)	299 (100.0)
	서울마포		184	(73.0)	68	(27.0)	252 (100.0)
	서울동남권*		-	-	-	-	-
소계			1,138	(49.3)	1,168	(50.7)	2,306 (100.0)

(계속)

(단위 : 건, %)

지역 및 기관		종결여부		사례종결		진행 중		계	
부 산	부산광역시			374	(58.2)	269	(41.8)	643	(100.0)
	부산동부			71	(20.1)	283	(79.9)	354	(100.0)
	부산서부			197	(42.6)	265	(57.4)	462	(100.0)
	부산남부*			-		-		-	
	소계			642	(44.0)	817	(56.0)	1,459	(100.0)
대 구	대구광역시			239	(79.4)	62	(20.6)	301	(100.0)
	대구남부			194	(37.9)	318	(62.1)	512	(100.0)
	대구북부			167	(53.2)	147	(46.8)	314	(100.0)
	소계			600	(53.2)	527	(46.8)	1,127	(100.0)
인 천	인천광역시			388	(86.4)	61	(13.6)	449	(100.0)
	인천북부			273	(53.1)	241	(46.9)	514	(100.0)
	인천남부			163	(61.5)	102	(38.5)	265	(100.0)
	소계			824	(67.1)	404	(32.9)	1,228	(100.0)
광 주	광주광역시			299	(84.7)	54	(15.3)	353	(100.0)
	빛고을			250	(56.4)	193	(43.6)	443	(100.0)
	소계			549	(69.0)	247	(31.0)	796	(100.0)
대 전	대전광역시			162	(30.9)	362	(69.1)	524	(100.0)
울 산	울산광역시			337	(69.3)	149	(30.7)	486	(100.0)
	울산남부**			214	(84.6)	39	(15.4)	253	(100.0)
	소계			551	(74.6)	188	(25.4)	739	(100.0)
경 기	경기도			178	(82.8)	37	(17.2)	215	(100.0)
	경기북부			324	(55.8)	257	(44.2)	581	(100.0)
	경기성남			105	(21.9)	374	(78.1)	479	(100.0)
	경기고양			167	(61.6)	104	(38.4)	271	(100.0)
	경기부천			241	(52.7)	216	(47.3)	457	(100.0)
	경기화성			226	(69.3)	100	(30.7)	326	(100.0)
	경기남양주			40	(9.4)	386	(90.6)	426	(100.0)
	안산시			416	(44.2)	526	(55.8)	942	(100.0)
	경기용인			310	(66.1)	159	(33.9)	469	(100.0)
	경기시흥			45	(13.0)	301	(87.0)	346	(100.0)
	경기평택			46	(21.9)	164	(78.1)	210	(100.0)
	수원			96	(27.0)	259	(73.0)	355	(100.0)
	소계			2,194	(43.2)	2,883	(56.8)	5,077	(100.0)
강 원	강원도			85	(46.2)	99	(53.8)	184	(100.0)
	강원동부			177	(68.1)	83	(31.9)	260	(100.0)
	강원서부			144	(54.1)	122	(45.9)	266	(100.0)
	강원남부			178	(49.6)	181	(50.4)	359	(100.0)
	소계			584	(54.6)	485	(45.4)	1,069	(100.0)
충 북	충청북도			94	(18.3)	420	(81.7)	514	(100.0)
	충북북부			133	(66.8)	66	(33.2)	199	(100.0)
	충북남부			124	(70.9)	51	(29.1)	175	(100.0)
	소계			351	(39.5)	537	(60.5)	888	(100.0)
충 남	충청남도			154	(34.6)	291	(65.4)	445	(100.0)
	충청남도남부			74	(27.2)	198	(72.8)	272	(100.0)
	충청남도서부			105	(30.5)	239	(69.5)	344	(100.0)
	소계			333	(31.4)	728	(68.6)	1,061	(100.0)

(계속)

(단위: 건, %)

지역 및 기관		종결여부		사례종결		진행 중		계	
전 북	전라북도			126	(20.7)	483	(79.3)	609	(100.0)
	전라북도서부			219	(35.8)	393	(64.2)	612	(100.0)
	전라북도동부			91	(25.8)	262	(74.2)	353	(100.0)
	소계			436	(27.7)	1,138	(72.3)	1,574	(100.0)
전 남	전라남도			265	(63.2)	154	(36.8)	419	(100.0)
	전남서부권			317	(49.4)	325	(50.6)	642	(100.0)
	전남중부권			160	(44.9)	196	(55.1)	356	(100.0)
	소계			742	(52.4)	675	(47.6)	1,417	(100.0)
경 북	경북남부			105	(73.9)	37	(26.1)	142	(100.0)
	경북북부			257	(66.6)	129	(33.4)	386	(100.0)
	경북동부			406	(59.4)	277	(40.6)	683	(100.0)
	경북서부			198	(47.7)	217	(52.3)	415	(100.0)
	소계			966	(59.4)	660	(40.6)	1,626	(100.0)
경 남	경상남도			292	(46.9)	330	(53.1)	622	(100.0)
	경남서부			125	(42.1)	172	(57.9)	297	(100.0)
	김해시			164	(77.0)	49	(23.0)	213	(100.0)
	소계			581	(51.3)	551	(48.7)	1,132	(100.0)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190	(92.7)	15	(7.3)	205	(100.0)
	서귀포시			31	(22.3)	108	(77.7)	139	(100.0)
	소계			221	(64.2)	123	(35.8)	344	(100.0)
계				10,874	(48.6)	11,493	(51.4)	22,367	(100.0)

〈표 4-29〉를 통해 2017년에 발생한 아동학대사례 22,367건의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를 사례종결 여부별로 살펴보았다. 원가정에 보호되는 사례는 17,589건(78.6%)을 기록하였는데, 초기 조치 시 원가정에 보호된 아동이 80.9%인 것을 감안 할 때 다소 낮아진 수치다. 다음으로는 분리보호된 사례가 3,527건(15.8%)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유형을 살펴보면 장기보호 1,274건(5.7%), 친족(친인척) 보호 1,230건(5.5%), 일시보호 824건(3.7%), 연고자에 의한 보호 110건(0.5%), 병원입원 60건(0.3%), 가정위탁 29건(0.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에 분리보호된 이후, 학대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피해아동을 다시 가정으로 복귀시키는데 이는 1,139건(5.1%)에 해당하며, 사망한 경우는 58건(0.3%)이었다.

다음으로 피해아동의 최종조치결과를 진행 중인 사례와 종결된 사례로 나누어 보면, 진행 중인 사례 중 원가정에 보호된 사례는 77.2%였고, 종결 사례에서는 80.1%의 분포를 보였다. 진행 중인 사례 중 분리보호된 사례는 17.1%에 해당하고, 반면 종결된 사례에서 분리보호된 사례는 14.3%로 나타났다. 분리보호 조치 중에서 진행 중 사례와 종결사례의 가장 큰 비율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일시보호였으며 진행중사례가 약 2.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받아 현장조사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받아 현장조사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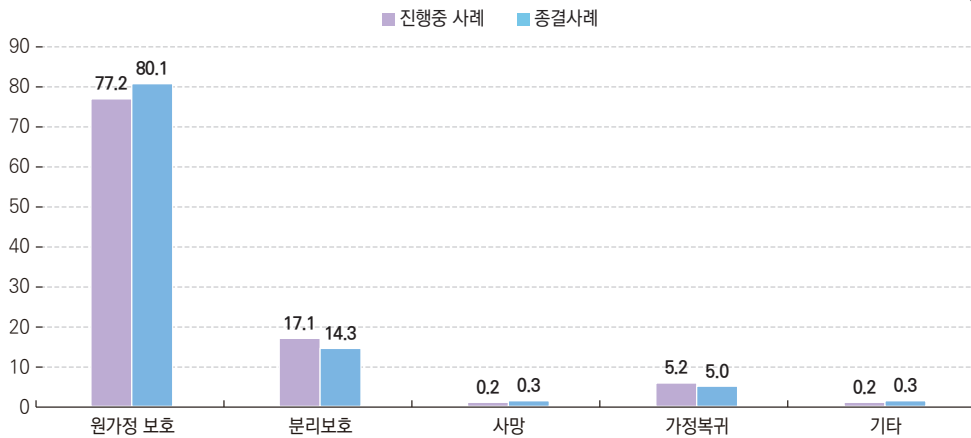
** 2017년 3월 1일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함.

〈표 4-29〉 사례종결 여부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조치결과 종결여부	원가정 보호	분리보호							사망	가정 복귀	기타	계
		친족 (친인척) 보호	연고자 에 의한 보호	가정 위탁	일시 보호	장기 보호	병원 입원	소계				
진행 중 사례	8,877	638	65	23	550	669	26	1,971	26	598	21	11,493
	(77.2)	(5.6)	(0.6)	(0.2)	(4.8)	(5.8)	(0.2)	(17.1)	(0.2)	(5.2)	(0.2)	(100.0)
종결사례	8,712	592	45	6	274	605	34	1,556	32	541	33	10,874
	(80.1)	(5.4)	(0.4)	(0.1)	(2.5)	(5.6)	(0.3)	(14.3)	(0.3)	(5.0)	(0.3)	(100.0)
계	17,589	1,230	110	29	824	1,274	60	3,527	58	1,139	54	22,367
	(78.6)	(5.5)	(0.5)	(0.1)	(3.7)	(5.7)	(0.3)	(15.8)	(0.3)	(5.1)	(0.2)	(100.0)

(단위 : %)



[그림 4-20] 사례종결 여부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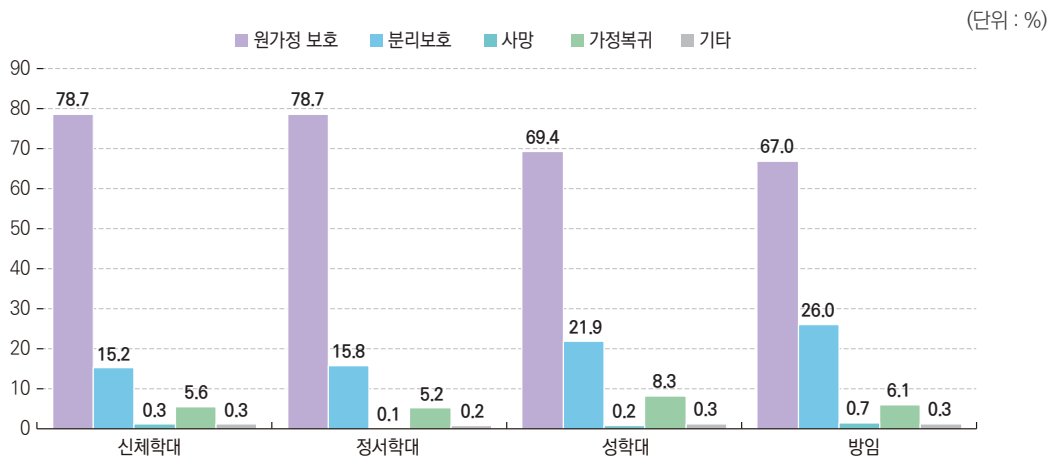
아동학대사례 유형에 따른 피해아동의 최종조치결과는 〈표 4-30〉과 같이 모든 사례유형에서 피해아동을 원가정보호하는 조치가 6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방임 사례는 분리보호율이 26.0%로 가장 높았으며, 그중에서도 장기보호조치가 12.1%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방임 사례에서는 분리보호 유형 중 다른 유형보다 장기보호가 가장 비율이 높았다.

〈표 4-3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최종조치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원가정보호				10,385	(78.7)	12,072	(78.7)	754	(69.4)	3,045	(67.0)	26,256	(76.8)
분리 보호	친족보호			799	(6.1)	979	(6.4)	63	(5.8)	250	(5.5)	2,091	(6.1)
	연고자에 의한 보호			70	(0.5)	77	(0.5)	4	(0.4)	26	(0.6)	177	(0.5)
	가정위탁			13	(0.1)	19	(0.1)	1	(0.1)	15	(0.3)	48	(0.1)
	일시보호			471	(3.6)	557	(3.6)	67	(6.2)	315	(6.9)	1,410	(4.1)
	장기보호			620	(4.7)	768	(5.0)	102	(9.4)	551	(12.1)	2,041	(6.0)
	병원입원			29	(0.2)	27	(0.2)	1	(0.1)	25	(0.6)	82	(0.2)
소계				2,002	(15.2)	2,427	(15.8)	238	(21.9)	1,182	(26.0)	5,849	(17.1)
사 망				35	(0.3)	10	(0.1)	2	(0.2)	30	(0.7)	77	(0.2)
가정복귀				737	(5.6)	800	(5.2)	90	(8.3)	275	(6.1)	1,902	(5.6)
기타				41	(0.3)	37	(0.2)	3	(0.3)	13	(0.3)	94	(0.3)
계				13,200	(100.0)	15,346	(100.0)	1,087	(100.0)	4,545	(100.0)	34,178	(100.0)

※중복포함



※중복포함

[그림 4-21]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피해아동 보호 현황*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호하는 곳으로 피해아동에게 숙식 뿐만 아니라 생활지원과 상담 및 치료,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① 2017년도 피해아동 입·퇴소 현황

〈표 4-31〉과 같이 2017년에는 전국에 총 57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총 973명의 아동을 보호하였다. 이 중 2017년 이전에 입소하여 2017년도에도 보호를 받은 아동의 수는 전체의 23.9%인 233명이었고, 2017년도에 입소한 아동은 740명(76.1%)이었다.

〈표 4-31〉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현황

(단위 : 명, %)

	2017년 이전 입소아동		2017년 입소아동		총 보호아동	
아동 수	233	(23.9)	740	(76.1)	973	(100.0)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현황을 〈표 4-32〉와 같이 살펴보면 2017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한 아동 973명 중 퇴소한 아동은 73.7%인 717명이었고, 재원하고 있는 아동은 256명(26.3%)이었다.

〈표 4-32〉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현황

(단위 : 명, %)

	퇴소 아동		재원 아동		총 보호아동	
아동 수	717	(73.7)	256	(26.3)	973	(100.0)

② 2017년도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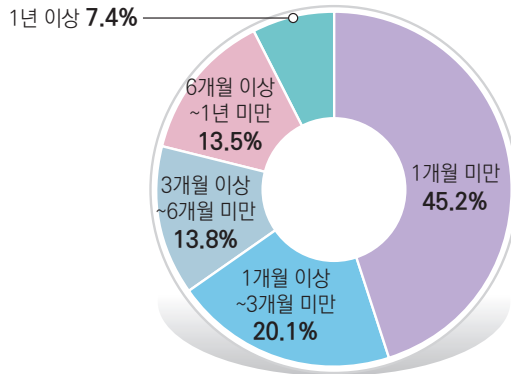
2017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퇴소한 아동 총 717명을 대상으로 퇴소 아동들의 거주 기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동의 학대 피해상황과 특성에 따라 거주 기간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1개월 미만으로 거주한 아동은 324명(45.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이 144명(20.1%),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99명(13.8%), 6개월 이상~1년 미만 97명(13.5%), 1년 이상 53명(7.4%)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3〉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단위 : 명, %)

거주 기간	명수(비율)	
1개월 미만	324	(45.2)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144	(20.1)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99	(13.8)
6개월 이상 ~ 1년 미만	97	(13.5)
1년 이상	53	(7.4)
계	717	(100.0)

* 2017년 12월 31일 기준



[그림 4-22]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③ 2017년도 퇴소 아동의 거주지

2017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퇴소한 아동 전체 717명을 대상으로 <표 4-34>와 같이 살펴본 결과 원가정 복귀 비율이 48.3%로 가장 높았다. 원가정 복귀는 아동의 학대 위험 상황의 제거와 부모의 양육 태도 및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타 시설 입소는 267명(37.2%)으로 나타났는데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할 경우나 장애, 영유아 등의 특성이 있는 경우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타 시설로 입소가 되고 있다. 학대행위자가 부모일 때 다른 부모에 의한 보호를 포함한 친족(친인척)보호는 45명(6.3%)이며, 가정위탁은 7명(1.0%)으로 나타났으며 대리양육(조부모), 친인척, 일반 가정위탁이 이루어졌다. 기타는 52명(7.3%)이 병원, 연고자보호, 자립, 가출 등의 사유로 퇴소함을 의미한다.

〈표 4-34〉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 거주지

(단위 : 명, %)

퇴소 후 거주지	명수(비율)	
원가정 복귀	346	(48.3)
친족(친인척)보호	45	(6.3)
가정위탁	7	(1.0)
타 시설 입소	267	(37.2)
기타	52	(7.3)
계	717	(100.0)

2)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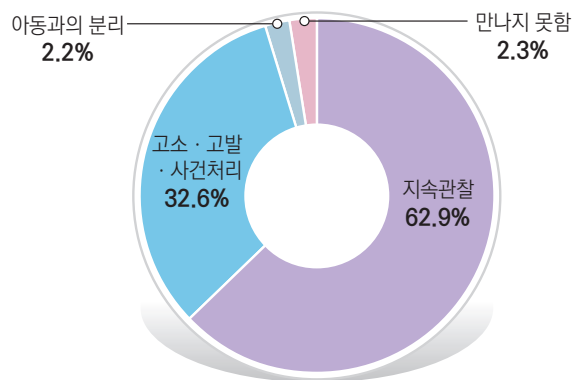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결과를 <표 4-35>와 같이 살펴보았다. 최종조치결과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와 마찬가지로 2017년 아동학대사례의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조치 중 당해 연도 가장 마지막 차수에 해당하는 결과를 의미한다.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취한 조치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지속관찰로 총 14,075건(62.9%)이었다. 지속관찰은 학대행위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연계기관과 협조적 관계에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거나 아동의 안전 확보 및 재학대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고소·고발·사건처리는 고소 및 고발과 수사익뢰, 응급조치에 따른 수사개시 등 사법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해당하는 조치로 7,297건(32.6%)이었다. 고소·고발·사건처리에서 고소·고발 조치된 경우는 5,510건이었으며 고소고발 뿐만 아니라 응급조치에 따른 수사개시 등 사법절차가 함께 진행된 경우는 1,787건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학대행위자가 아동과 분리된 사례는 484건(2.2%)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사례는 511건(2.3%)으로 행방불명, 수감, 개입거부, 사망 등으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표 4-35>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지속관찰	아동과의 분리	고소·고발·사건처리	만나지 못함	계
14,075	484	7,297	511	22,367
(62.9)	(2.2)	(32.6)	(2.3)	(100.0)



[그림 4-23]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표 4-36〉은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이다. 성학대를 제외하고 모든 학대유형에서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로 지속관찰이 60% 이상인 반면, 성학대 사례의 경우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조치로 고소·고발·사건처리가 80.5%로 가장 높았다. 또한 고소·고발·사건처리는 신체학대에서 33.7%, 정서학대에서 31.7%, 방임에서 30.9%였으며 2016년과 비교하여 정서학대는 1%p 감소했으나 정서학대는 1.1%p, 방임은 0.02%p 증가했다. 특히 2014년 이후 정서학대와 방임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처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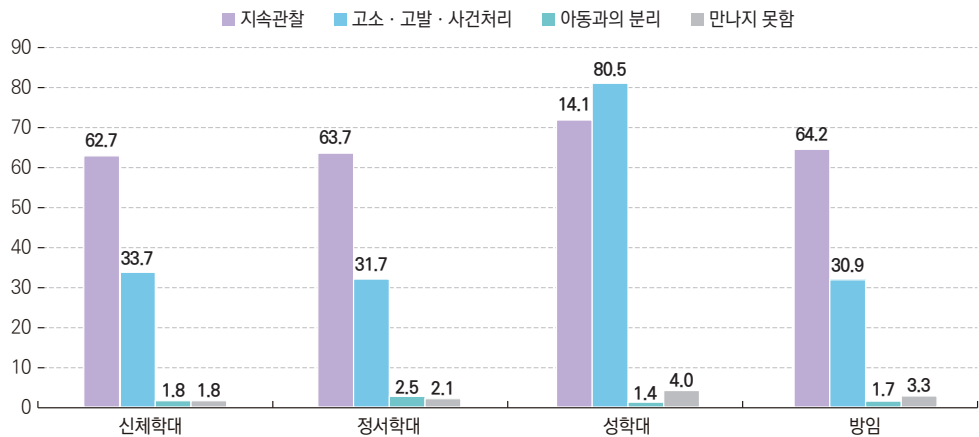
〈표 4-36〉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조치결과 \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지속관찰	8,275	(62.7)	9,779	(63.7)	153	(14.1)	2,916	(64.2)	21,123	(61.8)
고소·고발·사건처리	4,443	(33.7)	4,871	(31.7)	875	(80.5)	1,403	(30.9)	11,592	(33.9)
아동과의 분리	244	(1.8)	379	(2.5)	15	(1.4)	76	(1.7)	714	(2.1)
만나지 못함	238	(1.8)	317	(2.1)	44	(4.0)	150	(3.3)	749	(2.2)
계	13,200	(100.0)	15,346	(100.0)	1,087	(100.0)	4,545	(100.0)	34,178	(100.0)

※중복포함

(단위 : %)



※중복포함

[그림 4-24]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나.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2017년 전체 아동학대사례인 22,367건 중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고소·고발·사건처리 조치를 취한 것은 7,297건으로 전체의 32.6%에 해당하였다. <표 4-37>과 같이 고소·고발 조치의 경우는 5,510건이었으며, 고소·고발 진행과 함께 수사의뢰, 응급조치에 따른 수사개시 등 사법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1,787건이었다. 해당 분석은 학대행위자의 고소·고발 조치에 대한 분석으로 전체 고소·고발·사건처리 조치의 7,297건 중 사건처리 조치가 함께 진행된 1,787건을 제외한 고소·고발 조치 5,510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고소·고발된 사례에 대하여 경찰수사, 검찰수사, 재판진행중 및 판결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자료에서 경찰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검찰수사와 법원으로 송치된 사례는 경찰수사의 고소·고발 통계 자료에서 집계하지 않았으며, 검찰수사를 거쳐 법원으로 기소된 사례는 검찰수사 통계수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표 4-37〉 학대행위자 고소·고발·사건처리 조치 건수

(단위: 건)

고소·고발 조치 건수	사건처리 조치 건수
5,510	1,787

학대행위자를 고소·고발한 5,510건 중 경찰수사만 이루어진 사례는 1,064건(19.3%)으로 파악되었다.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는 583건(10.6%), 내사종결된 사례는 298건(5.4%)이었다. 검찰수사가 이루어진 사례 1,595건 중 수사 진행 중인 사례는 307건(5.6%), 불기소된 사례는 973건(17.7%), 아동보호송치사건은 131건(2.4%), 가정보호송치사건은 10건(0.2%), 형사기소는 18건(0.3%)으로 집계되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례 466건 중 1심이 진행 중인 사례는 199건(3.6%), 항소심(2심)이 진행 중인 사례는 65건(1.2%), 상고심(최종)이 진행 중인 사례는 47건(0.9%)이었다. 이처럼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결과가 확인되지 않고 지금까지 경찰 및 검찰 수사 중이거나 재판 진행 중인 사례가 3,125건으로 전체 고소·고발 사례의 56.7%로 나타났다.

법원 판결을 받은 사례는 총 2,013건으로 전체의 36.5%에 해당한다. 이중 보호처분 사례는 949건(17.2%), 형사처벌 사례가 392건(7.1%), 보안처분과 형사처벌이 집행된 사례가 177건(3.2%), 불처분 등의 기타 판결은 495건(9.0%)으로 집계되었다.

* 고소고발조치의 경우 2018.8.16 마감일의 결과를 반영함.

〈표 4-38〉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단위 : 건, %)

구 분		건수(비율)		
경찰 수사	수사중	583	(10.6)	
	내사종결	298	(5.4)	
	파악안됨	183	(3.3)	
	소계	1,064	(19.3)	
검찰 수사	수사중	307	(5.6)	
	불기소	973	(17.7)	
	아동보호송치사건	131	(2.4)	
	가정보호송치사건	10	(0.2)	
	형사기소	18	(0.3)	
	파악안됨	156	(2.8)	
	소계	1,595	(28.9)	
재판 진행중	1심 진행	199	(3.6)	
	항소심 진행	65	(1.2)	
	상고심 진행	47	(0.9)	
	파악안됨	155	(2.8)	
	소계	466	(8.5)	
판결	보호처분	보호관찰	77	(1.4)
		감호·치료·상담위탁	468	(8.5)
		보호관찰+감호·치료·상담위탁	91	(1.7)
		사회봉사·수강명령·이수명령	181	(3.3)
		사회봉사·수강명령·이수명령+보호관찰	41	(0.7)
		사회봉사·수강명령·이수명령+보호관찰+감호·치료·상담위탁	5	(0.1)
		사회봉사·수강명령·이수명령+감호·치료·상담위탁	6	(0.1)
		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제한	1	(0.0)
		접근행위제한	3	(0.1)
		접근행위제한+보호관찰	2	(0.0)
		접근행위제한+감호·치료·상담위탁	1	(0.0)
		접근행위제한+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제한	5	(0.1)
		접근행위제한+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제한+사회봉사·수강명령·이수명령	4	(0.1)
		접근행위제한+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제한+사회봉사·수강명령·이수명령+보호관찰	3	(0.1)
		접근행위제한+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제한+보호관찰	2	(0.0)
		접근행위제한+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제한+보호관찰+감호·치료·상담위탁	3	(0.1)
		접근행위제한+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제한+감호·치료·상담위탁	3	(0.1)
		접근행위제한+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제한+친권행사제한	1	(0.0)
		접근행위제한+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제한+친권행사제한+사회봉사·수강명령·이수명령	1	(0.0)
		접근행위제한+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제한+친권행사제한+보호관찰	1	(0.0)
		접근행위제한+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제한+친권행사제한+감호·치료·상담위탁	1	(0.0)
	파악안됨	49	(0.9)	
	소계	949	(17.2)	
	형사처벌	과료	2	(0.0)
		벌금	147	(2.7)
		징역	164	(3.0)
		징역+집행유예	78	(1.4)

(계속)

(단위 : 건, %)

구 분		건수(비율)	
형사처벌	선고유예	1	(0.0)
	소계	392	(7.1)
형사처벌+ 보안처분	사회봉사·수감명령·이수명령	4	(0.1)
	벌금+사회봉사·수감명령·이수명령	13	(0.2)
	집행유예+사회봉사·수감명령·이수명령	7	(0.1)
	징역+사회봉사·수감명령·이수명령	57	(1.0)
	징역+몰수+사회봉사·수감명령·이수명령	1	(0.0)
	징역+몰수+집행유예+사회봉사·수감명령·이수명령	1	(0.0)
	징역+벌금+사회봉사·수감명령·이수명령	1	(0.0)
	징역+선고유예+사회봉사·수감명령·이수명령	1	(0.0)
	징역+집행유예+사회봉사·수감명령·이수명령	78	(1.4)
	징역+집행유예+보호관찰+사회봉사·수감명령·이수명령	4	(0.1)
	징역+집행유예+보호관찰	6	(0.1)
	징역+감호·치료·상담위탁	1	(0.0)
	징역+집행유예+감호·치료·상담위탁	3	(0.1)
	소계	177	(3.2)
	공소기각	33	(0.6)
	무죄	9	(0.2)
	불처분	351	(6.4)
	파약안됨	102	(1.9)
	판결 소계	2,013	(36.5)
파약안됨		372	(17.4)
계		5,510	(100.0)

고소·고발된 아동학대사례를 학대 유형별로 <표 4-39>와 같이 분석한 결과, 고소·고발 조치가 가장 많이 취해진 학대 유형은 중복학대로 총 2,745건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서학대 899건, 신체학대 841건, 성학대 524건, 방임 501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학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동시에 발생한 사례가 2,210건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체학대와 방임이 동시에 발생한 사례가 148건이었다.

아동학대 유형별로 학대행위자 고소·고발의 판결 결과를 살펴보면 신체학대의 경우 보호처분이 19.6%로 다른 판결 결과보다 높았고, 정서학대도 보호처분이 13.6%로 다른 판결 결과보다 높았다. 그러나 성학대의 경우는 형사처벌이 132건(25.2%), 보안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판결을 받은 경우가 72건(13.7%)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중복학대의 경우는 보호처분이 565건(20.6%)로 높게 나타났다.

〈표 4-3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단위 : 건, %)

고소·고발 결과 유형		경찰수사	검찰수사	재판 진행중	판결					파악 안됨	계	
					보호처분	형사처벌	보안처분 + 형사처벌	무죄* 등	파악안됨			소 계
신체학대		152	269	82	165	44	13	55	18	295	43	841
		(18.1)	(32.0)	(9.8)	(19.6)	(5.2)	(1.5)	(6.5)	(2.1)	(35.1)	(5.1)	(100.0)
정서학대		147	306	64	122	68	15	66	12	283	99	899
		(16.4)	(34.0)	(7.1)	(13.6)	(7.6)	(1.7)	(7.3)	(1.3)	(31.5)	(11.0)	(100.0)
성학대		84	103	76	28	132	72	4	12	248	13	524
		(16.0)	(19.7)	(14.5)	(5.3)	(25.2)	(13.7)	(0.8)	(2.3)	(47.3)	(2.5)	(100.0)
방임		83	198	14	69	15	5	64	4	157	49	501
		(16.6)	(39.5)	(2.8)	(13.8)	(3.0)	(1.0)	(12.8)	(0.8)	(31.3)	(9.8)	(100.0)
중복 학대	신체·정서	488	557	174	480	100	53	175	49	857	134	2,210
		(22.1)	(25.2)	(7.9)	(21.7)	(4.5)	(2.4)	(7.9)	(2.2)	(38.8)	(6.1)	(100.0)
	신체·성	2	5	4	2	4	0	7	1	14	0	25
		(8.0)	(20.0)	(16.0)	(8.0)	(16.0)	(0.0)	(28.0)	(4.0)	(56.0)	(0.0)	(100.0)
	신체·방임	3	2	1	18	3	3	2	0	26	4	36
		(8.3)	(5.6)	(2.8)	(50.0)	(8.3)	(8.3)	(5.6)	(0.0)	(72.2)	(11.1)	(100.0)
	정서·성	34	23	24	9	8	2	3	5	27	4	112
		(30.4)	(20.5)	(21.4)	(8.0)	(7.1)	(1.8)	(2.7)	(4.5)	(24.1)	(3.6)	(100.0)
	정서·방임	28	65	2	19	3	1	7	0	30	11	136
		(20.6)	(47.8)	(1.5)	(14.0)	(2.2)	(0.7)	(5.1)	(0.0)	(22.1)	(8.1)	(100.0)
	신체·정서·성	13	28	7	5	7	6	2	0	20	7	75
		(17.3)	(37.3)	(9.3)	(6.7)	(9.3)	(8.0)	(2.7)	(0.0)	(26.7)	(9.3)	(100.0)
	신체·정서·방임	29	39	17	32	8	6	8	1	55	8	148
		(19.6)	(26.4)	(11.5)	(21.6)	(5.4)	(4.1)	(5.4)	(0.7)	(37.2)	(5.4)	(100.0)
	정서·성·방임	0	0	1	0	0	0	0	0	0	0	1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신체·정서·성·방임	1	0	0	0	0	1	0	0	1	0	2
		(50.0)	(0.0)	(0.0)	(0.0)	(0.0)	(50.0)	(0.0)	(0.0)	(50.0)	(0.0)	(100.0)
	소계	598	719	230	565	133	72	204	56	1,030	168	2,745
		(21.8)	(26.2)	(8.4)	(20.6)	(4.8)	(2.6)	(7.4)	(2.0)	(37.5)	(6.1)	(100.0)
계		1,064	1,595	466	949	392	177	393	102	2,013	372	5,510
		(19.3)	(28.9)	(8.5)	(17.2)	(7.1)	(3.2)	(7.1)	(1.9)	(36.5)	(6.8)	(100.0)

* 무죄+공소기각+불처분을 합친 값임.

3)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조치 현황*

본 절에서는 2017년 아동학대사례 중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한 조치 현황을 집계하였다. 2017년도 아동학대 사례는 22,367건이며, 이 중 2,051건(9.2%)이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조치되었다.

〈표 4-40〉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비율

(단위 : 건, %)

아동학대사례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비율
22,367	2,051	9.2

가.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

응급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는 아동학대범죄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현장을 발견한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피해아동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취하는 조치이다. 응급조치 1호는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에 대해 아동학대행위를 가하고 있는 경우 해당 행위를 제지하는 조치이고, 2호는 피해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학대행위자를 최장 72시간 피해아동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조치이다. 3호는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조치이고, 4호는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조치이다. 응급조치를 실시할 때에는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지만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2016.5.29.)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여 필요시에 피해아동에 대한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강화되었다.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을 〈표 4-41〉과 같이 살펴보면, 상담원이 응급조치를 실시한 건수는 898건(78.8%),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한 건수는 242건(21.2%)으로 실건수가 총 1,140건이었다. 응급조치 내용 중 상담원이 가장 많은 조치를 취한 내용은 3호(피해아동 보호시설 인도)가 850건(83.7%)이었고, 다음으로 2호(피해아동으로부터 행위자 격리) 88건(8.7%), 4호(피해아동 의료기관 인도) 60건(5.9%), 1호(학대행위 제지) 17건(1.7%)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가장 많은 조치를 취한 내용은 상담원과 마찬가지로 3호(피해아동 보호시설 인도) 206건(52.4%)이었다. 다음으로 2호(피해아동으로부터 행위자 격리)는 89건(22.6%), 1호(학대행위 제지) 69건(17.6%), 4호(피해아동 의료기관 인도) 29건(7.4%)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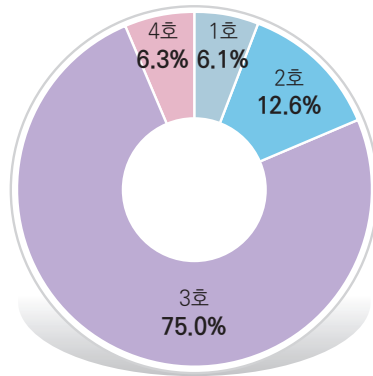
*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조치 현황의 경우 2018.8.16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경찰청 통계는 미반영함.

〈표 4-41〉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

(단위 : 건, %)

분류	실건수		조치 내용									
			1호		2호		3호		4호		계 (중복집계)	
상담원	898	(78.8)	17	(1.7)	88	(8.7)	850	(83.7)	60	(5.9)	1,015	(100.0)
경찰	242	(21.2)	69	(17.6)	89	(22.6)	206	(52.4)	29	(7.4)	393	(100.0)
계	1,140	(100.0)	86	(6.1)	177	(12.6)	1,056	(75.0)	89	(6.3)	1,408	(100.0)

- 1호: 아동학대범죄 행위 제지
- 2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 3호: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 4호: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그림 4-25] 피해아동 응급조치 세부 내용

나. 긴급임시조치 현황

긴급임시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는 응급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경찰의 직권이나 피해아동 본인·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피해자의 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긴급하게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등의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긴급임시조치 1호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하는 조치이고, 2호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로 접근금지 장소는 주거, 학교 및 학원, 보호시설, 병원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3호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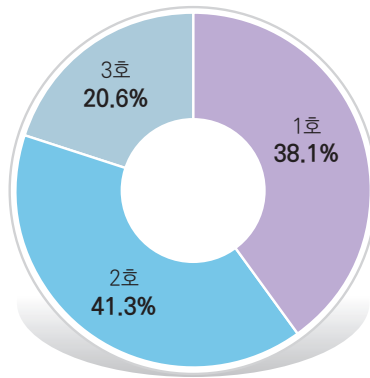
〈표 4-42〉를 살펴보면, 긴급임시조치 총 실건수는 총 33건으로 집계되었다. 경찰의 직권으로 27건이 결정되었고, 피해아동이 2건을 경찰에 신청하여 2건이 결정되었다. 결정된 조치 중 2호(100m 이내 접근금지)가 26건(41.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호(퇴거 등 격리)가 24건(38.1%), 3호(전기통신 접근 금지)가 13건(20.6%) 순으로 나타났다. 2호(100m 이내 접근금지)조치는 주거, 학교 및 학원, 보호시설, 병원, 그 외 기타 장소로 중복 집계 가능하여 해당 조치를 따로 살펴보면, 학교·학원이 22건(40.7%)로 가장 많았고, 주거가 21건(38.9%), 보호시설 10건(18.5%), 병원과 기타장소는 각각 0건(0.0%)으로 집계되었다. 긴급임시조치의 결정 실건수는 33건이지만, 총 중복집계 건수는 63건으로 2~3개의 조치를 동시에 신청하고 또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42〉 긴급임시조치 현황

(단위 : 건, %)

신청인	신청 실건수	결정 건수	취소 건수	총 실건수	1호	2호*							3호	계 (중복집계)
						주거	학교· 학원	보호 시설	병원	기타	소계 (중복포함)	소계 (중복제외)		
경찰 직권	0	27	4	31	22	19	21	9	0	0	50	24	12	58
					(37.9)	(38.0)	(42.0)	(18.0)	(0.0)	(0.0)	(100.0)	(41.4)	(20.7)	(100.0)
피해아동	2	2	0	2	2	2	1	1	0	0	4	2	1	5
					(40.0)	(50.0)	(25.0)	(25.0)	(0.0)	(0.0)	(100.0)	(40.0)	(20.0)	(100.0)
계	2	29	4	33	24	21	22	10	0	0	54	26	13	63
					(38.1)	(38.9)	(40.7)	(18.5)	(0.0)	(0.0)	(100.0)	(41.3)	(20.6)	(100.0)

- 1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2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 3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그림 4-26] 긴급임시조치 결정 세부 내용

다. 임시조치 현황

임시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 제15조, 제19조)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하는 조치이다. 임시조치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경찰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신청을 하고, 검사의 직권 또는 청구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를 하게 되며, 법원에서는 임시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피해아동·법정대리인·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과 검사에게 각각 임시조치 청구신청과 임시조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임시조치의 상세 내용으로 1호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호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이고, 3호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이다. 4호는 친권·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호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서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호는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호는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이다.

* 임시조치 2호 조치는 100m 이내 접근금지로 주거·학교 및 학원·보호시설·병원·기타에 대해서 중복으로 신청 및 청구, 결정이 가능하며 2호 조치만 따로 집계하여 건수 및 비율을 산출하였고, 1호~7호에 대한 중복 집계에서는 2호의 중복 제외한 소계를 반영하여 결정 총계의 건수 및 비율을 산출함.

① 임시조치 결정 현황

임시조치 최종결정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해아동·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요청한 경우,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한 경우 등을 통해 임시조치가 결정된 사례는 총 1,554건으로 93.9%에 해당하고, 청구가 기각된 사례는 101건(6.1%)이었다. 먼저 임시조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임시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가 1,056건(31.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임시조치 2호(100m 이내 접근 금지)조치는 주거, 학교 및 학원, 보호시설, 병원, 그 외 기타 장소로 중복집계가 가능하다. 이 중 보호시설로의 접근금지가 753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교 및 학원으로의 접근금지가 688건(33.1%), 주거로의 접근금지가 544건(26.2%)순으로 높았다. 2호를 제외하고 5호(상담 및 교육 위탁)가 1,058건(31.9%), 3호(전기통신 접근금지)가 752건(22.7%)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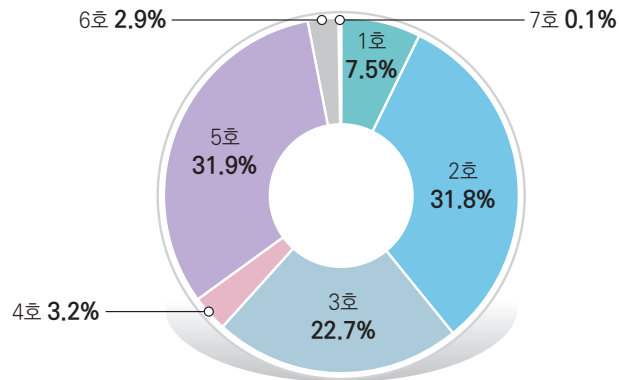
〈표 4-43〉 임시조치 결정 현황

(단위 : 건, %)

신청인	결정 실건수	기각 실건수	총 실건수	세부 내용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결정 계 (중복집계)
					주거	학교 학원	보호 시설	병원	기타	소계 (중복집계)	소계 (중복제외)					
사법 경찰관	96	16	112	25	47	49	49	1	0	149	81	56	4	53	4	224
	(85.7)	(14.3)	(100.0)	(11.2)	(31.5)	(32.9)	(32.9)	(0.7)	(0.0)	(100.0)	(36.2)	(25.0)	(1.8)	(23.7)	(1.8)	(100.0)
아동보호 전문기관장	468	54	522	36	88	131	139	14	0	389	190	154	21	378	33	812
	(89.7)	(10.3)	(100.0)	(4.4)	(22.6)	(33.7)	(35.7)	(3.6)	(0.0)	(100.0)	(23.4)	(19.0)	(2.6)	(46.6)	(4.1)	(100.0)
변호사	1	0	1	1	0	0	0	0	0	0	0	0	0	1	1	3
	(100.0)	(0.0)	(100.0)	(33.3)	(0.0)	(0.0)	(0.0)	(0.0)	(0.0)	(0.0)	(0.0)	(0.0)	(0.0)	(33.3)	(33.3)	(100.0)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31	0	31	5	8	11	14	5	0	39	16	15	9	28	1	74
	(100.0)	(0.0)	(100.0)	(6.8)	(20.5)	(28.2)	(35.9)	(12.8)	(0.0)	(100.0)	(21.6)	(20.3)	(12.2)	(37.8)	(1.4)	(100.0)
피해 아동	5	0	5	0	1	2	3	0	0	6	3	1	0	1	0	5
	(100.0)	(0.0)	(100.0)	(0.0)	(16.7)	(33.3)	(50.0)	(0.0)	(0.0)	(100.0)	(60.0)	(20.0)	(0.0)	(20.0)	(0.0)	(100.0)
파악 안됨	953	31	984	182	400	495	548	18	0	1,496	766	526	71	597	56	2,200
	(96.8)	(3.2)	(100.0)	(8.3)	(26.7)	(33.1)	(36.6)	(1.2)	(0.0)	(100.0)	(34.8)	(23.9)	(3.2)	(27.1)	(2.5)	(100.0)
계	1,554	101	1,655	249	544	688	753	38	0	2,079	1,056	752	105	1,058	95	3,318
	(93.9)	(6.1)	(100.0)	(7.5)	(26.2)	(33.1)	(36.2)	(1.8)	(0.0)	(100.0)	(31.8)	(22.7)	(3.2)	(31.9)	(2.9)	(100.0)

- 1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2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 3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4호: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5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 6호: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서의 위탁
- 7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임시조치 2호 조치는 100m 이내 접근금지로 주거·학교 및 학원·보호시설·병원·기타에 대해서 중복으로 신청 및 청구, 결정이 가능하며 2호 조치만 따로 집계하여 건수 및 비율을 산출하였고, 1호~7호에 대한 중복 집계에서는 2호의 중복 제외한 소계를 반영하여 결정 총계의 건수 및 비율을 산출함.



[그림 4-27] 임시조치 결정 세부 내용

라. 피해아동보호명령 현황

피해아동보호명령(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은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판사의 직권이나 피해아동·법정 대리인·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직접 가정법원에 아동의 보호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아동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찰과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 결정에 따라 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은 1호~9호까지의 조치가 있는데, 1~3호까지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로 1호는 피해아동 주거지 또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호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호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이다. 4호~6호까지는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로 4호는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호는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5호의2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6호는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하는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7~9호는 학대행위자가 아동에 대해 갖는 권한에 대한 조치로 7호는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호는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호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조치이다.

또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때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여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판사가 인정하는 때에 임시적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1~9호 중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때에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결정될 때까지이고,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①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현황

임시보호명령 청구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임시보호명령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건수는 229건으로 나타났고, 임시보호명령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정한 건수는 123건이었다.

구체적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건수에 대해 살펴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청구하여 결정된 건수는 총 257건 중 기각된 18건을 제외하고 239건이었다. 변호사는 71건을 청구하여 70건이 결정되었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은 18건을 청구하여 12건이 결정되었으며, 판사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결정된 건수는 1건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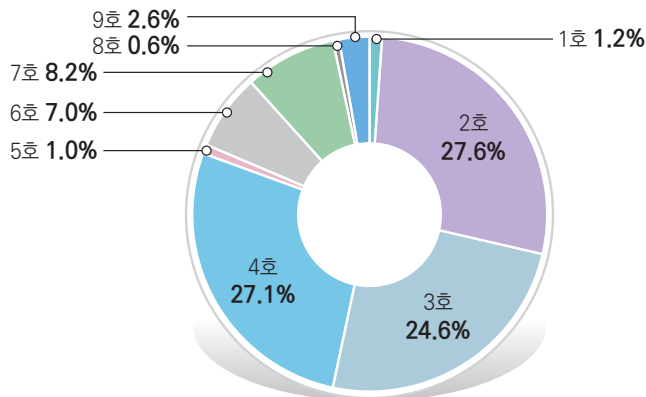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2호(학대행위자의 접근제한 조치)가 221건(27.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호(피해아동 보호위탁)가 217건(27.1%), 3호(전기통신 접근제한) 197건(24.6%), 7호(친권 제한 또는 정지) 66건(8.2%)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4〉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현황

(단위 : 건, %)

청구인	결정 실건 수	기각 실건 수	총 실건 수	임시 보호 결정	임시 보호 기각	결정 내용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판사 직권	1	0	1	0	1	0 (0.0)	0 (0.0)	0 (0.0)	0 (0.0)	0 (0.0)	1 (33.3)	1 (33.3)	1 (33.3)	0 (0.0)
아동보호 전문기관장	239	18	257	169	88	8 (1.3)	153 (25.8)	137 (23.1)	162 (27.3)	7 (1.2)	44 (7.4)	61 (10.3)	4 (0.7)	18 (3.0)
변호사	70	1	71	51	20	1 (0.6)	56 (33.9)	49 (29.7)	47 (28.5)	0 (0.0)	9 (5.5)	1 (0.6)	0 (0.0)	2 (1.2)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12	6	18	8	10	1 (3.4)	10 (34.5)	9 (31.0)	7 (24.1)	0 (0.0)	0 (0.0)	2 (6.9)	0 (0.0)	0 (0.0)
피해아동	5	0	5	1	4	0 (0.0)	2 (20.0)	2 (20.0)	1 (10.0)	1 (10.0)	2 (20.0)	1 (10.0)	0 (0.0)	1 (10.0)
계	327	25	352	229	123	10 (1.2)	221 (27.6)	197 (24.6)	217 (27.1)	8 (1.0)	56 (7.0)	66 (8.2)	5 (0.6)	21 (2.6)

- 1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3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4호: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 5호: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 6호: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 7호: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8호: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 9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그림 4-28]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세부 내용

5. 서비스 제공 현황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을 극복하고 학대행위자의 재학대를 방지하며 피해아동 가족의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그리고 피해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에는 상담서비스, 입원치료·통원치료를 포함하는 의료서비스, 심리검사·미술치료·놀이치료 등을 포함하는 심리치료 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기관 연결·공적지원 연결을 포함하는 가족기능강화 서비스, 일시보호시설 및 쉼터 입퇴소 및 절차 지원, 분리보호 및 절차 지원, 출결 및 비밀전학 처리 지원 등을 포함하는 학습 및 보호 지원서비스, 법률자문과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 진행과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또는 고소·고발 등 사건 처리에 대한 서비스가 있다. 또한 임시조치 또는 조건부기소유예, 보호처분 결정,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를 통해 검찰·법원으로부터 상담·교육 위탁 처분을 받은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자수탁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은 당해 연도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사례 뿐만 아니라 2017년도 이전 신고사례 중 장기 개입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에도 연도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신고된 아동학대사례 접수 시점에 따라 2017년 이전 신고사례와 2017년 신고사례, 그리고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사후관리는 아동복지법 제28조에 의거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고 가족의 안정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및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표 4-45〉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단위 : 회, %)

구분	2017년 전체 서비스
피해아동	501,465
학대행위자	196,458
부모 또는 가족	186,923
계	884,846

1)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가.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7년 이전/2017년)

2017년 한 해 동안 피해아동에게 제공한 서비스 횟수는 총 501,465회이다. 〈표 4-46〉에서 2017년 이전 신고사례의 피해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288,558회이며, 2017년 신고사례의 피해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212,907회로 집계되었다.

세부적인 서비스 제공 유형을 살펴봤을 때 신고시점에 따른 서비스 제공 횟수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서비스가 2017년 이전의 경우 183,299회(63.5%), 2017년 125,413회(58.9%)로 2017년 이전과 2017년 신고사례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심리치료서비스는 2017년 이전 신고사례는 35,069회(12.2%), 2017년 신고사례에 대해 25,552회(12.0%)로 상담서비스에 이어 두 번째로 비율이 높았다. 학습 및

보호지원서비스의 경우 각각 16,039회(5.6%), 12,930회(6.1%)로 나타났다. 사건처리지원서비스는 15,916회(5.5%), 18,935회(8.9%)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한 행위자수탁프로그램은 피해아동에게 실시한 서비스 제공 실적을 반영하였다. 2017년 이전 신고사례의 경우 372건, 2017년 신고사례의 경우 141건이 진행되었으며, 피해아동에게 심리검사, 개인 및 집단상담 등이 제공되었다.

〈표 4-46〉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7년 이전/2017년)

(단위 : 회, %)

서비스		신고시점		신고사례	
		2017년 이전 신고사례		2017년 신고사례	
상담서비스		183,299	(63.5)	125,413	(58.9)
의료서비스	입원치료	3,220	(1.1)	1,517	(0.7)
	통원치료	1,974	(0.7)	2,170	(1.0)
	소계	5,194	(1.8)	3,687	(1.7)
심리치료서비스	심리검사	1,340	(0.5)	2,285	(1.1)
	심리치료	33,729	(11.7)	23,267	(10.9)
	소계	35,069	(12.2)	25,552	(12.0)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10,250	(3.6)	8,913	(4.2)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4,062	(1.4)	5,456	(2.6)
	공적지원연결	337	(0.1)	380	(0.2)
	소계	14,649	(5.1)	14,749	(6.9)
학습 및 보호지원서비스		16,039	(5.6)	12,930	(6.1)
사건처리지원서비스	법률자문	100	(0.0)	162	(0.1)
	사건처리지원	15,816	(5.5)	18,773	(8.8)
	소계	15,916	(5.5)	18,935	(8.9)
행위자수탁프로그램	임시조치	39	(0.0)	107	(0.1)
	조건부기소유예	30	(0.0)	0	(0.0)
	보호처분	303	(0.1)	34	(0.0)
	형벌과 수감명령 등의 병과	0	(0.0)	0	(0.0)
	소계	372	(0.1)	141	(0.1)
기타		18,020	(6.2)	11,500	(5.4)
계		288,558	(100.0)	212,907	(100.0)
총계		501,465			

※중복포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행위자수탁프로그램은 피해아동에게 실시한 서비스 제공 실적을 반영함. 피해아동에게 가족상담 등이 제공되었음.

나.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피해아동에게 지원된 서비스는 총 501,465회로 2017년 기준 진행 중인 사례와 종결되어 사후관리 중인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진행 중인 사례는 464,630회, 사후관리 중인 사례는 36,835회로 사례 진행 중인 사례를 대상으로 지원된 서비스가 약 13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47〉 참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례진행 중과 사후관리 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 모두 상담서비스가 각각 61.0%, 6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사례진행 중 보다 사후관리 아동에게 상담서비스가 더 많은 비율로 제공되었다.

상담서비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심리치료서비스는 진행 중 사례에서 12.7%, 사후관리 사례에서는 약 4.7%였다.

〈표 4-47〉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단위 : 회, %)

서비스		진행 중 사례		사후관리 사례	
상담서비스		283,519	(61.0)	25,193	(68.4)
의료서비스	입원치료	4,711	(1.0)	26	(0.1)
	통원치료	4,024	(0.9)	120	(0.3)
	소계	8,735	(1.9)	146	(0.4)
심리치료서비스	심리검사	3,522	(0.8)	103	(0.3)
	심리치료	55,365	(11.9)	1,631	(4.4)
	소계	58,887	(12.7)	1,734	(4.7)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17,936	(3.9)	1,227	(3.3)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8,646	(1.9)	872	(2.4)
	공적지원연결	666	(0.1)	51	(0.1)
	소계	27,248	(5.9)	2,150	(5.8)
학습 및 보호지원서비스		27,199	(5.9)	1,770	(4.8)
사건처리지원서비스	법률자문	208	(0.0)	54	(0.1)
	사건처리지원	32,104	(6.9)	2,485	(6.7)
	소계	32,312	(7.0)	2,539	(6.9)
행위자수탁프로그램	임시조치	146	(0.0)	0	(0.0)
	조건부기소유예	30	(0.0)	0	(0.0)
	보호처분	323	(0.1)	14	(0.0)
	형벌과 수감명령 등의 병과	0	(0.0)	0	(0.0)
	소계	499	(0.1)	14	(0.0)
기타		26,231	(5.6)	3,289	(8.9)
계		464,630	(100.0)	36,835	(100.0)
총계		501,465			

※중복포함

2)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가.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7년 이전/2017년)

2017년 한 해 동안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총 196,458회로 집계되었다. 2017년 이전에 신고된 사례의 학대행위자에게는 110,286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2017년 신고사례의 학대행위자에게는 86,172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2017년 이전 신고사례와 2017년 신고사례를 서비스 항목별로 살펴보면 차지하는 비율의 분포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서비스 항목 중 학대행위자에게 가장 많이 제공된 서비스는 상담서비스이며, 2017년 이전 신고사례 73,832회(66.9%), 2017년 신고사례 56,510회(65.6%)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로 집계되었다. 다음으로 심리치료서비스가 각각 10,870회(9.9%), 9,821회(11.4%) 제공되었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 이후 임시조치 또는 조건부기소유예, 보호처분,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로 학대행위자에게 치료프로그램 및 상담 등을 제공하는 행위자수탁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는 각각 9,130회(8.3%), 6,291회(7.3%)로 나타났다. 사건처리지원서비스가 각각 6,283회(5.7%), 5,848회(6.8%)였으며, 가족기능강화서비스는 2017년 이전 신고사례가 3,763회(3.4%), 2017년 신고사례는 2,763회(3.2%)로 나타났다.

〈표 4-48〉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7년 이전/2017년)

(단위 : 회, %)

서비스		신고시점		2017년 이전 신고사례		2017년 신고사례	
상담서비스				73,832	(66.9)	56,510	(65.6)
의료서비스	입원치료			1,015	(0.9)	977	(1.1)
	통원치료			282	(0.3)	548	(0.6)
	소계			1,297	(1.2)	1,525	(1.8)
심리치료서비스	심리검사			740	(0.7)	1,176	(1.4)
	심리치료			10,130	(9.2)	8,645	(10.0)
	소계			10,870	(9.9)	9,821	(11.4)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3,048	(2.8)	2,033	(2.4)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589	(0.5)	680	(0.8)
	공적지원연결			126	(0.1)	50	(0.1)
	소계			3,763	(3.4)	2,763	(3.2)
학습 및 보호 지원				1,252	(1.1)	933	(1.1)
사건처리지원서비스	법률자문			21	(0.0)	4	(0.0)
	사건처리지원			6,262	(5.7)	5,844	(6.8)
	소계			6,283	(5.7)	5,848	(6.8)
행위자수탁프로그램	임시조치			1,208	(1.1)	4,217	(4.9)
	조건부기소유예			583	(0.5)	201	(0.2)
	보호처분			7,339	(6.7)	1,873	(2.2)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0	(0.0)	0	(0.0)
	소계			9,130	(8.3)	6,291	(7.3)
기타				3,859	(3.5)	2,481	(2.9)
계				110,286	(100.0)	86,172	(100.0)
총계				196,458			

※중복포함

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현황을 <표 4-49>와 같이 사례종결 여부에 따라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로 나누어 보면, 진행 중인 사례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181,602회, 사후관리 사례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14,856회로 나타났다. 진행 중인 사례에 사후관리 사례보다 약 12.2배 많은 서비스가 지원되었다.

진행 중 사례의 경우 서비스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담서비스가 119,200회(65.6%), 심리치료서비스 20,360회(11.2%), 행위자수탁프로그램 14,917회(8.2%), 사건처리지원서비스 11,071회(6.1%), 가족기능강화서비스 5,849회(3.2%), 기타 서비스 5,621회(3.1%), 의료서비스 2,638회(1.5%), 학습 및 보호지원 서비스 1,946회(1.1%)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 이후 임시조치 또는 조건부기소유예, 보호처분으로 학대행위자에게 치료프로그램 및 상담 등을 제공하는 행위자수탁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빈도가 작년 대비 약 2.8배 증가하였으며 행위자수탁프로그램의 하위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 모두 보호처분에 따른 행위자수탁프로그램이 가장 높았다.

사후관리 하고 있는 사례의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상담서비스가 11,142회(75.0%)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사건처리지원서비스 1,060회(7.1%), 기타서비스 719회(4.8%), 가족기능강화서비스 677회(4.6%), 행위자수탁프로그램 504회(3.4%), 심리치료서비스 331회(2.2%), 학습 및 보호지원 서비스 239회(1.6%), 의료서비스 184회(1.2%)순으로 나타났다.

<표 4-49>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단위 : 회, %)

서비스		진행 중 사례		사후관리 사례	
상담서비스		119,200	(65.6)	11,142	(75.0)
의료서비스	입원치료	1,834	(1.0)	158	(1.1)
	통원치료	804	(0.4)	26	(0.2)
	소계	2,638	(1.5)	184	(1.2)
심리치료서비스	심리검사	1,876	(1.0)	40	(0.3)
	심리치료	18,484	(10.2)	291	(2.0)
	소계	20,360	(11.2)	331	(2.2)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4,560	(2.5)	521	(3.5)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1,176	(0.6)	93	(0.6)
	공적지원연결	113	(0.1)	63	(0.4)
	소계	5,849	(3.2)	677	(4.6)
학습 및 보호 지원		1,946	(1.1)	239	(1.6)
사건처리지원서비스	법률자문	23	(0.0)	2	(0.0)
	사건처리지원	11,048	(6.1)	1,058	(7.1)
	소계	11,071	(6.1)	1,060	(7.1)
행위자수탁프로그램	임시조치	5,425	(3.0)	0	(0.0)
	조건부기소유예	759	(0.4)	25	(0.2)
	보호처분	8,733	(4.8)	479	(3.2)
	형벌과 수감명령 등의 병과	0	(0.0)	0	(0.0)
	소계	14,917	(8.2)	504	(3.4)
기타		5,621	(3.1)	719	(4.8)
계		181,602	(100.0)	14,856	(100.0)
총계		196,458			

※중복포함

3)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에서는 피해아동의 비가해부모 및 형제·자매 등 가족에게 제공한 서비스만을 제시하였다. 부모 또는 가족에게 실시한 상담, 의료, 심리치료, 가족기능강화, 행위자수탁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다. 이들은 학대의 직접적인 피해 대상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과 동일하게 아동학대를 목격하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피해아동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심리적 고통과 후유증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비가해부모들도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및 무력감, 비관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 내 학대발생 위험 요소를 낮추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는 비가해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회복 및 후유증 감소를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2017년에 제공한 서비스는 총 186,923회였으며, 여러 서비스 유형 중 상담서비스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피해아동의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7년 이전/2017년)

〈표 4-50〉와 같이 신고접수 시점에 따라 부모 또는 가족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7년 이전 신고접수 사례는 총 124,145회를 제공하였고, 2017년 신고된 사례는 총 62,778회를 제공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세부항목별로 서비스 제공 비율을 살펴보면 상담서비스가 2017년 이전 신고사례와 2017년 신고사례 각각 95,949회(77.3%), 45,651회(72.7%)로 가장 압도적인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가족기능강화서비스 8,342회(6.7%), 5,027회(8.0%)로 나타났고, 심리치료 서비스 7,937회(6.4%), 6,440회(10.3%)였으며, 기타서비스 6,297회(5.1%), 2,696회(4.3%) 외에 의료서비스, 학습 및 보호지원 서비스, 행위자수탁프로그램*은 3%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4-50〉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7년 이전/2017년)

(단위 : 회, %)

서비스		신고시점		2017년 이전 신고사례		2017년 신고사례	
상담서비스				95,949	(77.3)	45,651	(72.7)
의료서비스	입원치료			236	(0.2)	133	(0.2)
	통원치료			608	(0.5)	198	(0.3)
	소계			844	(0.7)	331	(0.5)
심리치료서비스	심리검사			363	(0.3)	505	(0.8)
	심리치료			7,574	(6.1)	5,935	(9.5)
	소계			7,937	(6.4)	6,440	(10.3)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7,688	(6.2)	4,390	(7.0)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529	(0.4)	570	(0.9)
	공적지원연결			125	(0.1)	67	(0.1)
	소계			8,342	(6.7)	5,027	(8.0)

(계속)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행위자수탁프로그램은 부모 또는 가족에게 실시한 서비스 제공 실적을 반영함. 부모 또는 가족에게 개인 및 가족상담 등이 제공되었음.

(단위 : 회, %)

서비스		신고사점		2017년 이전 신고사례		2017년 신고사례	
학습 및 보호지원 서비스				1,351	(1.1)	1,128	(1.8)
사건처리지원서비스	법률자문			15	(0.0)	11	(0.0)
	사건처리지원			1,782	(1.4)	1,360	(2.2)
	소계			1,797	(1.4)	1,371	(2.2)
행위자수탁프로그램	임시조치			167	(0.1)	68	(0.1)
	조건부기소유예			78	(0.1)	0	(0.0)
	보호처분			1,383	(1.1)	66	(0.1)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0	(0.0)	0	(0.0)
	소계			1,628	(1.3)	134	(0.2)
기타				6,297	(5.1)	2,696	(4.3)
계				124,145	(100.0)	62,778	(100.0)
총계				186,923			

※중복포함

나. 피해아동의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부모 및 가족에게 제공된 서비스 현황을 <표 4-51>과 같이 사례종결 여부에 따라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면, 진행 중인 사례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168,865회, 사후관리 사례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18,058회로 나타났다. 진행 중인 사례가 사후관리 사례보다 약 9.3배 많은 서비스가 지원되었다.

서비스 항목별로 진행 중 사례의 경우, 상담서비스가 126,448회로 74.9%를 차지하였고, 심리치료서비스가 14,127회(8.4%), 가족기능강화서비스가 11,978회(7.1%), 기타서비스 8,116회(4.8%), 사건처리지원서비스 2,953회(1.7%), 행위자수탁프로그램 1,762건(1.0%), 의료서비스 1,152회(0.7%)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관리 사례의 경우, 상담서비스가 15,152회(83.9%)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가족기능강화서비스가 1,391회(7.7%), 기타서비스 877회(4.9%) 외에 의료서비스, 심리치료서비스, 학습 및 보호지원 서비스, 사건처리지원 서비스, 행위자수탁프로그램은 모두 약 2% 미만으로 나타났다.

<표 4-51>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단위 : 회, %)

서비스		진행 중 사례		사후관리 사례	
상담서비스		126,448	(74.9)	15,152	(83.9)
의료서비스	입원치료	360	(0.2)	9	(0.0)
	통원치료	792	(0.5)	14	(0.1)
	소계	1,152	(0.7)	23	(0.1)
심리치료서비스	심리검사	828	(0.5)	40	(0.2)
	심리치료	13,299	(7.9)	210	(1.2)
	소계	14,127	(8.4)	250	(1.4)

(계속)

(단위 : 회, %)

서비스		진행 중 사례		사후관리 사례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10,825	(6.4)	1,253	(6.9)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1,024	(0.6)	75	(0.4)
	공적지원연결	129	(0.1)	63	(0.3)
	소계	11,978	(7.1)	1,391	(7.7)
학습 및 보호지원		2,329	(1.4)	150	(0.8)
사건처리지원서비스	법률자문	11	(0.0)	15	(0.1)
	사건처리지원	2,942	(1.7)	200	(1.1)
	소계	2,953	(1.7)	215	(1.2)
행위자수탁프로그램	임시조치	235	(0.1)	0	(0.0)
	조건부기소유예	78	(0.0)	0	(0.0)
	보호처분	1,449	(0.9)	0	(0.0)
	형벌과 수감명령 등의 병과	0	(0.0)	0	(0.0)
	소계	1,762	(1.0)	0	(0.0)
기타		8,116	(4.8)	877	(4.9)
계		168,865	(100.0)	18,058	(100.0)
총계		186,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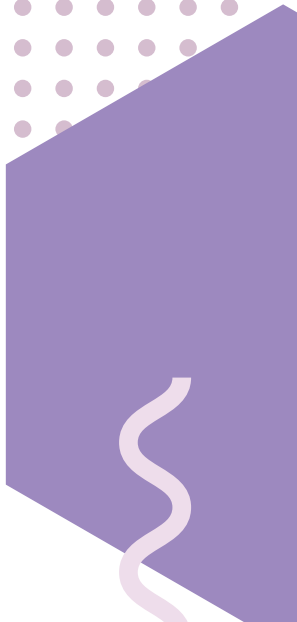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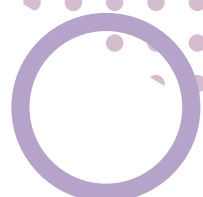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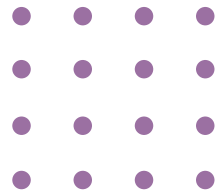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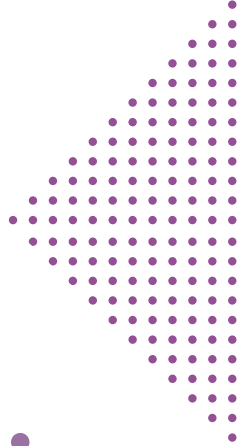
※중복포함

5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Child Abuse & Neglect Korea 2017

- 재학대 사례
- 사망아동 사례
-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사례





제5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1. 재학대 사례

본 장에서는 최근 5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에 신고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다시 2017년에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재학대 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1) 재학대 사례의 현황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2017년에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인 재학대 사례는 총 2,160건^{*}이며 재학대 아동 명수는 1,859명이다. 전체 아동학대사례 22,367건 대비하여 재학대 사례 비율은 9.7%이다.

〈표 5-1〉 재학대 사례 발생 건수

(단위 : 건, 명, %)

재학대 사례 건수	재학대 아동수	아동학대사례 중 재학대 사례 비율
2,160	1,859	9.7

* 2017년의 재학대 사례란 2013년 이후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에 신고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가 2017년에 다시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말함.

2)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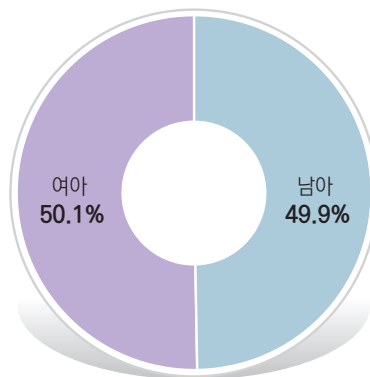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성별 분포를 <표 5-2>과 같이 살펴보면 여아 1,083건(50.1%), 남아 1,077건(49.9%)으로 성별 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단위 : 건, %)

성별	건수(비율)	
남아	1,077	(49.9)
여아	1,083	(50.1)
계	2,160	(100.0)



[그림 5-1]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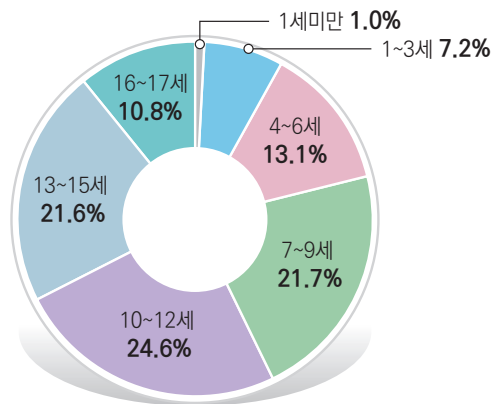
나.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연령 분포를 <표 5-3>와 같이 살펴보면, 만 10세~12세가 532건(24.6%), 만 7~9세가 469건(21.7%), 만 13세~15세가 467건(21.6%) 등 학령기 아동이 전체 재학대 아동의 약 68%로 전체 피해아동 연령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1세 미만은 21건(1.0%)에 그쳤다.

〈표 5-3〉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단위 : 건, %)

연 령(만)	건수(비율)	
1세 미만	21	(1.0)
1~3세	156	(7.2)
4~6세	282	(13.1)
7~9세	469	(21.7)
10~12세	532	(24.6)
13~15세	467	(21.6)
16~17세	233	(10.8)
계	2,160	(100.0)



[그림 5-2]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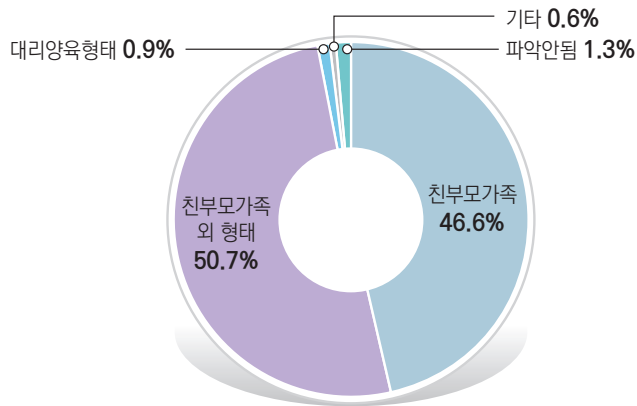
다.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가족유형 분포를 <표 5-4>와 같이 살펴보면, 친부모가족 외 형태가 1,096건으로 전체의 50.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부모가족이 1,006건(46.6%) 순으로 나타났다. 친부모가족 외 형태 중에서도 부자가정과 모자가정이 각각 373건(17.3%), 349건(16.2%) 그리고 미혼부·모가정이 58건(2.7%) 등으로 재학대 발생이 나타났다. 이외에 대리양육형태는 19건(0.9%)이었다.

<표 5-4>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단위: 건, %)

친부모 가족	친부모가족 외 형태								대리양육형태				기타	파악 안됨	계
	부자 가정	모자 가정	미혼 부·모 가정	재혼 가정	친인척 보호	동거 (사실혼 포함)	소년 소녀 가정	소계	가정 위탁	입양 가정	시설 보호	소계			
1,006	373	349	58	180	36	99	1	1,096	3	7	9	19	12	27	2,160
(46.6)	(17.3)	(16.2)	(2.7)	(8.3)	(1.7)	(4.6)	(0.0)	(50.7)	(0.1)	(0.3)	(0.4)	(0.9)	(0.6)	(1.3)	(100.0)



[그림 5-3]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라.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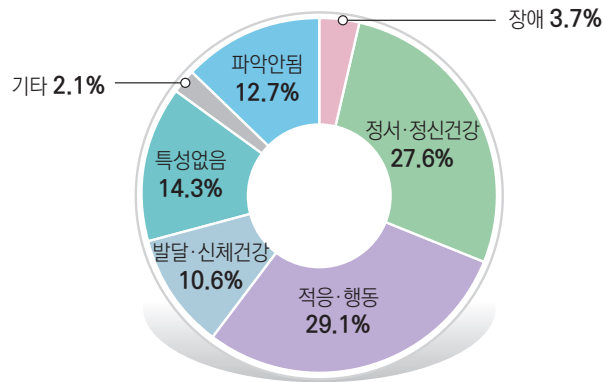
학대조사 당시 파악된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특성을 <표 5-5>와 같이 살펴보면, 적응 및 행동 특성이 1,260건(29.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적응 및 행동 특성 중에서도 반항·충동·공격성이 207건(4.8%), 거짓말 152건(3.5%), 학교부적응 133건(3.1%), 도벽 103건(2.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서 및 정신건강이 1,193건(27.6%)으로 나타났는데, 불안 263건(6.1%), 주의산만 227건(5.2%), 과잉행동 131건(3.0%) 순으로 나타났다.

<표 5-5>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단위: 건, %)

특성		건수(비율)	
장 애	신체적 장애	18	(0.4)
	정신적 장애	73	(1.7)
	장애의심	67	(1.5)
	소계	158	(3.7)
정서·정신건강	주의산만	227	(5.2)
	과잉행동	131	(3.0)
	인터넷(게임)중독	62	(1.4)
	불안	263	(6.1)
	애착문제	99	(2.3)
	무력감	63	(1.5)
	우울	98	(2.3)
	낮은 자아존중감	101	(2.3)
	성격 및 기질문제	99	(2.3)
	탐식 및 결식	50	(1.2)
	소계	1,193	(27.6)
적응·행동	반항·충동·공격성	207	(4.8)
	거짓말	152	(3.5)
	도벽	103	(2.4)
	가출	62	(1.4)
	약물·흡연·음주	83	(1.9)
	성문제	32	(0.7)
	학교 부적응	133	(3.1)
	잘못된 결석, 무단 결과	83	(1.9)
	늦은 귀가	76	(1.8)
	학습문제	130	(3.0)
	폭력행동	85	(2.0)
	비행집단활동	36	(0.8)
	불건전한 또래관계	40	(0.9)
	대인관계 기피	38	(0.9)
	소계	1,260	(29.1)
발달·신체건강	신체발달지연	59	(1.4)
	언어문제	118	(2.7)
	영양결핍	24	(0.6)
	대소변문제	23	(0.5)
	위생문제	143	(3.3)
	틱(음성, 신체, 뚜렛)	11	(0.3)
	잘못된 병치레, 허약	31	(0.7)
	주요병력	49	(1.1)
	소계	458	(10.6)
특성없음		618	(14.3)
기타		89	(2.1)
파악안됨		550	(12.7)
계		4,326	(100.0)

※중복포함



[그림 5-4]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3)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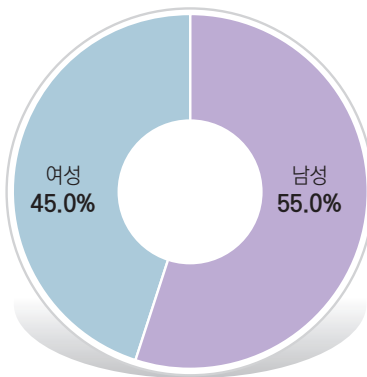
가.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 분포를 <표 5-6>과 같이 살펴보면 남성이 1,188건(55.0%), 여성이 972건(45.0%)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10%p 높았다.

<표 5-6>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 건, %)

성 별	건수(비율)	
남성	1,188	(55.0)
여성	972	(45.0)
계	2,160	(100.0)



[그림 5-5]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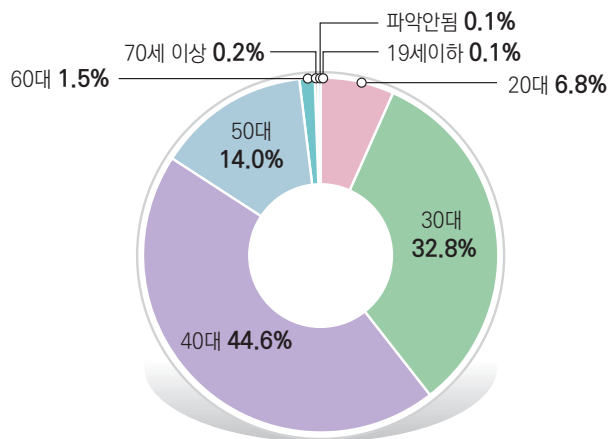
나.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연령 분포를 <표 5-7>과 같이 살펴보면 40대가 963건(44.6%)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는 709건(32.8%), 50대가 302건(14.0%), 20대가 146건(6.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아동학대사례와 마찬가지로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는 30~40대의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가 약 70% 이상을 차지했다.

〈표 5-7〉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 건, %)

연 령 (만)	건수(비율)	
19세 이하	2	(0.1)
20대(20~29세)	146	(6.8)
30대(30~39세)	709	(32.8)
40대(40~49세)	963	(44.6)
50대(50~59세)	302	(14.0)
60대(60~69세)	32	(1.5)
70세 이상	4	(0.2)
파악안됨	2	(0.1)
계	2,160	(100.0)



[그림 5-6]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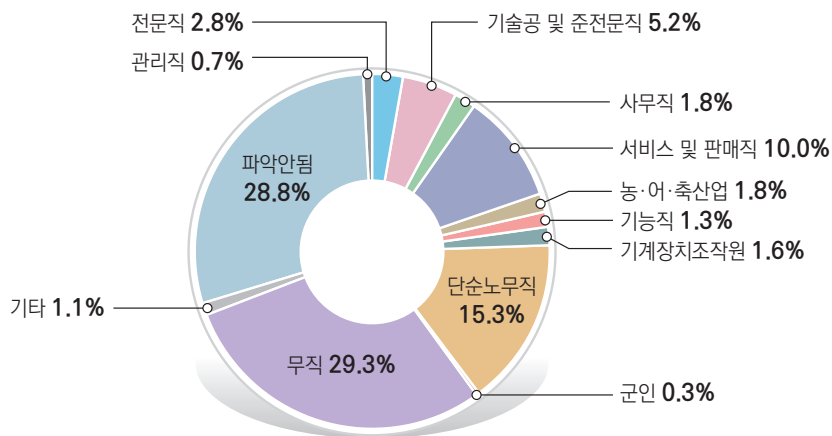
다.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분포를 <표 5-8>와 같이 살펴보면, 무직이 633건으로 전체 29.3%의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단순노무직 330건(15.3%), 서비스 및 판매직 215건(10.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학대행위자 중 무직과 단순노무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1%로 조사되었는데,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는 이보다 더 높은 약 44.6%로 나타났다.

<표 5-8>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단위: 건, %)

직업	건수(비율)	
관리직	16	(0.7)
전문직	60	(2.8)
기술공 및 준전문직	113	(5.2)
사무직	38	(1.8)
서비스 및 판매직	215	(10.0)
농·어·축산업	39	(1.8)
기능직	29	(1.3)
기계장치조작원	35	(1.6)
단순노무직	330	(15.3)
군인	6	(0.3)
무직	633	(29.3)
기타	23	(1.1)
파악안됨	623	(28.8)
계	2,160	(100.0)



[그림 5-7]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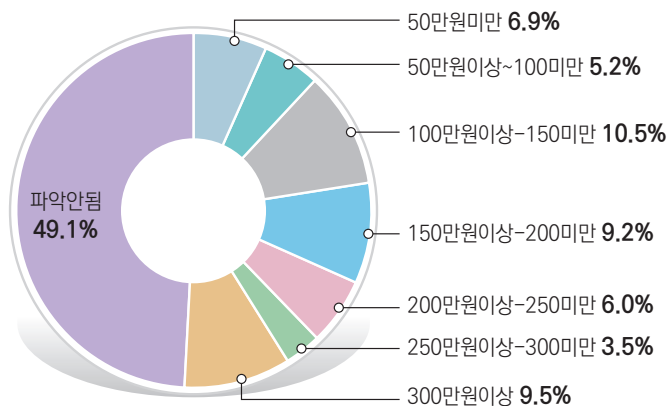
라.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소득을 <표 5-9>와 같이 살펴보면, 파악안됨을 제외하고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이 227건(10.5%)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300만원 이상이 206건(9.5%), 15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은 199건(9.2%), 50만원 미만은 148건(6.9%) 순으로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소득 수준을 파악하지 못한 사례는 1,061건(49.1%)이었다.

<표 5-9>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단위 : 건, %)

소 득	건수(비율)	
50만 원 미만	148	(6.9)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	113	(5.2)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	227	(10.5)
15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199	(9.2)
200만 원 이상~250만 원 미만	130	(6.0)
25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76	(3.5)
300만 원 이상	206	(9.5)
파악안됨	1,061	(49.1)
계	2,160	(100.0)



[그림 5-8]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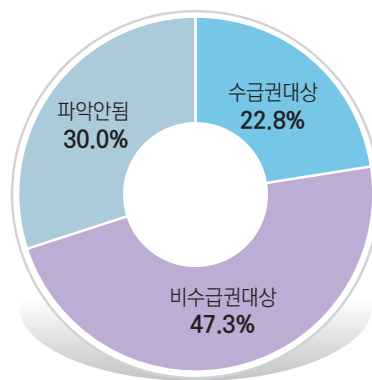
마.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를 <표 5-10>과 같이 살펴보면, 비수급권 대상이 1,021건으로 전체 재학대 사례 중 47.3%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수급권 대상은 492건(22.8%)이었고, 파악이 안된 사례는 647건(30.0%)으로 나타났다.

〈표 5-10〉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단위 : 건, %)

수급권 대상	건수(비율)	
수급권 대상	492	(22.8)
비수급권 대상	1,021	(47.3)
파악안됨	647	(30.0)
계	2,160	(100.0)



[그림 5-9]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바.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특성을 <표 5-11>와 같이 살펴본 결과,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1,582건(2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이 1,069건(19.0%), 부부 및 가족갈등이 521건(9.2%), 성격 및 기질문제가 327건(5.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11〉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단위 : 건, %)

특 성	건수(비율)	
신체적 장애	54	(1.0)
정신적 장애	36	(0.6)
장애 의심	70	(1.2)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1,582	(28.1)
중독문제	305	(5.4)
질환문제	93	(1.6)
성격 및 기질문제	327	(5.8)
위생문제	79	(1.4)
나태 및 무기력	70	(1.2)
난독해, 난작문	4	(0.1)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1,069	(19.0)
어릴 적 학대 경험	83	(1.5)
폭력성	204	(3.6)
전과력	23	(0.4)
성문제	18	(0.3)
원치 않은 아동	38	(0.7)
부부 및 가족 갈등	521	(9.2)
종교문제	16	(0.3)
특성 없음	372	(6.6)
기타	1	(0.0)
파악안됨	673	(11.9)
계	5,638	(100.0)

※중복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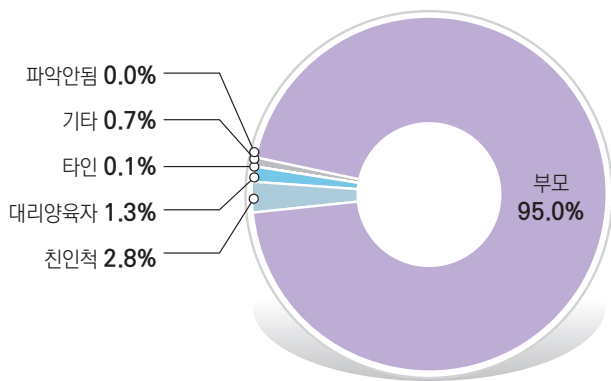
4)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표 5-12>과 같이 살펴보면, 부모에 의한 재학대 사례가 2,053건(95.0%)으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친인척에 의한 재학대 사례가 61건(2.8%), 대리양육자에 의한 재학대 사례 28건(1.3%)으로 나타났다. 대리양육자 중에서 부모의 동거인이 25건(1.2%)으로 가장 높았다.

〈표 5-12〉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관 계		건수(비율)	
부모	친부	1,080	(50.0)
	친모	872	(40.4)
	계부	48	(2.2)
	계모	45	(2.1)
	양부	5	(0.2)
	양모	3	(0.1)
	소계	2,053	(95.0)
친인척	친조부	4	(0.2)
	친조모	10	(0.5)
	외조부	5	(0.2)
	외조모	12	(0.6)
	친인척	19	(0.9)
	형제·자매	11	(0.5)
	소계	61	(2.8)
대리양육자	부,모의 동거인	25	(1.2)
	보육교직원	1	(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	(0.0)
	위탁모	1	(0.0)
	소계	28	(1.3)
타인	이웃	1	(0.0)
	낯선 사람	1	(0.0)
	소계	2	(0.1)
기타		15	(0.7)
파악안됨		1	(0.0)
계		2,160	(100.0)



[그림 5-10]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5) 재학대 사례의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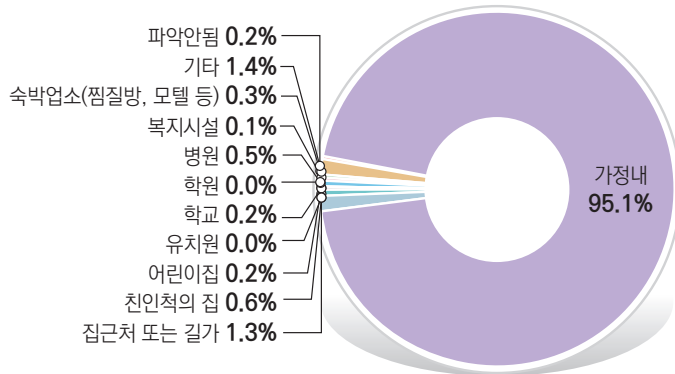
가.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재학대 사례의 발생장소를 <표 5-13>와 같이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재학대 사례가 2,055건으로 전체 재학대 사례 중 95.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전체 학대피해아동학대사례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례는 80.4%였던 것에 비교할 때 재학대 사례는 14.7%p 더 높았다. 다음으로 기타가 31건(1.4%), 집근처 또는 길가에서 발생하는 재학대 사례가 27건(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13>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단위: 건, %)

발생장소		건수(비율)	
가정 내	아동 가정 내	2,018	(93.4)
	학대행위자 가정 내	37	(1.7)
	소계	2,055	(95.1)
집근처 또는 길가		27	(1.3)
친척집		14	(0.6)
어린이집		4	(0.2)
유치원		1	(0.0)
학교		5	(0.2)
학원		1	(0.0)
병원		10	(0.5)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1	(0.0)
	기타복지시설	1	(0.0)
	소계	2	(0.1)
숙박업소		6	(0.3)
기타		31	(1.4)
파악안됨		4	(0.2)
계		2,160	(100.0)



[그림 5-11]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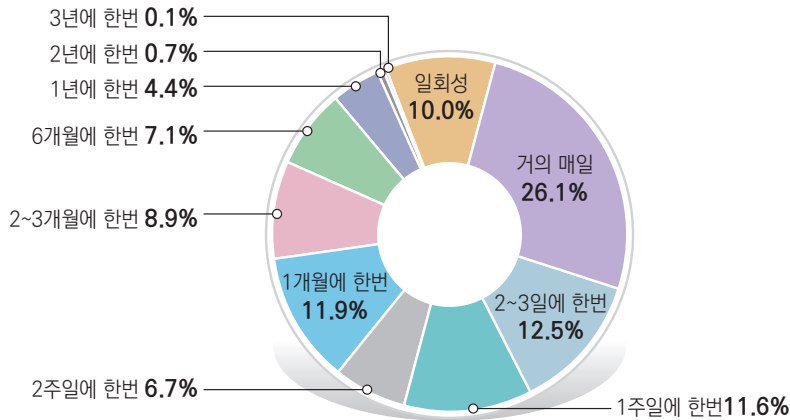
나. 재학대 사례 발생빈도

재학대 사례의 발생빈도를 <표 5-14>와 같이 살펴보면, 거의 매일 발생한 재학대 사례가 564건(26.1%)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3일에 한 번이 270건(12.5%), 1개월에 한번이 258건(11.9%), 일주일에 한 번이 251건(11.6%) 순으로 나타났다. 일회성의 학대는 216건으로 10.0%를 차지하나, 거의 매일에서 1주일에 한번까지 빈번한 학대발생이 전체 재학대 사례의 50.2%로 나타났다.

<표 5-14> 재학대 사례 발생빈도

(단위 : 건, %)

발생빈도	건수(비율)	
거의 매일	564	(26.1)
2~3일에 한 번	270	(12.5)
일주일에 한 번	251	(11.6)
2주일에 한 번	144	(6.7)
1개월에 한 번	258	(11.9)
2~3개월에 한 번	192	(8.9)
6개월에 한 번	154	(7.1)
1년에 한 번	94	(4.4)
2년에 한번	15	(0.7)
3년에 한번	2	(0.1)
일회성	216	(10.0)
계	2,160	(100.0)



[그림 5-12] 재학대 사례 발생빈도

다.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재학대 사례의 학대가 발생한 시기를 <표 5-15>과 같이 살펴보면 사례판단 후 1년~2년 사이가 549건(25.4%)으로 가장 많았고, 6개월~1년 사이가 448건(20.7%), 3개월~6개월 사이가 315건(14.6%), 2년~3년 사이가 264건(12.2%)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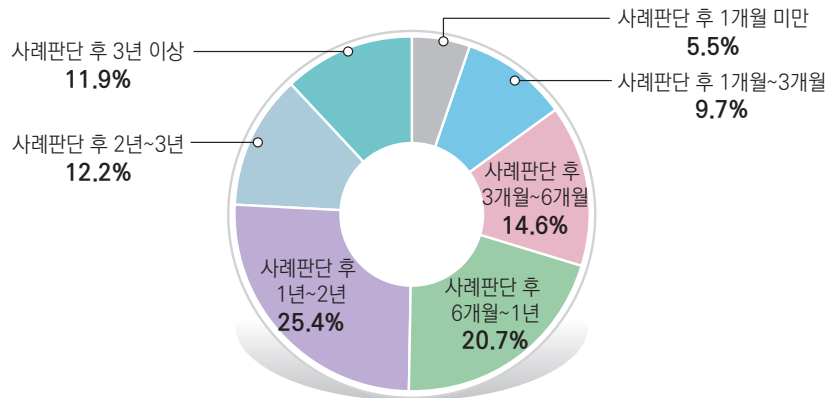
최초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이후 1개월에서 1년 사이에 발생한 재학대 사례비율은 전체 재학대의 51.3%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판단 후 1년에서 3년 사이에 발생한 재학대 사례비율 역시 전체 재학대의 49.5%로 나타났으나 2014년 이후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현재 모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종결 이후에도 3개월 이상의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판단 1년 이내 재학대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15〉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단위 : 건, %)

발생시기	건수(비율)	
사례판단 후 1개월 미만	118	(5.5)
사례판단 후 1개월~3개월	210	(9.7)
사례판단 후 3개월~6개월	315	(14.6)
사례판단 후 6개월~1년	448	(20.7)
사례판단 후 1년~2년	549	(25.4)
사례판단 후 2년~3년	264	(12.2)
사례판단 후 3년 이상	256	(11.9)
계	2,160	(100.0)



[그림 5-13]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라.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발생시기를 <표 5-16>과 같이 살펴보면 발생 시기 별 피해아동 특성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 피해아동 특성에서 적응·행동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다르게 1개월~3개월, 6개월~1년, 1년~2년, 3년 이상 재학대가 발생한 사례에서는 정서·정신건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16〉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단위 : 건, %)

피해아동 특성		시기		1개월 미만		1개월~3개월		3개월~6개월		6개월~1년		1년~2년		2년~3년		3년 이상	
장애	신체적 장애	0	(0.0)	3	(0.9)	0	(0.0)	0	(0.0)	5	(0.4)	4	(0.7)	6	(1.0)		
	정신적 장애	0	(0.0)	5	(1.4)	9	(1.4)	16	(1.8)	19	(1.7)	8	(1.4)	16	(2.7)		
	장애 의심	0	(0.0)	1	(0.3)	6	(1.0)	25	(2.8)	7	(0.6)	14	(2.5)	14	(2.3)		
	소계	0	(0.0)	9	(2.6)	15	(2.4)	41	(4.5)	31	(2.8)	26	(4.6)	36	(6.0)		
정서·정신 건강	주의산만	2	(1.3)	15	(4.3)	27	(4.3)	47	(5.2)	74	(6.6)	30	(5.3)	32	(5.4)		
	과잉행동	1	(0.6)	15	(4.3)	22	(3.5)	21	(2.3)	43	(3.8)	16	(2.8)	13	(2.2)		
	인터넷(게임)중독	1	(0.6)	6	(1.7)	8	(1.3)	16	(1.8)	18	(1.6)	6	(1.1)	7	(1.2)		
	불안	7	(4.5)	14	(4.0)	40	(6.3)	67	(7.4)	75	(6.7)	35	(6.1)	25	(4.2)		
	애착문제	1	(0.6)	11	(3.2)	7	(1.1)	24	(2.7)	29	(2.6)	12	(2.1)	15	(2.5)		
	무력감	2	(1.3)	7	(2.0)	4	(0.6)	16	(1.8)	16	(1.4)	8	(1.4)	10	(1.7)		
	우울	2	(1.3)	7	(2.0)	10	(1.6)	32	(3.5)	27	(2.4)	5	(0.9)	15	(2.5)		
	낮은 자아존중감	3	(1.9)	7	(2.0)	14	(2.2)	17	(1.9)	27	(2.4)	13	(2.3)	20	(3.4)		
	성격 및 기질문제	0	(0.0)	12	(3.5)	19	(3.0)	20	(2.2)	24	(2.1)	13	(2.3)	11	(1.8)		
	탐식 및 결식	1	(0.6)	1	(0.3)	6	(1.0)	12	(1.3)	6	(0.5)	5	(0.9)	19	(3.2)		
	소계	20	(13.0)	95	(27.4)	157	(24.9)	272	(30.1)	339	(30.2)	143	(25.1)	167	(28.0)		
	적응·행동	반항충동·공격성	1	(0.6)	14	(4.0)	38	(6.0)	45	(5.0)	58	(5.2)	34	(6.0)	17	(2.9)	
		거짓말	3	(1.9)	10	(2.9)	21	(3.3)	41	(4.5)	37	(3.3)	21	(3.7)	19	(3.2)	
도벽		2	(1.3)	4	(1.2)	6	(1.0)	23	(2.5)	30	(2.7)	18	(3.2)	20	(3.4)		
가출		0	(0.0)	2	(0.6)	18	(2.9)	10	(1.1)	16	(1.4)	8	(1.4)	8	(1.3)		
약물·흡연·음주		1	(0.6)	5	(1.4)	21	(3.3)	17	(1.9)	26	(2.3)	8	(1.4)	5	(0.8)		
성문제		0	(0.0)	1	(0.3)	9	(1.4)	5	(0.6)	7	(0.6)	7	(1.2)	3	(0.5)		
학교부적응		4	(2.6)	9	(2.6)	18	(2.9)	25	(2.8)	39	(3.5)	20	(3.5)	18	(3.0)		
잦은결석·무단결과		3	(1.9)	6	(1.7)	19	(3.0)	17	(1.9)	18	(1.6)	10	(1.8)	10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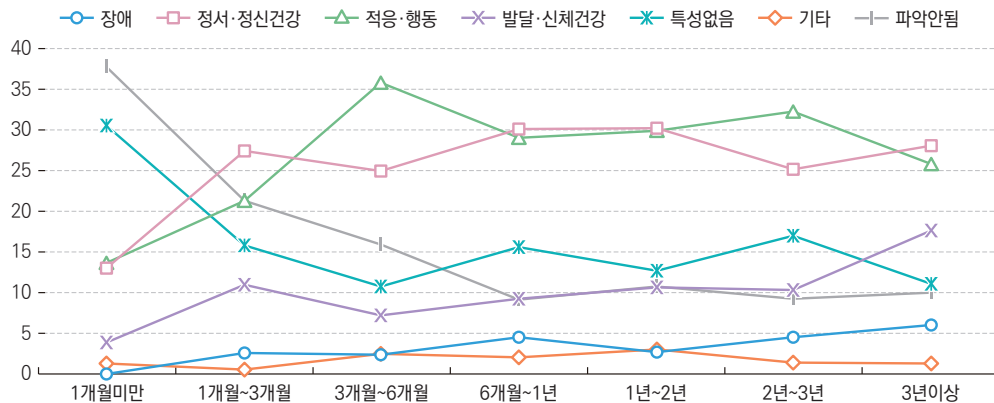
(계속)

(단위 : 건, %)

피해아동 특성		시기	1개월 미만		1개월~3개월		3개월~6개월		6개월~1년		1년~2년		2년~3년		3년 이상	
적응 행동	늦은귀가	2	(1.3)	6	(1.7)	17	(2.7)	14	(1.5)	15	(1.3)	12	(2.1)	10	(1.7)	
	학습문제	2	(1.3)	4	(1.2)	17	(2.7)	25	(2.8)	41	(3.6)	22	(3.9)	19	(3.2)	
	폭력행동	2	(1.3)	10	(2.9)	18	(2.9)	14	(1.5)	18	(1.6)	12	(2.1)	11	(1.8)	
	비행집단활동	0	(0.0)	1	(0.3)	9	(1.4)	8	(0.9)	13	(1.2)	2	(0.4)	3	(0.5)	
	불건강한 또래관계	0	(0.0)	2	(0.6)	11	(1.7)	6	(0.7)	11	(1.0)	5	(0.9)	5	(0.8)	
	대인관계기피	1	(0.6)	0	(0.0)	5	(0.8)	14	(1.5)	7	(0.6)	5	(0.9)	6	(1.0)	
	소계	21	(13.6)	74	(21.3)	227	(36.0)	264	(29.2)	336	(29.9)	184	(32.3)	154	(25.8)	
발달신체 건강	신체발달지연	0	(0.0)	7	(2.0)	5	(0.8)	13	(1.4)	12	(1.1)	9	(1.6)	13	(2.2)	
	언어문제	2	(1.3)	6	(1.7)	12	(1.9)	27	(3.0)	31	(2.8)	17	(3.0)	23	(3.9)	
	영양결핍	0	(0.0)	4	(1.2)	1	(0.2)	0	(0.0)	7	(0.6)	1	(0.2)	11	(1.8)	
	대소변문제	1	(0.6)	1	(0.3)	2	(0.3)	0	(0.0)	10	(0.9)	5	(0.9)	4	(0.7)	
	위생문제	1	(0.6)	12	(3.5)	15	(2.4)	31	(3.4)	29	(2.6)	15	(2.6)	40	(6.7)	
	틱	0	(0.0)	1	(0.3)	1	(0.2)	1	(0.1)	4	(0.4)	1	(0.2)	3	(0.5)	
	잦은병치레·허약	2	(1.3)	1	(0.3)	2	(0.3)	6	(0.7)	14	(1.2)	4	(0.7)	2	(0.3)	
	주요병력	0	(0.0)	6	(1.7)	8	(1.3)	6	(0.7)	13	(1.2)	7	(1.2)	9	(1.5)	
	소계	6	(3.9)	38	(11.0)	46	(7.3)	84	(9.3)	120	(10.7)	59	(10.4)	105	(17.6)	
특성없음		47	(30.5)	55	(15.9)	68	(10.8)	142	(15.7)	143	(12.7)	97	(17.0)	66	(11.1)	
기타		2	(1.3)	2	(0.6)	16	(2.5)	19	(2.1)	34	(3.0)	8	(1.4)	8	(1.3)	
파악안됨		58	(37.7)	74	(21.3)	101	(16.0)	83	(9.2)	121	(10.8)	53	(9.3)	60	(10.1)	
계		154	(100.0)	347	(100.0)	630	(100.0)	905	(100.0)	1,124	(100.0)	570	(100.0)	596	(100.0)	

※중복포함

(단위 : %)



[그림 5-14]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마.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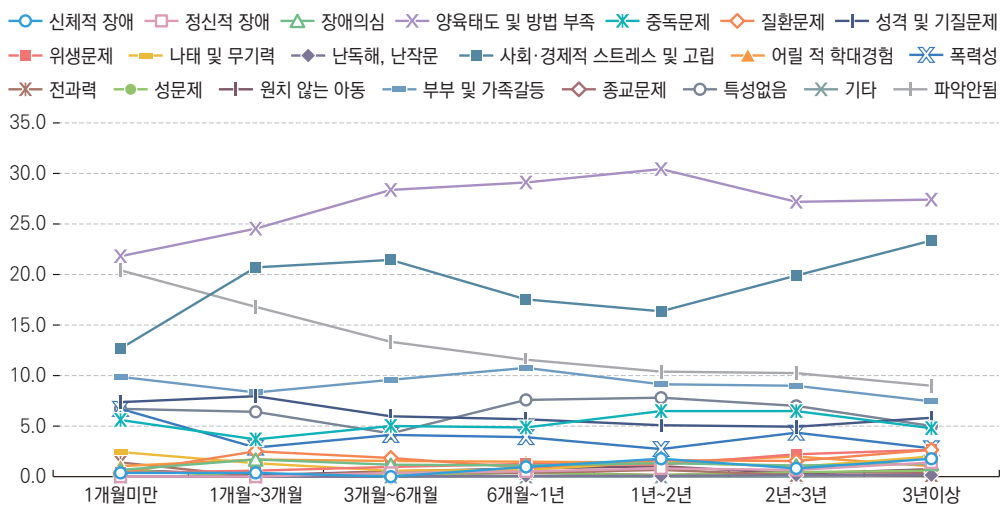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발생시기를 <표 5-17>과 같이 살펴보면, 발생시기별로 학대행위자의 특성에서 크게 차이가 없었다. 모든 재학대 발생 시기에서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두 번째로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이 높게 나타났다.

〈표 5-17〉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단위 : 건, %)

학대행위자 특성	시기	1개월 미만	1개월~3개월	3개월~6개월	6개월~1년	1년~2년	2년~3년	3년 이상
신체적 장애	1	(0.4)	2 (0.4)	0 (0.0)	11 (1.0)	24 (1.7)	6 (0.8)	10 (1.3)
정신적 장애	0	(0.0)	0 (0.0)	3 (0.4)	6 (0.5)	11 (0.8)	5 (0.7)	11 (1.4)
장애의심	2	(0.7)	9 (1.7)	10 (1.2)	13 (1.1)	18 (1.3)	8 (1.1)	10 (1.3)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62	(21.8)	127 (24.6)	232 (28.4)	332 (29.1)	419 (30.5)	193 (27.2)	217 (27.4)
중독문제	16	(5.6)	19 (3.7)	41 (5.0)	56 (4.9)	89 (6.5)	46 (6.5)	38 (4.8)
질환문제	1	(0.4)	13 (2.5)	15 (1.8)	10 (0.9)	22 (1.6)	11 (1.5)	21 (2.7)
성격 및 기질문제	21	(7.4)	41 (7.9)	49 (6.0)	65 (5.7)	70 (5.1)	35 (4.9)	46 (5.8)
위생문제	1	(0.4)	3 (0.6)	8 (1.0)	14 (1.2)	16 (1.2)	16 (2.3)	21 (2.7)
나태 및 무기력	7	(2.5)	7 (1.4)	5 (0.6)	8 (0.7)	20 (1.5)	7 (1.0)	16 (2.0)
난독해, 난작문	0	(0.0)	0 (0.0)	0 (0.0)	1 (0.1)	1 (0.1)	1 (0.1)	1 (0.1)
사회경제적스트레스 및 고립	36	(12.7)	107 (20.7)	175 (21.4)	200 (17.5)	225 (16.4)	141 (19.9)	185 (23.4)
어릴적 학대경험	3	(1.1)	9 (1.7)	13 (1.6)	17 (1.5)	19 (1.4)	14 (2.0)	8 (1.0)
폭력성	19	(6.7)	15 (2.9)	34 (4.2)	45 (3.9)	38 (2.8)	31 (4.4)	22 (2.8)
전과력	4	(1.4)	0 (0.0)	4 (0.5)	4 (0.4)	9 (0.7)	1 (0.1)	1 (0.1)
성문제	2	(0.7)	0 (0.0)	2 (0.2)	4 (0.4)	2 (0.1)	3 (0.4)	5 (0.6)
원치 않는 아동	2	(0.7)	1 (0.2)	4 (0.5)	9 (0.8)	14 (1.0)	2 (0.3)	6 (0.8)
부부 및 가족갈등	28	(9.9)	43 (8.3)	78 (9.5)	123 (10.8)	126 (9.2)	64 (9.0)	59 (7.4)
종교문제	2	(0.7)	1 (0.2)	0 (0.0)	5 (0.4)	2 (0.1)	3 (0.4)	3 (0.4)
특성없음	19	(6.7)	33 (6.4)	35 (4.3)	87 (7.6)	108 (7.8)	50 (7.0)	40 (5.1)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1)
파악안됨	58	(20.4)	87 (16.8)	109 (13.3)	132 (11.6)	143 (10.4)	73 (10.3)	71 (9.0)
계		284 (100.0)	517 (100.0)	817 (100.0)	1,142 (100.0)	1,376 (100.0)	710 (100.0)	792 (100.0)

(단위 : %)



〔그림 5-15〕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6)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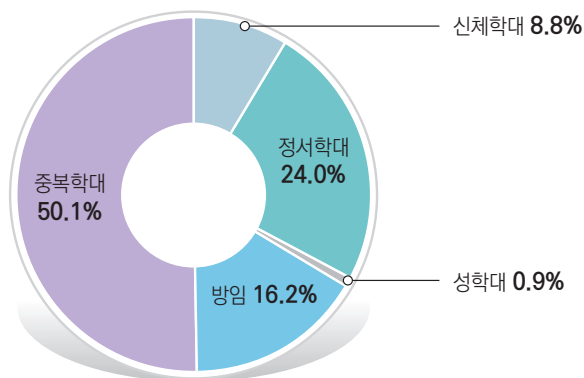
가.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재학대 사례에 대한 아동학대사례유형을 <표 5-18>와 같이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1,082건(50.1%), 정서학대 519건(24.0%), 방임 350건(16.2%), 신체학대 190건(8.8%), 성학대 19건(0.9%)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학대사례 유형 분포와 동일하게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의 경우도 중복학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서학대, 방임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18〉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단위 : 건, %)

학대유형	건수(비율)	
신체학대	190	(8.8)
정서학대	519	(24.0)
성 학 대	19	(0.9)
방 임	350	(16.2)
중복학대	1,082	(50.1)
계	2,160	(100.0)



[그림 5-16]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나.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Ⅱ(중복학대 미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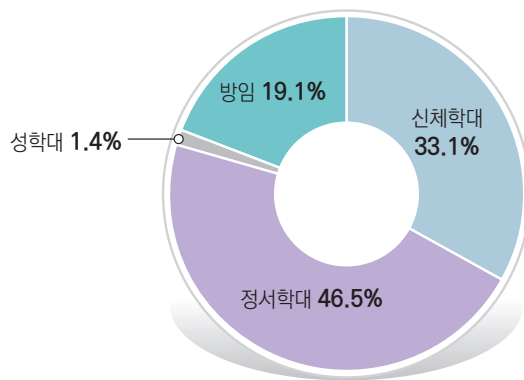
재학대 사례 총 2,160건 중에서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재학대 사례 아동이 중복해서 경험한 학대를 각각의 학대 유형에 포함하여 살펴본 결과, 총 빈도는 3,385건이었다. 정서학대가 1,574건(46.5%)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체학대 1,119건(33.1%), 방임 646건(19.1%), 성학대 46건(1.4%)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9〉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Ⅱ(중복학대 미분류)

(단위 : 건, %)

학대유형	건수(비율)	
신체학대	1,119	(33.1)
정서학대	1,574	(46.5)
성 학 대	46	(1.4)
방 임	646	(19.1)
계	3,385	(100.0)

※중복포함



[그림 5-17]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Ⅱ(중복학대 미분류)

7) 재학대 사례의 조치결과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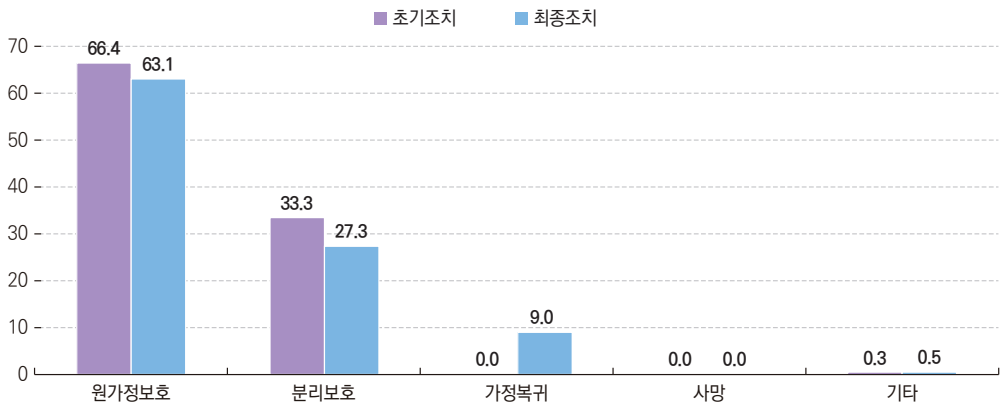
초기조치와 최종조치를 포함한 재학대 사례에 대한 피해아동 조치결과를 <표 5-20>과 같이 제시하였다.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원가정 보호가 1,434건(66.4%), 분리보호 719건(33.3%)으로 나타났고, 사망은 1건(0.0%)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학대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재학대 사례의 원가정보호율은 약 14.5%p 낮았으나 분리보호율은 약 14.6%p 높았다.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원가정보호가 1,364건(63.1%), 분리보호 590(27.3%)이었으며, 초기개입 시 분리되었던 피해아동이 최종적으로 가정에 복귀된 사례는 194건(9.0%)이었다. 전체 아동학대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재학대사례의 최종조치결과의 원가정보호는 약 15.5%p 낮았고, 분리보호는 약 11.5%p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 5-20〉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조치결과

(단위 : 건, %)

구분	조치	원가정 보호		분리보호												가정 복귀		사망	기타		계			
				친족 (친인척) 보호	연고자에 의한 보호	가정 위탁	일시 보호	장기 보호	병원 입원	소계														
초기조치	1,434	(66.4)	129	(6.0)	23	(1.1)	0	(0.0)	412	(19.1)	143	(6.6)	12	(0.6)	719	(33.3)	0	(0.0)	1	(0.0)	6	(0.3)	2,160	(100.0)
최종조치	1,364	(63.1)	135	(6.3)	17	(0.8)	4	(0.2)	175	(8.1)	248	(11.5)	11	(0.5)	590	(27.3)	194	(9.0)	1	(0.0)	11	(0.5)	2,160	(100.0)

(단위 : %)



[그림 5-18]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조치결과

나.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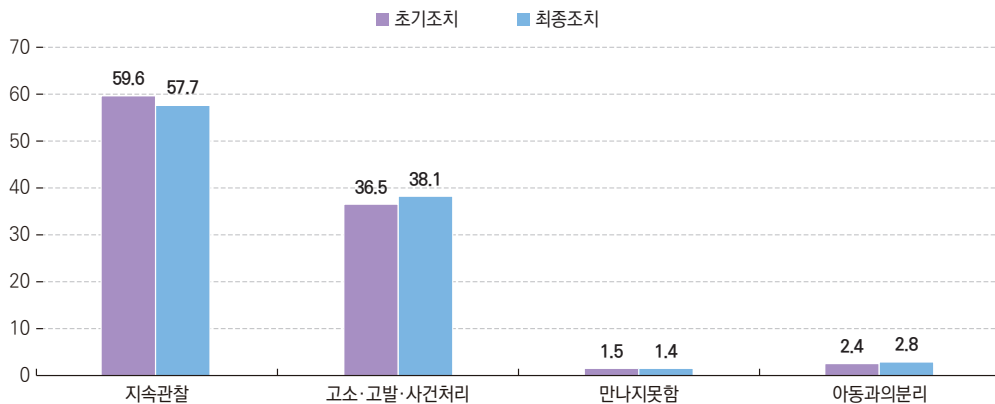
재학대 사례에 대한 학대행위자 조치결과를 <표 5-21>과 같이 초기조치와 최종조치를 함께 제시하였다.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지속관찰이 1,287건(59.6%)으로 가장 많았고, 고소·고발·사건처리가 788건(36.5%),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가 33건(1.5%), 아동과의 분리가 52건(2.4%)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 최종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지속관찰이 1,246건(57.7%)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기조치결과보다 약 1.9%p 감소한 수치였다. 다음으로 고소·고발·사건처리가 823건(38.1%)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초기조치결과보다 약 1.6%p 증가한 수치였다. 아동과의 분리는 60건(2.8%), 학대행위자와 만나지 못한 경우는 31건(1.4%)이었다.

<표 5-21>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단위 : 건, %)

구분 \ 조치	지속관찰		고소·고발·사건처리		만나지 못함		아동과의 분리		계	
초기조치	1,287	(59.6)	788	(36.5)	33	(1.5)	52	(2.4)	2,160	(100.0)
최종조치	1,246	(57.7)	823	(38.1)	31	(1.4)	60	(2.8)	2,160	(100.0)

(단위 : %)



[그림 5-19]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2. 사망아동 사례

1) 사망아동 사례의 현황

2017년에 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는 총 46건이었으며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약 0.2%를 차지하였다*. 46건 중에서 학대로 인한 사망 후에 신고접수가 된 사례는 41건이었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사망아동 통계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사례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이며, 수사기관을 통한 신고 및 진행된 사건은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표 5-22>에 제시된 수치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 5-22>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단위: 건, 명, %)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아동학대사례 중 사망아동사례 비율	사망아동 명수	피해아동보호명수 중 사망아동명수 비율
46	0.2	38	0.2

2) 사망아동 사례의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가.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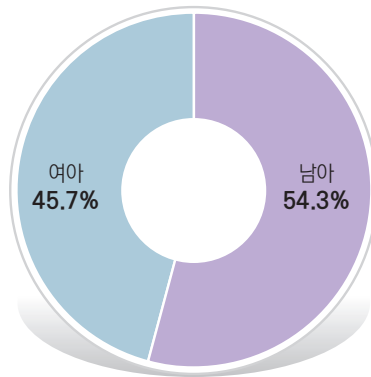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의 성별을 <표 5-23>과 같이 살펴본 결과, 남아가 25건(54.3%), 여아가 21건(45.7%)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8.6%p 높았다.

<표 5-23>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단위: 건, %)

성 별	건수(비율)		명수(비율)	
남아	25	(54.3)	19	(50.0)
여아	21	(45.7)	19	(50.0)
계	46	(100.0)	38	(100.0)

* 2017년 사망아동 사례 건수는 총 46건이며, 실제 사망아동 수는 총 38명임. 이는 2명의 학대행위자에게 학대를 당한 경우 2건으로 집계 되기 때문에 사례 건수와 실제 아동 수는 다를 수 있음.



[그림 5-20]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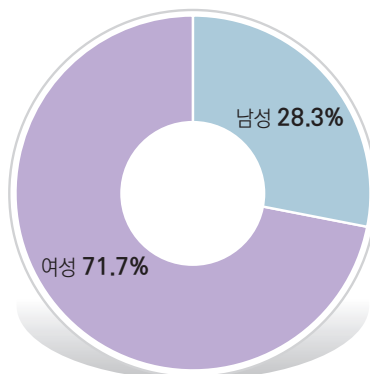
나.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학대로 사망한 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을 <표 5-24>과 같이 살펴본 결과, 총 46건의 사례 중 남성은 13건 (28.3%), 여성은 33건(71.7%)으로 여성 학대행위자가 남성에 비해 약 2.5배 높게 나타났다.

<표 5-24>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 건, %)

성 별	건수(비율)	
남성	13	(28.3)
여성	33	(71.7)
계	46	(100.0)



[그림 5-21]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다.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피해아동, 학대행위자의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표 5-25>와 같이 교차시켜 분석하였다.

먼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부와 친모가 각각 11건과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외에 계모 2건, 외조모 1건, 부모의 동거인 3건, 기타 3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아동 사례 중 학대행위자가 부모에 해당하는 경우가 39건으로 전체의 84.8%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30대가 22건(47.8%)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10건(21.7%), 40대 6건(13.0%), 50대 5건(10.9%)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의 연령을 살펴보면, 만 1세 미만이 15건(32.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만 2세 4건(10.9%), 만 3세 8건(17.4%), 만 1세, 만 5세, 만 7세 각각 4건(8.7%), 만 4세 3건(6.5%)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6>에 따르면 만 1세 미만은 14명, 만 3세와 만 5세 4명, 만 1세, 2세, 4세, 7세는 3명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만 3세 미만 영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영아는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학대피해를 경험하더라도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실제 연구에서도 만 1세 미만 아동이 다른 연령의 아동에 비해 사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 가운데 0-3세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로 나타났다**. 국내 역시 만 3세 이하의 사례는 총 31건으로 전체 사망아동 수와 비교했을 때 약 69%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5-25>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구분 (만)	친부					친모					계모			외조모	부모의 동거인			기타				계
	20 대	30 대	40 대	50 대	소 계	10 대	20 대	30 대	40 대	소 계	20 대	30 대	소 계	50 대	30 대	50 대	소 계	미상	20 대	40 대	소 계	
1세 미만	0	3	0	0	3	2	2	8	0	12	0	0	0	0	0	0	0	0	0	0	0	15
	(0.0)	(20.0)	(0.0)	(0.0)	(20.0)	(13.3)	(13.3)	(53.3)	(0.0)	(8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세	1	1	0	0	2	0	0	2	0	2	0	0	0	0	0	0	0	0	0	0	0	4
	(25.0)	(25.0)	(0.0)	(0.0)	(50.0)	(0.0)	(0.0)	(50.0)	(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2세	0	0	0	0	0	0	2	0	1	3	0	0	0	1	0	0	0	0	0	0	0	4
	(0.0)	(0.0)	(0.0)	(0.0)	(0.0)	(0.0)	(40.0)	(0.0)	(20.0)	(60.0)	(0.0)	(0.0)	(0.0)	(20.0)	(0.0)	(0.0)	(0.0)	(0.0)	(0.0)	(0.0)	(0.0)	(100.0)
3세	2	0	0	0	2	0	1	0	1	2	1	0	1	0	0	2	2	0	0	1	1	8
	(25.0)	(0.0)	(0.0)	(0.0)	(25.0)	(0.0)	(12.5)	(0.0)	(12.5)	(25.0)	(12.5)	(0.0)	(12.5)	(0.0)	(0.0)	(25.0)	(25.0)	(0.0)	(0.0)	(12.5)	(12.5)	(100.0)
4세	0	0	1	0	1	0	0	2	0	2	0	0	0	0	0	0	0	0	0	0	0	3
	(0.0)	(0.0)	(33.3)	(0.0)	(33.3)	(0.0)	(0.0)	(66.7)	(0.0)	(66.7)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5세	0	1	0	0	1	0	0	1	1	2	0	0	0	0	0	0	0	0	1	0	1	4
	(0.0)	(25.0)	(0.0)	(0.0)	(25.0)	(0.0)	(0.0)	(25.0)	(25.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25.0)	(0.0)	(25.0)	(100.0)

* 2017년 사망아동 사례 건수는 총 46건이며, 실제 사망아동 수는 총 38명임. 이는 2명의 학대행위자에게 학대를 당한 경우 2건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사례 건수와 실제 아동 수는 다를 수 있음.

** 2017년 사망아동 사례 건수는 총 46건이며, 실제 사망아동 수는 총 38명임. 이는 2명의 학대행위자에게 학대를 당한 경우 2건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사례 건수와 실제 아동 수는 다를 수 있음.

(단위 : 건, %)

구분 (만)	친부					친모					계모			외조모	부모의 동거인			기타				계
	20 대	30 대	40 대	50 대	소 계	10 대	20 대	30 대	40 대	소 계	20 대	30 대	소 계	50 대	30 대	50 대	소 계	미상	20 대	40 대	소 계	
6세	0	0	0	0	0	0	0	1	0	1	0	0	0	0	0	0	0	0	0	0	0	1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7세	0	0	0	1	1	0	0	1	0	1	0	1	1	0	0	0	0	1	0	0	1	4
	(0.0)	(0.0)	(0.0)	(25.0)	(25.0)	(0.0)	(0.0)	(25.0)	(0.0)	(25.0)	(0.0)	(25.0)	(25.0)	(0.0)	(0.0)	(0.0)	(0.0)	(25.0)	(0.0)	(0.0)	(25.0)	(100.0)
8세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	0	0	0	0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9세	0	0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0)	(0.0)	(0.0)	(10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2세	0	0	0	0	0	0	0	0	1	1	0	0	0	0	0	0	0	0	0	0	0	1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계	3	5	1	2	11	2	5	15	4	26	1	1	2	1	1	2	3	1	1	1	3	46
	(6.5)	(10.9)	(2.2)	(4.3)	(23.9)	(4.3)	(10.9)	(32.6)	(8.7)	(56.5)	(2.2)	(2.2)	(4.3)	(2.2)	(2.2)	(4.3)	(6.5)	(2.2)	(2.2)	(2.2)	(6.5)	(100.0)

〈표 5-26〉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연령

(단위 : 건, %)

연령(만)	1세 미만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2세	계
명수	14	3	3	4	3	4	1	3	1	1	1	38
비율	(36.8)	(7.9)	(7.9)	(10.5)	(7.9)	(10.5)	(2.6)	(7.9)	(2.6)	(2.6)	(2.6)	(100.0)

3) 사망아동 사례의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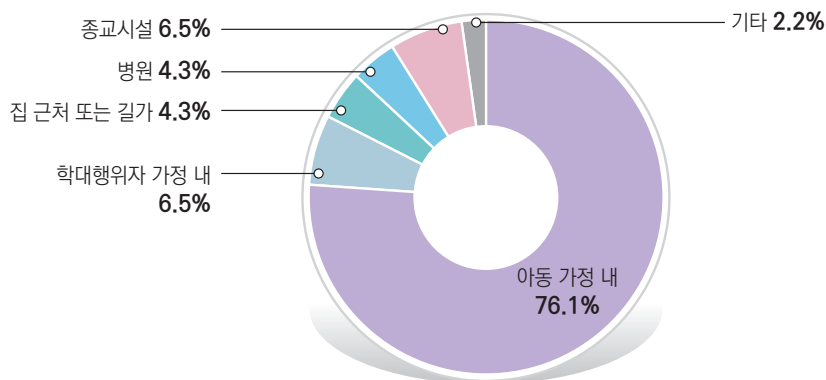
가.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학대로 사망한 아동 사례의 발생장소를 <표 5-27>와 같이 살펴보면, 아동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35건(76.1%)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다음으로 학대행위자 가정 내 발생 사례가 3건(6.5%), 종교시설 3건(6.5%), 병원 2건(4.3%), 집근처 또는 길가 2건(4.3%), 기타가 1건(2.2%)*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7>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단위 : 건, %)

발생장소	건수(비율)		명수(비율)	
아동 가정 내	35	(76.1)	30	(78.9)
학대행위자 가정 내	3	(6.5)	3	(7.9)
집근처 또는 길가	2	(4.3)	2	(5.3)
병원	2	(4.3)	1	(2.6)
종교시설	3	(6.5)	1	(2.6)
기타	1	(2.2)	1	(2.6)
계	46	(100.0)	38	(100.0)



[그림 5-22]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 차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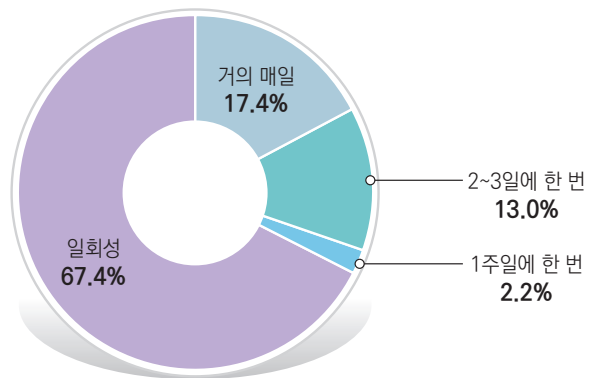
나.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학대로 사망한 아동 사례의 학대 발생빈도를 <표 5-28>과 같이 살펴본 결과, 일회성이 31건으로 67.4%의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거의 매일 학대가 발생한 사례는 8건(17.4%), 2~3일에 한 번 학대가 발생한 사례는 6건(13.0%), 1주일에 한 번 1건(2.2%)으로 나타났다.

〈표 5-28〉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단위 : 건, %)

발생빈도	건수(비율)		명수(비율)	
거의매일	8	(17.4)	5	(13.2)
2~3일에 한 번	6	(13.0)	3	(7.9)
1주일에 한 번	1	(2.2)	1	(2.6)
일회성	31	(67.4)	29	(76.3)
계	46	(100.0)	38	(100.0)



[그림 5-23]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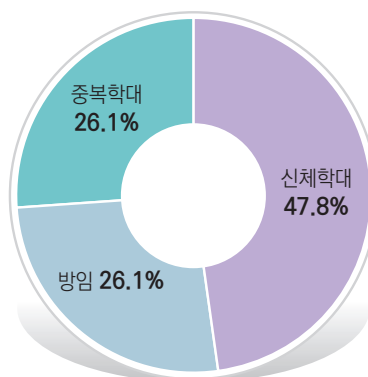
4)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학대로 사망한 아동 사례의 학대유형을 <표 5-29>와 같이 살펴보면, 신체학대가 22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과 중폭학대가 각각 12건(26.1%)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중폭학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신체학대와 방임이 같이 발생한 사례였으며 5건(10.9%)을 차지하였다. 전체 사망아동 사례 46건 중 신체학대가 단독 또는 중폭학대에 포함된 사례 건수는 33건으로, 다른 학대 유형보다도 신체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신체학대 다음으로 방임은 단독 또는 중폭학대에 포함된 사례 수가 21건으로 전체 사망아동 발생 건수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표 5-29〉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단위 : 건, %)

학대유형		건수(비율)		명수(비율)	
신체학대		22	(47.8)	19	50.0
방임		12	(26.1)	10	26.3
중폭학대	신체학대·정서학대	3	(6.5)	3	7.9
	신체학대·방임	5	(10.9)	4	10.5
	정서학대·방임	1	(2.2)	0	0.0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3	(6.5)	2	5.3
	소계	12	(26.1)	9	23.7
계		46	46	38	100.0



[그림 5-24]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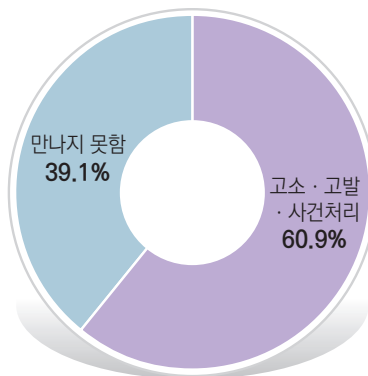
5)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결과를 <표 5-30>와 같이 살펴보면 고소·고발·사건처리가 28건(60.9%)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사례는 18건(39.1%)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동이 사망한 이후에 신고접수 되어 이미 학대행위자가 구속 수감 중이거나 행위자 역시 사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0〉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고소·고발·사건처리		만나지 못함		계	
28	(60.9)	18	(39.1)	46	(100.0)



[그림 5-25]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3.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사례

본 절에서는 2017년 한 해 동안 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사례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동보호전문 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보육교직원, 아동복지시설 및 기타시설 종사자,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사례를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총 2,843건이었으며, 이는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약 12.7%에 해당한다. 초·중·고교 직원이 1,345건(47.3%)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육교직원 840건(29.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85건(10.0%), 유치원교직원 281건(9.9%), 기타시설 종사자 60건(2.1%),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32건(1.1%)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비교할 때 시설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사례건수가 약 69% 증가하였다.

〈표 5-31〉 시설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사례 발생 건수

(단위 : 건, %)

시설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사례 건수	아동학대사례 중 시설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비율
2,843	12.7

1)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기관별 현황

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통계를 지역별로 분류하여 〈표 5-32〉과 같이 살펴보았다. 경기도 지역에서 586건 (20.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산 483건(17.0%), 전라남도 292건(10.3%), 서울 289건(10.2%) 순이었다.

종사자 유형으로 살펴보면 보육교직원에 의한 발생 사례는 경기도가 197건(23.5%)으로 가장 높았고, 유치원교 직원에 의한 발생 사례는 부산이 163건(58.0%)으로 가장 높았다. 초·중·고교 직원은 경기도가 318건(23.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충청남도에서 71건(24.9%)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기타시설 종사자의 경우 경기도가 22건 (36.7%),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는 부산이 19건(59.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32〉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 기관별 발생 건수

(단위 : 건, %)

종사자유형 지역 및 기관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아동복지 시설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계	
서울	서울특별시	7	(0.8)	4	(1.4)	7	(0.5)	30	(10.5)	1	(1.7)	1	(3.1)	50	(1.8)
	서울특별시동부	15	(1.8)	0	(0.0)	10	(0.7)	0	(0.0)	1	(1.7)	0	(0.0)	26	(0.9)
	서울강서	101	(12.0)	0	(0.0)	0	(0.0)	0	(0.0)	0	(0.0)	6	(18.8)	107	(3.8)
	서울은평	17	(2.0)	9	(3.2)	20	(1.5)	0	(0.0)	0	(0.0)	0	(0.0)	46	(1.6)
	서울영등포	4	(0.5)	0	(0.0)	7	(0.5)	0	(0.0)	0	(0.0)	0	(0.0)	11	(0.4)
	서울성북	1	(0.1)	5	(1.8)	16	(1.2)	0	(0.0)	0	(0.0)	0	(0.0)	22	(0.8)
	서울마포	21	(2.5)	0	(0.0)	2	(0.1)	4	(1.4)	0	(0.0)	0	(0.0)	27	(0.9)
	동남권	-	-	-	-	-	-	-	-	-	-	-	-	-	-
	소계	166	(19.8)	18	(6.4)	62	(4.6)	34	(11.9)	2	(3.3)	7	(21.9)	289	(10.2)
부산	부산광역시	22	(2.6)	0	(0.0)	209	(15.5)	1	(0.4)	2	(3.3)	0	(0.0)	234	(8.2)
	부산동부	9	(1.1)	0	(0.0)	24	(1.8)	3	(1.1)	0	(0.0)	19	(59.4)	55	(1.9)
	부산서부	7	(0.8)	163	(58.0)	24	(1.8)	0	(0.0)	0	(0.0)	0	(0.0)	194	(6.8)
	부산남부	-	-	-	-	-	-	-	-	-	-	-	-	-	-
	소계	38	(4.5)	163	(58.0)	257	(19.1)	4	(1.4)	2	(3.3)	19	(59.4)	483	(17.0)
대구	대구광역시	6	(0.7)	2	(0.7)	20	(1.5)	0	(0.0)	0	(0.0)	0	(0.0)	28	(1.0)
	대구남부	23	(2.7)	3	(1.1)	4	(0.3)	0	(0.0)	0	(0.0)	0	(0.0)	30	(1.1)
	대구북부	18	(2.1)	3	(1.1)	0	(0.0)	9	(3.2)	0	(0.0)	0	(0.0)	30	(1.1)
	소계	47	(5.6)	8	(2.8)	24	(1.8)	9	(3.2)	0	(0.0)	0	(0.0)	88	(3.1)
인천	인천광역시	3	(0.4)	1	(0.4)	12	(0.9)	10	(3.5)	4	(6.7)	0	(0.0)	30	(1.1)
	인천북부	136	(16.2)	0	(0.0)	35	(2.6)	0	(0.0)	0	(0.0)	0	(0.0)	171	(6.0)
	인천남부	7	(0.8)	3	(1.1)	1	(0.1)	0	(0.0)	0	(0.0)	0	(0.0)	11	(0.4)
	소계	146	(17.4)	4	(1.4)	48	(3.6)	10	(3.5)	4	(6.7)	0	(0.0)	212	(7.5)
광주	광주광역시	2	(0.2)	3	(1.1)	2	(0.1)	8	(2.8)	0	(0.0)	0	(0.0)	15	(0.5)
	빛고을	5	(0.6)	2	(0.7)	1	(0.1)	10	(3.5)	0	(0.0)	0	(0.0)	18	(0.6)
	소계	7	(0.8)	5	(1.8)	3	(0.2)	18	(6.3)	0	(0.0)	0	(0.0)	33	(1.2)
대전	대전광역시	12	(1.4)	1	(0.4)	9	(0.7)	25	(8.8)	0	(0.0)	2	(6.3)	49	(1.7)
울산	울산광역시	27	(3.2)	2	(0.7)	22	(1.6)	5	(1.8)	0	(0.0)	0	(0.0)	56	(2.0)
	울산남부	24	(2.9)	1	(0.4)	38	(2.8)	5	(1.8)	0	(0.0)	0	(0.0)	68	(2.4)
	소계	51	(6.1)	3	(1.1)	60	(4.5)	10	(3.5)	0	(0.0)	0	(0.0)	124	(4.4)
경기	경기도	14	(1.7)	2	(0.7)	6	(0.4)	0	(0.0)	0	(0.0)	0	(0.0)	22	(0.8)
	경기북부	60	(7.1)	0	(0.0)	46	(3.4)	0	(0.0)	0	(0.0)	0	(0.0)	106	(3.7)
	경기성남	10	(1.2)	1	(0.4)	35	(2.6)	13	(4.6)	2	(3.3)	0	(0.0)	61	(2.1)
	경기고양	23	(2.7)	1	(0.4)	5	(0.4)	1	(0.4)	1	(1.7)	0	(0.0)	31	(1.1)
	경기부천	24	(2.9)	2	(0.7)	39	(2.9)	1	(0.4)	0	(0.0)	0	(0.0)	66	(2.3)
	경기화성	8	(1.0)	0	(0.0)	2	(0.1)	9	(3.2)	0	(0.0)	0	(0.0)	19	(0.7)
	경기남양주	10	(1.2)	0	(0.0)	31	(2.3)	0	(0.0)	0	(0.0)	0	(0.0)	41	(1.4)
	안산시	7	(0.8)	0	(0.0)	65	(4.8)	3	(1.1)	18	(30.0)	3	(9.4)	96	(3.4)

(계속)

(단위 : 건, %)

지역 및 기관		종사자유형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아동복지 시설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계	
경기	경기용인	9	(1.1)	3	(1.1)	71	(5.3)	6	(2.1)	0	(0.0)	0	(0.0)	0	(0.0)	89	(3.1)
	경기사흥	18	(2.1)	0	(0.0)	9	(0.7)	0	(0.0)	1	(1.7)	0	(0.0)	0	(0.0)	28	(1.0)
	경기평택	4	(0.5)	1	(0.4)	1	(0.1)	0	(0.0)	0	(0.0)	0	(0.0)	0	(0.0)	6	(0.2)
	수원	10	(1.2)	0	(0.0)	8	(0.6)	3	(1.1)	0	(0.0)	0	(0.0)	0	(0.0)	21	(0.7)
	소계	197	(23.5)	10	(3.6)	318	(23.6)	36	(12.6)	22	(36.7)	3	(9.4)	3	(9.4)	586	(20.6)
강원	강원도	3	(0.4)	0	(0.0)	1	(0.1)	5	(1.8)	5	(8.3)	0	(0.0)	0	(0.0)	14	(0.5)
	강원동부	17	(2.0)	0	(0.0)	17	(1.3)	0	(0.0)	0	(0.0)	0	(0.0)	0	(0.0)	34	(1.2)
	강원서부	6	(0.7)	1	(0.4)	1	(0.1)	5	(1.8)	0	(0.0)	0	(0.0)	0	(0.0)	13	(0.5)
	강원남부	0	(0.0)	0	(0.0)	58	(4.3)	0	(0.0)	0	(0.0)	0	(0.0)	0	(0.0)	58	(2.0)
	소계	26	(3.1)	1	(0.4)	77	(5.7)	10	(3.5)	5	(8.3)	0	(0.0)	0	(0.0)	119	(4.2)
충북	충청북도	11	(1.3)	39	(13.9)	34	(2.5)	10	(3.5)	1	(1.7)	0	(0.0)	0	(0.0)	95	(3.3)
	충북북부	5	(0.6)	0	(0.0)	2	(0.1)	3	(1.1)	0	(0.0)	0	(0.0)	0	(0.0)	10	(0.4)
	충북남부	0	(0.0)	3	(1.1)	28	(2.1)	2	(0.7)	0	(0.0)	0	(0.0)	0	(0.0)	33	(1.2)
	소계	16	(1.9)	42	(14.9)	64	(4.8)	15	(5.3)	1	(1.7)	0	(0.0)	0	(0.0)	138	(4.9)
충남	충청남도	8	(1.0)	2	(0.7)	4	(0.3)	64	(22.5)	1	(1.7)	0	(0.0)	0	(0.0)	79	(2.8)
	충청남도남부	0	(0.0)	0	(0.0)	1	(0.1)	0	(0.0)	1	(1.7)	0	(0.0)	0	(0.0)	2	(0.1)
	충청남도서부	4	(0.5)	5	(1.8)	6	(0.4)	7	(2.5)	0	(0.0)	0	(0.0)	0	(0.0)	22	(0.8)
	소계	12	(1.4)	7	(2.5)	11	(0.8)	71	(24.9)	2	(3.3)	0	(0.0)	0	(0.0)	103	(3.6)
전북	전라북도	20	(2.4)	1	(0.4)	9	(0.7)	0	(0.0)	0	(0.0)	0	(0.0)	0	(0.0)	30	(1.1)
	전라북도서부	7	(0.8)	0	(0.0)	46	(3.4)	0	(0.0)	0	(0.0)	0	(0.0)	0	(0.0)	53	(1.9)
	전라북도동부	0	(0.0)	0	(0.0)	1	(0.1)	0	(0.0)	0	(0.0)	0	(0.0)	0	(0.0)	1	(0.0)
	소 계	27	(3.2)	1	(0.4)	56	(4.2)	0	(0.0)	0	(0.0)	0	(0.0)	0	(0.0)	84	(3.0)
전남	전라남도	4	(0.5)	5	(1.8)	85	(6.3)	4	(1.4)	0	(0.0)	0	(0.0)	0	(0.0)	98	(3.4)
	전남서부권	5	(0.6)	0	(0.0)	97	(7.2)	0	(0.0)	9	(15.0)	0	(0.0)	0	(0.0)	111	(3.9)
	전남중부권	9	(1.1)	0	(0.0)	64	(4.8)	10	(3.5)	0	(0.0)	0	(0.0)	0	(0.0)	83	(2.9)
	소계	18	(2.1)	5	(1.8)	246	(18.3)	14	(4.9)	9	(15.0)	0	(0.0)	0	(0.0)	292	(10.3)
경북	경북남부	1	(0.1)	0	(0.0)	0	(0.0)	1	(0.4)	0	(0.0)	0	(0.0)	0	(0.0)	2	(0.1)
	경북북부	14	(1.7)	0	(0.0)	33	(2.5)	0	(0.0)	0	(0.0)	0	(0.0)	0	(0.0)	47	(1.7)
	경북동부	4	(0.5)	1	(0.4)	28	(2.1)	5	(1.8)	9	(15.0)	0	(0.0)	0	(0.0)	47	(1.7)
	경북서부	9	(1.1)	2	(0.7)	6	(0.4)	21	(7.4)	0	(0.0)	0	(0.0)	0	(0.0)	38	(1.3)
	소계	28	(3.3)	3	(1.1)	67	(5.0)	27	(9.5)	9	(15.0)	0	(0.0)	0	(0.0)	134	(4.7)
경남	경상남도	27	(3.2)	10	(3.6)	4	(0.3)	2	(0.7)	2	(3.3)	0	(0.0)	0	(0.0)	45	(1.6)
	경남서부	0	(0.0)	0	(0.0)	37	(2.8)	0	(0.0)	2	(3.3)	0	(0.0)	0	(0.0)	39	(1.4)
	김해시	21	(2.5)	0	(0.0)	1	(0.1)	0	(0.0)	0	(0.0)	0	(0.0)	0	(0.0)	22	(0.8)
	소계	48	(5.7)	10	(3.6)	42	(3.1)	2	(0.7)	4	(6.7)	0	(0.0)	0	(0.0)	106	(3.7)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1	(0.1)	0	(0.0)	1	(0.1)	0	(0.0)	0	(0.0)	1	(3.1)	3	(0.1)	3	(0.1)
	서귀포시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계	1	(0.1)	0	(0.0)	1	(0.1)	0	(0.0)	0	(0.0)	1	(3.1)	3	(0.1)	3	(0.1)
계		840	(100.0)	281	(100.0)	1,345	(100.0)	285	(100.0)	60	(100.0)	32	(100.0)	2,843	(100.0)		

2)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피해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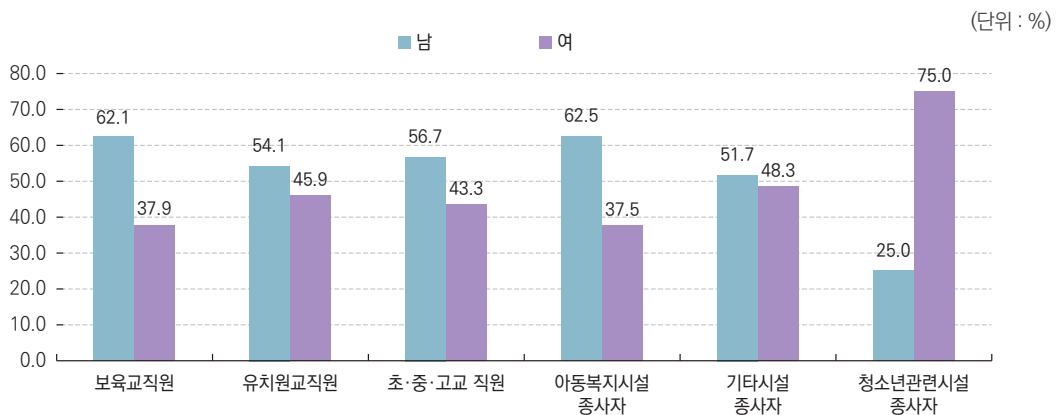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시설 종사자에 의한 사례 중 피해아동 성별을 <표 5-33>과 같이 살펴보면 남아가 1,653건(58.1%), 여아가 1,190건(41.9%)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았다. 종사자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학대사례에서 피해아동의 성별 차이가 가장 컸는데 여아가 남아보다 약 3배 많았다.

<표 5-33>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단위 : 건, %)

종사자유형	남아		여아		계	
성별						
보육교직원	522	(62.1)	318	(37.9)	840	(100.0)
유치원교직원	152	(54.1)	129	(45.9)	281	(100.0)
초·중·고교 직원	762	(56.7)	583	(43.3)	1,345	(1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78	(62.5)	107	(37.5)	285	(100.0)
기타시설 종사자	31	(51.7)	29	(48.3)	60	(100.0)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8	(25.0)	24	(75.0)	32	(100.0)
계	1,653	(58.1)	1,190	(41.9)	2,843	(100.0)



[그림 5-26]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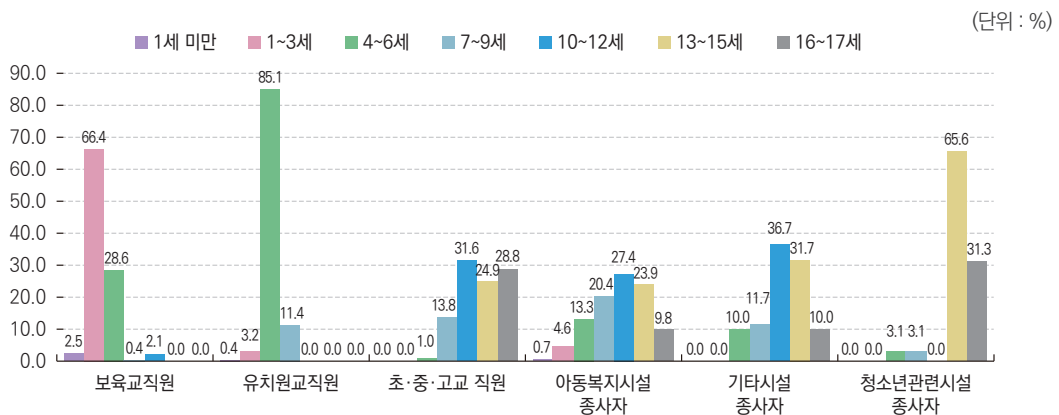
시설 종사자에 의한 사례 중 피해아동 연령을 <표 5-34>과 같이 살펴보면, 만 1~3세가 580건(20.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만 10~12세 543건(19.1%), 4~6세 536건(18.9%), 13~15세 443건(15.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육교직원의 경우 만 1~3세가 558건(66.4%), 만 4~6세 240건(28.6%) 순으로 높았고, 유치원교직원의 경우 만 4~6세가 239건(85.1%)으로 가장 압도적인 수치였다. 초·중·고교 직원의 경우 만 10~12세 425건(31.6%), 만 16~17세 387건(28.8%), 13~15세 335건(24.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만 10~12세 78건(27.4%), 만 13~15세 68건(23.9%), 만 7~9세 58건(20.4%) 순으로 높았고, 기타시설 종사자의 경우 만 10~12세 22건(36.7%), 만 13~15세 19건(31.7%)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의 경우 만 13~15세가 21건(65.6%)으로 나타났다.

〈표 5-34〉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단위 : 건, %)

종사자유형 연령(만)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계	
1세 미만	21	(2.5)	1	(0.4)	0	(0.0)	2	(0.7)	0	(0.0)	0	(0.0)	24	(0.8)
1~3세	558	(66.4)	9	(3.2)	0	(0.0)	13	(4.6)	0	(0.0)	0	(0.0)	580	(20.4)
4~6세	240	(28.6)	239	(85.1)	13	(1.0)	38	(13.3)	6	(10.0)	0	(3.1)	536	(18.9)
7~9세	3	(0.4)	32	(11.4)	185	(13.8)	58	(20.4)	7	(11.7)	1	(3.1)	286	(10.1)
10~12세	18	(2.1)	0	(0.0)	425	(31.6)	78	(27.4)	22	(36.7)	0	(0.0)	543	(19.1)
13~15세	0	(0.0)	0	(0.0)	335	(24.9)	68	(23.9)	19	(31.7)	21	(65.6)	443	(15.6)
16~17세	0	(0.0)	0	(0.0)	387	(28.8)	28	(9.8)	6	(10.0)	10	(31.3)	431	(15.2)
계	840	(100.0)	281	(100.0)	1,345	(100.0)	285	(100.0)	60	(100.0)	32	(100.0)	2,843	(100.0)



[그림 5-27]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다.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을 <표 5-35>와 같이 살펴보면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를 제외하고 모든 종사자 유형에서 파악안된 수치가 가장 높았다.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의 경우 특성없음 이 종사자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정서정신건강 특성이 19.7%, 적응행동 14.7%로 종사자 유형 중 가장 높았다.

<표 5-35>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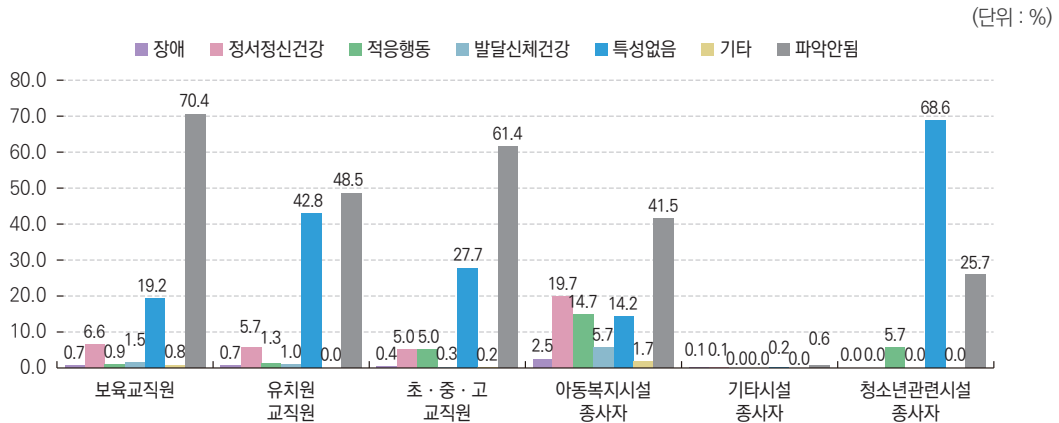
특성	종사자 유형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계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장애	신체적장애	2	(0.2)	0	(0.0)	0	(0.0)	1	(0.2)	0	(0.0)	0	(0.0)	3	(0.1)
	정신적장애	2	(0.2)	1	(0.3)	4	(0.3)	6	(1.5)	1	(0.0)	0	(0.0)	14	(0.4)
	장애의심	2	(0.2)	1	(0.3)	2	(0.1)	3	(0.7)	3	(0.0)	0	(0.0)	11	(0.3)
	소계	6	(0.7)	2	(0.7)	6	(0.4)	10	(2.5)	4	(0.1)	0	(0.0)	28	(0.9)
정서 정신 건강	주의산만	12	(1.4)	4	(1.3)	20	(1.3)	19	(4.7)	5	(0.1)	0	(0.0)	60	(1.9)
	과잉행동	6	(0.7)	2	(0.7)	13	(0.9)	11	(2.7)	2	(0.0)	0	(0.0)	34	(1.1)
	인터넷(게임)중독	0	(0.0)	0	(0.0)	1	(0.1)	0	(0.0)	0	(0.0)	0	(0.0)	1	(0.0)
	불안	25	(2.8)	5	(1.7)	17	(1.1)	14	(3.5)	0	(0.0)	0	(0.0)	61	(1.9)
	애착문제	7	(0.8)	2	(0.7)	1	(0.1)	7	(1.7)	0	(0.0)	0	(0.0)	17	(0.5)
	무력감	0	(0.0)	0	(0.0)	0	(0.0)	1	(0.2)	0	(0.0)	0	(0.0)	1	(0.0)
	우울	4	(0.5)	1	(0.3)	7	(0.5)	5	(1.2)	0	(0.0)	0	(0.0)	17	(0.5)
	낮은 자아존중감	0	(0.0)	1	(0.3)	7	(0.5)	3	(0.7)	1	(0.0)	0	(0.0)	12	(0.4)
	성격 및 기질문 제	4	(0.5)	2	(0.7)	8	(0.5)	14	(3.5)	1	(0.0)	0	(0.0)	29	(0.9)
	탐식 및 결식	0	(0.0)	0	(0.0)	1	(0.1)	5	(1.2)	0	(0.0)	0	(0.0)	6	(0.2)
	소계	58	(6.6)	17	(5.7)	75	(5.0)	79	(19.7)	9	(0.1)	0	(0.0)	238	(7.5)
적응 행동	반항·충동·공격성	5	(0.6)	3	(1.0)	15	(1.0)	14	(3.5)	1	(0.0)	0	(0.0)	38	(1.2)
	거짓말	0	(0.0)	0	(0.0)	4	(0.3)	11	(2.7)	0	(0.0)	0	(0.0)	15	(0.5)
	도벽	0	(0.0)	0	(0.0)	0	(0.0)	5	(1.2)	0	(0.0)	0	(0.0)	5	(0.2)
	가출	0	(0.0)	0	(0.0)	1	(0.1)	2	(0.5)	0	(0.0)	1	(2.9)	4	(0.1)
	약물·흡연·음주	0	(0.0)	0	(0.0)	6	(0.4)	2	(0.5)	0	(0.0)	0	(0.0)	8	(0.3)
	성문제	0	(0.0)	0	(0.0)	1	(0.1)	2	(0.5)	0	(0.0)	0	(0.0)	3	(0.1)
	학교 부적응	1	(0.1)	0	(0.0)	5	(0.3)	6	(1.5)	0	(0.0)	0	(0.0)	12	(0.4)
	찾은결석, 무단결과	0	(0.0)	0	(0.0)	7	(0.5)	2	(0.5)	0	(0.0)	0	(0.0)	9	(0.3)
	늦은 귀가	0	(0.0)	0	(0.0)	1	(0.1)	2	(0.5)	0	(0.0)	1	(2.9)	4	(0.1)
	학습문제	1	(0.1)	1	(0.3)	5	(0.3)	8	(2.0)	0	(0.0)	0	(0.0)	15	(0.5)
	폭력행동	0	(0.0)	0	(0.0)	15	(1.0)	5	(1.2)	0	(0.0)	0	(0.0)	20	(0.6)
	비행집단활동	0	(0.0)	0	(0.0)	6	(0.4)	0	(0.0)	0	(0.0)	0	(0.0)	6	(0.2)
	불건강한또래 관계	0	(0.0)	0	(0.0)	4	(0.3)	0	(0.0)	0	(0.0)	0	(0.0)	4	(0.1)
	대인관계기피	1	(0.1)	0	(0.0)	4	(0.3)	0	(0.0)	0	(0.0)	0	(0.0)	5	(0.2)
	소계	8	(0.9)	4	(1.3)	74	(5.0)	59	(14.7)	1	(0.0)	2	(5.7)	148	(4.7)

(계속)

(단위 : 건, %)

특성	종사자 유형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계
발달 신체 건강	신체발달지연	0 (0.0)	0 (0.0)	0 (0.0)	4 (1.0)	0 (0.0)	0 (0.0)	4 (0.1)
	언어문제	6 (0.7)	1 (0.3)	0 (0.0)	3 (0.7)	0 (0.0)	0 (0.0)	10 (0.3)
	영양결핍	1 (0.1)	0 (0.0)	0 (0.0)	3 (0.7)	0 (0.0)	0 (0.0)	4 (0.1)
	대소변문제	1 (0.1)	1 (0.3)	0 (0.0)	1 (0.2)	1 (0.0)	0 (0.0)	4 (0.1)
	위생문제	2 (0.2)	0 (0.0)	0 (0.0)	7 (1.7)	0 (0.0)	0 (0.0)	9 (0.3)
	틱(음성, 신체, 뚜렛)	0 (0.0)	0 (0.0)	2 (0.1)	0 (0.0)	0 (0.0)	0 (0.0)	2 (0.1)
	찾은병치레	2 (0.2)	0 (0.0)	0 (0.0)	2 (0.5)	0 (0.0)	0 (0.0)	4 (0.1)
	주요병력	1 (0.1)	1 (0.3)	2 (0.1)	3 (0.7)	0 (0.0)	0 (0.0)	7 (0.2)
소계		13 (1.5)	3 (1.0)	4 (0.3)	23 (5.7)	1 (0.0)	0 (0.0)	44 (1.4)
특성없음		169 (19.2)	127 (42.8)	411 (27.7)	57 (14.2)	11 (0.2)	24 (68.6)	799 (25.2)
기타		7 (0.8)	0 (0.0)	3 (0.2)	7 (1.7)	0 (0.0)	0 (0.0)	17 (0.5)
파악안됨		621 (70.4)	144 (48.5)	913 (61.4)	167 (41.5)	43 (0.6)	9 (25.7)	1,897 (59.8)
계		882 (100.0)	297 (100.0)	1,486 (100.0)	402 (100.0)	69 (1.0)	35 (100.0)	3,171 (100.0)

※중복포함



※중복포함

[그림 5-28]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3)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학대행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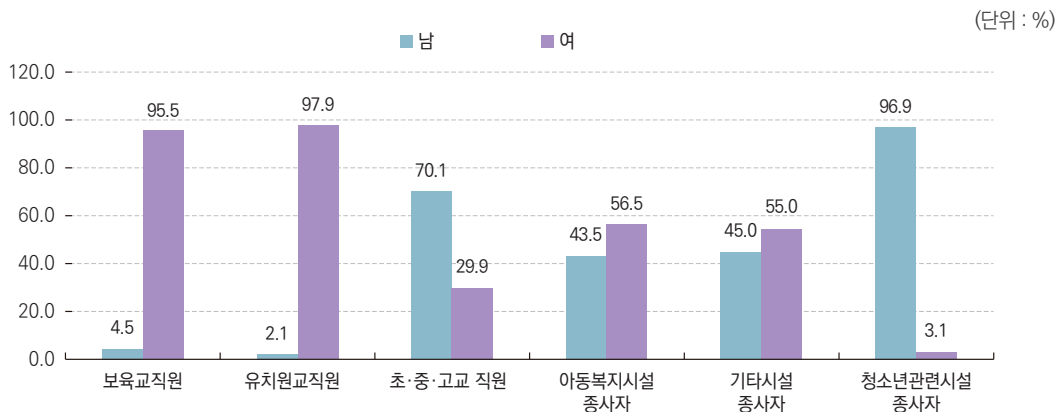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을 <표 5-36>과 같이 살펴보면 여성이 1,674건(58.9%), 남성이 1,169건(41.1%)으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시설 종사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육교직원과 유치원교직원의 경우 여성이 각각 802건(95.5%), 275건(97.9%)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도 161건(56.5%)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초·중·고교 직원,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의 경우 남성이 각각 943건(70.1%), 31건(96.9%)으로 나타나 여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5-36>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 건, %)

종사자유형 \ 성별	남성		여성		계	
종사자유형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보육교직원	38	(4.5)	802	(95.5)	840	(100.0)
유치원교직원	6	(2.1)	275	(97.9)	281	(100.0)
초·중·고교 직원	943	(70.1)	402	(29.9)	1,345	(1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24	(43.5)	161	(56.5)	285	(100.0)
기타시설 종사자	27	(45.0)	33	(55.0)	60	(100.0)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31	(96.9)	1	(3.1)	32	(100.0)
계	1,169	(41.1)	1,674	(58.9)	2,843	(100.0)



[그림 5-29]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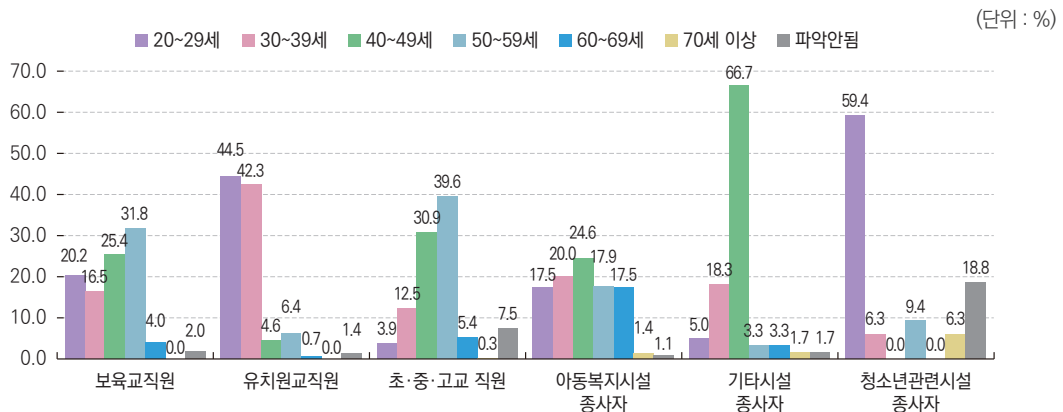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시설 종사자 학대행위자의 연령을 <표 5-37>과 같이 살펴보면 50대가 874건(30.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40대가 751건(26.4%), 30대가 496건(17.4%), 20대가 419건(14.7%)순으로 나타났다. 시설 종사자 유형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보육교직원의 경우 50대(31.8%), 40대(25.4%), 20대(20.2%), 30대(16.5%) 순으로 나타나 20~50대에 주로 고루 분포하고 있었고, 유치원교직원의 경우 20대(44.5%), 30대(42.3%)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초·중·고교 직원의 경우 50대(39.6%), 40대(30.9%), 30대(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는 40대(24.6%)가 가장 많았으며, 기타복지시설 종사자는 40대(66.7%)에 집중되어있다. 반면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의 경우 20대가 59.4%로 나타났다.

〈표 5-37〉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 건, %)

종사자유형 연령(만)	보육 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아동복지 시설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청소년관련 시설종사자		계	
20대(20~29세)	170	(20.2)	125	(44.5)	52	(3.9)	50	(17.5)	3	(5.0)	19	(59.4)	419	(14.7)
30대(30~39세)	139	(16.5)	119	(42.3)	168	(12.5)	57	(20.0)	11	(18.3)	2	(6.3)	496	(17.4)
40대(40~49세)	213	(25.4)	13	(4.6)	415	(30.9)	70	(24.6)	40	(66.7)	0	(0.0)	751	(26.4)
50대(50~59세)	267	(31.8)	18	(6.4)	533	(39.6)	51	(17.9)	2	(3.3)	3	(9.4)	874	(30.7)
60대(60~69세)	34	(4.0)	2	(0.7)	72	(5.4)	50	(17.5)	2	(3.3)	0	(0.0)	160	(5.6)
70세 이상	0	(0.0)	0	(0.0)	4	(0.3)	4	(1.4)	1	(1.7)	2	(6.3)	11	(0.4)
파악안됨	17	(2.0)	4	(1.4)	101	(7.5)	3	(1.1)	1	(1.7)	6	(18.8)	132	(4.6)
계	840	(100.0)	281	(100.0)	1,345	(100.0)	285	(100.0)	60	(100.0)	32	(100.0)	2,843	(100.0)



[그림 5-30]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다.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을 <표 5-38>와 같이 살펴보면 파악안됨 사례를 제외하고 보육교직원과 유치원교직원, 기타시설종사자의 경우 특성없음이 123건(13.8%), 99건(33.2%), 23건(35.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중·고교 직원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이 각각 296건(17.7%), 46건(14.2%)으로 파악안됨을 제외하고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38>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단위: 건, %)

특성	종사자유형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아동복지 시설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청소년관련시 설종사자		계	
신체적 장애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정신적 장애	1	(0.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0)
장애의심	0	(0.0)	0	(0.0)	48	(2.9)	0	(0.0)	0	(0.0)	0	(0.0)	0	(0.0)	48	(1.5)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81	(9.1)	47	(15.8)	296	(17.7)	46	(14.2)	12	(18.5)	0	(0.0)	0	(0.0)	482	(14.7)
중독문제	0	(0.0)	0	(0.0)	11	(0.7)	0	(0.0)	0	(0.0)	0	(0.0)	0	(0.0)	11	(0.3)
질환문제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성격 및 기질문제	11	(1.2)	1	(0.3)	64	(3.8)	8	(2.5)	0	(0.0)	0	(0.0)	0	(0.0)	84	(2.6)
위생문제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나태 및 무기력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난독해, 난작문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31	(3.5)	1	(0.3)	67	(4.0)	16	(5.0)	0	(0.0)	0	(0.0)	0	(0.0)	115	(3.5)
어릴 적 학대 경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폭력성	0	(0.0)	0	(0.0)	11	(0.7)	0	(0.0)	0	(0.0)	0	(0.0)	0	(0.0)	11	(0.3)
전과력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성문제	0	(0.0)	0	(0.0)	19	(1.1)	0	(0.0)	0	(0.0)	1	(3.1)	0	(0.0)	20	(0.6)
원치 않은 아동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부부 및 가족갈등	0	(0.0)	0	(0.0)	11	(0.7)	0	(0.0)	0	(0.0)	0	(0.0)	0	(0.0)	11	(0.3)
종교문제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특성없음	123	(13.8)	99	(33.2)	243	(14.5)	35	(10.8)	23	(35.4)	22	(68.8)	545	(16.6)	545	(16.6)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파악안됨	644	(72.3)	150	(50.3)	905	(54.0)	218	(67.5)	30	(46.2)	9	(28.1)	1,956	(59.6)	1,956	(59.6)
계	891	(100.0)	298	(100.0)	1,675	(100.0)	323	(100.0)	65	(100.0)	32	(100.0)	3,284	(100.0)	3,284	(100.0)

※중복포함

4)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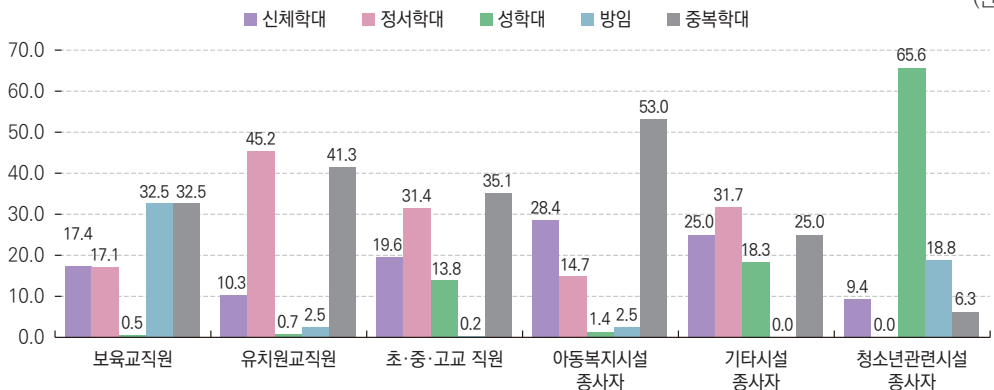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여 <표 5-39>과 같이 살펴보면 유치원 교직원, 기타시설종사자와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를 제외하고 모든 시설종사자에서 중복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일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방임이 273건(32.5%)으로 보육교직원이 가장 높았으며 정서학대는 각각 127건(45.2%), 19건(31.7%)으로 유치원교직원과 기타시설종사자가 가장 높은 건수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성학대는 21건(65.6%)으로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보육교직원의 경우 방임이 19.6%p 증가했으며 유치원교직원의 정서학대가 26%p 증가했다.

<표 5-39>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단위 : 건, %)

종사자유형 학대유형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청소년관련시 설종사자	계
신체학대	146 (17.4)	29 (10.3)	263 (19.6)	81 (28.4)	15 (25.0)	3 (9.4)	537 (18.9)
정서학대	144 (17.1)	127 (45.2)	422 (31.4)	42 (14.7)	19 (31.7)	0 (0.0)	754 (26.5)
성 학 대	4 (0.5)	2 (0.7)	185 (13.8)	4 (1.4)	11 (18.3)	21 (65.6)	227 (8.0)
방 임	273 (32.5)	7 (2.5)	3 (0.2)	7 (2.5)	0 (0.0)	6 (18.8)	296 (10.4)
신체학대·정서학대	228 (27.1)	69 (24.6)	410 (30.5)	128 (44.9)	12 (20.0)	2 (6.3)	849 (29.9)
신체학대·성학대	0 (0.0)	0 (0.0)	3 (0.2)	0 (0.0)	0 (0.0)	0 (0.0)	3 (0.1)
신체학대·방임	1 (0.1)	1 (0.4)	0 (0.0)	0 (0.0)	0 (0.0)	0 (0.0)	2 (0.1)
정서학대·성학대	18 (2.1)	0 (0.0)	45 (3.3)	3 (1.1)	0 (0.0)	0 (0.0)	66 (2.3)
정서학대·방임	11 (1.3)	45 (16.0)	0 (0.0)	8 (2.8)	1 (1.7)	0 (0.0)	65 (2.3)
신체학대·정서학대· 성학대	0 (0.0)	0 (0.0)	14 (1.0)	2 (0.7)	0 (0.0)	0 (0.0)	16 (0.6)
신체학대·정서학대· 방임	15 (1.8)	1 (0.4)	0 (0.0)	10 (3.5)	2 (3.3)	0 (0.0)	28 (1.0)
소계	273 (32.5)	116 (41.3)	472 (35.1)	151 (53.0)	15 (25.0)	2 (6.3)	1,029 (36.2)
계	840 (100.0)	281 (100.0)	1,345 (100.0)	285 (100.0)	60 (100.0)	32 (100.0)	2,843 (100.0)

(단위 : %)



[그림 5-31]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Ⅱ(중복학대 미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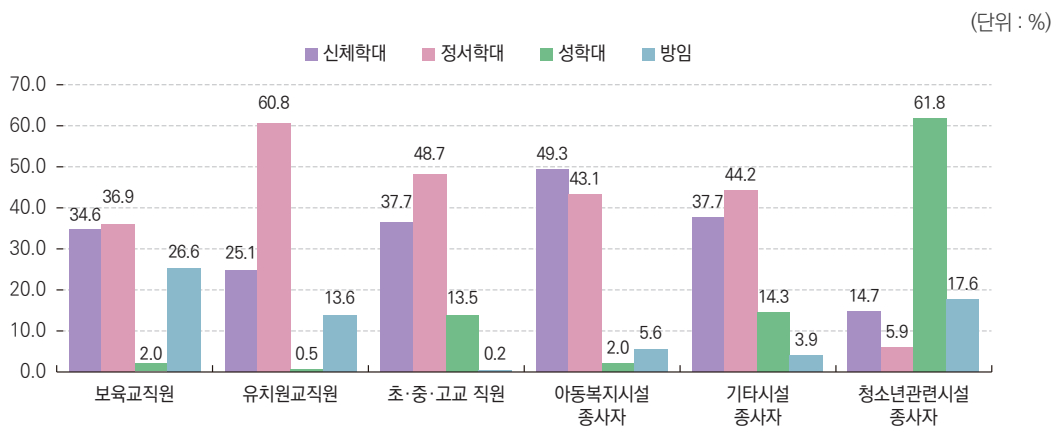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표 5-40>와 같이 살펴보면 정서학대가 1,778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체학대 1,435건(36.6%), 방임 391건(10.0%), 성학대 312건(8.0%)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와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를 제외한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기타시설종사자의 학대유형 중 정서학대에서 각각 60.8%, 48.7%, 36.9%, 4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신체학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종사자 유형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와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로 나타났다.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의 경우 성학대가 21건(61.8%)을 차지했다.

〈표 5-40〉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Ⅱ(중복학대 미분류)

(단위 : 건, %)

종사자유형 학대유형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계	
신체학대	390	(34.6)	100	(25.1)	690	(37.7)	221	(49.3)	29	(37.7)	5	(14.7)	1,435	(36.6)
정서학대	416	(36.9)	242	(60.8)	891	(48.7)	193	(43.1)	34	(44.2)	2	(5.9)	1,778	(45.4)
성 학 대	22	(2.0)	2	(0.5)	247	(13.5)	9	(2.0)	11	(14.3)	21	(61.8)	312	(8.0)
방 임	300	(26.6)	54	(13.6)	3	(0.2)	25	(5.6)	3	(3.9)	6	(17.6)	391	(10.0)
계	1,128	(100.0)	398	(100.0)	1,831	(100.0)	448	(100.0)	77	(100.0)	34	(100.0)	3,916	(100.0)

※중복포함



※중복포함

[그림 5-32]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Ⅱ(중복학대 미분류)

5)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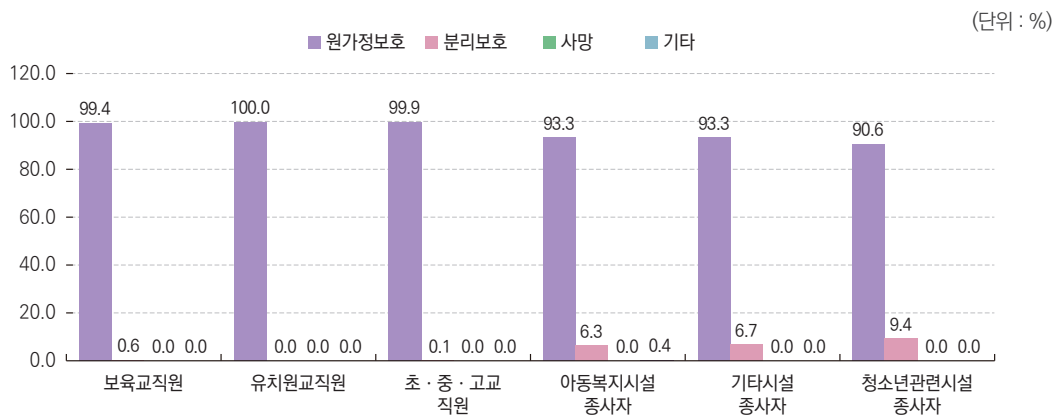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를 <표 5-41>과 같이 살펴보면 모든 시설 종사자 유형에서 원가정 보호가 90% 이상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유치원교직원과 보육교직원은 모두 99%가 넘는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다.

<표 5-41>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단위 : 건, %)

조치결과 종사자유형	원가정 보호		분리보호												사망		기타		계			
			친족 (친인척) 보호		연고자에 의한 보호		가정 위탁		일시 보호		장기 보호		병원 입원								소계	
보육교직원	835	(99.4)	0	(0.0)	0	(0.0)	0	(0.0)	5	(0.6)	0	(0.0)	0	(0.0)	5	(0.6)	0	(0.0)	0	(0.0)	840	(100.0)
유치원교직원	28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81	(100.0)
초·중·고교 직원	1,343	(99.9)	1	(0.1)	0	(0.0)	0	(0.0)	0	(0.0)	0	(0.0)	1	(0.1)	2	(0.1)	0	(0.0)	0	(0.0)	1,345	(1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66	(93.3)	2	(0.7)	0	(0.0)	0	(0.0)	5	(1.8)	11	(3.9)	0	(0.0)	18	(6.3)	0	(0.0)	1	(0.4)	285	(100.0)
기타시설 종사자	56	(93.3)	0	(0.0)	0	(0.0)	0	(0.0)	1	(1.7)	3	(5.0)	0	(0.0)	4	(6.7)	0	(0.0)	0	(0.0)	60	(100.0)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29	(90.6)	0	(0.0)	0	(0.0)	0	(0.0)	3	(9.4)	0	(0.0)	0	(0.0)	3	(9.4)	0	(0.0)	0	(0.0)	32	(100.0)
계	2,810	(98.8)	3	(0.1)	0	(0.0)	0	(0.0)	14	(0.5)	14	(0.5)	1	(0.0)	32	(1.1)	0	(0.0)	1	(0.0)	2,843	(100.0)



[그림 5-33]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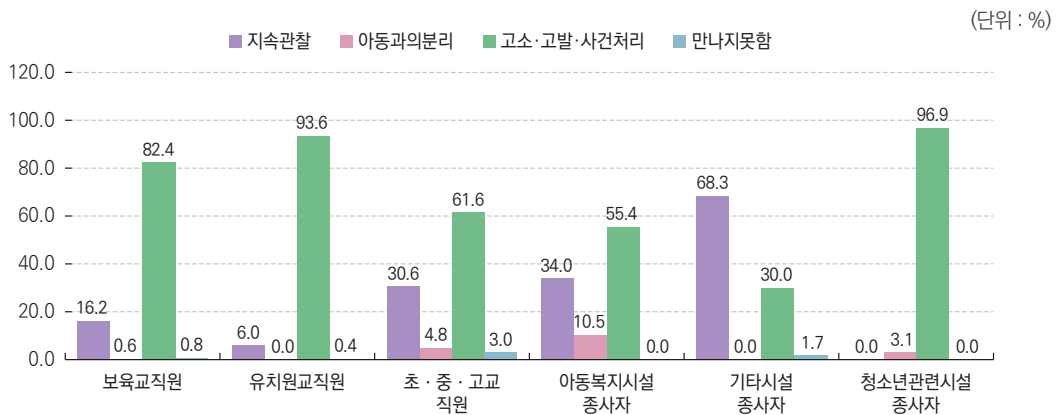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를 <표 5-42>와 같이 살펴보면 기타시설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시설 종사자 유형에서 고소·고발·사건처리가 1,990건(70.0%)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지속관찰 703건(24.7%), 아동과의 분리 101건(3.6%) 순으로 나타났다.

지속관찰은 기타시설종사자 68.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4.0%, 초·중·고교 직원 30.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과의 분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10.5%, 초·중·고교 직원이 4.8%로 나타났다. 고소·고발·사건 처리의 경우 기타시설종사자가 30.0%로 가장 적은 비율을 보였고,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가 96.9%로 가장 높았다.

〈표 5-42〉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종사자유형 \ 조치결과	지속관찰		아동과의 분리		고소·고발·사건처리		만나지 못함		계	
보육교직원	136	(16.2)	5	(0.6)	692	(82.4)	7	(0.8)	840	(100.0)
유치원교직원	17	(6.0)	0	(0.0)	263	(93.6)	1	(0.4)	281	(100.0)
초·중·고교 직원	412	(30.6)	65	(4.8)	828	(61.6)	40	(3.0)	1,345	(1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97	(34.0)	30	(10.5)	158	(55.4)	0	(0.0)	285	(100.0)
기타시설 종사자	41	(68.3)	0	(0.0)	18	(30.0)	1	(1.7)	60	(100.0)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0	(0.0)	1	(3.1)	31	(96.9)	0	(0.0)	32	(100.0)
계	703	(24.7)	101	(3.6)	1,990	(70.0)	49	(1.7)	2,84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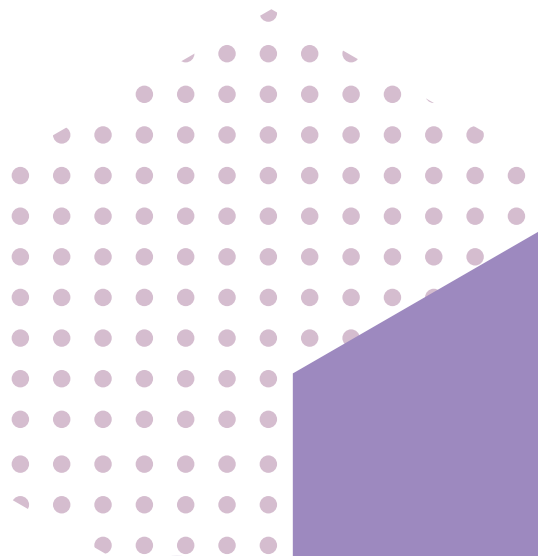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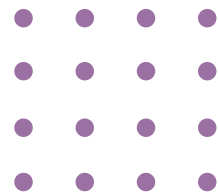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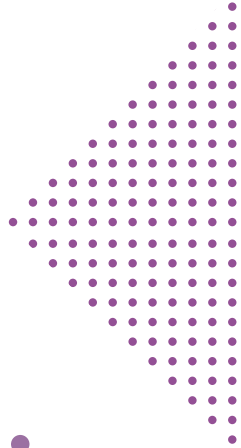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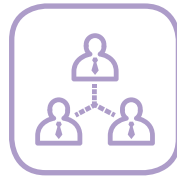
[그림 5-34]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6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Child Abuse & Neglect Korea 2017





제6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표 6-1〉은 2017년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총량과 직원 1인당 실질 가용시간, 이에 따른 적정인원 수를 추정한 것이다. 업무량 추정은 201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의 제6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2016년 업무량 분석」*연구를 기반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업무량(시간)을 세부업무별 평균 업무시간을 기초로 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 총량을 추정하였다. 즉, 각 업무별 평균 소요시간 값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이 연간 수행한 각 업무들의 크기(회, 건)를 적용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총 업무량을 산출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수행한 업무 총량을 산출한 결과, 총 업무량(T)은 약 2,886,071시간(상담원 1인당 약 3,853시간)으로 추정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의 경우 총 업무량(T)은 약 437,490시간(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1인당 약 6,730시간)으로 추정되었다. 상담원 1인당 업무가용시간**에서 상담원 1인당 연 평균 업무손실 등을 차감한 실질적인 연간 가용 근무시간을 재산정한 것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경우 약 245일(1,960시간)으로 나타났다.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은 약 231일(1,852시간)이었다.

이러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간 업무처리 소요시간 및 1인당 실질 연간 가용 근무시간을 적용하여 현실 타당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적정 인력규모를 추정한 결과, 2017년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담원 적정인원은 1,472명***으로 나타났다.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의 경우 2017년 기준 총 236명****이 치료업무수행에 필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2016년 업무량 분석.

** 1인당 연간 가용한 기본근무시간은 상담원 1인당 업무가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하였음. 평균월일수 30.41일(=365/12)이고, 평균 월 주수는 4.34 주(=30.41/7)다. 따라서 평균월 업무가용시간은 173.6시간(=40×4.34)이된다. 이를 연간 업무가용시간으로 환산하면, 2,083.2(=173.6×12) 시간이며, 연간 업무가용일수로는 260.4일이 됨.

*** 2017년 12월 1일 기준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배치상담원 수는 749명임.

**** 2017년 12월 1일 기준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배치 상근임상심리치료인력 수는 65명임.

〈표 6-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업무량

(단위 : 시간, 명)

지역 및 기관	항목	상담원 (기관장 제외)*	상담원 총 업무량	상담원 1인당 실질 가용시간	상담원 표준모형 적정 인원수	상근 임상심리 치료전문 인력수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총 업무량 (시간)	임상심리치 료전문인력 1인당 실질 가용시간	임상심리 치료전문 인력 표준 모형적 정인원수	비고
서울	서울특별시	11	13,193	1,961	6.7	0	937	1,852	0.5	
	서울특별시동부	14	58,668	1,961	29.9	1	3,031	1,852	1.6	
	서울강서	11	39,211	1,961	20.0	1	6,945	1,852	3.8	
	서울은평	11	37,154	1,961	18.9	1	8,303	1,852	4.5	
	서울영등포	11	30,772	1,961	15.7	1	5,574	1,852	3.0	
	서울성북	10	44,120	1,961	22.5	1	9,889	1,852	5.3	
	서울마포	14	72,530	1,961	37.0	2	9,225	1,852	5.0	
	서울동남권	9	28,736	1,961	14.7	2	7,074	1,852	3.8	
	소계	91	324,383		165.4	9	50,978		27.5	
부산	부산광역시	12	22,877	1,961	11.7	2	1,045	1,852	0.6	
	부산동부	15	46,103	1,961	23.5	1	3,449	1,852	1.9	
	부산서부	11	48,396	1,961	24.7	1	3,885	1,852	2.1	
	부산남부	11	76,159	1,961	38.8	1	6,595	1,852	3.6	
	소계	49	193,535		98.7	5	14,973		8.1	
대구	대구광역시	12	45,320	1,961	23.1	1	3,979	1,852	2.1	
	대구남부	11	54,540	1,961	27.8	1	8,974	1,852	4.8	
	대구북부	11	43,685	1,961	22.3	1	4,660	1,852	2.5	
	소계	34	143,546		73.2	3	17,614		9.5	
인천	인천광역시	14	92,991	1,961	47.4	1	6,821	1,852	3.7	
	인천북부	13	54,597	1,961	27.8	1	8,373	1,852	4.5	
	인천남부	9	63,236	1,961	32.2	1	7,549	1,852	4.1	
	소계	36	210,824		107.5	3	22,744		12.3	
광주	광주광역시	10	43,317	1,961	22.1	1	4,949	1,852	2.7	
	빛고을	14	56,958	1,961	29.0	1	4,934	1,852	2.7	
	소계	24	100,275		51.1	2	9,883		5.3	
대전	대전광역시	11	37,526	1,961	19.1	1	12,940	1,852	7.0	
	울산광역시	15	66,170	1,961	33.7	1	5,828	1,852	3.1	
울산	울산남부	14	41,142	1,961	21.0	1	2,746	1,852	1.5	2017. 3.1 설치
	소계	29	107,312		54.7	2	8,574		4.6	
경기	경기도	13	46,192	1,961	23.6	1	10,127	1,852	5.5	
	경기북부	18	56,385	1,961	28.8	1	7,642	1,852	4.1	
	경기성남	13	50,953	1,961	26.0	0	9,754	1,852	5.3	
	경기고양	15	37,974	1,961	19.4	1	4,852	1,852	2.6	
	경기부천	15	74,021	1,961	37.7	2	9,134	1,852	4.9	
	경기화성	14	58,436	1,961	29.8	1	9,531	1,852	5.1	
	경기남양주	13	85,136	1,961	43.4	1	3,464	1,852	1.9	
	안산시	20	109,273	1,961	55.7	1	12,664	1,852	6.8	
	경기용인	15	58,642	1,961	29.9	1	12,833	1,852	6.9	
	경기시흥	12	36,153	1,961	18.4	1	10,986	1,852	5.9	
	경기평택	11	26,610	1,961	13.6	1	6,039	1,852	3.3	
	수원	12	37,245	1,961	19.0	1	7,661	1,852	4.1	
	소계	171	677,019		345.3	12	104,690		56.5	
강원	강원도	14	28,471	1,961	14.5	1	3,115	1,852	1.7	
	강원동부	14	38,138	1,961	19.5	1	2,455	1,852	1.3	
	강원서부	11	28,345	1,961	14.5	1	8,122	1,852	4.4	
	강원남부	11	22,923	1,961	11.7	1	6,240	1,852	3.4	
	소계	50	117,878		60.1	4	19,932		10.8	

(계속)

(단위 : 시간, 명)

지역 및 기관		항목	상담원 (기관장 제외)*	상담원 총 업무량	상담원 1인당 실질 가용시간	상담원 표준모형 적정 인원수	상근 임상심리 치료전문 인력수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총 업무량 (시간)	임상심리치 료전문인력 1인당 실질 가용시간	임상심리 치료전문 인력 표준 모형적 정인원수	비고
충북		충청북도	16	36,564	1,961	18.6	1	11,895	1,852	6.4	
		충북북부	10	50,239	1,961	25.6	1	3,619	1,852	2.0	
		충북남부	6	24,766	1,961	12.6	1	5,668	1,852	3.1	
		소계	32	111,569		56.9	3	21,183		11.4	
충남		충청남도	15	36,894	1,961	18.8	1	11,902	1,852	6.4	
		충청남도남부	11	29,822	1,961	15.2	1	7,864	1,852	4.2	
		충청남도서부	11	28,995	1,961	14.8	1	9,409	1,852	5.1	
		소계	37	95,712		48.8	3	29,175		15.8	
전북		전라북도	14	65,547	1,961	33.4	1	13,996	1,852	7.6	
		전라북도서부	12	51,765	1,961	26.4	1	17,866	1,852	9.6	
		전라북도동부	9	50,802	1,961	25.9	1	12,579	1,852	6.8	
		소계	35	168,114		85.7	3	44,442		24.0	
전남		전라남도	14	65,780	1,961	33.5	2	10,687	1,852	5.8	
		전남서부권	14	102,859	1,961	52.5	2	13,659	1,852	7.4	
		전남중부권	13	67,807	1,961	34.6	2	14,481	1,852	7.8	
		소계	41	236,446		120.6	6	38,828		21.0	
경북		경북남부	14	21,307	1,961	10.9	1	1,894	1,852	1.0	
		경북북부	13	37,585	1,961	19.2	2	3,622	1,852	2.0	
		경북동부	15	54,248	1,961	27.7	0	8,579	1,852	4.6	
		경북서부	13	49,098	1,961	25.0	1	5,976	1,852	3.2	
		소계	55	162,239		82.7	4	20,072		10.8	
경남		경상남도	18	71,533	1,961	36.5	1	3,248	1,852	1.8	
		경남서부	11	62,102	1,961	31.7	1	9,815	1,852	5.3	
		김해시	7	27,229	1,961	13.9	1	2,028	1,852	1.1	
		소계	36	160,863		82.0	3	15,091		8.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11	23,717	1,961	12.1	0	3,924	1,852	2.1	
		서귀포시	7	15,112	1,961	7.7	2	2,449	1,852	1.3	
		소계	18	38,829		19.8	2	6,373		3.4	
계			749	2,886,071		1,471.9	65	437,490		23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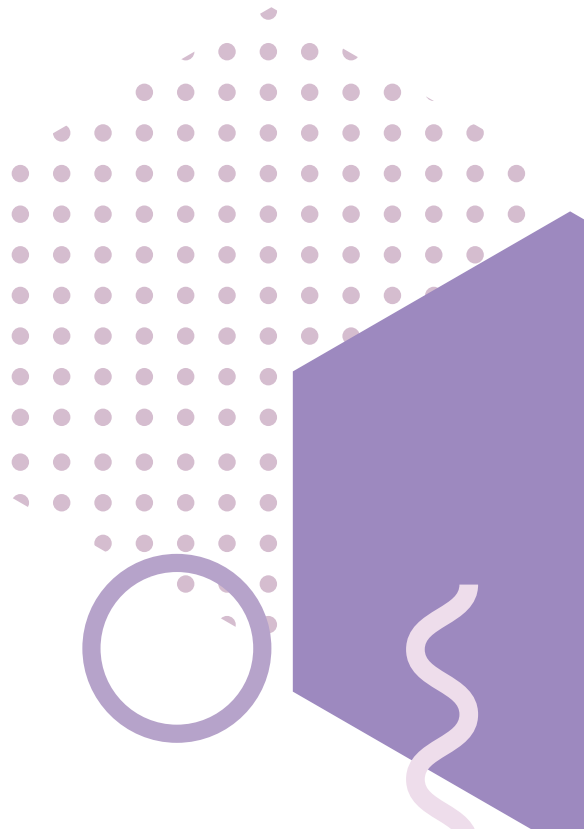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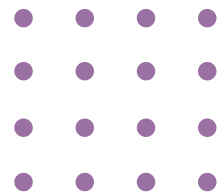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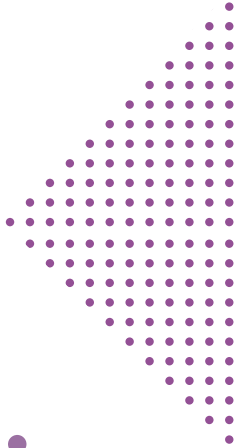
* 상담원, 상근임상심리치료사 수는 2017년 12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됨.

7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Child Abuse & Neglect Korea 2017

-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 연도별 신고자 유형
-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 연도별 피해아동 보호 현황
-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 연도별 재학대 사례 현황
-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현황
- 연도별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7장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본 장에서는 아동학대 현황 지표 중 중요 항목에 대한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아동학대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향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연도별 신고 접수 현황

1)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현황을 살펴보면 신고 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4년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8개소가 증설되면서 전년 대비 40.4%가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1년에는 처음으로 신고접수 건수가 1만건을 상회했으며, 2014년에는 36.0%로 대폭 증가하여 전년 대비 증가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2013년 10월 울산 초등생 구타 사망사건을 계기로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안 및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의결,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종합대책 수립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구축되면서 2015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8.0%로 상승하였다. 2016년에는 2015년 말부터 언론을 통해 부각된 일련의 아동학대사건을 통해서 아동학대사건의 심각성이 국민들에게 노출되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범정부적으로는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점검 및 조치들을 실행함에 따라 신고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약 54% 증가하였다. 2017년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두드러지면서 아동학대 및 예방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고 작년 대비 신고접수건수가 15.1% 증가하였다.

아동학대 신고 중 아동학대의심사례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부터 80% 이상을 차지하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17년의 경우 전체 아동학대 신고건수 중 90.5%가 아동학대의심사례였다.

〈표 7-1〉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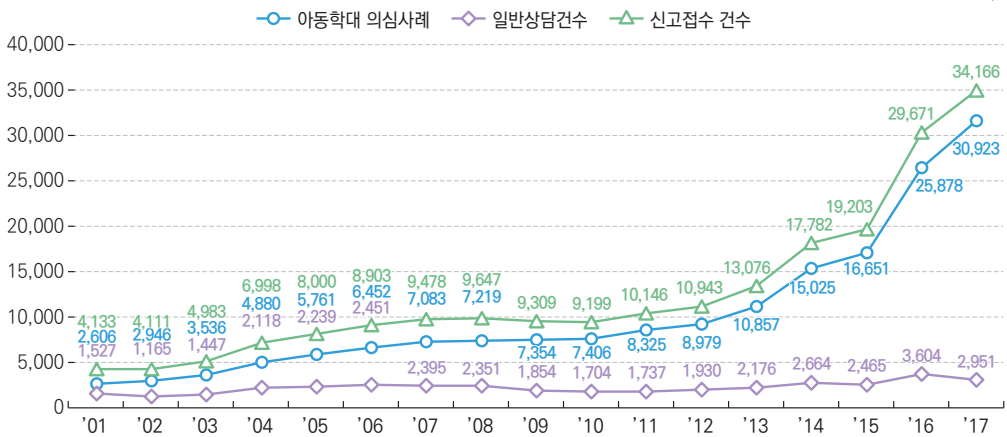
(단위 : 건, %)

구분 연도	아동학대 의심사례		동일신고*		일반상담		계		전년 대비 증가율	비고
2001년	2,606	(63.1)	-		1,527	(36.9)	4,133	(100.0)	-	
2002년	2,946	(71.7)	-		1,165	(28.3)	4,111	(100.0)	-0.5	
2003년	3,536	(71.0)	-		1,447	(29.0)	4,983	(100.0)	21.2	
2004년	4,880	(69.7)	-		2,118	(30.3)	6,998	(100.0)	40.4	아동보호전문기관 18개소 확대
2005년	5,761	(72.0)	-		2,239	(28.0)	8,000	(100.0)	14.3	
2006년	6,452	(72.5)	-		2,451	(27.5)	8,903	(100.0)	11.3	
2007년	7,083	(74.7)	-		2,395	(25.3)	9,478	(100.0)	6.5	
2008년	7,219	(75.4)	77	(-)	2,351	(24.6)	9,570*	(100.0)	1.0	
2009년	7,354	(79.0)	101	(1.1)	1,854	(19.9)	9,309	(100.0)	-2.7	
2010년	7,406	(80.5)	89	(1.0)	1,704	(18.5)	9,199	(100.0)	-1.2	
2011년	8,325	(82.1)	84	(0.8)	1,737	(17.1)	10,146	(100.0)	10.3	
2012년	8,979	(82.1)	34	(0.3)	1,930	(17.6)	10,943	(100.0)	7.9	
2013년	10,857	(83.0)	43	(0.3)	2,176	(16.6)	13,076	(100.0)	19.5	
2014년	15,025	(84.5)	93	(0.5)	2,664	(15.0)	17,782	(100.0)	36.0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2015년	16,651	(86.7)	87	(0.5)	2,465	(12.8)	19,203	(100.0)	8.0	
2016년	25,878	(87.2)	189	(0.6)	3,604	(12.1)	29,671	(100.0)	54.5	
2017년	30,923	(90.5)	292	(0.9)	2,951	(8.6)	34,166	(100.0)	15.1	국정과제 지정

* 2008년도 전체 신고 건수 9,570건에는 중복신고 77건이 포함되지 않음.

※ 해외발생사례 건수는 제외함.

(단위 : 건)



[그림 7-1]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

2)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 중 연도별 재신고 발생 현황은 <표 7-2>와 같다. 재신고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개입중인 사례에 대해 다시 신고접수된 사례로, 최초로 신고접수가 된 이후에 동일한 학대행위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사례개입이 종결된 이후 다시 신고된 '사례종결 후 재신고 사례', 사례 개입 중 추가적으로 신고 접수되었거나 혹은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판단 이전에 또 다른 학대행위의심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어 접수된 '사례진행 중 재신고 사례', 일반상담으로 종결된 후 다시 신고 접수된 '일반상담 후 재신고 사례'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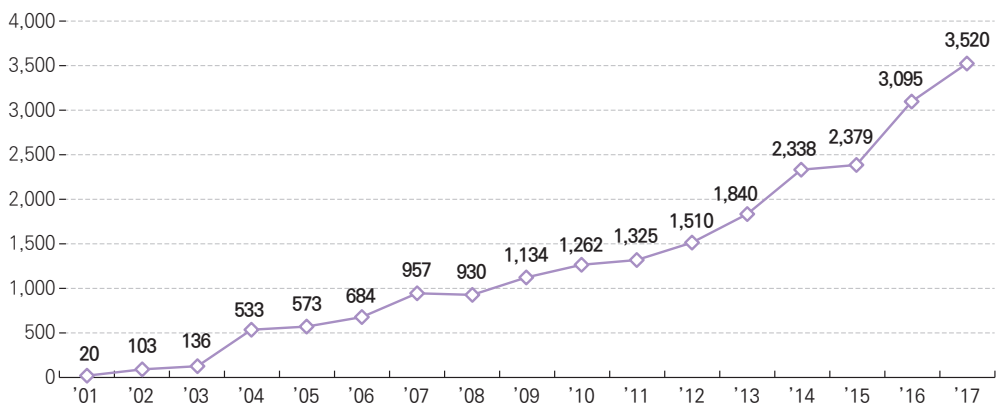
재신고 사례수는 2001년 20건에서 2017년 3,52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은 2013년 14.1%까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14년부터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2017년 역시 전년 대비 0.1%p 감소하였다.

〈표 7-2〉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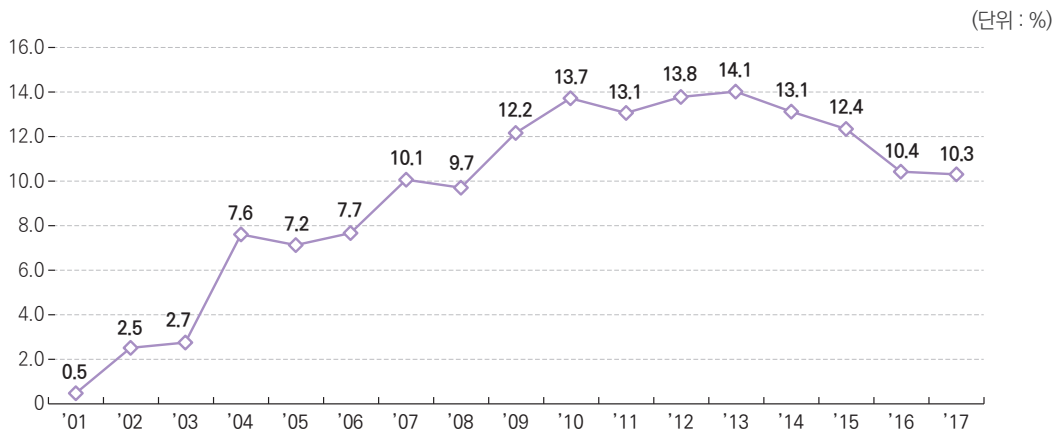
연도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신고 접수 건수*	4,133	4,111	4,983	6,998	8,000	8,903	9,478	9,570	9,309	9,199	10,146	10,943	13,076	17,782	19,203	29,671	34,166
재신고 건수	20	103	136	533	573	684	957	930	1,134	1,262	1,325	1,510	1,840	2,338	2,379	3,095	3,520
신고 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0.5	2.5	2.7	7.6	7.2	7.7	10.1	9.7	12.2	13.7	13.1	13.8	14.1	13.1	12.4	10.4	10.3

(단위 : 건)



[그림 7-2] 연도별 재신고 사례 발생 건수

* 해외발생사례 건수는 제외함.



[그림 7-3]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연도별 신고자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001년 686건에서 2017년 8,830건으로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는 약 12배 이상 증가하였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사례에 대비한 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은 2012년 36.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2016년에는 2015년과 대비하여 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이 약 69% 증가하였으나, 2017년은 2016년 대비 약 7% 증가하는데 그쳤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직군 특성상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신고의무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금지 및 신변보호와 관련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고사례에서 신고의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의 경우 64.9%인데 반해*, 한국은 28.6%에 그치고 있다.

〈표 7-3〉과 같이 신고의무자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2001년을 제외하고 2013년 까지 가장 높은 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을 보였으나, 2014년부터 점차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2017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전체 아동학대 신고건수의 2.6%를 차지해 전년 대비 0.5%p 감소했다. 다른 신고의무자 직군의 신고율과 비교할 때 초·중·고교 직원 다음으로 높았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초·중·고교 직원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직군에 비해 높은 신고율을 나타내었고, 특히 2014년의 경우 전년 대비 신고 건수가 약 177.7%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냈다. 2017년에는 16.7%를 차지하여 신고의무자 직군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다.

비신고의무자 직군의 신고율을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부모가 신고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사회복지관련종사자가 가장 높은 비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을 나타냈으나 2016년과 2017년에 부모가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한 건수가 가장 높았다. 아동이 신고한 비율은 2014년부터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7년에는 12.6%로 나타났다.

* U. 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 (2018). Child Maltreatment 2016.

〈표 7-3〉 연도별 신고자 유형

(단위 : 건, %)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신고자 유형																		
신고의무자	초·중·고교 직원	134 (5.1)	149 (5.0)	190 (5.4)	280 (5.7)	431 (7.5)	611 (9.5)	771 (10.9)	887 (12.3)	547 (7.4)	535 (7.2)	594 (7.1)	732 (8.2)	716 (6.6)	1,988 (13.2)	2,172 (13.0)	3,978 (15.4)	5,168 (16.7)
	의료인	51 (2.0)	59 (2.0)	83 (2.3)	102 (2.1)	126 (2.2)	114 (1.8)	157 (2.2)	105 (1.5)	98 (1.3)	83 (1.1)	88 (1.1)	85 (0.9)	93 (0.9)	123 (0.8)	137 (0.8)	216 (0.8)	-
	의료인·의료기사	-	-	-	-	-	-	-	-	-	-	-	-	-	-	-	-	296 (1.0)
	시설종사자*	285 (10.9)	238 (8.1)	181 (5.1)	226 (4.7)	222 (3.8)	217 (3.3)	374 (5.3)	426 (5.9)	-	-	-	-	-	-	-	-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	-	-	-	-	-	-	358 (4.9)	425 (5.7)	338 (4.1)	424 (4.7)	403 (3.7)	275 (1.8)	257 (1.5)	498 (1.9)	407 (1.3)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	-	-	-	-	-	-	-	15 (0.2)	26 (0.4)	24 (0.3)	28 (0.3)	11 (0.1)	24 (0.2)	46 (0.3)	27 (0.1)	33 (0.1)
	보육교직원	-	-	-	-	-	-	-	-	76 (1.0)	152 (2.1)	178 (2.1)	166 (1.8)	223 (2.1)	273 (1.8)	309 (1.9)	286 (1.1)	313 (1.0)
	유치원교직원	-	-	-	-	-	-	-	-	43 (0.6)	66 (0.9)	40 (0.5)	84 (0.9)	20 (0.2)	43 (0.3)	68 (0.4)	114 (0.4)	115 (0.4)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	1 (0.0)	15 (0.3)	23 (0.4)	32 (0.5)	26 (0.4)	24 (0.3)	18 (0.2)	16 (0.2)	6 (0.1)	13 (0.1)	7 (0.1)	26 (0.2)	31 (0.2)	24 (0.1)	9 (0.0)
	소방구급대원	-	-	-	-	-	-	3 (0.0)	6 (0.1)	11 (0.2)	6 (0.1)	10 (0.1)	16 (0.2)	11 (0.1)	28 (0.2)	22 (0.1)	39 (0.2)	33 (0.1)
	응급구조사	-	-	-	-	-	-	-	-	-	-	-	0 (0.0)	0 (0.0)	2 (0.0)	0 (0.0)	2 (0.0)	2 (0.0)
	의료기사	-	-	-	-	-	-	-	-	-	-	-	4 (0.0)	6 (0.0)	0 (0.0)	0 (0.0)	2 (0.0)	0 (0.0)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 종사자	-	-	-	-	-	-	-	-	41 (0.6)	47 (0.6)	45 (0.5)	39 (0.4)	8 (0.1)	2 (0.0)	12 (0.1)	12 (0.0)	9 (0.0)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	-	-	-	-	-	-	-	-	-	-	51 (0.6)	75 (0.7)	20 (0.1)	72 (0.4)	122 (0.5)	0 (0.0)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종사자	-	-	-	-	-	-	-	-	-	-	-	-	-	-	-	-	274 (0.9)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종사자	-	-	-	-	-	-	-	-	15 (0.2)	7 (0.1)	13 (0.2)	13 (0.1)	13 (0.1)	10 (0.1)	5 (0.0)	11 (0.0)	16 (0.1)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	-	-	-	-	-	-	-	142 (1.9)	141 (1.9)	199 (2.4)	233 (2.6)	191 (1.8)	174 (1.2)	285 (1.7)	301 (1.2)	169 (0.5)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216 (8.3)	392 (13.3)	575 (16.3)	738 (15.1)	805 (14.0)	1,038 (16.1)	953 (13.4)	941 (13.0)	975 (13.3)	786 (10.6)	1,169 (14.0)	904 (10.1)	1,055 (9.7)	700 (4.7)	602 (3.6)	815 (3.1)	819 (2.6)
	아동복지전담 공무원	-	-	-	-	-	-	-	-	-	-	-	102 (1.1)	234 (2.2)	104 (0.7)	58 (0.3)	98 (0.4)	27 (0.1)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	-	-	-	-	-	-	-	-	-	-	-	-	-	-	695 (2.7)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	-	-	-	-	-	-	-	-	-	157 (1.7)	336 (3.1)	151 (1.0)	210 (1.3)	312 (1.2)	271 (0.9)
	가정위탁지원 센터 종사자	-	-	-	-	-	-	-	-	-	-	-	15 (0.2)	17 (0.2)	27 (0.2)	30 (0.2)	11 (0.0)	20 (0.1)
	건강가정지원 센터 종사자	-	-	-	-	-	-	-	-	-	-	-	21 (0.2)	17 (0.2)	18 (0.1)	19 (0.1)	44 (0.2)	48 (0.2)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종사자	-	-	-	-	-	-	-	-	-	-	-	27 (0.3)	27 (0.2)	20 (0.1)	41 (0.2)	35 (0.1)	33 (0.1)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	-	-	-	-	-	-	-	-	-	-	34 (0.4)	46 (0.4)	78 (0.5)	49 (0.3)	51 (0.2)	38 (0.1)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	-	-	-	-	-	-	-	-	-	-	123 (1.4)	160 (1.5)	185 (1.2)	140 (0.8)	223 (0.9)	357 (1.2)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	-	-	-	-	-	-	-	-	-	-	-	45 (0.5)	37 (0.3)	14 (0.1)	28 (0.2)	75 (0.3)	43 (0.1)

(계속)

(단위 : 건, %)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신고자 유형																		
신 고 의 무 자	아이돌보미	-	-	-	-	-	-	-	-	-	-	-	-	-	0 (0.0)	9 (0.1)	1 (0.0)	8 (0.0)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자원인력	-	-	-	-	-	-	-	-	-	-	-	-	-	73 (0.5)	298 (1.8)	296 (1.1)	317 (1.0)
	성폭력피해자통합 지원센터 종사자	-	-	-	-	-	-	-	-	-	-	-	-	-	-	-	0 (0.0)	-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	-	-	-	-	-	-	-	-	-	-	-	-	-	-	0 (0.0)	4 (0.0)
	입양기관 종사자	-	-	-	-	-	-	-	-	-	-	-	-	-	-	-	0 (0.0)	1 (0.0)
	소계	686 (26.3)	838 (28.4)	1,030 (29.1)	1,361 (27.9)	1,607 (27.9)	2,012 (31.2)	2,284 (32.2)	2,389 (33.1)	2,339 (31.8)	2,290 (30.9)	2,704 (32.5)	3,316 (36.9)	3,706 (34.1)	4,358 (29.4)	4,900 (29.4)	8,288 (32.0)	8,830 (28.6)
비 신 고 의 무 자	아동본인	40 (1.5)	56 (1.9)	52 (1.5)	65 (1.3)	80 (1.4)	71 (1.1)	50 (0.7)	73 (1.0)	88 (1.2)	115 (1.6)	135 (1.6)	158 (1.8)	171 (1.6)	628 (4.2)	1,500 (9.0)	2,322 (9.0)	3,883 (12.6)
	부모	772 (29.6)	591 (20.1)	673 (19.0)	990 (20.3)	1,073 (18.6)	1,165 (18.1)	1,294 (18.3)	1,311 (18.2)	1,356 (18.4)	1,374 (18.6)	1,411 (16.9)	1,433 (16.0)	1,426 (13.1)	1,991 (13.3)	3,048 (18.3)	4,619 (17.8)	5,328 (17.2)
	형제,자매	-	-	-	-	-	-	-	-	34 (0.5)	44 (0.6)	47 (0.6)	63 (0.7)	45 (0.4)	110 (0.7)	231 (1.4)	341 (1.3)	359 (1.2)
	친인척	241 (9.3)	242 (8.2)	367 (10.4)	373 (7.6)	481 (8.3)	500 (7.7)	471 (6.7)	502 (6.9)	468 (6.4)	488 (6.6)	461 (5.5)	452 (5.0)	397 (3.7)	536 (3.6)	452 (2.7)	657 (2.5)	738 (2.4)
	이웃·친구	685 (26.3)	757 (25.7)	843 (23.8)	921 (18.9)	933 (16.2)	886 (13.7)	856 (12.1)	845 (11.7)	805 (10.9)	861 (11.6)	991 (11.9)	970 (10.8)	1,065 (9.8)	1,202 (8.0)	1,040 (6.2)	1,858 (7.2)	1,963 (6.3)
	경찰	104 (4.0)	164 (5.6)	221 (6.3)	338 (6.9)	357 (6.2)	340 (5.3)	275 (3.9)	322 (4.5)	416 (5.7)	302 (4.1)	314 (3.8)	425 (4.7)	724 (6.7)	2,204 (14.7)	846 (5.1)	1,426 (5.5)	645 (2.1)
	종교인	-	36 (1.2)	49 (1.4)	47 (1.0)	74 (1.3)	99 (1.5)	77 (1.1)	54 (0.7)	54 (0.7)	54 (0.7)	53 (0.6)	45 (0.5)	28 (0.3)	20 (0.1)	27 (0.2)	40 (0.2)	24 (0.1)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	90 (3.0)	114 (3.2)	506 (10.4)	823 (14.3)	980 (15.2)	1,165 (16.5)	1,176 (16.3)	1,356 (18.4)	1,562 (21.1)	1,856 (22.3)	1,689 (18.8)	2,632 (24.2)	3,486 (23.2)	3,590 (21.6)	4,088 (15.8)	323 (1.0)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종사자	-	-	-	-	-	-	-	-	-	-	-	-	-	-	-	619 (2.4)	6,881 (22.3)
	의료사회복지사	-	-	-	-	-	-	-	-	-	-	-	-	-	-	-	-	79 (0.3)
	낯선 사람	-	-	4 (0.1)	114 (2.3)	80 (1.4)	148 (2.3)	88 (1.2)	70 (1.0)	71 (1.0)	69 (0.9)	55 (0.7)	92 (1.0)	103 (0.9)	193 (1.3)	305 (1.8)	649 (2.5)	685 (2.2)
	익명	-	11 (0.4)	13 (0.4)	13 (0.3)	41 (0.7)	26 (0.4)	11 (0.1)	61 (0.8)	8 (0.1)	6 (0.1)	40 (0.5)	12 (0.1)	14 (0.1)	98 (0.7)	134 (0.8)	244 (0.9)	271 (0.9)
	기타	78 (3.0)	161 (5.5)	170 (4.8)	152 (3.1)	212 (3.7)	225 (3.5)	512 (7.2)	416 (5.8)	359 (4.9)	241 (3.2)	258 (3.1)	324 (3.6)	546 (5.0)	199 (1.3)	578 (3.5)	727 (2.8)	914 (3.0)
	소계	1,920 (73.7)	2,108 (71.6)	2,506 (70.9)	3,519 (72.1)	4,154 (72.1)	4,440 (68.8)	4,799 (67.8)	4,830 (66.9)	5,015 (68.2)	5,116 (69.1)	5,621 (67.5)	5,663 (63.1)	7,151 (65.9)	10,667 (71.0)	11,751 (70.6)	17,590 (68.0)	22,093 (71.4)
계		2,606 (100.0)	2,946 (100.0)	3,536 (100.0)	4,880 (100.0)	5,761 (100.0)	6,452 (100.0)	7,083 (100.0)	7,219 (100.0)	7,354 (100.0)	7,406 (100.0)	8,325 (100.0)	8,979 (100.0)	10,857 (100.0)	15,025 (100.0)	16,651 (100.0)	25,878 (100.0)	30,923 (100.0)

※ 2009년부터 유치원교직원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시설종사자 항목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보육교직원, 성매매 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 종사자, 한부모 가족복지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로 구분하여 집계함.

※ 2012년 8월 5일, 전부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신고의무자 직군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건강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가 추가됨.(아동복지법 제 25조 의거)

※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에 따라 신고의무자 직군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자원인력이 추가됨.(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 의거)

※ 2016년 11월 30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에 따라 신고의무자 직군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입양 기관 종사자가 추가됨. 또한 의료인과 의료기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종사자가 통합되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의거)

※ 2016년 9월 23일,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복지시설로 편입되면서 신고의무자 직군에 속하였으나, 이후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2016.11.30.시행)으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신고의무자 직군에서 제외됨.

3. 연도별 신고 접수 경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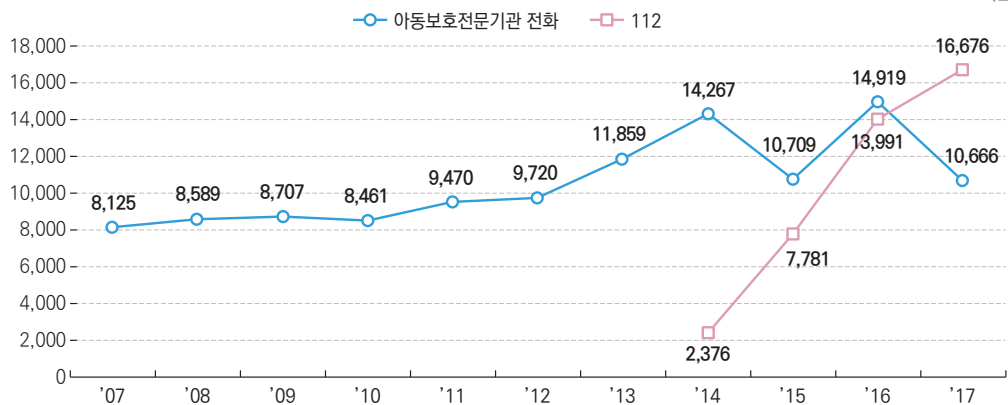
아동학대 신고접수 경로는 주로 전화라 할 수 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신고접수의 80% 이상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로 신고접수 되었다. 그러나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 이후 신고접수 경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한 1577-1391은 폐지되었고, 112로 아동학대 신고 전화가 통합이 되면서 2015년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로 접수된 신고건수는 감소하고 112를 통한 신고 접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7년은 처음으로 112를 통해 신고접수된 비율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로 접수된 신고접수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로 접수된 신고건수는 10,666건으로 전년 대비 19.1%p 감소했으며, 112를 통한 신고접수는 16,676건으로 전년 대비 1.7%p 증가했다.

〈표 7-4〉 연도별 신고 접수 경로 유형

(단위 : 건, %)

구분 연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전화*	112	129	119	1366	인터넷	내방	상담원 인지신고	기타	계
2007년	8,125 (85.7)	-	709 (7.5)	-	-	40 (0.4)	604 (6.4)	-	-	9,478 (100.0)
2008년	8,589 (89.7)	-	538 (5.6)	-	-	83 (0.9)	360 (3.8)	-	-	9,570 (100.0)
2009년	8,707 (93.5)	-	438 (4.7)	-	-	28 (0.3)	136 (1.5)	-	-	9,309 (100.0)
2010년	8,461 (92.0)	-	367 (4.0)	-	-	111 (1.2)	260 (2.8)	-	-	9,199 (100.0)
2011년	9,470 (93.3)	-	382 (3.8)	-	-	100 (1.0)	194 (1.9)	-	-	10,146 (100.0)
2012년	9,720 (88.8)	-	426 (3.9)	13 (0.1)	-	93 (0.8)	691 (6.3)	-	-	10,943 (100.0)
2013년	11,859 (90.7)	-	549 (4.2)	18 (0.1)	-	53 (0.4)	597 (4.6)	-	-	13,076 (100.0)
2014년	14,267 (80.2)	2,376 (13.4)	448 (2.5)	20 (0.1)	34 (0.2)	603 (3.4)	43 (0.2)	-	-	17,791 (100.0)
2015년	10,709 (55.7)	7,781 (40.5)	11 (0.1)	29 (0.2)	185 (1.0)	55 (0.3)	444 (2.3)	-	-	19,214 (100.0)
2016년	14,919 (50.3)	13,991 (47.1)	51 (0.2)	37 (0.1)	141 (0.5)	39 (0.1)	496 (1.7)	-	-	29,674 (100.0)
2017년	10,666 (31.2)	16,676 (48.8)	47 (0.1)	11 (0.0)	130 (0.4)	9 (0.0)	363 (1.1)	6,258 (18.3)	9 (0.0)	34,169 (100.0)

(단위 : 건)



[그림 7-4] 연도별 신고 접수 경로 유형

* 2007년부터 2014년 9월 29일 이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 1577-1391로 신고접수 되었고, 2014년 9월 29일 이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전화로 신고접수 된 수치임.

4. 연도별 피해아동 보호 현황

1)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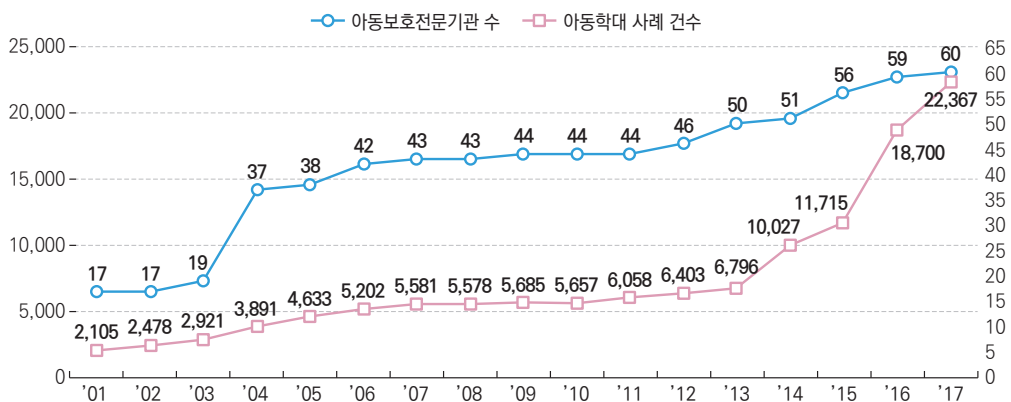
〈표 7-5〉와 같이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를 살펴보면 아동학대예방사업이 시작된 2001년부터 아동학대사례 건수는 단 한번의 감소 없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아동학대사례 건수는 2014년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었고 2017년에는 22,367건으로 약 10배 늘어났다. 기관수의 경우 2001년 17개소에서 2017년 60개소로 약 3.5배 증가했다. 2014년에는 피해아동 보호명수가 처음으로 1만건을 상회했으며, 2017년에는 18,254명이었다. 2017년의 경우 2016년과 비교하여 아동학대사례율이 19.6%로 증가했다.

〈표 7-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단위 : 건, %, 개소)

구분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아동학대 사례	건수	2,105	2,478	2,921	3,891	4,633	5,202	5,581	5,578	5,685	5,657	6,058	6,403	6,796	10,027	11,715	18,700	22,367
	증가율	-	17.7	17.9	33.2	19.1	12.3	7.3	-0.1	1.9	-0.5	7.1	5.7	6.1	47.5	16.8	59.6	19.6
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수	17	17	19	37	38	42	43	43	44	44	44	46	50	51	56	59	60
	증가율	-	-	2	18	1	4	1	-	1	-	-	2	4	1	5	4	1

(단위 : 건, 개소)



[그림 7-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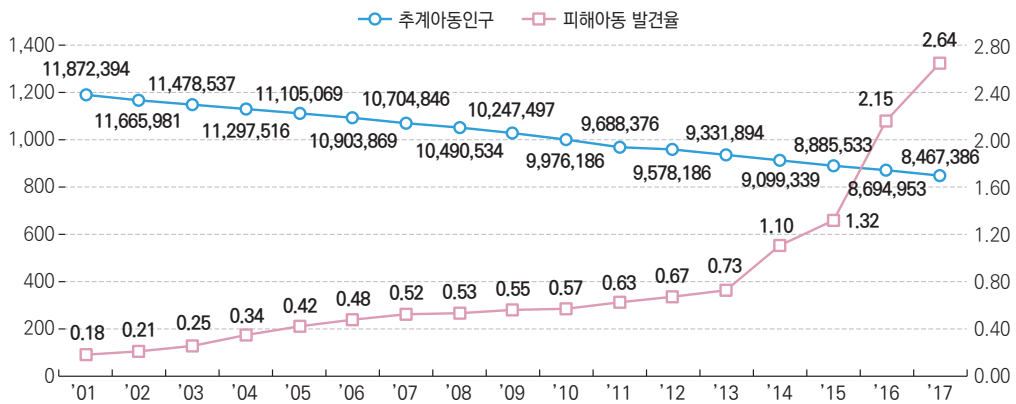
〈표 7-6〉과 같이 추계 아동 인구(만 0~17세)를 기준으로 인구 1,000명 당 피해아동 발견율을 산출하여 연도별로 비교하였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추계 아동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는 데 반면 인구 대비 아동학대사례 비율을 산출한 결과 피해아동 발견율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표 7-6〉 연도별 피해아동 발견율

(단위 : 명, 건, %)

연도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계아동인구* (만 0~17세)	11,872,394	11,665,981	11,478,537	11,297,516	11,105,069	10,903,869	10,704,846	10,490,534	10,247,497	9,976,186	9,688,376	9,578,186	9,331,894	9,099,339	8,885,533	8,694,953	8,467,386
아동학대사례	2,105	2,478	2,921	3,891	4,633	5,202	5,581	5,578	5,685	5,657	6,058	6,403	6,796	10,027	11,715	18,700	22,367
피해아동 발견율	0.18	0.21	0.25	0.34	0.42	0.48	0.52	0.53	0.55	0.57	0.63	0.67	0.73	1.10	1.32	2.15	2.64

(단위 : 명, %)



[그림 7-6] 연도별 추계아동인구 및 피해아동 발견율

* 2001년부터 2016년까지 2016년 추계인구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하였으며 2017년 발견율의 경우 통계청의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시도를 활용하였음.

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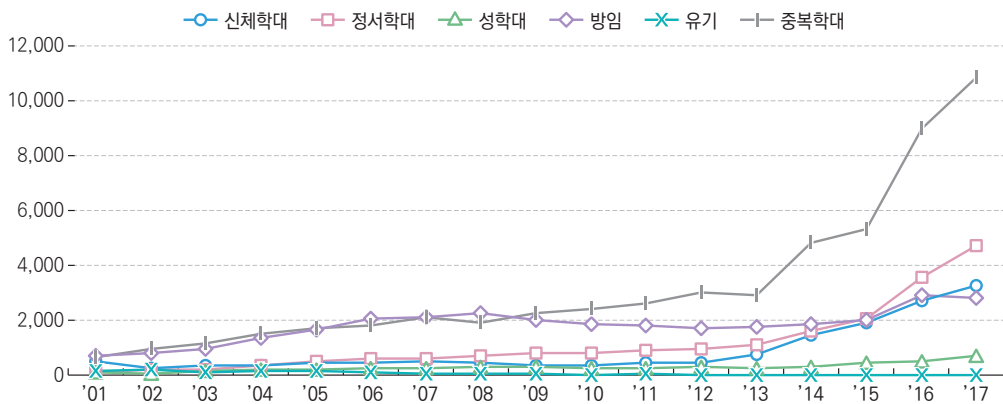
〈표 7-7〉과 같이 중복학대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방임과 중복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17년에는 중복학대와 정서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복학대의 경우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2017년에는 48.6%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여러 유형의 아동학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방임은 2008년 40.1%까지 높아진 이후 2017년(12.5%)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정서학대는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중복학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7-7〉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단위 : 건, %)

연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 대	방 임	유 기*	중복학대	계
2001년	476 (22.6)	114 (5.4)	86 (4.1)	672 (31.9)	134 (6.4)	623 (29.6)	2,105 (100.0)
2002년	254 (10.3)	184 (7.4)	65 (2.6)	814 (32.8)	212 (8.6)	949 (38.3)	2,478 (100.0)
2003년	347 (11.9)	207 (7.1)	134 (4.6)	965 (33.0)	113 (3.9)	1,155 (39.5)	2,921 (100.0)
2004년	364 (9.4)	350 (9.0)	177 (4.5)	1,367 (35.1)	125 (3.2)	1,508 (38.8)	3,891 (100.0)
2005년	423 (9.1)	512 (11.1)	206 (4.4)	1,635 (35.3)	147 (3.2)	1,710 (36.9)	4,633 (100.0)
2006년	439 (8.4)	604 (11.6)	249 (4.8)	2,035 (39.1)	76 (1.5)	1,799 (34.6)	5,202 (100.0)
2007년	473 (8.5)	589 (10.6)	266 (4.8)	2,107 (37.7)	59 (1.0)	2,087 (37.4)	5,581 (100.0)
2008년	422 (7.6)	683 (12.2)	284 (5.1)	2,237 (40.1)	57 (1.0)	1,895 (34.0)	5,578 (100.0)
2009년	338 (5.9)	778 (13.7)	274 (4.8)	2,025 (35.6)	32 (0.6)	2,238 (39.4)	5,685 (100.0)
2010년	348 (6.1)	773 (13.7)	258 (4.6)	1,870 (33.1)	14 (0.2)	2,394 (42.3)	5,657 (100.0)
2011년	466 (7.7)	909 (15.0)	226 (3.7)	1,783 (29.4)	53 (0.9)	2,621 (43.3)	6,058 (100.0)
2012년	461 (7.2)	936 (14.6)	278 (4.3)	1,713 (26.8)	-	3,015 (47.1)	6,403 (100.0)
2013년	753 (11.1)	1,101 (16.2)	242 (3.6)	1,778 (26.2)	-	2,922 (43.0)	6,796 (100.0)
2014년	1,453 (14.5)	1,582 (15.8)	308 (3.1)	1,870 (18.6)	-	4,814 (48.0)	10,027 (100.0)
2015년	1,884 (16.1)	2,046 (17.5)	428 (3.7)	2,010 (17.2)	-	5,347 (45.6)	11,715 (100.0)
2016년	2,715 (14.5)	3,588 (19.2)	493 (2.6)	2,924 (15.6)	-	8,980 (48.0)	18,700 (100.0)
2017년	3,285 (14.7)	4,728 (21.1)	692 (3.1)	2,787 (12.5)	-	10,875 (48.6)	22,367 (100.0)

(단위 : 건)



〔그림 7-7〕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 2012년부터 방임학대의 세부유형으로 유기를 포함하여 집계함.

〈표 7-8〉과 같이 중복학대 유형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7년에 중복학대를 별도로 구분하였을 때 보다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는 평균 23% 정도 높게 나타났다. 정서학대는 2001년 9.0%로 낮은 수치였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017년에는 43.1%의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방임의 경우 2001년 37.5%로 신체학대에 이어 두 번째로 비율이 높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17년 13.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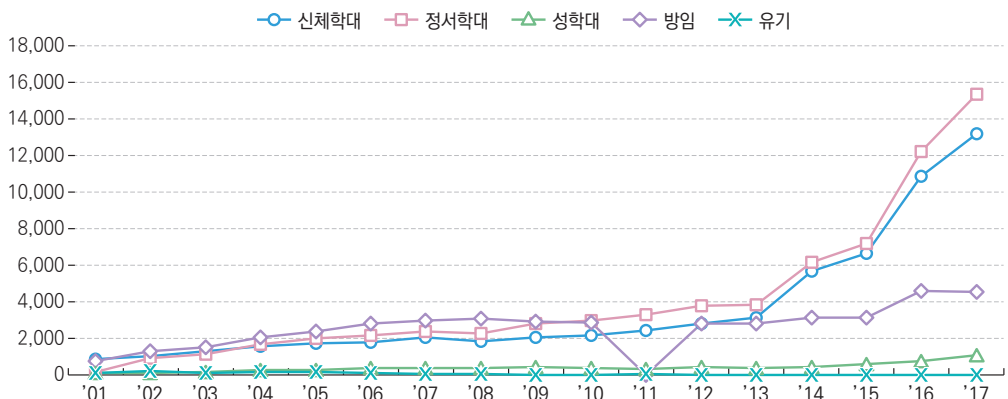
〈표 7-8〉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 미분류)

(단위: 건, %)

연도\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 대		방 임		유 기*		계	
2001년	890	(41.8)	192	(9.0)	116	(5.4)	797	(37.5)	133	(6.3)	2,128	(100.0)
2002년	1,039	(28.4)	961	(26.3)	119	(3.2)	1,329	(36.3)	212	(5.8)	3,660	(100.0)
2003년	1,315	(30.3)	1,172	(27.1)	203	(4.7)	1,514	(35.0)	126	(2.9)	4,330	(100.0)
2004년	1,587	(27.5)	1,680	(29.2)	266	(4.6)	2,071	(35.9)	160	(2.8)	5,764	(100.0)
2005년	1,728	(25.9)	2,034	(30.5)	305	(4.6)	2,416	(36.4)	176	(2.6)	6,659	(100.0)
2006년	1,827	(24.9)	2,182	(29.8)	372	(5.1)	2,842	(38.8)	106	(1.4)	7,329	(100.0)
2007년	2,095	(26.1)	2,420	(30.1)	409	(5.1)	3,018	(37.6)	92	(1.1)	8,034	(100.0)
2008년	1,857	(23.8)	2,315	(30.0)	424	(5.0)	3,105	(40.0)	94	(1.2)	7,795	(100.0)
2009년	2,095	(25.1)	2,847	(34.1)	426	(5.1)	2,939	(35.2)	43	(0.5)	8,350	(100.0)
2010년	2,182	(25.8)	2,974	(35.1)	400	(4.7)	2,878	(34.0)	32	(0.4)	8,466	(100.0)
2011년	2,464	(26.9)	3,312	(36.3)	368	(4.0)	2,919	(31.9)	85	(0.9)	9,148	(100.0)
2012년	2,858	(28.8)	3,785	(38.1)	446	(4.5)	2,849	(28.7)	-	-	9,938	(100.0)
2013년	3,160	(30.9)	3,843	(37.6)	380	(3.7)	2,848	(27.8)	-	-	10,231	(100.0)
2014년	5,699	(36.9)	6,176	(40.0)	447	(2.9)	3,136	(20.3)	-	-	15,458	(100.0)
2015년	6,661	(37.7)	7,197	(40.7)	629	(3.6)	3,175	(18.0)	-	-	17,662	(100.0)
2016년	10,875	(38.2)	12,262	(43.1)	753	(2.6)	4,592	(16.1)	-	-	28,482	(100.0)
2017년	13,200	(38.6)	15,346	(44.9)	1,087	(3.2)	4,545	(13.3)	-	-	34,178	(100.0)

※중복포함

(단위: 건)



※중복포함

[그림 7-8]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 미분류)

* 2012년부터 방임학대의 세부유형으로 유기를 포함하여 집계함.

6.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표 7-9〉와 같이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매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2001년 3.0%에 불과하였지만, 2017년 14.9%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2017년에는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 중 초·중·고교직원(6.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7-9〉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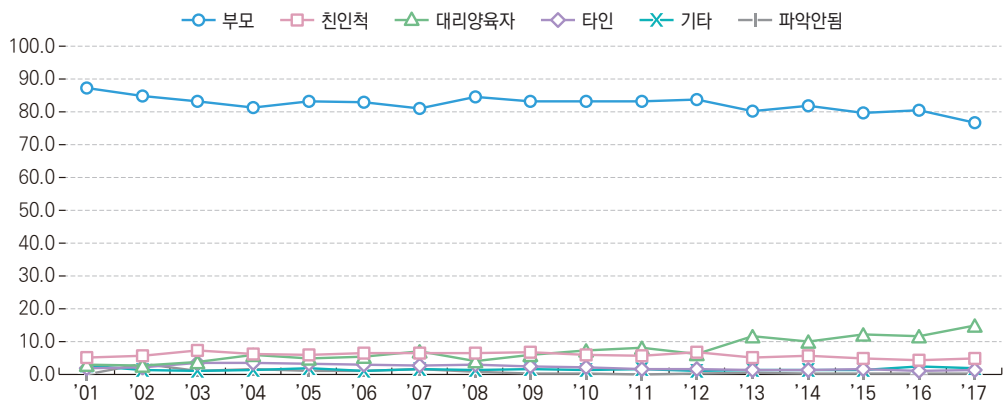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부 모	관계	1,174 (55.8)	1,432 (57.8)	1,607 (55.0)	2,111 (54.3)	2,554 (55.1)	2,739 (52.7)	2,788 (50.0)	2,855 (51.2)	2,867 (50.4)	2,797 (49.4)	2,855 (47.1)	3,013 (47.1)	2,790 (41.1)	4,531 (45.2)	5,368 (45.8)	8,295 (44.4)	9,562 (42.8)
	친부	502 (23.8)	551 (22.3)	651 (22.3)	856 (22.0)	1,098 (23.8)	1,321 (25.4)	1,520 (27.2)	1,648 (29.5)	1,605 (30.2)	1,708 (30.2)	1,963 (32.4)	2,090 (32.6)	2,383 (35.1)	3,211 (32.0)	3,475 (29.7)	5,923 (31.7)	6,824 (30.5)
	친모	36 (1.7)	21 (0.8)	22 (0.8)	41 (1.1)	38 (0.8)	60 (1.2)	50 (0.9)	52 (0.9)	75 (1.3)	75 (1.3)	62 (1.0)	74 (1.2)	108 (1.6)	189 (1.9)	236 (2.0)	394 (2.1)	401 (1.8)
	계부	113 (5.4)	94 (3.8)	138 (4.7)	145 (3.7)	142 (3.1)	174 (3.3)	145 (2.6)	130 (2.3)	161 (2.8)	105 (1.9)	129 (2.1)	151 (2.4)	144 (2.1)	242 (2.4)	237 (2.0)	362 (1.9)	341 (1.5)
	계모	8 (0.4)	5 (0.2)	6 (0.2)	9 (0.2)	15 (0.3)	15 (0.3)	11 (0.2)	12 (0.2)	15 (0.3)	11 (0.2)	11 (0.2)	23 (0.4)	14 (0.2)	17 (0.2)	17 (0.1)	37 (0.2)	28 (0.1)
	양부	7 (0.3)	0 (0.0)	10 (0.3)	5 (0.1)	15 (0.3)	17 (0.3)	10 (0.2)	22 (0.4)	11 (0.2)	13 (0.2)	19 (0.3)	19 (0.3)	15 (0.2)	17 (0.2)	15 (0.1)	37 (0.2)	21 (0.1)
	양모	1,840 (87.4)	2,103 (84.9)	2,434 (83.3)	3,167 (81.4)	3,862 (83.4)	4,326 (83.2)	4,524 (81.1)	4,719 (84.5)	4,734 (83.3)	4,709 (83.2)	5,039 (83.1)	5,370 (83.9)	5,454 (80.3)	8,207 (81.8)	9,348 (79.8)	15,048 (80.5)	17,177 (76.8)
친 인 척	친조부	48 (2.3)	24 (1.0)	26 (0.9)	34 (0.9)	36 (0.8)	72 (1.4)	50 (0.9)	60 (1.1)	54 (0.9)	46 (0.8)	58 (1.0)	74 (1.2)	58 (0.9)	69 (0.7)	96 (0.8)	111 (0.6)	128 (0.6)
	친조모		53 (2.1)	63 (2.2)	70 (1.8)	78 (1.7)	93 (1.8)	108 (1.9)	98 (1.8)	127 (2.2)	100 (1.8)	84 (1.4)	104 (1.6)	79 (1.2)	135 (1.3)	112 (1.0)	177 (0.9)	237 (1.1)
	외조부		0 (0.0)	7 (0.2)	7 (0.2)	7 (0.1)	2 (0.0)	12 (0.2)	8 (0.1)	10 (0.2)	15 (0.3)	15 (0.2)	14 (0.2)	8 (0.1)	17 (0.2)	28 (0.2)	39 (0.2)	61 (0.3)
	외조모		5 (0.2)	12 (0.4)	23 (0.6)	20 (0.4)	19 (0.4)	35 (0.6)	28 (0.5)	39 (0.7)	21 (0.4)	37 (0.6)	48 (0.7)	30 (0.4)	54 (0.5)	52 (0.4)	95 (0.5)	127 (0.6)
	친인척	51 (2.4)	54 (2.2)	93 (3.2)	100 (2.5)	114 (2.5)	142 (2.7)	123 (2.2)	145 (2.6)	141 (2.5)	144 (2.5)	131 (2.2)	175 (2.7)	150 (2.2)	229 (2.3)	201 (1.7)	266 (1.4)	328 (1.5)
	형제, 자매	6 (0.3)	6 (0.2)	10 (0.4)	5 (0.1)	16 (0.3)	15 (0.3)	26 (0.5)	22 (0.4)	16 (0.3)	11 (0.2)	24 (0.4)	20 (0.3)	26 (0.4)	55 (0.5)	73 (0.6)	107 (0.6)	186 (0.8)
	소계	105 (5.0)	142 (5.7)	211 (7.3)	239 (6.1)	271 (5.8)	343 (6.6)	354 (6.3)	361 (6.5)	387 (6.8)	337 (6.0)	349 (5.8)	435 (6.8)	351 (5.2)	559 (5.6)	562 (4.8)	795 (4.3)	1,067 (4.8)
대 리 양 육 자	부·모의 동거인	14 (0.7)	37 (1.5)	34 (1.2)	76 (2.0)	79 (1.7)	67 (1.3)	88 (1.6)	78 (1.4)	88 (1.5)	82 (1.4)	89 (1.5)	75 (1.2)	86 (1.3)	146 (1.5)	158 (1.3)	311 (1.7)	247 (1.1)
	유치원 교직원	-	-	-	-	-	-	-	-	-	-	-	31 (0.5)	35 (0.5)	99 (1.0)	203 (1.7)	240 (1.3)	281 (1.3)
	초·중·고교 직원	50 (2.4)	12 (0.5)	25 (0.8)	33 (0.8)	44 (0.9)	89 (1.7)	53 (0.9)	43 (0.8)	24 (0.4)	83 (1.5)	85 (1.4)	16 (0.2)	31 (0.5)	145 (1.4)	234 (2.0)	576 (3.1)	1,345 (6.0)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13 (0.5)	12 (0.4)	21 (0.5)	24 (0.5)	20 (0.4)	11 (0.2)	16 (0.3)	13 (0.2)	17 (0.3)	30 (0.5)	37 (0.6)	11 (0.2)	80 (0.8)	64 (0.5)	167 (0.9)	217 (1.0)
	보육교직원	-	-	-	-	-	-	-	-	-	-	-	110 (1.7)	217 (3.2)	295 (2.9)	427 (3.6)	587 (3.1)	840 (3.8)
	시설 종사자	-	5 (0.2)	42 (1.4)	104 (2.7)	78 (1.7)	99 (1.9)	234 (4.2)	88 (1.6)	197 (3.5)	229 (4.0)	265 (4.4)	-	-	-	-	-	-

(계속)

(단위 : 건, %)

연도 관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대리양육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	-	-	-	-	-	-	-	-	99 (1.5)	362 (5.3)	177 (1.8)	296 (2.5)	253 (1.4)	285 (1.3)
	기타시설 종사자	-	-	-	-	-	-	-	-	-	-	20 (0.3)	27 (0.4)	29 (0.3)	22 (0.2)	28 (0.1)	60 (0.3)
	청소년관련 시설 종사자	-	-	-	-	-	-	-	-	-	-	-	-	-	7 (0.1)	2 (0.0)	32 (0.1)
	위탁부	-	-	-	-	-	-	-	2 (0.1)	3 (0.1)	5 (0.1)	0 (0.0)	2 (0.0)	5 (0.0)	8 (0.1)	0 (0.0)	4 (0.0)
	위탁모	-	-	-	-	-	-	-	7 (0.1)	5 (0.1)	8 (0.1)	3 (0.0)	11 (0.2)	7 (0.1)	5 (0.0)	5 (0.0)	17 (0.1)
	베이비시터	-	-	-	-	-	-	-	-	-	-	6 (0.1)	4 (0.1)	7 (0.1)	7 (0.1)	4 (0.0)	15 (0.1)
	소계	64 (3.0)	67 (2.7)	113 (3.9)	234 (6.0)	225 (4.9)	275 (5.3)	386 (6.9)	225 (4.0)	331 (5.8)	419 (7.4)	482 (8.0)	397 (6.2)	786 (11.6)	990 (9.9)	1,431 (12.2)	3,343 (14.9)
	이웃	39 (1.8)	34 (1.4)	64 (2.2)	77 (2.0)	98 (2.1)	81 (1.5)	95 (1.7)	99 (1.8)	76 (1.4)	62 (1.1)	60 (1.0)	60 (0.9)	51 (0.8)	73 (0.7)	85 (0.7)	91 (0.5)
타인	낯선 사람	-	20 (0.8)	40 (1.4)	57 (1.5)	49 (1.1)	67 (1.3)	48 (0.9)	70 (1.3)	58 (1.0)	53 (0.9)	32 (0.5)	48 (0.7)	34 (0.5)	51 (0.5)	102 (0.9)	208 (0.9)
	소계	39 (1.9)	54 (2.2)	104 (3.6)	134 (3.4)	147 (3.2)	148 (2.8)	143 (2.6)	169 (3.0)	134 (2.4)	115 (2.0)	92 (1.5)	108 (1.7)	85 (1.3)	124 (1.2)	187 (1.6)	294 (1.3)
	기타	57 (2.7)	32 (1.3)	27 (0.9)	52 (1.3)	81 (1.8)	59 (1.1)	90 (1.6)	67 (1.2)	94 (1.6)	70 (1.2)	95 (1.6)	70 (1.1)	85 (1.3)	129 (1.3)	166 (1.4)	441 (2.0)
파악안됨		-	80 (3.2)	32 (1.1)	65 (1.7)	47 (1.0)	51 (1.0)	84 (1.5)	37 (0.6)	5 (0.1)	7 (0.2)	1 (0.0)	20 (0.3)	32 (0.5)	18 (0.2)	21 (0.2)	45 (0.2)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3 (0.0)	3 (0.0)	-	-	-	-
계		2,105 (100.0)	2,478 (100.0)	2,921 (100.0)	3,891 (100.0)	4,633 (100.0)	5,202 (100.0)	5,581 (100.0)	5,578 (100.0)	5,685 (100.0)	5,657 (100.0)	6,058 (100.0)	6,403 (100.0)	6,796 (100.0)	10,027 (100.0)	11,715 (100.0)	22,367 (100.0)

(단위 : 건)



[그림 7-9]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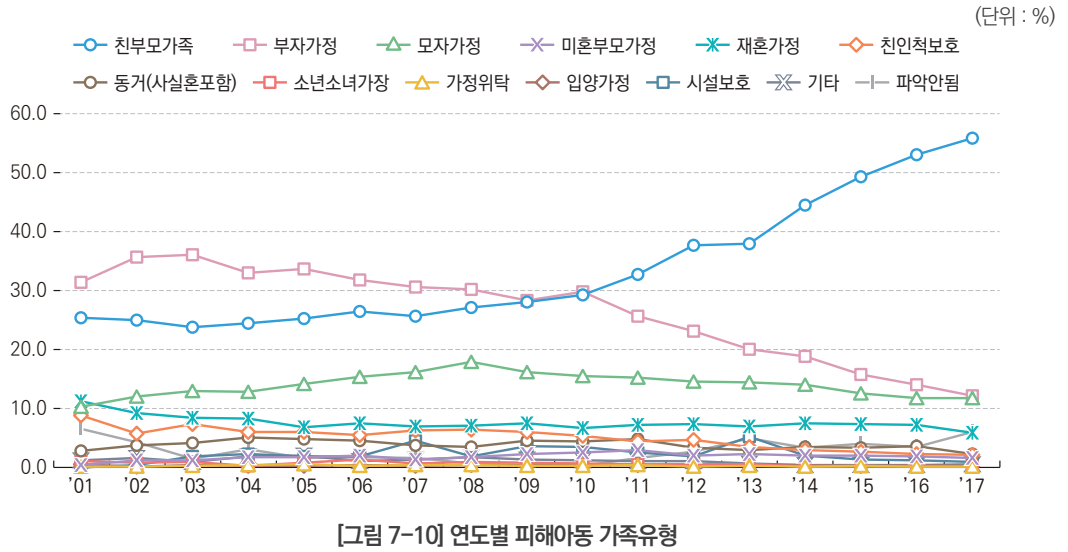
7.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표 7-10〉과 같이 피해아동 가족유형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55.8%까지 증가했다. 친부모 가족 외 형태의 경우 점차 감소하고 있다. 부자가정, 모자가정 및 미혼부모가정을 합친 한부모가정의 경우 2003년 약 50.3%까지 증가했다가 점차 감소하여 2017년 약 25.6%로 나타났다.

〈표 7-10〉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단위 : 건, %)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가족유형																		
친부모가족		536 (25.5)	619 (25.0)	696 (23.8)	950 (24.4)	1,173 (25.3)	1,380 (26.5)	1,432 (25.7)	1,515 (27.2)	1,599 (28.1)	1,654 (29.2)	1,988 (32.8)	2,415 (37.7)	2,581 (38.0)	4,458 (44.5)	5,779 (49.3)	9,931 (53.1)	12,489 (55.8)
친부모 가족 외 형태	부자 가정	662 (31.4)	885 (35.7)	1,054 (36.1)	1,285 (33.0)	1,559 (33.7)	1,656 (31.8)	1,710 (30.6)	1,687 (30.2)	1,615 (28.4)	1,684 (29.8)	1,559 (25.7)	1,480 (23.1)	1,360 (20.0)	1,887 (18.8)	1,855 (15.8)	2,623 (14.0)	2,732 (12.2)
	모자 가정	217 (10.3)	299 (12.1)	380 (13.0)	502 (12.9)	659 (14.2)	799 (15.4)	907 (16.3)	999 (17.9)	919 (16.2)	881 (15.6)	927 (15.3)	935 (14.6)	981 (14.4)	1,414 (14.1)	1,483 (12.7)	2,203 (11.8)	2,632 (11.8)
	미혼 부-모 가정	10 (0.5)	30 (1.2)	35 (1.2)	70 (1.8)	85 (1.8)	109 (2.1)	78 (1.4)	97 (1.7)	132 (2.3)	150 (2.6)	180 (3.0)	131 (2.0)	154 (2.3)	208 (2.1)	240 (2.0)	347 (1.9)	361 (1.6)
	재혼 가정	238 (11.3)	228 (9.2)	246 (8.4)	322 (8.3)	317 (6.8)	389 (7.5)	390 (7.0)	395 (7.1)	429 (7.6)	380 (6.7)	441 (7.3)	475 (7.4)	473 (7.0)	750 (7.5)	869 (7.4)	1,366 (7.3)	1,318 (5.9)
	친인척 보호	187 (8.9)	142 (5.7)	217 (7.4)	235 (6.0)	283 (6.1)	284 (5.5)	353 (6.3)	358 (6.4)	347 (6.1)	303 (5.3)	266 (4.4)	303 (4.7)	238 (3.5)	297 (3.0)	320 (2.7)	444 (2.4)	487 (2.2)
	동거 (사실혼 포함)	60 (2.9)	94 (3.8)	122 (4.2)	200 (5.2)	227 (4.9)	242 (4.6)	215 (3.8)	198 (3.6)	263 (4.6)	252 (4.5)	294 (4.9)	220 (3.4)	201 (3.0)	353 (3.5)	403 (3.4)	688 (3.7)	532 (2.4)
	소년 소녀 가정	15 (0.7)	14 (0.6)	21 (0.7)	9 (0.2)	26 (0.6)	49 (0.9)	28 (0.5)	35 (0.6)	31 (0.5)	28 (0.5)	21 (0.3)	22 (0.3)	20 (0.3)	10 (0.1)	7 (0.1)	10 (0.1)	16 (0.2)
	소계	1,389 (66.0)	1,692 (68.3)	2,075 (71.0)	2,623 (67.4)	3,156 (68.1)	3,528 (67.8)	3,681 (65.9)	3,769 (67.5)	3,736 (65.7)	3,678 (65.0)	3,688 (60.9)	3,566 (55.7)	3,427 (50.4)	4,919 (49.1)	5,177 (44.2)	7,681 (41.1)	8,078 (36.1)
대리 양육 형태	가정 위탁	3 (0.1)	5 (0.2)	8 (0.3)	20 (0.5)	29 (0.6)	14 (0.3)	26 (0.5)	26 (0.5)	20 (0.4)	15 (0.3)	28 (0.4)	13 (0.2)	21 (0.3)	24 (0.2)	31 (0.3)	28 (0.1)	38 (0.2)
	입양 가정	13 (0.6)	5 (0.2)	13 (0.4)	13 (0.3)	17 (0.4)	26 (0.5)	19 (0.3)	25 (0.4)	26 (0.5)	25 (0.4)	30 (0.5)	37 (0.6)	27 (0.4)	39 (0.4)	34 (0.3)	79 (0.4)	56 (0.3)
	시설 보호	-	10 (0.4)	57 (2.0)	90 (2.3)	88 (1.9)	102 (2.0)	254 (4.6)	104 (1.9)	204 (3.6)	196 (3.5)	155 (2.6)	127 (2.0)	356 (5.2)	208 (2.1)	155 (1.3)	227 (1.2)	218 (1.0)
	소계	16 (0.7)	20 (0.8)	78 (2.7)	123 (3.1)	134 (2.9)	142 (2.8)	299 (5.4)	155 (2.8)	250 (4.5)	236 (4.2)	213 (3.5)	177 (2.8)	404 (5.9)	271 (2.7)	220 (1.9)	334 (1.8)	311 (1.4)
기 타		25 (1.2)	40 (1.6)	29 (1.0)	76 (2.0)	92 (2.0)	60 (1.1)	77 (1.4)	102 (1.8)	75 (1.3)	68 (1.2)	67 (1.1)	70 (1.1)	46 (0.7)	43 (0.4)	58 (0.5)	86 (0.5)	137 (0.6)
파악안됨		139 (6.6)	107 (4.3)	43 (1.5)	119 (3.1)	78 (1.7)	92 (1.8)	92 (1.6)	37 (0.7)	25 (0.4)	21 (0.4)	102 (1.7)	175 (2.7)	338 (5.0)	336 (3.4)	481 (4.1)	668 (3.6)	1,352 (6.0)
계		2,105 (100.0)	2,478 (100.0)	2,921 (100.0)	3,891 (100.0)	4,633 (100.0)	5,202 (100.0)	5,581 (100.0)	5,578 (100.0)	5,685 (100.0)	5,657 (100.0)	6,068 (100.0)	6,403 (100.0)	6,796 (100.0)	10,027 (100.0)	11,715 (100.0)	18,700 (100.0)	22,367 (100.0)



8. 연도별 재학대 사례 현황

본 절에서는 연도별 재학대 사례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재학대 사례에 대한 추계를 제시하였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의 재학대 사례는 2001년부터 해당 년도까지 신고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해당 년도에 다시 신고접수 되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사례로 집계된 반면, 2014년부터 2017년의 재학대 사례는 최근 5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에 신고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해당 년도에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재학대 사례로 집계되었다.

1) 연도별 재학대 사례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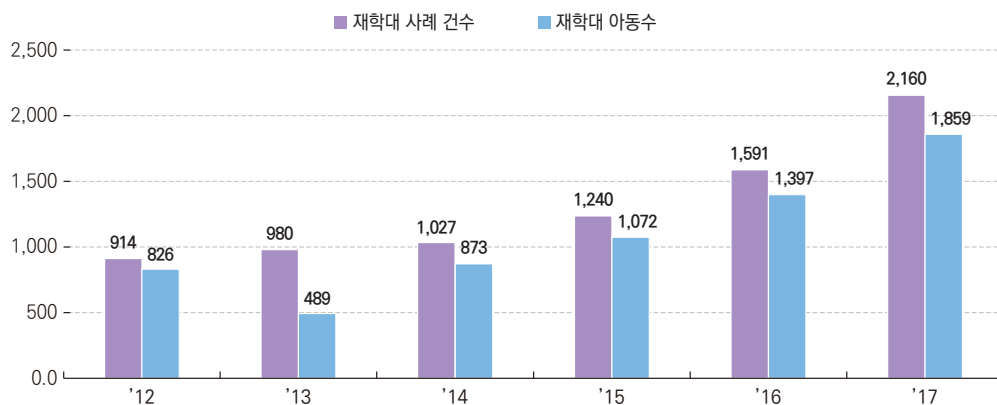
〈표 7-11〉과 같이 연도별 재학대 사례는 2012년 914건에서 2017년 2,16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재학대 사례 비율을 살펴보면, 2012년과 2013년에는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14% 내외, 2014년 이후로 10% 내외를 유지하다가 2017년에는 9.7%로 나타났다.

〈표 7-11〉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건수 및 아동 수

(단위 : 건, 명, %)

구분 \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재학대 사례 건수	914	980	1,027	1,240	1,591	2,160
(재학대 아동수)	(826)	(489)	(873)	(1,072)	(1,397)	(1,859)
재학대 사례 비율	14.3	14.4	10.2	10.6	8.5	9.7

(단위 : 건, 명)



〔그림 7-11〕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건수 및 아동 수

2) 연도별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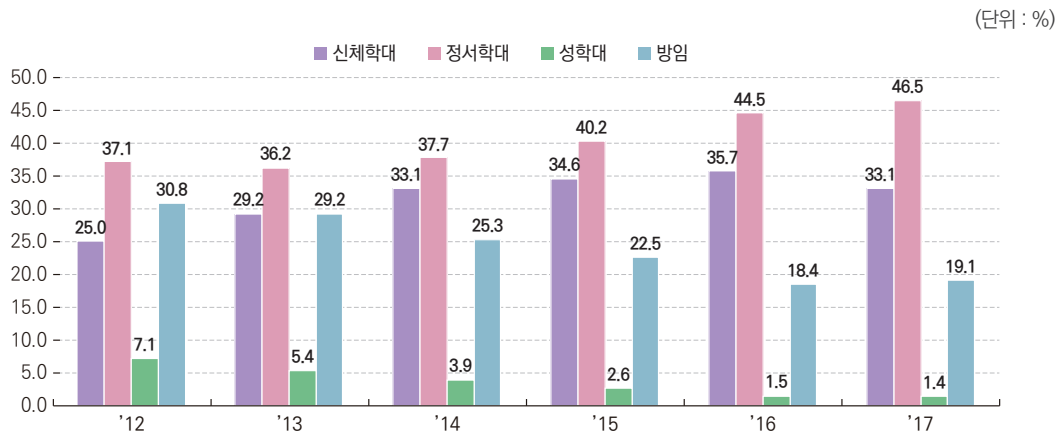
〈표 7-12〉와 같이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유형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정서학대와 방임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은 정서학대와 신체학대, 방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014년부터 2017년에는 정서학대와 신체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재학대 사례 중 성학대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7-12〉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단위 : 건, %)

연도 사례유형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신체학대	361	(25.0)	440	(29.2)	515	(33.1)	676	(34.6)	882	(35.7)	1,119	(33.1)
정서학대	536	(37.1)	545	(36.2)	587	(37.7)	785	(40.2)	1,102	(44.5)	1,574	(46.5)
성학대	102	(7.1)	81	(5.4)	61	(3.9)	51	(2.6)	36	(1.5)	46	(1.4)
방임	445	(30.8)	440	(29.2)	393	(25.3)	439	(22.5)	454	(18.4)	646	(19.1)
계	1,444	(100.0)	1,506	(100.0)	1,556	(100.0)	1,951	(100.0)	2,474	(100.0)	3,385	(100.0)

*중복포함



*중복포함

[그림 7-12]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3) 연도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표 7-13〉과 같이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발생시기를 살펴보면 2012년과 2013년에는 최초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신고접수 되는 비율이 약 3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14년 최초 아동학대사례 판단 이후 1년에서 2년 사이에 다시 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비율이 약 23%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4년 이후에는 최초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이후 1개월에서 1년 사이에 발생한 재학대 사례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2017년에는 전체 재학대의 약 50%를 상회하였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사례판단 1년 이후에 발생하는 재학대 비율은 63.4%, 57.7%, 51.3%, 49.5%로 나타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재학대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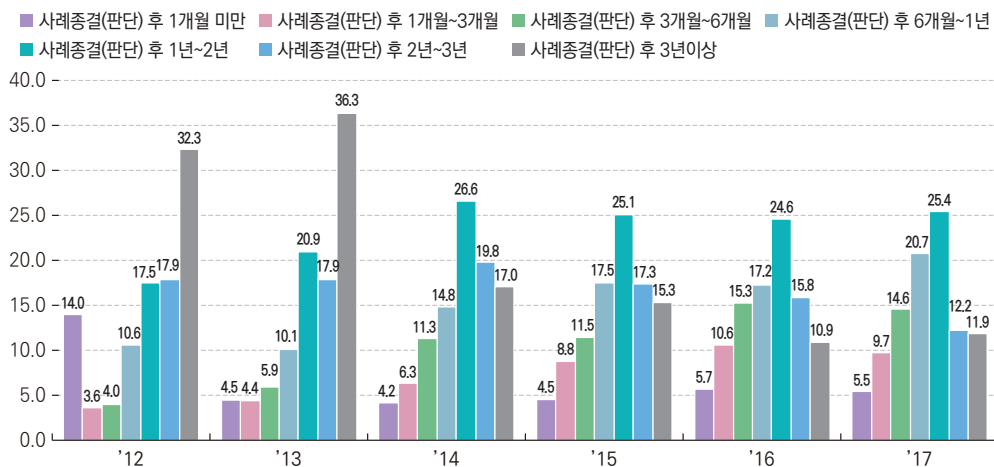
〈표 7-13〉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발생시기

(단위 : 건, %)

발생시기 \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사례종결(판단) 후 1개월 미만	128 (14.0)	44 (4.5)	43 (4.2)	56 (4.5)	90 (5.7)	118 (5.5)
사례종결(판단) 후 1개월~3개월	33 (3.6)	43 (4.4)	65 (6.3)	109 (8.8)	168 (10.6)	210 (9.7)
사례종결(판단) 후 3개월~6개월	37 (4.0)	58 (5.9)	116 (11.3)	142 (11.5)	243 (15.3)	315 (14.6)
사례종결(판단) 후 6개월~1년	97 (10.6)	99 (10.1)	152 (14.8)	217 (17.5)	274 (17.2)	448 (20.7)
사례종결(판단) 후 1년~2년	160 (17.5)	205 (20.9)	273 (26.6)	311 (25.1)	391 (24.6)	549 (25.4)
사례종결(판단) 후 2년~3년	164 (17.9)	175 (17.9)	203 (19.8)	215 (17.3)	252 (15.8)	264 (12.2)
사례종결(판단) 후 3년 이상	295 (32.3)	356 (36.3)	175 (17.0)	190 (15.3)	173 (10.9)	256 (11.9)
계	914 (100.0)	980 (100.0)	1,027 (100.0)	1,240 (100.0)	1,591 (100.0)	2,160 (100.0)

※ 2013년부터 재학대 사례의 통계추출 기준을 사례종결이 아닌 사례판단으로 변경한 바 그 기준에 따른 수치를 기재하였음.

(단위 : %)



[그림 7-13]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발생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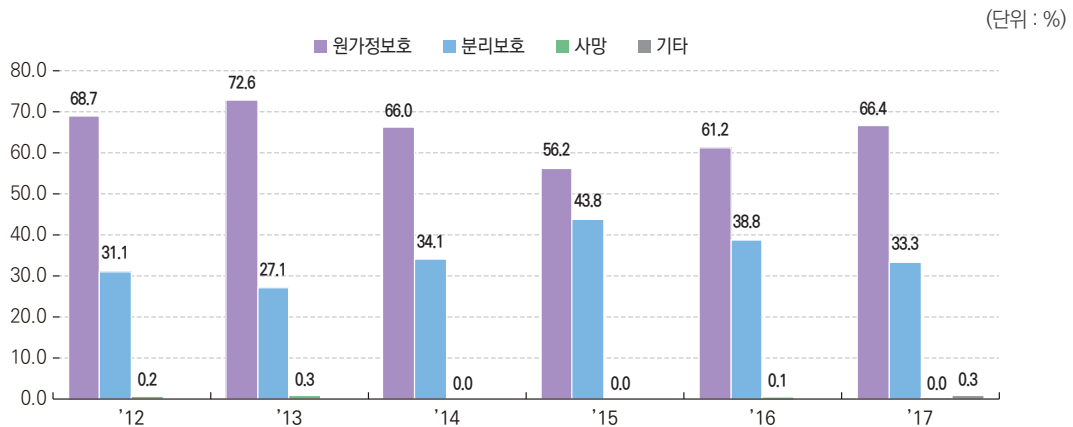
4) 연도별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표 7-14〉와 같이 연도별로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원가정보호율은 2013년에 72.6%로 가장 높았다가 2016년 및 2017년에 60%대로 떨어졌다. 분리보호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다가 2016년 및 2017년 30%대로 떨어졌다. 아동이 사망에 이른 건수는 2014년부터 단 한 건도 없었으나 2016년 및 2017년에 각각 1건 발생하였다.

〈표 7-14〉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단위 : 건, %)

구분 \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원가정보호	628	(68.7)	711	(72.6)	678	(66.0)	697	(56.2)	973	(61.2)	1,434	(66.4)
분리보호	284	(31.1)	266	(27.1)	349	(34.1)	543	(43.8)	617	(38.8)	719	(33.3)
사망	2	(0.2)	3	(0.3)	0	(0.0)	0	(0.0)	1	(0.1)	1	(0.0)
기타	-	-	-	-	-	-	-	-	-	-	6	(0.3)
계	914	(100.0)	980	(100.0)	1,027	(100.0)	1,240	(100.0)	1,591	(100.0)	2,160	(100.0)



[그림 7-14]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5) 연도별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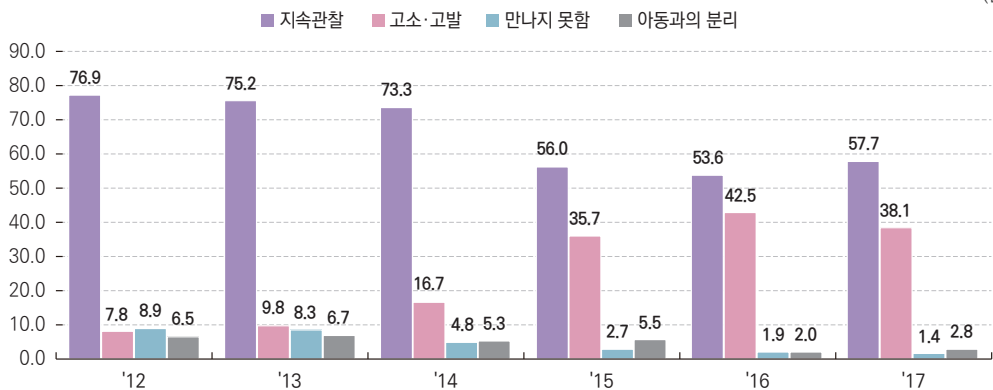
〈표 7-15〉와 같이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지속관찰의 경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비율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7년 57.7%로 전년대비 4.1%p 증가했다. 고소·고발의 경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7년 전년대비 4.4%p 감소했다.

〈표 7-15〉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구분 \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속관찰	703	(76.9)	737	(75.2)	753	(73.3)	695	(56.0)	853	(53.6)	1,246	(57.7)
고소·고발*	71	(7.8)	96	(9.8)	171	(16.7)	443	(35.7)	676	(42.5)	823	(38.1)
만나지 못함	81	(8.9)	81	(8.3)	49	(4.8)	34	(2.7)	30	(1.9)	31	(1.4)
아동과의 분리	59	(6.5)	66	(6.7)	54	(5.3)	68	(5.5)	32	(2.0)	60	(2.8)
계	914	(100.0)	980	(100.0)	1,027	(100.0)	1,240	(100.0)	1,591	(100.0)	2,160	(100.0)

(단위 : %)



[그림 7-15]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의 고소·고발은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에 따라 고소 및 고발 외의 사건처리에 대한 수치까지 합쳐진 값임.

9.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현황

1)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아동사망은 학대로 인한 가장 치명적인 결과이다. 아동학대 현황을 집계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총 251건의 사망 사례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제시된 사망아동 현황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접수된 사례만을 집계하였으므로 실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의 수는 여기서 제시된 수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 하면 수사기관으로 직접 접수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사망 관련 정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전달하지 않아 관련 통계가 누락될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아동의 사인이 학대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 기관에 보고되지 않을 수 있어 정확한 집계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나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서도 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을 구분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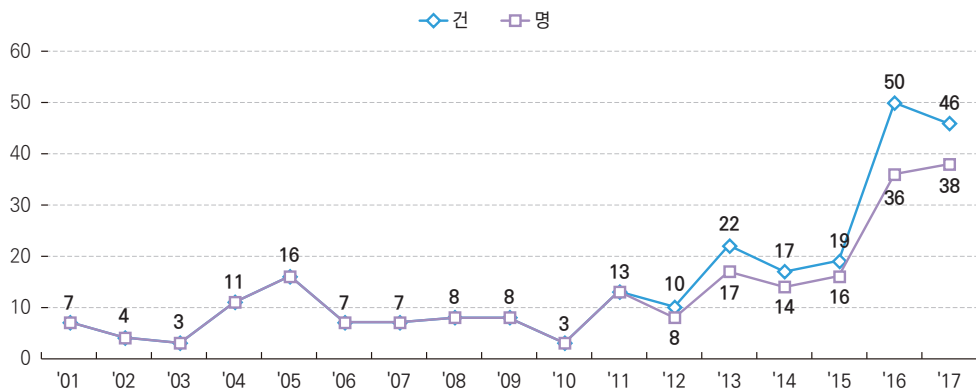
2001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정확한 현황집계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아동학대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관 간 정보공유의 활성화 및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정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정확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7-16〉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단위 : 건, 명)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건수 (명수)	7 (7)	4 (4)	3 (3)	11 (11)	16 (16)	7 (7)	7 (7)	8 (8)	8 (8)	3 (3)	13 (13)	10 (8)	22 (17)	17 (14)	19 (16)	50 (36)	46 (38)	251 (216)

(단위 : 건, 명)



[그림 7-16]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2)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 유형

〈표 7-17〉과 같이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유형을 살펴보면, 2011년과 2013년도에는 방임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2012년과 2014년, 2016년에는 중박학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7년에는 신체학대가 47.8%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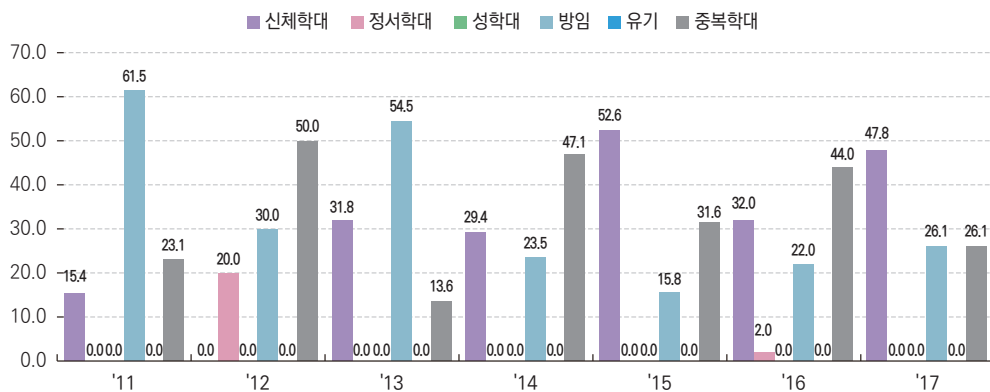
〈표 7-17〉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단위 : 건, %)

구분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신체학대	2	(15.4)	0	(0.0)	7	(31.8)	5	(29.4)	10	(52.6)	16	(32.0)	22	(47.8)
정서학대	0	(0.0)	2	(20.0)	0	(0.0)	0	(0.0)	0	(0.0)	1	(2.0)	0	(0.0)
성학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방임	8	(61.5)	3	(30.0)	12	(54.5)	4	(23.5)	3	(15.8)	11	(22.0)	12	(26.1)
유기*	0	(0.0)	-		-		-		-		-		-	
중박학대	3	(23.1)	5	(50.0)	3	(13.6)	8	(47.1)	6	(31.6)	22	(44.0)	12	(26.1)
계	13	(100.0)	10	(100.0)	22	(100.0)	17	(100.0)	19	(100.0)	50	(100.0)	46	(100.0)

* 2012년부터 아동학대 유형 중 유기는 방임에 포함하여 집계함

(단위 : %)



[그림 7-17]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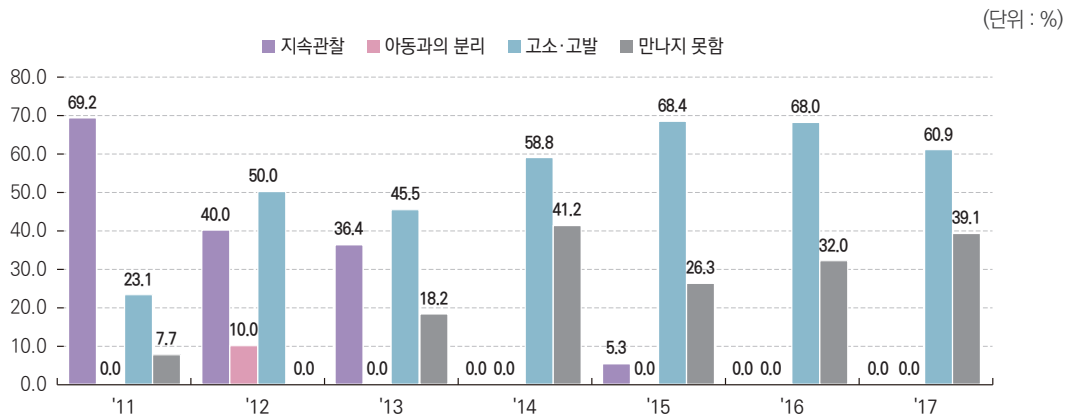
3)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표 7-18〉과 같이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면, 2011년을 제외하고 최종조치 중 고소·고발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7-18〉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구분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속관찰	9	(69.2)	4	(40.0)	8	(36.4)	0	(0.0)	1	(5.3)	0	(0.0)	0	(0.0)
아동과의 분리	0	(0.0)	1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고소·고발	3	(23.1)	5	(50.0)	10	(45.5)	10	(58.8)	13	(68.4)	34	(68.0)	28	(60.9)
만나지 못함	1	(7.7)	0	(0.0)	4	(18.2)	7	(41.2)	5	(26.3)	16	(32.0)	18	(39.1)
계	13	(100.0)	10	(100.0)	22	(100.0)	17	(100.0)	19	(100.0)	50	(100.0)	46	(100.0)



[그림 7-18]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0. 연도별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표 7-19〉와 같이 2017년 신고의무자교육 의무대상 대상 교육 결과를 살펴보았다. 2017년 기준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에서는 해당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시도/시군구 신고의무자교육 의무대상 교육 결과

시도/시군구에 보고된 2017년 신고의무자교육 의무대상 기관은 총 44,192개이었으며 실제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44,190개에 해당하여 99.9%의 기관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시도별로 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한 기관 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12,059개(27.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6,848개(15.5%), 경남 3,156개(7.1%), 인천 2,413개(5.5%), 경북 2,367개(5.4%)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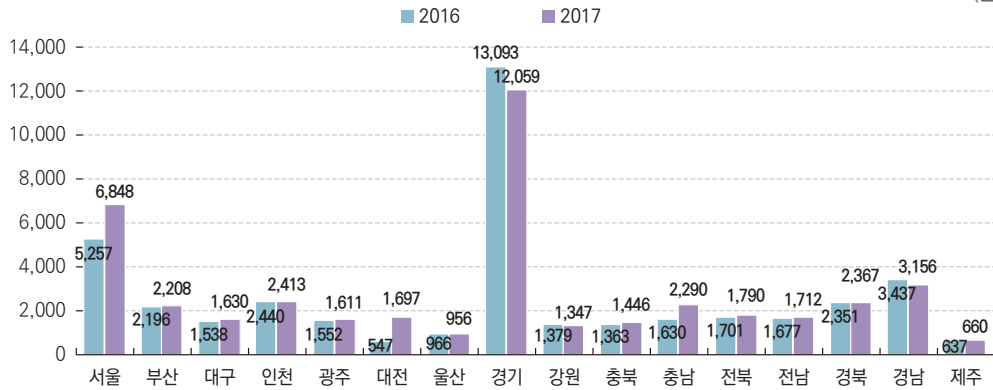
〈표 7-19〉 연도별 시도/시군구 신고의무자교육 의무대상 교육 결과

(단위 : 개, %)

연도 지역	2016년					2017년				
	총기관수		교육기관수		총 기관수 대비 교육이수 기관 비율	총기관수		교육기관수		총 기관수 대비 교육이수 기관 비율
서울	5,260	(12.6)	5,257	(12.6)	(99.9)	6,849	(15.5)	6,848	(15.5)	(100.0)
부산	2,196	(5.3)	2,196	(5.3)	(100.0)	2,208	(5.0)	2,208	(5.0)	(100.0)
대구	1,538	(3.7)	1,538	(3.7)	(100.0)	1,630	(3.7)	1,630	(3.7)	(100.0)
인천	2,440	(5.8)	2,440	(5.8)	(100.0)	2,413	(5.5)	2,413	(5.5)	(100.0)
광주	1,552	(3.7)	1,552	(3.7)	(100.0)	1,611	(3.6)	1,611	(3.6)	(100.0)
대전	547	(1.3)	547	(1.3)	(100.0)	1,697	(3.8)	1,697	(3.8)	(100.0)
울산	966	(2.3)	966	(2.3)	(100.0)	956	(2.2)	956	(2.2)	(100.0)
경기	13,093	(31.3)	13,093	(31.3)	(100.0)	12,060	(27.3)	12,059	(27.3)	(100.0)
강원	1,379	(3.3)	1,379	(3.3)	(100.0)	1,347	(3.0)	1,347	(3.0)	(100.0)
충북	1,363	(3.3)	1,363	(3.3)	(100.0)	1,446	(3.3)	1,446	(3.3)	(100.0)
충남	1,630	(3.9)	1,630	(3.9)	(100.0)	2,290	(5.2)	2,290	(5.2)	(100.0)
전북	1,701	(4.1)	1,701	(4.1)	(100.0)	1,790	(4.1)	1,790	(4.1)	(100.0)
전남	1,677	(4.0)	1,677	(4.0)	(100.0)	1,712	(3.9)	1,712	(3.9)	(100.0)
경북	2,351	(5.6)	2,351	(5.6)	(100.0)	2,367	(5.4)	2,367	(5.4)	(100.0)
경남	3,437	(8.2)	3,437	(8.2)	(100.0)	3,156	(7.1)	3,156	(7.1)	(100.0)
제주	637	(1.5)	637	(1.5)	(100.0)	660	(1.5)	660	(1.5)	(100.0)
계	41,767	(100.0)	41,764	(100.0)	(100.0)	44,192	(100.0)	44,190	(100.0)	(100.0)

* 아동복지법(2017.10.24. 일부 개정, 2018.4.25. 시행)에 따라 2018년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종합병원, 아동복지시설뿐 아니라 모든 신고의무자가 속한 기관의 장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 행정기관 장에게 제출해야함.

(단위 : 개)



[그림 7-19] 연도별 시도/시군구 신고의무자교육 의무대상 교육 결과

2) 교육청/교육지원청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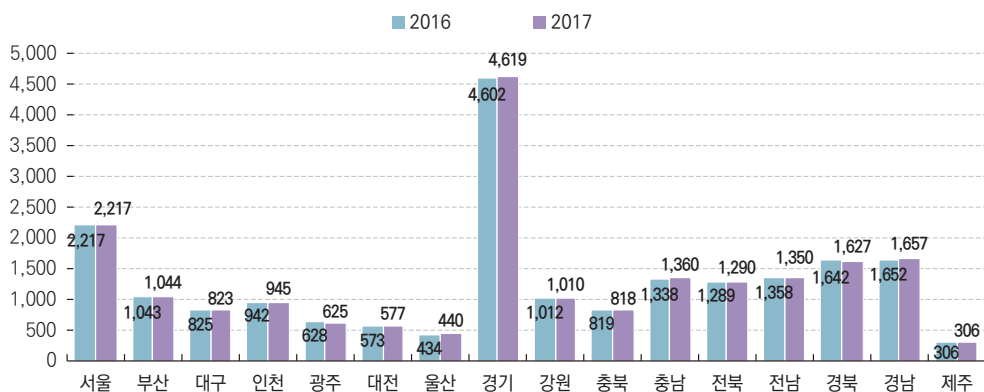
〈표 7-20〉과 2017년 연도별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보고된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실적을 살펴보았다. 2017년의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보고된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수는 20,708개이며, 실제로 2017년에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한 기관은 20,708개로 의무기관 교육 이수 100%를 달성하였다. 교육결과를 살펴보면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대상 기관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로 4,619개(22.3%)를 차지하였으며 서울 2,217개(10.7%), 경남 1,657개(8.0%), 경북 1,627개(7.9%) 순으로 나타났다.

〈표 7-20〉 연도별 교육청/교육지원청 신고의무자교육 의무대상 교육 결과

(단위 : 개, %)

연도 지역	2016년					2017년				
	총기관수		교육기관수		총 기관수 대비 교육이수 기관 비율	총기관수		교육기관수		총 기관수 대비 교육이수 기관 비율
서울	2,217	(10.7)	2,217	(10.7)	(100.0)	2,217	(10.7)	2,217	(10.7)	(100.0)
부산	1,043	(5.0)	1,043	(5.0)	(100.0)	1,044	(5.0)	1,044	(5.0)	(100.0)
대구	825	(4.0)	825	(4.0)	(100.0)	823	(4.0)	823	(4.0)	(100.0)
인천	942	(4.6)	942	(4.6)	(100.0)	945	(4.6)	945	(4.6)	(100.0)
광주	628	(3.0)	628	(3.0)	(100.0)	625	(3.0)	625	(3.0)	(100.0)
대전	573	(2.8)	573	(2.8)	(100.0)	577	(2.8)	577	(2.8)	(100.0)
울산	434	(2.1)	434	(2.1)	(100.0)	440	(2.1)	440	(2.1)	(100.0)
경기	4,602	(22.3)	4,602	(22.3)	(100.0)	4,619	(22.3)	4,619	(22.3)	(100.0)
강원	1,012	(4.9)	1,012	(4.9)	(100.0)	1,010	(4.9)	1,010	(4.9)	(100.0)
충북	819	(4.0)	819	(4.0)	(100.0)	818	(4.0)	818	(4.0)	(100.0)
충남	1,338	(6.5)	1,338	(6.5)	(100.0)	1,360	(6.6)	1,360	(6.6)	(100.0)
전북	1,289	(6.2)	1,289	(6.2)	(100.0)	1,290	(6.2)	1,290	(6.2)	(100.0)
전남	1,358	(6.6)	1,358	(6.6)	(100.0)	1,350	(6.5)	1,350	(6.5)	(100.0)
경북	1,642	(7.9)	1,642	(7.9)	(100.0)	1,627	(7.9)	1,627	(7.9)	(100.0)
경남	1,652	(8.0)	1,652	(8.0)	(100.0)	1,657	(8.0)	1,657	(8.0)	(100.0)
제주	306	(1.5)	306	(1.5)	(100.0)	306	(1.5)	306	(1.5)	(100.0)
계	20,680	(100.0)	20,680	(100.0)	(100.0)	20,708	(100.0)	20,708	(100.0)	(100.0)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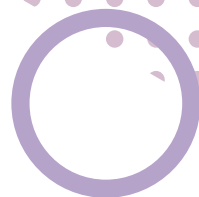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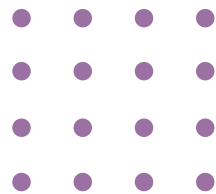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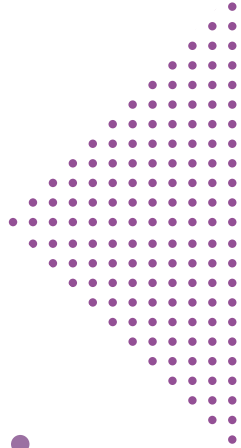


〔그림 7-20〕 연도별 교육청/교육지원청 신고의무자교육 의무대상 교육 결과



부록

Child Abuse & Neglect Korea 2017





부록

부록 1.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2018년 10월 기준, 62개소)

지역	기관명	관할지역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6길 19(역삼동) (06228)	www.korea1391.go.kr	02-558-1391
서울 (9개소)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수서동) (06362)	http://child.seoul.go.kr	02-2040-4242
	서울특별시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구, 종로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69길 106 별관 104호	dbnawoori.seoul.kr	02-2247-1391
	서울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강서구, 양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47가 길 12 시정현빌딩 2층 (가양동) (07523)	www.goodneighbors.kr/ gangseo	02-3665-5183-5
	서울은평 아동보호전문기관	은평구, 종로구, 강북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10, 4층(응암동) (03472)	www.goodneighbors.kr /eunpyeong	02-3157-1391
	서울영등포 아동보호전문기관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7 에이스테크노타워 4층 407호 (07299)	www.goodneighbors.kr /yongdungpo	02-842-0094
	서울성북 아동보호전문기관	성북구, 도봉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36 1층(타운힐빌딩) (02833)	www.goodneighbors.kr /seongbuk	02-923-5440
	서울마포 아동보호전문기관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46, 401호(신수동) (04088)	www.mapo.sc.or.kr	02-422-1391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103 (청송빌딩, 4층) (05831)	www.goodneighbors.kr /gangdong	02-474-1391
	서울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331, 노원아동복지관 3층 (01786)	http://www.nowon.kr/	02-974-1391
부산 (4개소)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사 하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 183(아미동27가) (49240)	adong.busan.go.kr	051-791-1391
	부산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영구,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506 영풍리첸시 903호 (48101)	dbchild.saem.or.kr	051-715-1391
	부산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북구, 강서구, 사상구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268 화명대림타운상가 405,406호 (46536)	sbchild.saem.or.kr	051-711-1391
	부산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사 하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141번길 11 삼한오피스텔 1503호(범일동) (48742)	http://bnc1391.or.kr/	051-791-1360
대구 (3개소)	대구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 수성구, 남구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302 (동인동3가) 2층 (41906)	www.dg1391.or.kr	053-422-1391
	대구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달서구,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319 (송현동) 2층 (42742)	www.goodneighbors.kr/ ndaegu	053-623-1391
	대구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서구,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연일로 25길 12-1(산격동) (41539)	www.sosdb1391.or.kr	053-710-1391

(계속)

지역	기관명	관할지역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인천 (3개소)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부평구, 남구, 중구, 동구, 옹진군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99 (주안동) (22134)	www.icchild.sc.or.kr	032-434-1391
	인천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서구, 계양구, 강화군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74, 5층 504, 505호 (계산동, 삼환1빌딩) (21050)	www.goodneighbors.kr/ ninchon	032-515-1391
	인천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남동구, 연수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04, 4층(간석동) (21545)	https://www.holt.or.kr/ ic_nambu	032-424-1391
광주 (2개소)	광주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서구, 광산구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216 (쌍촌동) (61966)	cyber1391.or.kr	062-385-1391
	빛고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북구, 남구, 동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자로 97-2 (운암동) (61261)	http://bitabo.co.kr/	062-675-1391
대전 (1개소)	대전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대전광역시 중구 어덕마울로 156(중촌동) (34803)	www.goodneighbors.kr/ edaejeon	042-254-6790
울산 (2개소)	울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 동구, 북구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3길 21 (성안동) (44421)	www.ulsan.sc.or.kr	052-245-9382
	울산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남구, 울주군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 355번길 23(삼산동) (44709)	http://usnb.sc.or.kr/	052-256-1391
세종 (1개소)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로 14 새롬 종합복지센터 2층 201호 (30127)	http://sejong1391.or.kr/	044-864-1393
경기 (12개소)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의왕시, 군포시, 안양시, 과천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225 번길 20(영화동) (16272)	www.goodneighbors.kr/ suwon	031-245-2448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 시, 연천군	경기도 의정부시 신희로 196 4층 (도림빌딩) (11652)	www.goodneighbors.kr/ uijeongbu	031-874-9100
	경기성남 아동보호전문기관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하남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06 2층(태평동) (13306)	www.goodneighbors.kr/ local/sungnam	031-756-1391
	경기고양 아동보호전문기관	고양시, 파주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7 번길 11, 7층(행신동, 삼정프라자) (10518)	https://blog.naver.com/ goyang1391	031-966-1391
	경기부천 아동보호전문기관	부천시, 김포시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279 서호 빌딩4층 405호 (중3동 1058-4) (14539)	www.bucheon.sc.or.kr	032-662-2580
	경기화성 아동보호전문기관	화성시, 오산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334, 4층(봉담읍, 송현빌딩) (18303)	www.goodneighbors.kr/ hwaseong	031-227-1310
	경기남양주 아동보호전문기관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248번길 39, 204호(금곡동, 다남빌딩) (12239)	www.nyj1391.or.kr	031-592-9818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 35, 402호(월피동, 에스엘타운) (15288)	www.ansan.sc.or.kr	031-402-0442
	경기용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1, 802호 (지젤레이크타워) (17006)	www.goodneighbors.kr/ yongin	031-275-6177
	경기시흥 아동보호전문기관	시흥시, 광명시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83(대야동, 2층) (14911)	www.goodneighbors.kr/ siheung	031-316-1391
	경기평택 아동보호전문기관	평택시, 안성시	경기도 평택시 소사1길 33 동방평 택복지타운(소사동) (17877)	-	031-652-1391
	수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천로 392번길 17 (연무동) (16266)	http://goodsuwon. goodneighbors.kr/	031-8009-0080
강원 (4개소)	강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강원도 춘천시 성심로47번길 35(후평1동) (24257)	www.1391.org	033-244-1391
	강원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강릉시,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강원도 강릉시 솔울로5번길 33 2층(교동, 반트빌딩 2층) (25515)	www.kd1391.or.kr	033-644-1391
	강원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469번길 6(명륜동) (26482)	www.goodneighbors.kr/ wonju	033-766-1391
	강원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강원도 동해시 부곡3길 20-9 2,3층 (25735)	http://donghae. goodneighbors.kr/	033-535-5391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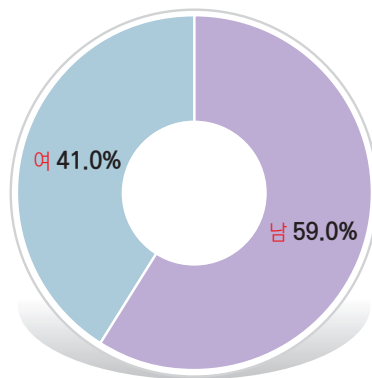
지역	기관명	관할지역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충북 (3개소)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 202번길 66-1 (율량동) (28332)	www.goodneighbors.kr/ cheongju	043-216-1391
	충북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천시, 충주시, 단양군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대로 118, 2층(청전동) (27153)	www.1391sos.kr	043-645-9078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1길 19(옥천읍) (29039)	www.cbnb1391.org	043-731-3685
충남 (3개소)	충청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224(성정동) (31140)	www.goodneighbors.kr/ chonnan	041-578-2655
	충청남도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논산시, 계룡시, 공주시,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충청남도 논산시 중양로384번길 55(취암동) (32974)	http://nonsan. goodneighbors.kr/	041-734-6640
	충청남도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산시, 보령시, 태안군,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24-1, 3층(신경리) (32263)	hongseong. goodneighbors.kr	041-635-1106
전북 (3개소)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완주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77(서서학동) (55099)	www.goodneighbors.kr/ local/jeonju	063-283-1391
	전라북도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12, 4층 (갈산동 185-3) (54595) [분소]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209 우정빌딩 4층 (54101)	http://iksan. goodneighbors.kr/	063-852-1391 063-734-1391
	전라북도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무주군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41 (향교동) (55751)	http://namwon. goodneighbors.kr/	063-635-1391
전남 (3개소)	전라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순천시, 여주시,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 보성군, 고흥군	전라남도 순천시 삼산로 92-5 (용당동) (57935)	www.e1391.or.kr	061-753-5125
	전남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강진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35, 3층 (석현동) (58615) [분소]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약4로 82번길 19, 4층 (58567))	www.goodneighbors.kr/ mokpo	061-285-1391 061-284-1391
	전남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흥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전라남도 나주시 예방로 4073, 2,3층(송월동) (58263)	www.goodneighbors.kr/ jinjb	061-332-1391
경북 (4개소)	경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도군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395번길 24(성건동) (38133)	www.i1391.or.kr	054-745-1391
	경북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	경상북도 안동시 방적골길 20 (울세동) (36692)	www.ad1391.org	054-853-1391
	경북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청송군, 울릉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25 번길 12, 3층(대잠동) (37685)	www.goodneighbors.kr/ pohang	054-284-1391
	경북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21-5 3층(송정동 80-1 하나빌딩) (39276)	gumi1391.or.kr	054-455-1391
경남 (3개소)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창원시, 밀양시, 양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함안군, 함천군, 의령군, 창녕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558(회원동) (51292) [분소] 거제사무소 : 거제시 옥포로 25길 16, 2층(53224) [분소] 양산사무소 : 양산시 중앙 로 209, 3층(양산시 재향군인회관) (50616)	www.kn1391.or.kr	055-244-1391
	경남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경상남도 진주시 모덕로 181번길 6 (상대동) (52773)	www.gnw1391.or.kr	055-757-1391
	김해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85번 길 8 2층(부원동) (50924)	www.gh1391.or.kr	055-322-1391
제주 (2개소)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도형로 59(노형동) (63084)	www.jj1391.or.kr	064-712-1391~2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731, 1-2층(서귀동) (63593)	www.sgp1391.org	064-732-1391

부록 2.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현황(2018년 10월 기준, 63개소)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쉼터수	3	4	2	2	2	3	2	12	4	7	3	3	6	5	3	2	63

부록 3. 2016 현황보고서 오류 수치 정정

〈표 3-4〉와 같이 2016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사례판단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학대의심 사례인 25,878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학대 사례는 총 18,700건으로 전체 아동학대의심사례의 72.3%를 차지하였고, 조기지원사례와 일반사례는 각각 2,222건(8.6%), 4,898건(18.9%)으로 나타났다*.



〈그림 5-12〉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97

**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부록 p.273

〈표 6-2〉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업무량*

(단위 : 시간, 명)

지역 및 기관	항목	상담원 (기관장 제외)1	상담원 총 업무량	상담원 1인당 실질 가용시간	상담원 표준모형 적정 인원수	상근임상 심리치료 전문인력수	임상심리치료전 문인력 총 업무량 (시간)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인당 실질 가용시간	임상심리 치료전문인력 표준모형 적정인원수	비고
서울	서울특별시	7	13,877	1,961	7.1	0	921	1852	0.5	
	서울특별시동부	13	95,694	1,961	48.8	1	3,978	1852	2.1	
	서울강서	10	36,805	1,961	18.8	1	4,443	1852	2.4	
	서울은평	10	41,386	1,961	21.1	1	5,269	1852	2.8	
	서울영등포	11	35,942	1,961	18.3	1	3,805	1852	2.1	
	서울성북	10	45,998	1,961	23.5	1	5,743	1852	3.1	
	서울마포	12	29,547	1,961	15.1	1	6,672	1852	3.6	
	서울동남권	8	52,362	1,961	26.7	2	4,965	1852	2.7	
	소계	81	351,610		179.3	8	35,797		19.3	
부산	부산광역시	8	22,914	1,961	11.7	1	2,929	1852	1.6	
	부산동부	12	22,892	1,961	11.7	1	2,977	1852	1.6	
	부산서부	10	27,298	1,961	13.9	1	1,682	1852	0.9	
	부산남부	11	3,320	327	1.7	1	1,207	309	0.7	2016. 10. 21설치
	소계	41	76,424		39.0	4	8,794		4.7	
대구	대구광역시	11	30,924	1,961	15.8	1	3,815	1852	2.1	
	대구광역시남부	11	40,371	1,961	20.6	1	3,705	1852	2.0	
	대구광역시북부	11	22,193	1,471	11.3	1	2,476	1389	1.3	2016. 4. 4 설치
	소계	33	93,488		47.7	3	9,996		5.4	
인천	인천광역시	12	72,969	1,961	37.2	1	4,438	1852	2.4	
	인천북부	11	46,946	1,961	23.9	1	5,907	1852	3.2	
	인천남부	11	66,739	1,961	34.0	1	3,090	1852	1.7	
	소 계	34	186,655		95.2	3	13,435		7.3	
광주	광주광역시	9	33,466	1,961	17.1	1	4,316	1852	2.3	
	빛고을	12	2,083	327	1.1	1	1,163	309	0.6	2016. 10. 26설치
	소계	21	35,549		18.1	2	5,479		3.0	
대전	대전광역시	9	21,525	1,961	11.0	1	5,775	1852	3.1	
울산	울산광역시	15	51,541	1,961	26.3	1	6,839	1852	3.7	
경기	경기도	12	66,973	1,961	34.2	1	7,997	1852	4.3	
	경기북부	16	58,903	1,961	30.0	1	7,553	1852	4.1	
	경기성남	12	43,948	1,961	22.4	1	7,431	1852	4.0	
	경기고양	11	41,344	1,961	21.1	1	6,615	1852	3.6	
	경기부천	12	57,264	1,961	29.2	1	8,555	1852	4.6	
	경기화성	11	58,228	1,961	29.7	1	5,627	1852	3.0	
	경기남양주	9	27,827	1,961	14.2	1	3,155	1852	1.7	
	안산시	15	117,869	1,961	60.1	1	10,020	1852	5.4	
	경기용인	13	47,811	1,961	24.4	2	6,729	1852	3.6	
	경기시흥	10	38,587	1,961	19.7	1	6,559	1852	3.5	
	경기평택	9	26,870	1,961	13.7	1	2,893	1852	1.6	
	수원	-	-	-	-	-	-	-	-	2016. 12. 5. 설치로 업무 량 산출 제외
	소 계	130	585,623		298.7	12	74,058		40.0	

(계속)

* 201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229

(단위 : 시간, 명)

지역 및 기관	항목	상담원 (기관장 제외)1	상담원 총 업무량	상담원 1인당 실질 가용시간	상담원 표준모형 적정 인원수	상근임상 심리치료 전문인력수	임상심리치료전 문인력 총 업무량 (시간)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인당 실질 가용시간	임상심리 치료전문인력 표준모형 적정인원수	비고
강원	강원도	12	26,170	1,961	13.3	1	2,527	1852	1.4	
	강원동부	12	29,286	1,961	14.9	1	2,498	1852	1.3	
	원주시	10	48,414	1,961	24.7	1	5,960	1852	3.2	
	강원남부**	7	38,324	1,961	19.5	1	3,974	1852	0.4	
	소계	41	142,195		72.5	4	14,959		6.3	
충북	충청북도	15	70,724	1,961	36.1	1	16,387	1852	8.8	
	충북북부	11	26,952	1,961	13.7	1	2,931	1852	1.6	
	충북남부	7	31,670	1,961	16.2	1	4,267	1852	2.3	
	소계	33	129,346		66.0	3	23,584		12.7	
충남	충청남도	13	38,972	1,961	19.9	1	9,244	1852	5.0	
	충청남도남부	9	21,552	1,961	11.0	1	6,843	1852	3.7	
	충청남도서부	8	22,358	1,961	11.4	1	5,492	1852	3.0	
	소계	30	82,883		42.3	3	21,580		11.7	
전북	전라북도	12	35,491	1,961	18.1	1	11,663	1852	6.3	
	전라북도서부	11	47,106	1,961	24.0	1	11,675	1852	6.3	
	전라북도동부	8	65,553	1,961	33.4	1	8,422	1852	4.5	
	소계	31	148,150		75.6	3	31,759		17.1	
전남	전라남도	11	44,172	1,961	22.5	2	6,847	1852	3.7	
	전남서부권	12	70,133	1,961	35.8	2	8,882	1852	4.8	
	전남중부권	15	70,306	1,961	35.9	2	8,850	1852	4.8	
	소 계	38	184,611		94.1	6	24,579		13.3	
경북	경북남부	12	15,320	1,961	7.8	1	1,414	1852	0.8	
	경북북부	11	22,684	1,961	11.6	2	5,997	1852	3.2	
	경북동부	12	55,688	1,961	28.4	1	5,631	1852	3.0	
	경북서부	12	20,342	1,961	10.4	1	2,187	1852	1.2	
	소계	47	114,035		58.2	5	15,229		8.2	
경남	경상남도	18	62,334	1,961	31.8	1	3,520	1852	1.9	
	경남서부	11	43,722	1,961	22.3	1	1,954	1852	1.1	
	김해시	7	18,772	1,961	9.6	1	2,119	1852	1.1	
	소계	36	124,828		63.7	3	7,593		4.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9	16,720	1,961	8.5	1	2,415	1852	1.3	
	서귀포시	8	25,148	1,961	12.8	1	2,476	1852	1.3	
	소계	17	41,868		21.4	2	4,891		2.6	
계		637	2,370,331	1,961	1,208.8	63	325,927	1852	174.2	

〈표 7-19〉 연도별 시도/시군구 신고의무자교육 의무대상 교육 결과*

(단위 : 시간, 명)

연도 지역	2016년					2017년				
	총기관수		교육기관수		총 기관수 대비 교육이 수 기관 비 율	총기관수		교육기관수		총 기관수 대 비 교육이수 기관 비율
서울	5,260	(12.6)	5,257	(12.6)	(99.9)	6,849	(15.5)	6,848	(15.5)	(100.0)
부산	2,196	(5.3)	2,196	(5.3)	(100.0)	2,208	(5.0)	2,208	(5.0)	(100.0)
대구	1,538	(3.7)	1,538	(3.7)	(100.0)	1,630	(3.7)	1,630	(3.7)	(100.0)
인천	2,440	(5.8)	2,440	(5.8)	(100.0)	2,413	(5.5)	2,413	(5.5)	(100.0)
광주	1,552	(3.7)	1,552	(3.7)	(100.0)	1,611	(3.6)	1,611	(3.6)	(100.0)
대전	547	(1.3)	547	(1.3)	(100.0)	1,697	(3.8)	1,697	(3.8)	(100.0)
울산	966	(2.3)	966	(2.3)	(100.0)	956	(2.2)	956	(2.2)	(100.0)
경기	13,093	(31.3)	13,093	(31.3)	(100.0)	12,060	(27.3)	12,059	(27.3)	(100.0)
강원	1,379	(3.3)	1,379	(3.3)	(100.0)	1,347	(3.0)	1,347	(3.0)	(100.0)
충북	1,363	(3.3)	1,363	(3.3)	(100.0)	1,446	(3.3)	1,446	(3.3)	(100.0)
충남	1,630	(3.9)	1,630	(3.9)	(100.0)	2,290	(5.2)	2,290	(5.2)	(100.0)
전북	1,701	(4.1)	1,701	(4.1)	(100.0)	1,790	(4.1)	1,790	(4.1)	(100.0)
전남	1,677	(4.0)	1,677	(4.0)	(100.0)	1,712	(3.9)	1,712	(3.9)	(100.0)
경북	2,351	(5.6)	2,351	(5.6)	(100.0)	2,367	(5.4)	2,367	(5.4)	(100.0)
경남	3,437	(8.2)	3,437	(8.2)	(100.0)	3,156	(7.1)	3,156	(7.1)	(100.0)
제주	637	(1.5)	637	(1.5)	(100.0)	660	(1.5)	660	(1.5)	(100.0)
계	41,767	(100.0)	41,764	(100.0)	(100.0)	44,192	(100.0)	44,190	(100.0)	(100.0)

*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256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Child Abuse & Neglect Korea 2017



보건복지부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Child Abuse & Neglect Korea 2017



보건복지부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